

발 간 등 록 번 호

79-6500000-000580-13

제3차 제주특별자치도 장사시설 중장기 수급계획

2024. 09



발 간 등 록 번 호

79-6500000-000580-13

제3차 제주특별자치도 장사시설 중·장기 수급계획

2024. 9.



제주특별자치도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목 차

제1장 과업의 개요	1
1. 과업의 배경 및 목적	3
2. 과업의 내용 및 방법	4
제2장 관련 여건 분석	7
제1절 제주 장사시설 현황	9
1. 양지공원	9
2. 묘지 현황	15
3. 봉안 시설 현황	18
4. 자연장지 현황	20
5. 장례식장 현황	25
6. 장사시설 사용료 및 반환료	28
제2절 관련 법규 및 정책	32
1. 법 · 제도적 현황	32
2. 정책여건	39
3. (상위계획) 2023-2027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	49
4. 시사점	53
제3절 제2차 수급계획 평가	55
1. 제2차 수급계획 및 주요 성과	55
2. 제2차 계획의 제주도 장사시설 수급 추계 평가	56
3. 시사점	60

제4절 사례조사	62
1. 국내 사례	62
2. 자연장지 조성 사례	77
3. 묘지 재개발 사례	79
4. 국외 사례	81
5. 친환경 장법 사례	85
6. 시사점 도출	88

제5절 장사시설 조성 관련 갈등 지자체 사례	91
1. 홍성화장장 현대화 사업 사례	91
2. 서울시 추모공원 사례	93
3. 수원시 화장장 사례	97

제6절 시설별 사용료 사례	100
1. 봉안시설 사용료	100
2. 자연장지 사용료	104
3. 화장시설 사용료	106
4. 시사점	111

제3장 주민의식 조사	113
-------------	-----

1. 조사 개요	115
2. 주요 조사 결과	117

제4장 장사시설 중장기 수급계획	119
제1절 기본방향	121
1. 계획 수립의 기본 방향	121
2. 제주특별자치도 장사시설 수급계획 기본방향	123
제2절 장사시설 수요·공급 추계	128
1. 기본전제	128
2. 인구 변동 추계	130
3. 화장 추이	133
4. 매장 수요 추계	137
5. 봉안 수요 추계	140
6. 자연장지 수급분석	146
7. 장례식장 수급분석	151
제3절 장사시설 조성 방안	156
1. 장사시설 건립계획 추진 기본방향	156
2. 화장수용능력 단계적 확대	157
3. 친자연적, 수요자 중심 장사시설 조성 관리	161
4. 장례식장 확충 방안	172
제4절 장사시설 설치·조성 관련 갈등해소 방안	177
1. 기본방향	177
2. 장사시설 설치에 따른 지원 방안	179
3. 입지선정	182
제5절 효율적 장사시설 운영방안	187
1. 공설 장사시설 운영 방안	187
2. 사설 장사시설 운영방안_장사재단법인 설립 허가 검토	191
3. 사용료 관리	195

제6절 공설·공동묘지·무연묘 등 조사와 처리 및 개발방안	199
1. 분묘 일제조사	199
2. 분묘의 설치 기간에 따른 관리 방안	203
3. 무연분묘 처리	207
4. 공설묘지 개발방안	211

제7절 장례문화 개선 및 발전 방안	220
1. 장례문화 인식 개선 및 홍보	220
2. 미리 준비하는 장례 확산 기반 마련	222
3. 공공 중심 장사서비스 질 제고	224
4. 분묘의 설치기간 준수를 위한 사전준비 철저	229

제8절 연차별 추진계획	230
1. 제주 장사시설 수급계획 주요 사업	230
2. 연차별 사업비	233

제5장 공영장례 지원 기본계획(2024~2028) 235

1. 공영장례 정의	237
2. 공영장례 지원 대상자 추계	237
3. 공영장례의 추진계획	240
4. 지원방안	244

부록 I 사설 장사시설 관리방안..... 249

제1절 사설 장사시설 조성 등..... 249

1. 사설 묘지..... 249

2. 사설 봉안시설..... 253

3. 사설 자연장지..... 256

제2절 재단법인 설립 검토..... 260

1. 장사재단법인 설립 절차..... 260

2. 재단법인 설립 허가 기준..... 262

3. 설립 시 적절한 재산 규모 검토..... 263

제3절 사설 장사시설 재단법인 설립 검토..... 267

1. 사설 장사시설의 장단점..... 267

2. 검토결과..... 269

부록 II 주민의식 조사 결과 세부내용..... 271

1. 장사방법에 관한 인식..... 271

2. 제주특별자치도 장사정책에 관한 의견..... 291

3. 장사시설 설치와 관련된 갈등..... 304

표 목 차

〈표 2-1〉 양지공원 주요 시설 현황	9
〈표 2-2〉 양지공원 화장시설 현황	10
〈표 2-3〉 화장로 현황 및 운영 실적	10
〈표 2-4〉 양지공원 봉안당 현황	10
〈표 2-5〉 양지공원 내 기타시설 현황	11
〈표 2-6〉 양지공원 운영인력 현황	12
〈표 2-7〉 양지공원 운영비	12
〈표 2-8〉 제주 장사 업무 내용 및 예산 현황	13
〈표 2-9〉 화장시설 운영 실적(유형별)	14
〈표 2-10〉 화장시설 운영 실적(지역별)	14
〈표 2-11〉 화장 및 봉안 수수료 수입 현황	14
〈표 2-12〉 묘지 현황	15
〈표 2-13〉 공설묘지 현황	16
〈표 2-14〉 지역별 개장 현황	17
〈표 2-15〉 봉안시설 현황	18
〈표 2-16〉 공설 봉안당 현황	19
〈표 2-17〉 종교단체 봉안당 현황	19
〈표 2-18〉 공설 봉안묘 현황	20
〈표 2-19〉 공설 자연장지 현황	20
〈표 2-20〉 어승생 한울누리공원 현황	21
〈표 2-21〉 한울누리공원 견학 현황	21
〈표 2-22〉 용강별숲공원 현황	22
〈표 2-23〉 용강별숲공원 견학 현황	22
〈표 2-24〉 서귀포추모공원 현황	23
〈표 2-25〉 서귀포추모공원 견학 현황	23
〈표 2-26〉 서귀포 성산읍 자연장지 현황	24
〈표 2-27〉 성산읍 자연장지 견학 현황	24
〈표 2-28〉 제주 영락공원 현황	24

〈표 2-29〉 장례식장 전체 현황	25
〈표 2-30〉 전문 장례식장 현황	25
〈표 2-31〉 종교시설 장례식장 현황	26
〈표 2-32〉 마을 장례식장 현황	27
〈표 2-33〉 화장시설 사용료	28
〈표 2-34〉 공설묘지 사용료	28
〈표 2-35〉 애향묘지 사용료	28
〈표 2-36〉 공설봉안당 사용료	29
〈표 2-37〉 공설봉안묘 사용료	29
〈표 2-38〉 유택동산 사용료	30
〈표 2-39〉 공설자연장지 사용료	30
〈표 2-40〉 제주 장사시설 사용료 반환 기준	31
〈표 2-41〉 지방자치단체의 장사 업무 관련 법령	36
〈표 2-42〉 제주특별법에 따른 장사업무 관련 위임사항	37
〈표 2-43〉 전국 화장률	41
〈표 2-44〉 전국 화장률 현황	42
〈표 2-45〉 2023-2027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 중점추진사업 추진 계획	52
〈표 2-46〉 제2차 수급계획 및 주요 성과	55
〈표 2-47〉 제주특별자치도 장사시설 공급 현황(제2차 계획 당시)	56
〈표 2-48〉 서울추모공원 시설 이용료	64
〈표 2-49〉 용인시 평온의 숲 이용요금 안내	70
〈표 2-50〉 울산시 하늘공원 자연장지 이용요금 안내	72
〈표 2-51〉 은하수 공원 화장 이용료	75
〈표 2-52〉 은하수 공원 봉안당 이용료(15년)	75
〈표 2-53〉 은하수 공원 자연장-잔디장 이용료(30년)	75
〈표 2-54〉 은하수 공원 자연장-수목장 이용료(30년)	76
〈표 2-55〉 빙장의 진행절차	85
〈표 2-56〉 서울시 제2 화장장 건립에 대한 지역주민 반대의견	93
〈표 2-57〉 서울시 추모공원 추진과정	94
〈표 2-58〉 서울시 서초구 장사시설 입지 갈등 요인	95
〈표 2-59〉 서울시 서초구 장사시설 입지 갈등 해결 방법	96

〈표 2-60〉 수원시 장사시설 주요 내용	97
〈표 2-61〉 수원시 장사시설 입지 갈등 요인	98
〈표 2-62〉 수원시 장사시설 갈등 해결 방법	99
〈표 2-63〉 봉안당 사용료 사례(공설, 관내)	100
〈표 2-64〉 자연장지 사용료 사례(공설, 관내)	104
〈표 2-65〉 전국 화장장의 관내 사용료	107
〈표 2-66〉 전국 화장장의 관내 사용료	109
〈표 3-1〉 주민의견 조사 주요 내용	116
〈표 4-1〉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 주요 추진방향	122
〈표 4-2〉 제주 장사시설 수급계획 비전 및 목표	125
〈표 4-3〉 제주 장사시설 수급계획 세부 추진계획	126
〈표 4-4〉 제3차 장사시설 수급계획 주요사업	127
〈표 4-5〉 제주최근 10년 인구추이 및 출생·사망 현황	130
〈표 4-6〉 제주특별자치도 장래인구 추이(2023~2040)	132
〈표 4-7〉 연도별 화장률	133
〈표 4-8〉 연도별 화장률 추이 비교	134
〈표 4-9〉 화장수요 추정	134
〈표 4-10〉 화장로 수급 체계방식	135
〈표 4-11〉 화장시설 필요 화장로 수 추계	136
〈표 4-12〉 매장 현황	137
〈표 4-13〉 행정구역별 매장 현황	138
〈표 4-14〉 연도별 사망자, 화장자, 매장자 현황 및 추계(2019~2040)	139
〈표 4-15〉 공설봉안당 안치 추이	140
〈표 4-16〉 봉안시설 안치 추계	142
〈표 4-17〉 반환량을 감안한 봉안공간 추계	143
〈표 4-18〉 제주시 봉안 수요 추계	144
〈표 4-19〉 서귀포시 봉안 추계	145
〈표 4-20〉 공설자연장지 안치 추이(연도별)	146
〈표 4-21〉 공설자연장지 안치 추이(누적)	147
〈표 4-22〉 자연장지 안치 추계	148
〈표 4-23〉 자연장지별 안치 추계	149

〈표 4-24〉 자연장지별 잔여공간 추계	150
〈표 4-25〉 장례식장 수급 분석(제주 전체 전문장례식장 기준 수급 검토)	152
〈표 4-26〉 장례식장 수급 분석(제주 전체 전문장례식장 + 종교시설 + 의례회관 기준 수급 검토)	153
〈표 4-27〉 장례식장 수급 분석(제주시 전문장례식장 수급 검토)	154
〈표 4-28〉 장례식장 수급 분석(서귀포시 전문장례식장 수급 검토)	155
〈표 4-29〉 장사시설 단계별 추진계획	156
〈표 4-30〉 화장시설 필요 화장로 수 추계	159
〈표 4-31〉 화장로별 특징	160
〈표 4-32〉 공설장례식장 현황	172
〈표 4-33〉 성산읍 공설묘지 장례편의시설 운영 현황	174
〈표 4-34〉 장사시설 구성에 따른 갈등 조정 방향	178
〈표 4-35〉 장사시설 구성에 따른 갈등 및 해결방안 유형	178
〈표 4-36〉 장사시설 구성에 따른 갈등 유형별 해결 사례	179
〈표 4-37〉 장사시설 재개발 및 신규 조성 장단점 비교	182
〈표 4-38〉 갈등극복 방안	183
〈표 4-39〉 지원편의시설 제공 사례	185
〈표 4-40〉 경제적 보상 제공 사례	185
〈표 4-41〉 갈등 해결을 위한 인센티브 방안 예시	186
〈표 4-42〉 운영대안의 설정	187
〈표 4-43〉 제주 장사시설 운영관리 업무 범위 설정(안)	189
〈표 4-44〉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관련 제출서류 및 내용	192
〈표 4-45〉 장사시설 사용료 비교 및 현실화율	195
〈표 4-46〉 장사시설 사용료 인상(안)	196
〈표 4-47〉 사용료 반환기준(현재)	197
〈표 4-48〉 사용료 반환기준(안)	198
〈표 4-49〉 무연분묘 처리에 관한 법률	199
〈표 4-50〉 분묘 실태조사 추진 절차	200
〈표 4-51〉 분묘의 설치기간 연장신청 방법 및 절차	204
〈표 4-52〉 무연분묘 처리절차	207
〈표 4-53〉 무연분묘 보상금 산정금액	210
〈표 4-54〉 매장률에 따른 공설묘지 재개발 방향	213

〈표 4-55〉 공설묘지별 재개발 방향(안)	215
〈표 4-56〉 경기도 시흥시 정왕공설공원묘지 내 ‘자연장지’ 개장	216
〈표 4-57〉 강화군 해누리 공원(장사시설) 조성	217
〈표 4-58〉 가장동 공설묘지 분묘 일제조사 사례	218
〈표 4-59〉 모슬봉에 위치한 공동묘지 현황	219
〈표 4-60〉 공설묘지 개선 방안	231
〈표 4-61〉 제3차 장사시설 수급계획 연차별 사업비	233
〈표 5-1〉 공영장례 지원 현황	239
〈표 5-2〉 공영장례 지원 연차별 계획(안)	239
〈표 5-3〉 분기별 순번(예시)	244
〈표 부록-1〉 사설 자연장지 조성기준(시행령 별표 4, 5)	257
〈표 부록-2〉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관련 제출서류 및 내용	263
〈표 부록-3〉 법인의 재정적 기초 판단 시 고려할 사항	264
〈표 부록-4〉 봉안시설 운영 재단법인 설립 시 소요 기본재산 검토	266

그림목차

〈그림 2-1〉 개장 현황	17
〈그림 2-2〉 2023-2027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	51
〈그림 2-3〉 묘지관리 정책 개선을 위한 워킹그룹	59
〈그림 2-4〉 서울 추모공원 사례사진	63
〈그림 2-5〉 추모공원 주요시설 전경	65
〈그림 2-6〉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67
〈그림 2-7〉 용인 평온의 숲 전경	69
〈그림 2-8〉 용인 평온의 숲 자연장지	69
〈그림 2-9〉 울산 하늘공원 사례사진	71
〈그림 2-10〉 경주 하늘마루 사례사진	73
〈그림 2-11〉 세종은하수공원	76
〈그림 2-12〉 서울시립 용미리묘지 자연장지 사례사진	78
〈그림 2-13〉 인천가족공원 자연장 사례사진	78
〈그림 2-14〉 양구 봉안공원 사례사진	79
〈그림 2-15〉 서산 희망공원 사례사진	80
〈그림 2-16〉 문주익 묘지 내·외부 전경	82
〈그림 2-17〉 스톡홀름 우드랜드 주요시설	83
〈그림 2-18〉 메모리얼그린묘지 관련 사진	84
〈그림 2-19〉 나고야 제2화장장 인근 대형쇼핑몰	84
〈그림 2-20〉 알칼리 가수분해 진행과정	86
〈그림 2-21〉 바다장 개념 및 사례	87
〈그림 2-22〉 전국 화장장 현황	106
〈그림 3-1〉 자료처리단계	115
〈그림 4-1〉 공설봉안당 봉안현황	140
〈그림 4-2〉 공설봉안당 안치 추이	141
〈그림 4-3〉 행정구역별 개장 실적 집계	157
〈그림 4-4〉 페르라세즈 묘지 안내	161
〈그림 4-5〉 양지공원 이용만족도 조사 결과	162

<그림 4-6> 양지공원 종합장사시설화 예상 구획도(안)	166
<그림 4-7> 서귀포추모공원에 종합장사시설을 설치할 경우 예시(안)	167
<그림 4-8> 자연장 종류	170
<그림 4-9> 산분장	171
<그림 4-10> 공설장례식장 배치도(안)	176
<그림 4-11> 제주 공설묘지 위치도	213
<그림 4-12> 제주 공설봉안당 및 공설자연장지 위치도	214
<그림 4-13> 대정읍 공설묘지 전경	219
<그림 4-14> 웰다잉 프로그램 안내자료 사례	223
<그림 4-15>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홈페이지 / 한국장례문화원 홈페이지	224
<그림 4-16> 사망자 발생 시 업무처리 흐름도(2024 장사업무안내)	226
<그림 4-17> 서울시 저소득층, 무연고자 장례 지원 사업 예시	227
<그림 4-18> 제3차 제주 장사시설 공급계획 로드맵	232
<그림 5-1> 공영장례 지원 흐름도	241
<그림 5-2> 전용 빈소 조성 및 조문단 교육 사례	243
<그림 5-3> 지자체장이 상주가 되는 공영장례 지원	245

제3차 제주특별자치도 장사시설 중·장기 수급계획

제1장 과업의 개요

제1장 과업의 개요

1. 과업의 배경 및 목적

1) 과업의 배경

- 매장위주의 장사관행에 따른 국토잡식과 환경훼손, 불법묘지 및 무연고 분묘, 저출산·핵가족화에 따른 장사문화 개선의 필요성 등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됨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5조(묘지 등의 수급계획 수립)에 따르면, 장사시설에 관한 5년 단위 지역수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제3차 중장기 지역수급계획 수립 필요(5년단위 법정계획)
- 2005년 전국 화장률 52.5%로 매장률을 앞선 이후 매년 평균 약 2.3%씩 증가하여 1994년 20.5%에 비해 2022년 4.5배가 증가한 91.7%가 되었음
- 제주특별자치도 화장률 : 2002년 18.3%, 2011년 54.8%, 2022년 81.9%
- 화장률의 지속적인 증가로 화장 이후 봉안시설 이용 및 자연장지 이용이 증가하여 장사시설의 효율적인 공급 및 관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고령화로 인해 사망자 수가 증가하고 1인 가구가 급증하는 등 인구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묘지관리의 어려움과 무연분묘 증가가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이고 장래적인 대응 필요
- 제주도는 2027년 초고령사회 진입 예상, 사망자수 점차 증가 전망
- 장사수요 변화에 따라 장사시설의 개선 및 확충방안, 증가되는 봉안 및 자연장 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 방안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수립 필요

2) 과업의 목적

- 본 과업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 관할 구역 내 묘지 등 장사시설의 수급에 관한 중장기 계획 수립을 수행하기 위함
- 제주특별자치도 장사시설 지역수급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문제점을 진단·분석하고, 개인묘지 설치 억제와 불법묘지 근절, 집단묘지실태 조사 및 개발방안, 장사시설 수급에 대한 전망 등 장사시설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수립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의 장사시설 현황 및 문제점 진단 등을 통해 적정한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이고 선진적인 장사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2. 과업의 내용 및 방법

1) 과업의 범위

(1) 공간적 범위

- 제주특별자치도 전역

(2) 시간적 범위

- 자료기준연도: 2023년
- 계획목표연도: 2024 ~ 2028년(수급체계는 2040년까지 작성)

2) 내용적 범위

- 기초자료 및 현황 분석
- 제2차 수급계획 주요내용 평가
-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주민의식 조사
- 종합장사시설 설치 방안 및 장사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 방안
- 제주특별자치도 장사시설 중장기 수급계획 및 발전방향
- 장사시설 확충사업 및 주민지원사업 등 연도별 재정투자계획
- 재단법인설립 자격기준 등 정립
- 장사시설 설치·조성 관련 갈등해소 방안
- 공설·공동묘지·무연묘 등 조사와 처리 및 개발방안
- 공영장례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2024~2028)

제2장 관련 여건 분석

제1절 제주 장사시설 현황

제2절 관련 법규 및 정책

제3절 제2차 수급계획 평가

제4절 사례조사

제5절 장사시설 조성 관련 갈등 지자체 사례

제6절 시설별 사용료 사례

제2장 관련 여건 분석

제1절 제주 장사시설 현황

1. 양지공원

1) 일반현황

- 위치: 제주시 516로 2810-31(영평동 2261) 외 1필지
- 규모: 부지 46,566㎡, 건물연면적 8,137.06㎡
- 개관일: 2002년 5월 25일

2) 주요시설현황

〈표 2-1〉 양지공원 주요 시설 현황

구분	사 업 비	준공일	시 설 규 모	처리능력 안치규모	비 고
계	12,996백만원 국 : 5,477 지 : 7,519		- 부지 면적 : 46,566㎡ - 건축연면적 : 8,137.06㎡ - 주차장 : 295대		
화 장 동 및 관 리 동	4,602백만원 국 : 2,466 도 : 575 시 : 1,561	2002. 5. 25	- 건축연면적 : 2,764.19㎡ - 화장로 : 8기 - 관리동, 접수실, 유족대기실, 식당, 매점, 유택동산(부속건물) ※ 유택동산(연면적) : 44.05㎡	1일 처리능력 시신 20구 유골 64구	* 운영 시신 16구 유골 45구
봉 안 당 (제1추모의집)	972백만원 국 : 375 도 : 80 시 : 517	"	- 건축연면적 : 699.29㎡ (지상 2층) - 사무실, 제례실, 봉안실	8,576기	
봉 안 당 (제2추모의집)	2,200백만원 국 : 636 도 : 1,564	2007. 9. 10	- 건축연면적 : 2,316.55㎡ (지하1층, 지상2층) - 사무실, 제례실, 봉안실	21,400기	
봉 안 당 (제3추모의집)	5,222백만원 국 : 2,000 도 : 3,222	2018. 12. 14	- 건축연면적 : 2,357.03㎡ (지상3층) - 사무실, 제례실, 봉안실	20,000기	

(1) 화장시설

○ 양지공원에는 화장시설이 위치해 있고 화장로, 제례실, 유족대기실, 관망실 등으로 구성됨

〈표 2-2〉 양지공원 화장시설 현황

운영주체	소재지	부지	건물 (연면적)	주요시설	설치 연도	1일처리 능력
제주특별 자치도	제주시 5.16로 2810-31 (영평동 2261번지)	46,566㎡	2,764.19㎡	화장로 8기 제례실 2실 유족대기실 2실 관망실 8실 접수실 1실	‘02년 5기 ‘19년 3기	시신 20구 유골 64구

○ 화장로는 총 8기로 1일 최대 일반시신 20구, 개장유골 64구의 화장이 가능함

〈표 2-3〉 화장로 현황 및 운영 실적

시설규모	1일 처리능력		화장실적(‘23.12월)			화장률(%) (‘22년)	설치연도
	시신 (운영)	유골 (운영)	계	시신 (1일평균)	유골 (1일평균)		
화장로 8기 (2,764.19㎡)	20구 (16구)	64구 (45구)	14,369구 (39.4구)	3,870구 (10.6구)	10,499구 (28.8구)	81.9%	2002

주) 화장률 : 시신화장 건수(사산아 제외) ÷ 사망자수, * 한국장례문화진흥원(‘22.12.31 기준)

(2) 봉안당(‘23.12.31. 기준)

○ 양지공원의 봉안당은 1982년 충혼각이 설치된 후 2002년, 2007년, 2018년 3회에 걸쳐 추모의집이 조성되어 전체 봉안 능력은 51,325기, 그 중 36,153기에 봉안되어 현재 15,172기의 안치 공간이 남아있음

〈표 2-4〉 양지공원 봉안당 현황

구 분	건축면적(㎡)	봉안능력	봉안기수	잔여기수	설치연도
계	5,683.59	51,325기	36,153기	15,172기	
충 혼 각	310.72	1,349기	1,082기	267기	1982년
제1추모의 집	699.29	8,576기	8,288기	288기	2002년
제2추모의 집	2,316.55	21,400기	20,237기	1,163기	2007년
제3추모의 집	2,357.03	20,000기	6,546기	13,454기	2018년

(3) 기타시설

- 양지공원의 화장시설과 봉안당 외 시설로는 관리동, 유택동산, 매점, 식당 등이 있으며 매점과 식당은 영평가시나물마을회에서 운영 중임

〈표 2-5〉 양지공원 내 기타시설 현황

관 리 동		유택동산	매 점 (화장동 1층)		식 당 (화장동 지하층)
557.44㎡		44.05㎡	24.2㎡ 유골함 판매 등		473.19㎡ (250석) 음식 판매 등
구 분	면 적	운 영 자	연간임대료	임대시작연도	비 고
매 점	24.2㎡	영평가시나물마을회	501천원	2002	유골함 판매 등
식 당	473.19㎡(250석)	영평가시나물마을회	13,676천원	2019	음식 판매 등

3) 연혁

(1) 기구

- 2002. 05. 25 제주시 양지공원관리사업소 개관
- 2006. 07. 01 제주특별자치도 사업운영본부 양지공원관리사업소
- 2007. 01. 08 제주특별자치도 노인장애인복지과
- 2014. 08. 13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청소년과
- 2016. 07. 28 제주특별자치도 노인장애인복지과
- 2018. 08. 28 제주특별자치도 노인장수복지과
- 2023. 01. 17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과

(2) 화장시설

- 1972. 제주대학진입로변 화장시설 설치 운영(아라동 358-1)
- 1978. 12. 21 현 국제대학교 옆으로 이설(영평동 2226)
- 1980. 04. 01 화장시설 운영 개시
- 2000. 02. 01 화장시설 현대화 사업 착공

- 2002. 04. 02 화장시설 현대화 사업 준공(영평동 2261)
- 2005. 03. 06 화장시설 유족대기실(관리동) 증축
- 2019. 12. 20 화장로 증설 및 화장시설 증축(화장로 5기→8기)

(3) 추모(봉안)시설

- 1982. 4. 29 어승생 충혼각 내 봉안당 준공(1,349기)
- 2002. 5. 31 현대식 봉안당(제1추모의 집) 준공(8,576기)
- 2007. 9. 10 현대식 봉안당(제2추모의 집) 준공(21,400기)
- 2018. 12. 14 현대식 봉안당(제3추모의 집) 준공(20,000기)

4) 운영인력(현원)

- 양지공원은 직영으로 운영 중이며 운영인원은 전체 21명으로 운영 중임

〈표 2-6〉 양지공원 운영인력 현황

구 분	계	직 급 별							공무직
		5급	6급	7급	8급	9급	시간선택제 임기제“다”급	시간선택제 임기제“라”급	
현 원	21	1	1	2	-	-	1	9	7

주) 2023. 12. 31. 기준

5) 운영비

- 2023년의 운영비는 1,960백만원, 2024년의 운영비는 1,782백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음

〈표 2-7〉 양지공원 운영비

(단위: 백만원)

2023년도				2024년도				비 고
계	경상비		사업비	계	경상비		사업비	
	연료비	기타			연료비	기타		
1,960	525	320	1,115	1,782	483	476	823	

주) 경상비 : 재료비 포함

- 2024년 장사업무 전체 사업비 예산은 각 시설 관리비와 주민 지원 사업비 등이 포함되어 전체 2,381백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음

〈표 2-8〉 제주 장사 업무 내용 및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사 업 명	사업량	예산액	비 고
	합 계		2,381	
도	소 계		1,782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아라동 지역	69	
	환경정비 등 기간제근로자보수 및 일시사역 인부임	1식	69	
	장사시설 중장기 수급계획 연구 용역	1식	50	
	화장로 연료비 등	1식	483	
	화장로 시설 유지보수	1식	600	
	봉안당 시설물 등 균열보수, 방수 등	1식	35	
	기타 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상비 등	1식	476	
	*봉안당 사용료 반환금	1식	90	미포함
제 주 시	소 계		431	
	공설공원묘지관리	1식	68	
	공설자연장지관리(한울누리공원·별숲공원)	1식	283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 사망자 관리	1식	80	
서 귀 포 시	소 계		168	
	서귀포추모공원 운영	1식	51	
	장묘시설 운영	1식	76	
	서귀포 자연장지 운영 및 관리	1식	10	
	무연고 및 저소득층 사망자 관리	1식	31	
	*추모공원봉안당 사용료 반환금	1식	8	미포함

6) 화장시설 운영실적

- 화장시설은 2014년 8,184구 화장이 이루어진 후 증감을 반복하나 전체적으로 볼 때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3년에는 14,369구의 화장이 이루어짐

〈표 2-9〉 화장시설 운영 실적(유형별)

(단위: 구)

연도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비고
계 (증감)	8,184	6,901 (△1,283)	7,879 (978)	11,069 (3,190)	8,395 (△2,674)	8,391 (△4)	11,723 (3,332)	9,318 (△2,405)	11,856 (2,538)	14,369 (2,513)	
시신	2,099	2,155	2,365	2,585	2,812	2,946	3,044	3,350	3,892	3,870	사산아 포함
개장 유골	6,085	4,746	5,514	8,484	5,583	5,445	8,679	5,968	7,964	10,499	
1일 평균	22.4	18.9	21.5	30.3	23.0	23.0	32.1	25.5	32.4	39.4	

〈표 2-10〉 화장시설 운영 실적(지역별)

(단위: 구)

연도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비고
계	8,184	6,901	7,879	11,069	8,395	8,391	11,723	9,318	11,856	14,369	
제주시	5,559	4,739	5,291	7,397	5,582	5,364	7,654	5,767	7,253	9,129	사산아 포함
서귀포 시	2,513	2,055	2,488	3,551	2,698	2,915	3,938	3,437	4,464	5,098	사산아 포함
타지방	112	107	100	121	115	112	131	114	139	142	

〈표 2-11〉 화장 및 봉안 수수료 수입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비고
계	404,834	375,129	419,164	568,198	507,070	510,874	636,411	583,395	673,358	793,876	
화 장 수수료	192,334	174,129	197,264	262,598	218,870	222,074	283,261	247,161	295,889	346,847	
봉 안 수수료	212,500	201,000	221,900	305,600	288,200	288,800	353,150	336,234	377,469	447,029	

2. 묘지 현황

1) 묘지 전체

○ 제주특별자치도의 묘지는 대부분 인구가 많은 제주시에 위치해 있음

〈표 2-12〉 묘지 현황

구 분		개소수 (개소)	허가면적 (㎡)	기 매장		향후매장가능	
				기수(기)	면적(㎡)	기수(기)	면적(㎡)
제주특별자치도	합 계	107,584	8,030,982	188,580	4,792,162	192,388	3,235,870
	공설묘지	14	782,755	13,341	153,498	26,674	629,257
	사설묘지	소계	107,570	7,248,227	175,239	4,638,664	165,714
		법인	8	118,308	3,529	88,225	1,203
		종중	1,109	1,373,525	22,263	351,760	86,035
		가족	1,766	2,441,155	45,196	886,390	78,476
		개인	104,687	3,315,239	104,251	3,312,289	-
제주시	계	106,315	6,734,629	170,650	4,613,201	110,996	2,121,428
	공설묘지	7	333,168	6,696	87,048	17,531	246,120
	사설묘지	소계	106,308	6,401,461	163,954	4,526,153	93,465
		법인	8	118,308	3,529	88,225	1,203
		종중	342	568,951	12,913	258,260	15,535
		가족	1,419	2,403,394	43,443	868,860	76,727
		개인	104,539	3,310,808	104,069	3,310,808	-
서귀포시	계	1,269	1,296,353	17,930	178,961	81,392	1,114,442
	공설묘지	7	449,587	6,645	66,450	9,143	383,137
	사설묘지	소계	1,262	846,766	11,285	112,511	72,249
		법인	-	-	-	-	-
		종중	767	804,574	9,350	93,500	70,500
		가족	347	37,761	1,753	17,530	1,749
		개인	148	4,431	182	1,481	-

2) 공설묘지 현황

- 공설묘지는 제주시와 서귀포시 각각 7개소씩 허가면적은 서귀포시가 좀 더 넓으나 매장기수는 제주시가 많은 편임

〈표 2-13〉 공설묘지 현황

(단위: 기)

묘지명	허가 면적(㎡)	조성 면적(㎡)	매장 가능 (기수)	'22까지 기매장		'23. 12월까지 매장		향후 매장 (기수)	설치 연도
				기수	면적(㎡)	기수	면적(㎡)		
합 계	782,755	782,755	40,018	13,271	152,717	70	781	26,674	
제주시	소계	333,168	333,168	24,227	6,669	86,697	27	351	17,531
	어승생공설	67,130	67,130	3,765	3,177	41,301	7	91	581
	서부 공설	40,780	40,780	1,892	1,584	20,592	7	91	301
	애향묘지	58,796	58,796	4,300	127	1,651	6	78	4,167
	애월읍 공설	57,400	57,400	4,778	283	3,679	4	52	4,491
	구좌읍 공설	45,922	45,922	3,667	928	12,064	2	26	2,737
	조천읍 공설	49,420	49,420	4,738	199	2,587	0	0	4,539
	우도면 공설	13,720	13,720	1,087	371	4,823	1	13	715
서귀포시	소계	449,587	449,587	15,788	6,602	66,020	43	430	9,143
	상효동공설	156,158	156,158	4,736	3,834	38,340	4	40	898
	색달동 공설	165,400	165,400	3,625	193	1,930	1	10	3,431
	대정읍 공설	32,168	32,168	1,665	1,491	14,910	3	30	171
	남원읍 공설	46,304	46,304	2,540	343	3,430	4	40	2,193
	성산읍 공설	17,596	17,596	1,600	264	2,640	21	210	1,315
	안덕면 공설	13,805	13,805	822	30	300	0	0	792
	표선면 공설	18,156	18,156	800	447	4,470	10	100	343

3) 개장현황

- 각 행정시에 최근 7년간(윤달 3회 포함) 개장 신고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제주시의 경우 윤달이 있던 2017년과 2020년, 2023년에 각 5천구 내외의 개장이 이루어진 것으로 신고 되었고 서귀포시의 경우 3천구 내외의 개장이 이루어짐
- 윤달이 없는 일반적인 해의 경우 제주시는 3천구 내외, 서귀포시는 2천구 내외의 개장이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됨
- 7년간의 추세를 볼 때 뚜렷한 증가추세가 있거나 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비슷한 추세가 유지될 것으로 판단하여 향후 수급을 추정하고자 함
- 다만, 양지공원을 통해 화장이 이루어진 개장유골의 경우 2023년 기준 10,493건으로 개장 신고 내역 총 9,436건과 약 천 건 가량 차이가 있어 이를 감안해야 함

〈표 2-14〉 지역별 개장 현황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평균
제주시	5,425	3,045	3,557	4,935	3,325	5,115	5,545	4,421
서귀포시	3,788	1,878	2,245	3,166	2,338	3,740	3,891	3,006
계	9,213	4,923	5,802	8,101	5,663	8,855	9,436	7,427
화장실적	8,473	5,574	5,440	8,650	5,962	7,952	10,493	7,506

주) 제주 주민을 대상으로 한 신고 및 화장 내역 기준임



〈그림 2-1〉 개장 현황

3. 봉안 시설 현황

1) 봉안시설 전체

〈표 2-15〉 봉안시설 현황

(단위: 위)

구분		개소수	총 봉안능력	기 봉안	봉안가능	봉안가능 비율(%)	
총 계		368	130,589	65,964	64,625	100	
봉안당	합 계		17	92,567	51,542	41,025	63.48
	공 설		9	74,923	47,627	27,296	42.24
	사설	소 계	8	17,644	3,915	13,729	21.24
		가 족	2	230	30	200	0.31
		종중문중	1	54	15	39	0.06
		종교단체	5	17,360	3,870	13,490	20.87
		재단법인	-	-	-	-	
봉안묘	합 계		346	31,660	8,692	22,968	35.54
	공 설		6	3,072	2,639	433	0.67
	사설	소 계	340	28,588	6,053	22,535	34.87
		가 족	277	13,093	2,458	10,635	16.46
		종중문중	62	7,623	1,655	5,968	9.23
		종교단체	1	7,872	1,940	5,932	9.18
		재단법인	-	-	-	-	
봉안탑	합 계		5	6,362	5,730	632	0.98
	공 설		-	-	-	-	
	사설	소 계	5	6,362	5,730	632	0.98
		가 족	2	32	11	21	0.03
		종중문중	1	250	14	236	0.37
		종교단체	1	250	7	243	0.38
		재단법인	1	5,830	5,698	132	0.20

2) 봉안당

(1) 공설 봉안당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봉안접수관리대장 기준)

〈표 2-16〉 공설 봉안당 현황

(단위: 위)

봉안당명	봉안 능력 ①	연도별 봉안			연도별 반환			현재 봉안 ④=②-③	봉안 가능 ⑤=①-④
		계②	'22. 까지	'23. 실적	계③	'22. 까지	'23. 실적		
계	74,923	62,410	57,264	5,146	14,783	12,613	2,170	47,627	27,296
소계	51,325	49,533	45,483	4,050	13,380	11,583	1,797	36,153	15,172
충혼각	1,349	1,292	1,288	4	210	192	18	1,082	267
제1추모관	8,576	11,904	11,542	362	3,616	3,406	210	8,288	288
제2추모관	21,400	26,683	25,651	1,032	6,446	5,648	798	20,237	1,163
제3추모관	20,000	9,654	7,002	2,652	3,108	2,337	771	6,546	13,454
소계	23,598	12,877	11,781	1,096	1,403	1,030	373	11,474	12,124
우도면 봉안당	656	239	174	65	-	-	-	239	417
서귀포 추모공원	15,000	10,299	9,493	806	1,118	860	258	9,181	5,819
성산읍 봉안당	7,792	2,129	1,904	225	225	170	55	1,904	5,888
대정읍 봉안당	150	150	150	-	-	-	-	150	-
표선면 봉안당	0(前 60)	60	60	-	60	-	60	-	노후화로 인한 폐쇄

(2) 종교단체 봉안당 (단위: 위)

〈표 2-17〉 종교단체 봉안당 현황

(단위: 위)

봉안당명	설치자 (설치연도)	위 치	부지면적 (㎡)	설치면적 (㎡)	봉안능력	현재 봉안	봉안 가능
계	5개소		39,198	2,038.67	17,360	3,870	13,490
연화원	대한불교조계종 천왕사(2006)	제주시 노형동 산20-17	20,932	300	5,000	2,896	2,104
영락원	대한불교조계종 관음사(2016)	제주시 아라1동 산66-10	3,816	792	4,000	749	3,251
안양원	한국불교태고종 극락사(2016)	제주시 애월읍 중산간서로 6322	10,916	239.43	2,860	31	2,829
만불사	만불사(2009)	서귀포시 안덕면 산록남로 513-62	2,000	540	5,000	194	4,806
혜관정사	대한불교법종회 혜관정사(2009)	서귀포시 보목동 385	1,534	167.24	500	시설 보완중	500

3) 공설 봉안묘

〈표 2-18〉 공설 봉안묘 현황

(단위: 위)

봉안묘명	봉안능력 ①	봉 안			향후봉안가능 ③=①-②	시설규모 (㎡)	설치연도
		계②	'22.까지	'23.실적			
계	3,072	2,639	2,639	0	433	180	
한림읍 봉안묘	512	512	512	0	0	30	2003
애월읍 봉안묘	512	512	512	0	0	30	2005
구좌읍 봉안묘	512	512	512	0	0	30	2004
조천읍 봉안묘	512	512	512	0	0	30	2004
한경면 봉안묘	512	512	512	0	0	30	2003
우도면 봉안묘	512	79	79	0	433	30	2006

4. 자연장지 현황

1) 공설 자연장지 전체

〈표 2-19〉 공설 자연장지 현황

(단위: 위)

시설명	안장능력 ①	안 장 기 수			향후안장 가능기수 ③=①-②	시설규모 (㎡)	설치연도
		계②	'22.까지	'23.실적			
계	61,381	29,663	24,278	5,385	31,718	147,765	
어승생 한울누리공원	20,381	20,381	20,381	0	0	34,117	2009
용강 별숲공원	30,000	5,507	1,193	4,314	24,493	97,538	2022
서귀포 추모공원	4,000	3,176	2,333	843	824	7,260	2016
서귀포성산읍자연장지	7,000	599	371	228	6,401	8,850	2017

2) 어승생 한울누리공원

○ 일반현황

- 위치: 제주시 연동 산134-1번지(산록북로 70)
- 사업기간: '09. 4. 15 ~ '11. 12. 30
- 사업비: 4,370백만원 (국비 2,324 지방비 2,046)
- 면적: 34,117㎡
- 운영개시: '12. 4. 19
- 규격: 직경 15cm, 깊이 30cm
- 사용료: 잔디형, 화초형, 수목형: 100,000원(도외 200,000원)
정원형: 300,000원(도외 600,000원)

○ 자연장 시설현황

〈표 2-20〉 어승생 한울누리공원 현황

(단위: 기)

명 칭	소재지 및 면적(㎡)	구 분	총안장 가능기수	이용현황	향후안장 가능기수
				'22.까지 안장기수	
계	34,117		20,381	20,381	-
어승생 한울누리공원	연동 산 134-1 (34,117)	잔디형	14,814	14,814	-
		화초형	2,548	2,548	-
		수목형	2,035	2,035	-
		정원형	984	984	-

〈표 2-21〉 한울누리공원 견학 현황

(단위: 명)

연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인원	1,394	1,645	1,821	1,639	1,615	1,376	637	1,477

3) 용강별숲공원 현황

○ 일반현황

- 위치: 제주시 용강동 101-1번지(용강6길 366-1)
- 사업기간: '21. 9. 15 ~ '22. 11. 30
- 사업비: 4,100백만원 (국비 2,800 지방비 1,300)
- 면적: 97,538㎡
- 운영개시: '22. 8. 22.
- 규격: 직경 15cm, 깊이 30cm
- 사용료: 잔디형, 수목형 - 100,000원(도외 200,000원)
정원형 - 300,000원(도외 600,000원)

○ 자연장 시설현황

〈표 2-22〉 용강별숲공원 현황

(단위: 기)

명 칭	소재지 및 면적(㎡)	구 분	총안장 가능기수	이용현황			향후안장 가능기수
				'22.까지 안장기수	'22.까지 안장기수	'23. 안장기수	
계	97,538		30,000	5,507	1,193	4,314	24,493
용강별숲공원	용강동 101-1 (97,538)	잔디형	24,060	4,315	908	3,407	19,745
		수목형	3,400	829	190	639	2,571
		정원형	2,540	363	95	268	2,177

〈표 2-23〉 용강별숲공원 견학 현황

(단위: 명)

연도	'22년	'23년	비고
인원	858	5,520	

4) 서귀포 추모공원 자연장지

○ 일반현황

- 위치: 서귀포시 상호동 1893번지
- 사업기간: '14. 9. 29.~' 15. 12. 24.
- 사업비: 1,313백만원 (국비 700, 지방비 613)
- 면적: 7,260㎡
- 운영개시: 2016. 4. 15.
- 규격: 직경 15cm, 깊이 30cm
- 사용료: 잔디형 100,000원(도외 200,000원)

○ 자연장 시설현황

〈표 2-24〉 서귀포추모공원 현황

(단위: 기)

명 칭	소재지 및 면적(㎡)	구 분	총안장 가능기수	이용현황			향후안장 가능기수
				'22.까지 안장기수	'22.까지 안장기수	'23. 안장기수	
계	7,260		4,000	3,176	2,333	843	824
서귀포 추모공원	상호동 1893 (7,260)	잔디형	4,000	3,176	2,333	843	824

〈표 2-25〉 서귀포추모공원 건학 현황

(단위: 명)

연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인원	2,300	2,100	2,000	1,000	1,095	1,277	1,241	1,740

5) 서귀포시 성산읍 자연장지

○ 일반현황

- 위치: 서귀포시 성산읍 금백조로 548(성산읍 수산리 4711)
- 사업기간: '17. 1.~' 18. 12.
- 사업비: 3,111백만원 (국비 1,337, 지방비 574, 자체재원 1,200)
- 면적: 8,850㎡
- 운영개시: 2019. 7. 22.
- 규격: 직경 15cm, 깊이 30cm
- 사용료: 잔디형 100,000원(도외 200,000원)

○ 자연장 시설현황

〈표 2-26〉 서귀포 성산읍 자연장지 현황

(단위: 기)

명 칭	소재지 및 면적(㎡)	구 분	총안장 가능기수	이용현황			향후안장 가능기수
				'22.까지 안장기수	'22.까지 안장기수	'23. 안장기수	
계	8,850		7,000	599	371	228	6,401
서귀포 성산읍 자연장지	금백조로 548 (8,850)	잔디형	7,000	599	371	228	6,401

〈표 2-27〉 성산읍 자연장지 견학 현황

(단위: 명)

연도	'21년	'22년	'23년	-
인원	5,110	5,475	5,292	-

6) 종교단체 자연장지

〈표 2-28〉 제주 영락공원 현황

(단위: 위)

구분	안장능력 ①	안 장 기 수			향후안장 가능기수 ③=①-②	시설규모 (㎡)	설치연도
		계②	'22.까지	'23.실적			
제주 영락공원	6,264	206	178	31	6,058	1,281	2011

주) 위치: 제주시 구좌읍 덕천리 427-1, 사용료 : 무료

5. 장례식장 현황

1) 장례식장 및 장의업체 현황

○ 장례식장은 전문장례식장, 종교시설 장례식장, 마을 장례식장 등이 설치되어 있음

<표 2-29> 장례식장 전체 현황

(단위: 개소)

구분	장례식장				장의업체	비고
	소계	전문	종교	마을		
계	56	11	19	26	69	* 전문: 신고업 기타: 자율업
제주시	27	10	16	1	53	
서귀포시	29	1	3	25	16	

2) 전문 장례식장

<표 2-30> 전문 장례식장 현황

구분	시설명	소재지	시설현황			
			면적 (㎡)	안치실	분향실	식당 (수용인원)
총 계		11개소				4,855명
제주시	소 계	10개소				4,527명
	제주의료원 장례식장	산천단남길 10 (아라일동)	870	12	4	260명
	그랜드부민장례식장	연복로 378 (도남동)	4,046	26	9	1,052명
	우선종합(주) 장례식장	조천읍 함덕남2길 14	997	10	4	120명
	제주대학교 병원장례식장	아란13길 15 (아라일동)	2,316	14	5	145명
	한림정낭 장례식장	한림읍 명랑로 76	876	4	3	250명
	그린 장례식장	조천읍 함덕남2길 19-10	734	4	3	130명
	김녕농협 장례문화센터	구좌읍 김송로 102	973	4	2	200명
	하귀농협 장례식장	애월읍 애조로 405	3,598	10	5	1,000명
	(주)그랜드중앙 장례식장	월랑로 91(이호이동)	2,088	12	6	520명
	혼길 장례식장	공항서로 131 (도두이동)	5,893	14	8	850명
서귀포시	소 계	1개소				328명
	서귀포 의료원	장수로 47	2,204	14	5	328명

3) 종교시설 장례식장

〈표 2-31〉 종교시설 장례식장 현황

구분	시설명	소재지	시설현황			
			면적 (㎡)	안치실수	분향실	식당 (수용인원)
합 계		19개소				2,256명
제주시	소 계	16개소				1,946명
	중앙성당	삼도2동 114	257.4	2	2	100명
	동문성당	일도2동 1029-25	287.1	2	1	96명
	화북성당	화북1동 1107-1	214.5	2	2	50명
	조천성당	조천읍 조천리 3192-1	198	1	1	100명
	동광성당	일도2동 84	221.1	2	1	100명
	광양성당	이도2동 1256-1	316.8	2	2	50명
	서문성당	용담1동 260	468.6	2	2	120명
	신제주성당	연동 280-19	118.8	2	1	80명
	노형성당	노형동 2407	468.6	1	1	100명
	하귀성당	하귀2리 1893-2	198	1	1	150명
	한림성당	한림읍 한림리 1308-1	330	2	1	300명
	신창성당	한경면 신창리 705	396	1	1	150명
	고산성당	한경면 고산리 2863	422.4	2	3	100명
	서문성당 추자공소	추자면대서리 206	145.2	2	1	50명
	조수공소	한경면 조수리	16.5	1	1	300명
	고산성당 청수공소	한경면 청수리	211.2	1	1	100명
서귀포시	소 계	3개소				310명
	성산포성당	고성 오조로 120	289	2	1	100명
	표선성당	표선동서로 169	80	2	1	150명
	중문성당	천제연로 149	39.54	1	1	60명

4) 마을 장례식장

〈표 2-32〉 마을 장례식장 현황

구분	시설명	대표자	소재지	시설현황			
				면적 (㎡)	안치실	분향실	식당 (수용인원)
총 계			26개소				2,492명
제주시	소 계		1개소				60명
	우도면 연합청년회 장례식장	청년회장	우도면 연평리 397	165	2	1	60명
서귀포시	소 계		25개소				2,432명
	남원 의례회관	남원2리장	남원읍 서의로 26	530.00		2	120명
	위미 의례회관	위미1리장	남원읍 중산간동로 6862	495.00		2	180명
	화순리 문화회관	마을이장	안덕면 화순문화로 2	494.90	-	1	100명
	사계리 산방복지회관	마을이장	안덕면 산방로 322	491.56	-	1	100명
	서광서리 복지회관	마을이장	안덕면 서광남로 144-5	809.88	-	1	80명
	서광동리 복지회관	마을이장	안덕면 서광동로 17	471.80	-	1	80명
	창고내 문화회관	마을이장	안덕면 창천중앙로 35-2	586.00	-	1	100명
	성산읍 공설묘지	성산읍장	성산읍 금백조로 548	293.00	4	1	192명
	신산마을 공동묘지	마을회장	성산읍 독자봉로 281	384.00	2	1	100명
	표선리 의례회관	표선리장	표선면 표선관정로 48-36	578.80	4	2	150명
				313.44			100명
	법환 경로당	노인회장	법환로 76	157.00	-	1	100명
	색달 복지회관	마을이장	색달로 74	49.00	1	1	200명
	상예1 복지회관	마을이장	상예로 77	200.00	1	1	150명
	상예2 복지회관	마을이장	존제로 7-5	250.00	1	1	130명
	하예1 복지회관	마을이장	하예로 1-2	101.07	1	1	180명
	하예2 복지회관	마을이장	예래로 416-2	165.50	1	1	120명
	무릉1리 마을 공동묘지	마을회장	대정읍 무릉송당로 79-74	133.00	2	-	-
	신도1리 마을 공동묘지	마을회장	대정읍 도원향토로 418	99.96	2	-	-
	읍오개리 공동묘지	대정고을 연합청년회	대정읍 동일리 2081-1번지	99.00	2	-	-
	가파리 마을공동묘지	마을회장	대정읍 가파로 167-7	99.36	2	-	-
	영락리 마을공동묘지	마을회장	대정읍 암반수마농로441번길 59-12	125.64	2	-	-
	성읍리 공동묘지	성읍1리장	표선면 서성일로 73-51	165.00	2	1	
	남원읍 공설묘지	남원읍장	남원읍 서성일로 955-24	227.50	4	2	200명
	신하례 공동묘지	신례1리장	남원읍 신례리 산 57번지	19.80	3	-	-
	도순마을 공동묘지	마을회장	중산간서로356번길 160-12	99.00	2	1	50명

6. 장사시설 사용료 및 반환료

1) 장사시설 사용료

- 공설장사시설은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11조 및 <별표2>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음

(1) 화장시설

<표 2-33> 화장시설 사용료

구분	기준	금액(원)		비고
		도 내	도 외	
양지공원	대인(15세이상)	50,000	120,000	
	소인(15세미만)	35,000	84,000	
	사 산 아	24,000	48,000	
	개장유골	18,000	70,000	

(2) 공설묘지

<표 2-34> 공설묘지 사용료

구분	기준	금액(원)	비고
제주시	1기	200,000	
서귀포시	동 지역	100,000	
	읍면지역	50,000	

(3) 애향묘지

<표 2-35> 애향묘지 사용료

구 분		단 위	사 용 료(원)		
			계	이용료	관리비
재외 동포 묘역	평 장	1기	200,000	30,000	170,000
	평 분	1기	300,000	50,000	250,000
	봉안묘	1기	300,000	50,000	250,000
이북도민묘역		1기	50,000	50,000	-

주) 분묘·봉안묘의 묘지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설치자가 부담함. 다만, 조례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분묘 및 묘비에 대하여는 도지사가 부담한다.

(4) 공설봉안당

〈표 2-36〉 공설봉안당 사용료

명 칭	기 준	금액(원)	
		도 내	도외
충혼각 공설 봉안당	1위	100,000	200,000
양지공원 봉안당	1위	100,000	200,000
제주시 우도면 봉안당	1위	100,000	200,000
서귀포 추모공원	1위	50,000	100,000
서귀포시 성산읍 봉안당	1위	20,000	50,000
서귀포시 대정읍 봉안당	1위	20,000	50,000
서귀포시 표선면 봉안당	1위	20,000	50,000

(5) 공설봉안묘

〈표 2-37〉 공설봉안묘 사용료

명 칭	기 준	금 액
한림 무연 공설 봉안묘	1위	무료
한경 무연 공설 봉안묘	1위	무료
구좌 무연 공설 봉안묘	1위	무료
조천 무연 공설 봉안묘	1위	무료
애월 무연 공설 봉안묘	1위	무료
우도 무연 공설 봉안묘	1위	무료

(6) 유택동산

〈표 2-38〉 유택동산 사용료

명 칭	기 준	금 액
양지공원 유택동산	1위	무료

(7) 공설자연장지

〈표 2-39〉 공설자연장지 사용료

구 분	기 준	금 액(원)	
		도내	도외
잔 디 형	1기	100,000	200,000
화 초 형	1기	100,000	200,000
수 목 형	1기	100,000	200,000
정 원 형	1기	300,000	600,000

■ 도내 · 도외의 구별

시 신	도 내	사망 당시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재외도민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를 포함한다)
	도 외	위 도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유 골	도 내	종전에 매장하였던 분묘의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있거나, 사망 당시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도 외	위 도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 사용료 반환

- 제주 장사시설의 중간 반환시 발생하는 사용료 기준은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11조 및 <별표3>에서 규정하고 있음

<표 2-40> 제주 장사시설 사용료 반환 기준

(단위: 천원/위)

사용기간	양지공원 봉안당		충혼각 공설 봉안당		제주시 우도면 봉안당		서귀포 추모공원		성산읍 봉안당		대정읍 봉안당		표선면 봉안당		비고
	도내	도외	도내	도외	도내	도외	도내	도외	도내	도외	도내	도외	도내	도외	
기납부액	100	200	100	200	100	200	50	100	20	50	20	50	20	50	
1일 이상 1년 미만	93	186	93	186	93	186	47	93	19	47	19	47	19	47	
1년 이상 2년 미만	87	174	87	174	87	174	43	87	17	43	17	43	17	43	
2년 이상 3년 미만	80	160	80	160	80	160	40	80	16	40	16	40	16	40	
3년 이상 4년 미만	73	146	73	146	73	146	36	73	15	36	15	36	15	36	
4년 이상 5년 미만	67	134	67	134	67	134	33	67	13	33	13	33	13	33	
5년 이상 6년 미만	60	120	60	120	60	120	30	60	12	30	12	30	12	30	
6년 이상 7년 미만	53	106	53	106	53	106	27	53	11	27	11	27	11	27	
7년 이상 8년 미만	47	94	47	94	47	94	23	47	9	23	9	23	9	23	
8년 이상 9년 미만	40	80	40	80	40	80	20	40	8	20	8	20	8	20	
9년 이상 10년 미만	33	66	33	66	33	66	17	33	7	17	7	17	7	17	
10년 이상 11년 미만	27	54	27	54	27	54	13	27	5	13	5	13	5	13	
11년 이상 12년 미만	20	40	20	40	20	40	10	20	4	10	4	10	4	10	
12년 이상 13년 미만	13	26	13	26	13	26	7	13	3	7	3	7	3	7	
13년 이상 14년 미만	7	14	7	14	7	14	3	7	1	3	1	3	1	3	
14년 이상	미지급														

비고) 사용기간 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추가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2절 관련 법규 및 정책

1. 법·제도적 현황

1) 장사시설 수급계획¹⁾

(1) 수립 근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법정계획(제5조)

-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립한 종합계획에 따라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안의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 및 자연 장지의 수급(需給)에 관한 지역수급계획을 수립해야 함(법 제5조제2항)
 -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수급계획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공동으로 수립하는 것이 가능함(법 제5조제3항)
- 시장·군수·구청장은 수립된 지역수급계획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각각 보고해야 함(법 제5조제4항)

(2) 기본 원칙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 및 수립 지침(제4조)

- 수립기간: 2023년~2027년(5개년 계획)(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3항)
- 지역수급계획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종합계획과 지역수급계획 수립 지침 등 상위계획의 내용을 반영하여 수립함(영 제4조제4항)
 - － 시·도지사는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p59~78)의 시도별 장사 시설 부족분 및 공급계획을 반영하여 지역수급계획 수립

1) 2023-2027 제3차 지역수급계획 수립 지침(보건복지부, 2023. 1.)

(3) 주요 내용

■ 지역수급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도록 수립(영 제4조제3항 등)

- ① 지역수급계획의 기본방향
- ② 관할 구역의 연도별 출생자 수와 사망자 수 및 그 변동 추세에 관한 사항
- ③ 연도별 매장자 수, 화장자 수, 봉안자 수 및 자연장지 수와 그 변동 추세에 관한 사항
- ④ 장사시설의 설치·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사망자 수, 화장률 등의 중장기 추세를 감안하여 적정 수급관리계획 수립
- ⑤ 기존의 장사시설 등의 정비계획 또는 확충계획과 그에 따른 재정에 관한 사항
 - 노후화된 화장시설 등 장사시설 정비계획, 오염방지시설 설치 계획, 한시적 매장제도 효과적 추진을 위한 세부방안을 포함하여 수급계획 수립
- ⑥ 법 제11조에 따른 분묘의 일제 조사와 법 제28조에 따른 무연분묘의 처리에 관한 사항
 - 만장된 공설묘지 재개발 계획 및 불법묘지 감소 대책도 포함하여 계획 수립
- ⑦ 지역 간 장사시설의 수급 조정, 장사시설의 공동 설치·운영 및 장사시설에 관한 갈등 조정 등에 필요한 사항
 - 지역 수요를 고려한 화장시설의 설치 및 유치지역 해택지원 및 지역 주민 상생협력 방안 마련, 생활권역이 동일한 경우 인근 지방자치단체간 공동 설치
- ⑧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에 관한 사항
- ⑨ 친자연적이고 지속가능한 장사방식 및 장례문화 홍보 등에 관한 사항
 - 화장시설 등 장사시설에 대한 인식 개선·교육·홍보, 온라인 추모·성묘 확대, 화장한 유골을 산·바다 또는 특정 장소 등에 뿌리는 산분장 활성화

(4) 행정 사항

① 지역수급계획 수립 시 의견 청취

-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다)가 지역수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할 구역별 장사시설의 수급계획에 대하여 미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함(영 제4조제5항)

② 지역수급계획서 제출

- 시·도지사는 통보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역수급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지역수급계획 수립 지침을 1개월 이내에 작성 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
-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의 지역수급계획 수립 지침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역수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지체 없이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
- 시·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종합계획과 지역수급계획 수립 지침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지역수급계획을 수립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 받은 지역수급계획을 시·도 지역수급계획에 반영·조정한 후, 수립된 시·도 지역수급계획을 '23년 7월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파일 및 책자 각 1부)

2) 지방자치단체 주요 업무

(1) 지역수급계획 수립

- 「장사법」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지자체 법정계획
- ‘지역수급계획’ 주요내용 (장사법 시행령 제4조)
 - 1. 지역수급계획의 기본방향
 - 2. 관할 구역의 연도별 출생자 수와 사망자 수 및 그 변동 추세에 관한 사항
 - 3. 연도별 매장자 수, 화장자 수, 봉안자 수 및 자연장자 수와 그 변동 추세에 관한 사항
 - 4. 장사시설의 설치·구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5. 기존의 장사시설 등의 정비계획 또는 확충계획과 그에 따른 재정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 지역주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마련하여야 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봉안 및 자연장의 장려와 위법한 분묘설치의 방지를 위한 정책을 강구·시행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공설 장사시설 설치·구성 및 관리, 무연분묘 일제조사 및 정비, 무연고 시신 처리 및 장례의식 지원 등

〈표 2-41〉 지방자치단체의 장사 업무 관련 법령

조항	내용
제11조 (묘지의 일제조사)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묘지 등 수급계획의 수립 또는 제28조에 따른 무연분묘(無緣墳墓)의 정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일정한 기간 및 구역을 정하여 분묘에 대한 일제 조사를 할 수 있다.
제12조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① 시장 등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신으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 따라 시장 등이 무연고 시신 등을 처리하는 경우 장례의식 등 최소한의 존엄이 보장되도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례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공설묘지 등의 설치)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 및 공설자연장지를 설치·조성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 및 공설자연장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공동으로 설치·조성 및 관리할 수 있다.
제22조 (묘적부의 기록·관리)	① 시장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 안의 묘지 현황에 대한 묘적부(墓籍簿)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묘적부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28조 (무연분묘의 처리)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1조에 따른 일제 조사 결과 연고자가 없는 분묘(이하 “무연분묘”라 한다)에 매장된 시신 또는 유골을 화장하여 일정 기간 봉안할 수 있다.
제28조의2 (공설장례식장의 설치·운영)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장례의식을 하는 장소(이하 “장례식장”이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 대상과 시설·설비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 (역사적 보존 가치가 있는 묘지 등에 관한 특례)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묘지 또는 분묘에 대하여 관계 기관의 의견 조화와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보존묘지 또는 보존분묘로 지정할 수 있다.

(3) 제주특별법에 따른 위임사항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33조에 따라 장사법에서 위임하는 대통령령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 조례로 정할 수 있음

〈표 2-42〉 제주특별법에 따른 장사업무 관련 위임사항

조항	조문내용	위임사항
제5조 제6항	묘지 등의 수급계획 수립	수급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 계획수립의 기간·범위·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
제7조 제2항	매장 및 화장의 장소	② 누구든지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 제7항	매장·화장 및 개장의 신고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및 신고증명서의 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 제3항	자연장의 방법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묻거나 뿌리는 방법, 사용하는 용기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3조 제7항	공설묘지 등의 설치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의 설치기준과 수목장림 등 자연장지의 조성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4조 제2항	사설묘지의 설치 등	② 개인묘지를 설치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묘지를 설치한 후 30일 이내에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4조 제4항		④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를 설치·관리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4조 제6항		⑥ 시장등이 제4항에 따른 가족묘지 또는 종중·문중묘지의 설치·관리를 허가한 때에는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묘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 제9항		⑨ 사설묘지의 설치면적, 분묘의 형태, 설치장소, 그 밖의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5조 제1항	사설화장시설 등의 설치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자가 화장시설(이하 “사설화장시설”이라 한다) 또는 봉안시설(이하 “사설봉안시설”이라 한다)을 설치·관리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을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5조 제6항		⑥ 사설화장시설 및 사설봉안시설의 면적, 설치장소, 그 밖의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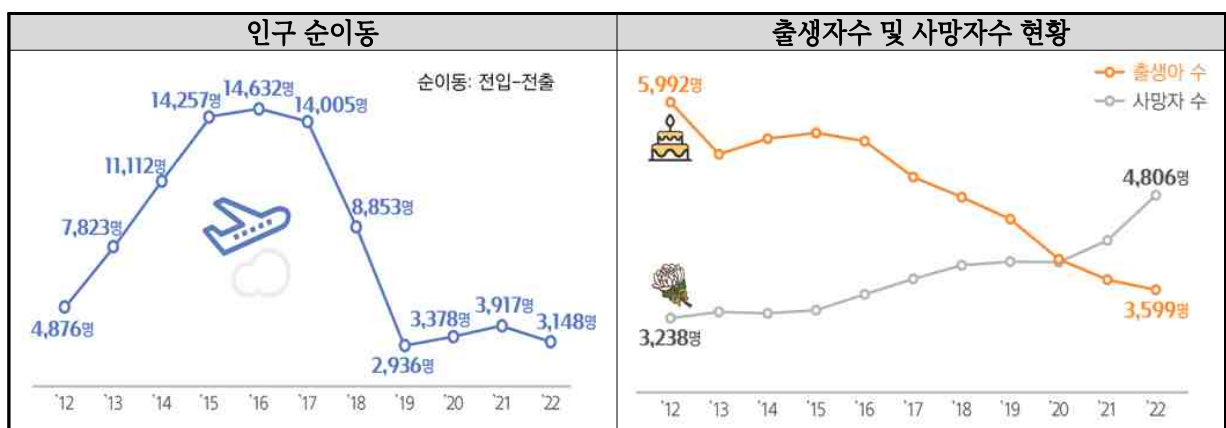
조항	조문내용	위임사항
제16조 제2항	자연장지의 조성 등	② 개인자연장지를 조성한 자는 자연장지의 조성을 마친 후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6조 제3항		③ 가족자연장지 또는 종중·문중자연장지를 조성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6조 제6항제 2호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법인 또는 종교단체
제16조 제9항		⑨ 제1항에 따른 사설자연장지의 종류별 면적, 제8항에 따라 자연장지에 설치하는 표지의 규격, 사설자연장지에 설치가 허용되는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7조 제4호	묘지 등의 설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는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를 설치·조성할 수 없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제18조 제4항	분묘 등의 점유면적 등	④ 분묘, 봉안묘 또는 봉안탑 1기당 설치할 수 있는 상석·비석 등 시설물의 종류 및 크기 등에 관한 사항
제19조 제5항	분묘의 설치기간	⑤ 제2항에 따른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 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25조 제1항	사설묘지 등에 대한 관리금의 적립	① 사설묘지·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조성 및 관리하는 자는 그 묘지·봉안시설·자연장지의 재해에 대비하여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개·보수에 필요한 관리금을 시설물별로 적립하여야 한다.
제25조 제3항		③ 제1항에 따른 관리금의 적립금액, 관리금의 적립시기·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31조	사설묘지 설치자 등에 대한 처분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의 이전·개수, 허가취소, 시설의 폐쇄, 시설의 전부·일부의 사용 금지 또는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32조 제1항	장례식장영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등	① 시장등은 장례식장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32조 제2항		② 시장등은 장례식장영업자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34조 제6항	역사적 보존가치가 있는 묘지 등에 관한 특례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존묘지 또는 보존분묘의 지정기준·지정절차·지정해제·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제35조 제3항	과징금 처분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영업자에 대한 처분을 하려는 경우로서 그 처분이 이용자에게 큰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현저하게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그 처분을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42조 제2항	과태료	(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징수에 한정한다)

2. 정책여건2)

1) 사회·구조적 관점

(1) 사망자 수 증가 및 지속적인 인구유출

- 전국적으로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년 815만 명(총 인구의 15.7%)에 비해, '30년 1.6배, '70년 2.1배(1,747만 명, 총인구의 46.4%) 수준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 제주특별자치도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다른 도 지역에 비해서는 적은 수준이기는 하나 10만명 초반 수준에서 2035년에는 20만명, 2050년에는 27만명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사망자 수는 '20년 31만 명 대비 '30년에 41만 명, '70년에는 70만 명('20년 대비 2.3배)으로 많아질 전망, '21년 기준 80세 이상의 사망자가 전체 50.0%를 차지하고 일평균 사망자 수 870명 중 연령대별 사망자 비율로 40-59세 11.5%, 60-79세 35.7%를 차지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사망자수 역시 꾸준히 증가하여 2023년 4,700명이던 사망자수가 2028년에는 5,002명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인구의 이동 측면에서도 2016년 만사천여명이던 순이동인구가 2019년 이후로 삼천명대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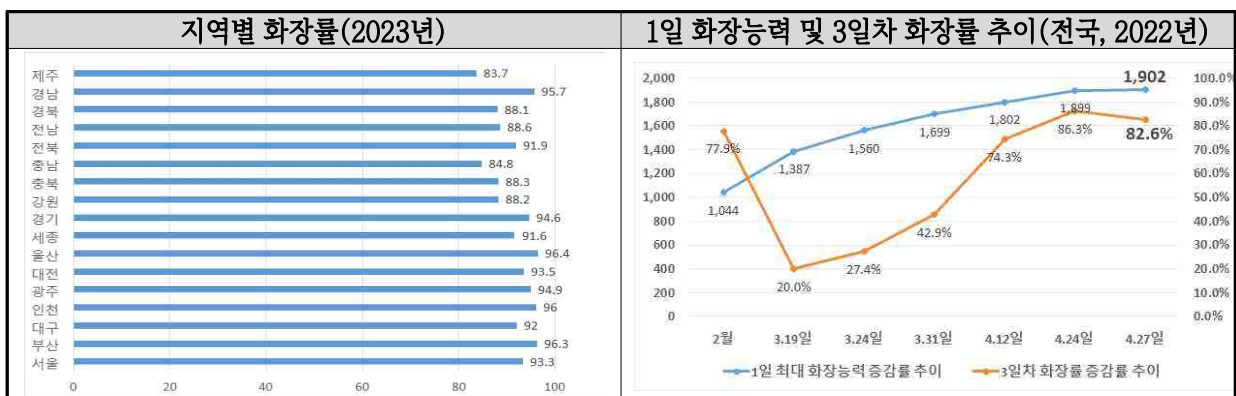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통계로 본 제주의 어제와 오늘」

2) 2023-2027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보건복지부)을 바탕으로 제주 관련 여건 보완 검토

(2) 화장시설 지역별·시기별 수급 불균형

■ 화장 문화가 정착되었으나, 화장시설 지역 편차 여전

- 전국적으로 볼 때 '05년 화장률이 매장률을 넘어선 이후, 화장 문화는 보편적인 장사 방식으로 정착함
 - 화장률(%) 변화: ('91)17.8 → ('01)38.5 → ('05)52.6 → ('11)71.1 → ('21)90.8
- 지속적으로 화장률이 상승하고 있지만 제주의 화장률은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21년 기준 시도별 화장률은 부산(95.5%)이 가장 높고, 인천, 경남, 울산 순이며 제주가 79.4%로 가장 낮음
- 대도시권으로 화장률이 높은 편임에 따라 화장로 부족 현상도 발생하고 있어 타지역으로의 원정 화장도 이루어지기도 하나 제주의 경우 지리적 특성 상 타지역의 시신이 화장로의 부족으로 제주에 이동해올 상황은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특히 '22년 코로나19 사망자 일시 증가시 3일차 화장률이 20%까지 감소*하는 등 국민 불편을 겪는 일이 발생하면서 화장시설 수급관리 중요성 부각되었음
 - * (3일차 화장률) '22.1월 85.3% → 2월 77.9% → 3월(3.19기준) 20% → 5월 87.8%
 - 다만 제주의 경우 여전히 5일장이 시행되는 등의 이유로 3일차 화장률이 낮은 것으로 집계되는 것으로 현재 화장시설 수급에는 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자료) e하늘장사정보시스템,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 전국 화장률

- 연도별 화장률은 다음과 같으며 제주도의 화장률은 전국 평균에 비해 낮은 편으로 약 7~8년 정도 전의 전국 화장률과 비슷한 추이를 보임

〈표 2-43〉 전국 화장률

(단위: 명, %)

구분	전 국			제 주 도				
	사망자	화장자	화장률	사망자	화장자	화장률(%)		
						도	제주시	서귀포시
2002년	246,515	105,103	42.6	2,776	502	18.3	21.3	11.8
2003년	245,817	113,999	46.3	2,806	679	26.0	28.0	17.0
2004년	244,193	120,091	49.1	2,830	852	31.5	34.6	21.0
2005년	243,886	128,258	52.5	2,902	1,036	35.0	40.4	26.4
2006년	242,286	136,854	56.5	2,974	1,132	38.2	43.5	27.2
2007년	244,874	144,255	58.9	2,870	1,183	41.0	45.4	32.4
2008년	246,113	152,420	61.9	2,813	1,195	42.5	46.5	33.7
2009년	246,924	160,433	65.0	2,826	1,318	46.6	49.9	39.4
2010년	255,403	172,276	67.5	3,017	1,457	48.3	51.5	36.3
2011년	257,396	182,946	71.1	3,021	1,657	54.8	58.7	46.7
2012년	267,221	197,717	74.0	3,238	1,860	57.4	62.7	47.2
2013년	266,257	204,750	76.9	3,317	1,986	59.9	64.6	49.9
2014년	267,692	212,083	79.2	3,300	2,095	63.5	68.9	52.7
2015년	275,895	222,895	80.8	3,339	2,143	64.2	68.3	55.5
2016년	280,827	232,128	82.7	3,542	2,397	67.7	71.8	58.6
2017년	285,534	241,665	84.6	3,738	2,595	69.4	73.1	61.1
2018년	298,820	259,347	86.8	3,912	2,870	73.4	77.5	64.7
2019년	295,110	260,920	88.4	3,959	2,984	75.4	79.1	67.6
2020년	304,948	274,269	89.9	3,952	3,075	77.8	81.5	69.6
2021년	317,680	288,562	90.8	4,229	3,364	79.5	82.7	72.7
2022년	372,939	342,128	91.7	4,806	3,935	81.9	84.5	76.3
2023년	352,720	326,183	92.5	4,679	3,914	83.7	-	-

자료) 한국장례문화진흥원('23.12월말 발표)

주) 위 인원은 제주에 등록된 주민등록 인구 기준으로 이후 장사시설 수급 검토를 위한 화장자 수 등의 수치와는 차이가 있음

- 공표된 자료 중 가장 최근인 '22~'23의 전국 화장현황을 지역별로 비교해보면
2023년에는 화장률이 소폭 상승하여 92.5%를 보이고 있음
- '23년에 화장률에서 울산(96.4%), 부산(96.3%), 인천(96.0%)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제주(83.7%)는 가장 낮고, 다음으로 충남(84.8%), 경북(88.1%) 순으로 나타남

〈표 2-44〉 전국 화장률 현황

(단위: 명, %, %p)

구분	사망자수(명)		화장자수(명)		화장률(%)		전년대비 증감(%p)
	2022년	2023년	2022년	2023년	2022년	2023년	
계	372,939	352,720	342,128	326,183	91.7	92.5	0.8
서울특별시	55,296	51,506	51,622	48,068	93.4	93.3	-0.1
부산광역시	27,713	26,313	26,564	25,342	95.9	96.3	0.4
대구광역시	17,592	16,569	16,121	15,241	91.6	92.0	0.4
인천광역시	18,957	18,256	18,184	17,529	95.9	96.0	0.1
광주광역시	9,350	8,858	8,825	8,403	94.4	94.9	0.5
대전광역시	9,302	8,691	8,582	8,125	92.3	93.5	1.2
울산광역시	6,369	6,075	6,092	5,857	95.7	96.4	0.7
세종특별자치시	1,678	1,599	1,501	1,464	89.5	91.6	2.1
경기도	79,010	74,982	74,239	70,900	94.0	94.6	0.6
강원특별자치도	15,086	14,227	13,245	12,554	87.8	88.2	0.4
충청북도	14,108	13,477	12,274	11,906	87.0	88.3	1.3
충청남도	19,719	18,787	16,418	15,928	83.3	84.8	1.5
전북특별자치도	17,852	17,211	16,060	15,825	90.0	91.9	1.9
전라남도	20,876	19,796	18,495	17,542	88.6	88.6	0
경상북도	27,840	25,297	23,922	22,296	85.9	88.1	2.2
경상남도	27,385	26,400	25,999	25,271	94.9	95.7	0.8
제주특별자치도	4,806	4,679	3,935	3,914	81.9	83.7	1.8
지역미상			8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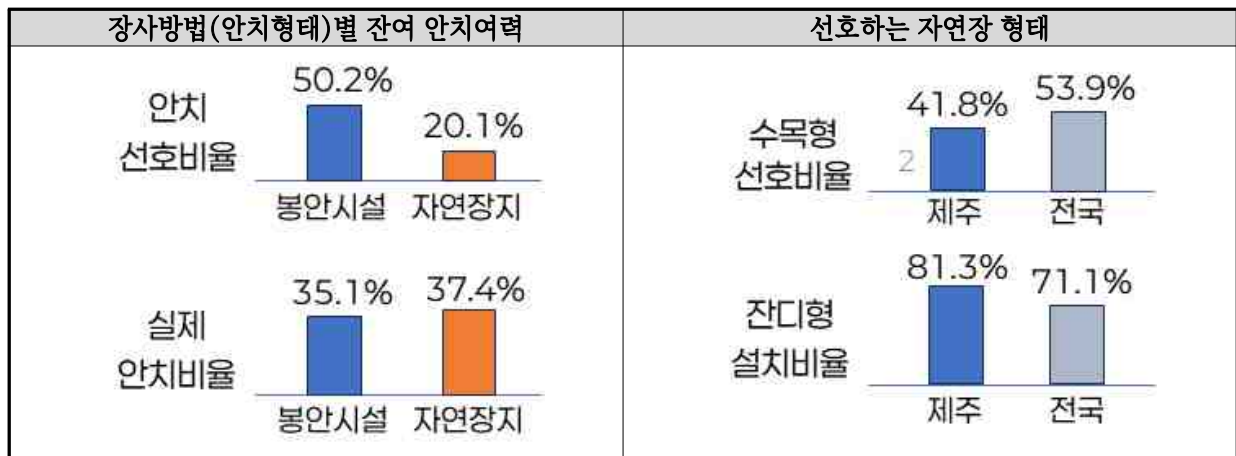
자료) 한국장례문화진흥원('23.12월말 발표)

(3) 국민 수요에 맞는 장사시설 설치·관리 필요

■ 제주 장사시설의 전체적인 공급은 여력이 있으며, 시설 종류별, 지역별 또는 운영주체(공설·사설)에 따른 수급 조정 필요

- 전국적으로 볼 때는 한국장례문화진흥원, 장례문화 대국민 인식 조사('22. 10.) 결과 자연장에 대한 선호(41.6%)는 봉안(35.3%)보다 높으나, 실제 '20년 기준 자연장지 이용률(24.5%)은 봉안(67.2%)보다 낮게 나타남
 - 화장 후 희망하는 안치방법: 자연장(41.6%), 봉안(35.3%)
 - 화장 후 유골 안치방법(화장시설 이용 만족도 조사('20. 12.)): 봉안(67.2%), 자연장(24.5%)
- 이와 달리 제주에서는 이번 계획 수립시 시행된 주민의견 조사에서 봉안당을 선호한다는 의견이 자연장을 선호한다는 의견보다 더 많았으나 실제로는 2022년을 기점으로 자연장지 안치율이 봉안당 안치율보다 높게 나타남³⁾
- 또한, 국민들이 선호하는 수목형과 수목장립의 자연장지 형태는 부족한 상황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장사 방식을 구현하는 것이 필요함
 - 한국장례문화진흥원, 장례문화 대국민 인식 조사('22. 10.)에서 선호하는 자연장 형태(%)는 수목형 53.9 > 수목장립 26.3 > 잔디형 10.3 > 화초형 9.4 순으로 나타남
 - 실제 '21년 기준 공설 자연장지 대부분은 잔디형 형태(71.1%)로 구성되어 있고, 화초형은 0.1% 미만에 불과하여 국민선호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자연장지 조성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임
 - 전국 공설 자연장지: 잔디형(454천 구) > 수목장립형(75천 구) > 혼합형(73천 구) > 수목형(35천 구) > 화초형(1천 구)
- 제주 주민들 역시 일반적인 잔디형 자연장지보다는 수목형과 수목장립 형태의 자연장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된 것과 달리 공설자연장지는 80% 이상 잔디형으로 구성되어 있음
 - 제주 역시 선호하는 자연장지 개발형태는 수목장(41.8%) > 산분장(19.3%) > 잔디장(14.9%) 등
 - 제주 공설 자연장지: 잔디형(49,874구) > 수목형(5,435구) > 정원형(3,524구) > 화초형(2,548구)

3) 다만 이 값에는 개장유골의 안치수량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망자 비중이 높은 전국과 단순 비교하기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주민의견 조사 결과

2) 문화·인식적 관점

(1) 전통적 가족 개념 해체로 장례복지 서비스 필요

■ 1인 가구는 '20년 전체 가구 중 31.2%(648만 가구)로 주된 가구 유형이며, '50년 39.6%(905만 가구)로 8.4%(258만 가구)가 증가할 전망

○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3 통계로 보는 1인가구' 자료에 따르면 제주지역 전체가구 27만6000가구 중 1인가구는 9만2000가구로 33.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고령인구 및 고령자 1인가구의 지속적 증가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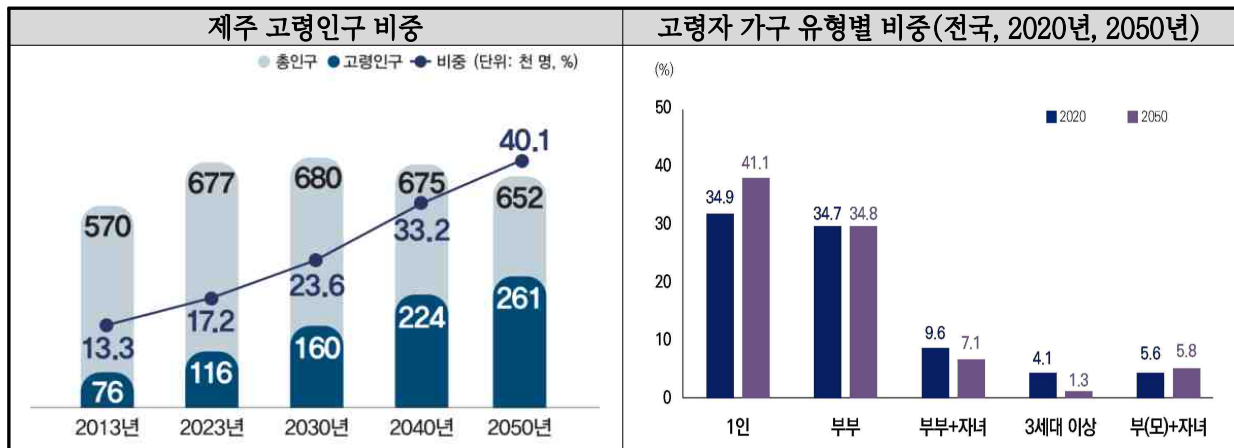
○ 고령자 가구는 계속 증가하여 '50년에는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약 절반(49.8%)이 고령자 가구가 될 것으로 전망

○ 고령자 1인 가구는 '50년 467만 1천 가구(41.1%)로 '20년에 비해 2.9배로 증가할 전망

○ 제주 1인가구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9세 이하 13.9%, 30~39세 15.1%, 40~49세 16.7%, 50~59세 20.5%, 60~69세 17.4%, 70세 이상 16.4% 등으로 점차 고령자 1인가구가 증가하고 있음

○ 현재 제주의 고령자 비중은 17.2%정도로 다른지역에 비해 많이 높은 편은 아니고 2013년 대비 고령인구 증가율도 낮은 편(3.9%P)이지만 통계청의 장래 인구추계 결과에 따르면 2050년에는 40.1%로 지금보다 두배 이상 많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⁴⁾

- 2030년 23.6%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2035년 28.4%, 2040년 33.2%로 30% 이상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자료) 통계청, 「장래가구추계」

■ 1인 가구 증가, 경제적 어려움·사회적 관계 단절로 인한 고독사, 가족 단위 고립사 등 무연고 사망자 증가로 장례 사각지대 발생

- 무연고 사망자 수 1,280명('13년) → 2,008명('17년)→ 3,603명('21년)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망자에 대해 최소한의 존엄을 지켜주기 위하여 장례를 치러 줄 사람이 없는 사람 등을 지원하는 장례복지 도입 필요
 - 국민 누구나 '좋은 죽음'을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부여
 - 수원 다세대주택 세 모녀 사망의 경우,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및 시민조문 실시

(2) 웰빙에서 웰다잉으로 - 장례 문화 변화

■ '19년 기준 우리나라 은퇴연령(66세 이상)의 상대적 빈곤율은 경제협력 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가장 높은 수준

- 고령자의 건강관리, 고용, 사회참여 등을 위한 웰빙(Well-Being)에서 생애 말기 돌봄, 자기결정권 강화(사전연명의료결정제도), 존엄한 죽음을 위한 웰다잉(좋은 죽음)으로 사회 인식, 정책범위 확대되는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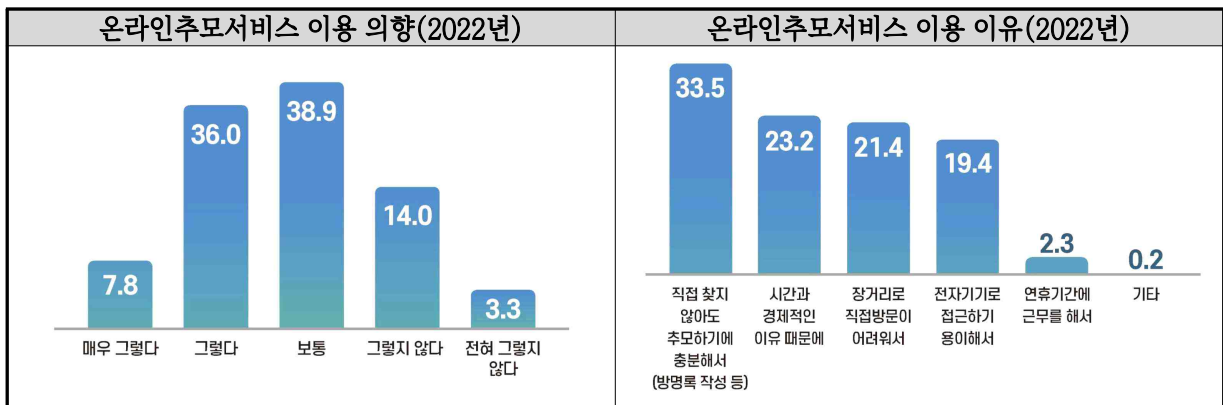
4) 미디어제주(<http://www.mediajeju.com>) 「2050년 제주 고령인구 비중 40.1% ... 지금보다 갑절 이상 증가」

- 사전연명의료결정제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하여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연명의료 반대율 85.6%, '20년)
- 웰다잉: (英) '08년 '생애말기돌봄전략' 수립: 좋은 죽음은 ①익숙한 환경에서 ②존엄과 존경을 유지한 채 ③가족·친구와 함께 ④고통 없이 지내다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의미
- 죽음을 '자연과 하나 되는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성찰하고 준비하게 하여 생의 만족감 증대, 공동체 의식 회복 등 웰빙과 웰다잉 간 선순환 기여
- 나눔과 봉사, 장기기증, 간소한 장례, 유연장 작성, 온라인 추모와 애도 등 추진
- 자신이 원하는 방식의 준비된 죽음을 위한 사전 장례결정제도 도입, 유족과 고인이 희망하는 존엄한 장례를 위한 국민 공감대 확산 필요
- 생애 말기 자기결정권 강화를 위해 스스로 장사(매장, 화장) 방식, 빈소 유무, 부고 범위, 장례 규모, 장례 장소 및 안치방식 등을 결정
- (참고) 1인당 평균장례비용: 1,380만 원(한국소비자원, 장묘서비스 소비자문제 및 개선방안. 2016년)

■ 변화된 장사수요 대응 및 국민 선호도 반영 부족

- 후손의 묘지 및 봉안시설 관리 부담, 지속 가능한 장례방식에 관심, 친환경적 장법 선호 증대 등 국민의 장례문화 패러다임 전환
- 한국장례문화진흥원, 장례문화 대국민 인식 조사('22. 10.)에 따르면 국민의 산분 수요는 23% 정도로 높으나, 동 기관에서 조사했던 화장시설 이용 만족도 조사('20. 12.)에서는 실제 산분을 실시한 비율은 8.2%에 불과하여 산분장(산분 수목장, 해양장 등) 확산 필요성 대두
- [화장 후 희망 안치방법] 자연장(41.6%), 봉안(35.3%), 산, 바다에 산분(17.7%), 장사시설 내 산분시설(5.3%)
- [화장 후 유골 안치방법] 봉안(67.2%), 자연장(24.5%), 산, 강, 바다 등에 산분(4.9%), 장사시설 내 산분시설(3.3%)
- 유족이며 향후 장례 당사자가 될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 출생 세대)는 이전 세대보다 높은 교육 수준, 적극적·독립적 특성이 있는 한편, 노부모 및 자녀 부양도 짊어진 세대로 본인 노후준비 미흡

- 향후 온라인 추모서비스를 ‘이용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총 43.8%(그렇다, 매우 그렇다 포함)
- 이용 사유로는 ‘간편성’(33.5%)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시간과 경제적인 이유’(23.2%), ‘해외, 도서지역 등 장거리로 직접 방문이 어려워서’(21.4%), ‘PC 및 스마트폰 등으로 접근하기 용이해서’(19.4%), ‘명절 등 연휴 기간에 근무를 해서’(2.3%) 등의 순



자료) 한국장례문화진흥원, 2022년 장례문화 대국민 인식 조사

- 진흥원은 ‘e하늘 온라인 추모·성묘 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서비스 제공 장사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음
 - '20. 9. 기준 343개소 → '22. 12. 기준 623개소(봉안시설 295개소, 자연장지 90개소, 묘지 238개소)
- 그럼에도 IT기술(메타버스, AI기술 활용, VR서비스 제공) 접목 요구에 발맞추어 고도화 및 서비스 개선 필요



주) 추모관 꾸미기, 추모글·음성·영상 남기기 VR기술을 통해 3년 전 세상을 떠난 딸을 재회하는 모습

3. (상위계획) 2023-2027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

1) 수립 근거와 추진 방향

(1) 수립 근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에 근거한 정부 법정계획(제5조 제1항)
 - 종합계획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장사시설의 수요·공급 전망, 확충계획 및 재정투자계획, 장사문화의 개선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계획 등
- 1차 종합계획('13~'17) 및 2차 종합계획('18~'22)의 주요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5년간 비전과 과제를 도출하고 장사시설 수급 관리 강화 필요
- 종합계획에 따라 시·도지사 및 시장 등은 지역수급계획 수립(제5조 제2항)

(2) 추진 방향

‘요람에서 무덤까지’ 복지 정책을 ‘무덤 이후’로 확대

- (정책 비전) 장사정책 공적책임 강화, 친자연·지속가능한 장사시설 확산
- (중점 추진 과제) 향후 5년간 중점·신속 추진할 신규 과제 및 핵심 과제
 - 자연적·사회적 재해, 특히 감염병 등 ①국가재난대비 장례대응체계 강화, 무연고자 등 ②취약계층 공영장례 지원 확대
 - 공간 점유가 없는 지속가능한 장사방식인 ③산분장⁵⁾* 제도화 및 이용 활성화, IT기술(메타버스, AI기술, VR서비스) 활용 ④온라인 추모·성묘 문화 확산
- (지속 추진 과제) 제1차·제2차 종합계획부터 지속 추진 중인 과제
 - 지역별 균형있는 장사시설(화장시설, 봉안·자연장지) 확충·관리, 친자연적 장사시설(자연장지) 이용 유도, 장례문화 국민인식개선 및 홍보

5) 화장한 유골을 산·바다 또는 특정 장소 등에 뿌리는 장사방식

- 우선순위 : 화장시설(개보수 포함) → 자연장지 → 봉안시설
- 수도권 등 대도시 화장시설 부족 문제 심화로 불편 가중(3일장→4~7일장)
- 필요성은 높으나 인력·예산 부족 등으로 해결하지 못한 과제
- 집단묘지 재개발, 장사시설 평가제도 도입으로 장사서비스 질 제고

2) 비전과 목표

(1) 비전

- 장사정책 공적 책임 강화, 친자연·지속 가능한 장사시설 확산

(2) 목표

- 지역별 균형있는 장사시설 공급 및 관리
- 재난 대응 등 “국가 책임 강화”

(3) 세부목표

- 부족 화장로 확충: (‘27년) 52로 추가
- 지속 가능한 장사방식인 산분장 이용률 제고: (‘27년) 30%
-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 (‘27년) 70%

(4) 주요 과제

- 지속 가능한 장사시설
- 장사서비스 질 제고
- 국가 책임 강화
- 새로운 장사문화 선도

비전	장사정책 공적 책임 강화, 친자연·지속 가능한 장사시설 확산
목표	• 지역별 균형 있는 장사시설 공급 및 관리 • 재난 대응 등 “국가 책임 강화” · 부족 화장로 확충 : ('27년) 52로 추가 · 지속 가능한 장사방식인 산분장 이용률 제고 : ('27년) 30% ·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 ('27년) 70%

주요 과제	지속 가능한 장사시설	① 화장수용능력 단계적 확대 ② 친자연적·수요자 중심 장사시설 조성·관리 ③ 집단묘지 재개발 및 지역 내 분묘관리 강화 ④ 장사시설관리 내실화
	장사서비스 질 제고	① 장사정책 협력 네트워크 강화 ② 장사 제도 개선 지속 추진 ③ 장례지도사 등 자격관리 및 위상강화 ④ 장사시설 영업자·종사자 등 교육 개선
	국가책임 강화	① 국가재난 대응체계 강화 ② 장례 전반 보건위생 및 감염관리 강화 ③ 사회적 취약계층 장례복지 확대 ④ 장사지원센터 역할 및 기능 강화
	새로운 장사문화 선도	① 환경 변화에 발맞춘 장사정보시스템 고도화 ② 대국민 장사서비스 신뢰 확보 ③ '미리 준비하는 장례' 확산 기반 마련 ④ 장례문화 인식개선 및 홍보

〈그림 2-2〉 2023-2027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

3) 중점추진사업 추진 계획

<표 2-45> 2023-2027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 중점추진사업 추진 계획

중점추진과제	추진일정				
	‘23	‘24	‘25	‘26	‘27
장사시설별 평가를 통해 우수 장사시설 인센티브 제공 및 질 관리	선행연구 및 기존평가 분석/평가개선안 마련	평가실행방안 연구/평가 시기·대상·방법 등 법제화	장사시설 평가개시/우수 기관 인증제 도입 *화장시설	장사시설 평가 실시/우수 기관 인증 *자연장지	장사시설 평가 실시/우수 기관 인증 *봉안시설
지속 가능한 장사방식인 산분장 제도화	산분방식 구체화/선도사업 실시	법 개정/공설장사시설 부터 단계적 도입	민간장사시설 도입	장사시설 외 도입 확산	
장례지도사 등 자격관리 및 위상 강화	장례·상조업계 의견수렴	자격시험방안 및 교안 개발 등 연구	법 개정/자격시험제 도입	법 개정/자격기준세분화 방안 마련	보수교육체계 도입
장사시설 영업자·종사자 등 교육 개선	장례지도사 및 장례·상조업계 의견수렴	교육기관 전문성 확보, 대상확대 방안 연구	법 개정/교육기관 평가 도입		
국가재난 대비 장사시설 비상운영 체계 마련	장사시설 비상대응지표 등 연구	국가재난대비 지정장례식장 운영매뉴얼 개정	국가재난대비 장사시설 비상운영매뉴얼 마련		
무연고 사망자 등 취약계층 장례 서비스 지원	공영장례표준 모델 정립	법 개정/지원대상 확대	공영장례 민간참여 확대방안 마련		
장사지원센터 역할 및 기능 강화	법 개정/한국장례문화 진흥원 설립근거 마련	한국장례문화 진흥원 기능강화	한국장례문화 진흥원 공공기관 지정		
차세대 장사정보시스템 구축		ISP 기본계획 수립	ISP 실시계획 수립	인프라 구축	화장 통합시스템 개발
장사시설 정보 관리 강화	장사시설정보 현황 분석	장례용품 등 정보제공 표준기준 마련	주기적 정보 현행화 실시/장사시설 평가항목 도입		
사전장례의향서 작성 제도 도입	제도화 방안 마련	법 개정/제도도입 및 수행기관 선정	사전장례의향서 작성 사업 추진	기관연계방안 강화	

4. 시사점

■ 법·제도적 현황

○ 장사시설 수급계획의 법적 근거:

- 법정 계획: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립한 종합계획에 따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수급계획을 수립해야 함
- 기간 및 지침: 2023-2027년 5개년 계획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의 종합계획과 지역수급계획 수립 지침 등을 반영해야 함

○ 장사시설 수급계획 주요 내용

- 기본방향: 지역별 출생자 수와 사망자 수, 매장자 수, 화장자 수 등의 연도별 변동 추세를 반영하여 장사시설 설치·조성 및 관리 계획을 수립함
- 재정 및 정비 계획: 노후화된 장사시설 정비, 오염 방지시설 설치, 한시적 매장제도 추진 방안을 포함함
- 무연분묘 처리: 무연분묘에 대한 일제 조사와 처리 계획을 수립함
- 친자연적 장사방식: 화장시설 인식 개선, 온라인 추모·성묘 확대, 산분장 활성화 등 친자연적이고 지속 가능한 장례문화를 홍보

■ 정책 여건

- 사망자 수 증가: 고령화로 인해 사망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장사시설의 수요 증가로 이어져 화장로 확충과 같은 인프라 확대가 필요함
- 화장률 저조: 제주는 전국적으로 화장률이 낮은 편임
- 친환경 장사시설 수요 증가: 자연장, 산분장 등의 친환경 장사방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반영하여 자연장지와 산분장지의 조성이 필요함
- 장례복지 서비스 필요성: 1인 가구와 고령자 가구의 증가로 인해 장례복지 서비스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에 따라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이 강화되어야 함

- 장례문화 변화: 웰다잉 문화와 사전 장례결정제도 등의 도입으로 장례문화가 변화하고 있으며 이는 장례방식의 다양화와 국민의 인식 개선을 요구함

■ 상위계획 검토

- 장사시설 공급의 적절한 관리를 통해 친자연적이고 수요자 중심적인 장사시설의 공급 및 관리가 필요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장사서비스의 질적 제고 필요
- 코로나19 등과 같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하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고령인구, 1인가구 등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지원과 같은 국가적 책임을 다하는 서비스 계획 필요
- 장례문화는 최근 높아진 화장률과 함께 장법 역시도 매장 문화에서 봉안당, 자연장 등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의식도 함께 개선되고 있기에 이를 수용하고 서비스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장사문화 개선을 위한 계획이 필요함

■ 시사점

- 화장시설 확충: 제주의 화장률이 전국적으로 낮은 상황에서 화장시설을 확충하여 지역 주민의 장례 수요를 충족시켜야 함
- 친환경 장사시설 조성: 자연장지와 산분장지의 확대를 통해 친자연적이고 지속 가능한 장례문화를 정착시킴으로써 환경 보전과 국민 인식 개선에 기여할 것임
- 공영장례 지원 확대: 무연고 사망자와 취약계층을 위한 공영장례 지원을 강화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함. 이는 지역사회에서의 공감을 얻고 복지 차원의 장사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것임
- 장례문화 교육 및 홍보: 장례문화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다양한 장사방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의 선택 폭을 넓혀야 한다.
- 지역사회와의 협력 강화: 장사시설 설치 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해야 함. 이는 장사시설에 대한 주민 수용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

제3절 제2차 수급계획 평가

1. 제2차 수급계획 및 주요 성과

- (성과) 현재 사망 추이에 대응할 수 있는 화장로 운영 및 지속적인 시설 개선 이행, 매장에서 화장으로의 장사방법 전환, 공영장례 지원 서비스 활성화, 공설묘지의 자연장지 재개발, 높은 개장 비율
- (한계) 무연고 분묘에 대한 대응 한계, 전국적으로 가장 낮은 화장률, 산분 등 변화된 장사 문화 수요 대응미흡, 종합장사시설 조성에 대한 진척도는 낮은 것으로 판단됨

<표 2-46> 제2차 수급계획 및 주요 성과

제2차(2019년~2024년) 계획		주요성과	
화장률 목표치	82.4%	화장률 목표달성	81.9%
1. 장사시설 인프라 확충			
- 자연장지 중심의 장사시설 공급 - 봉안시설 공급		- 화장문화 정착 - 자연장지로 용강별숲공원과 서귀포 성산읍 자연장지를 조성함 2차 계획기간동안 공설봉안시설이 공급되지는 않음 - 활발한 분묘개장: 화장 기준 일반시신의 2~3배 - 묘지 이용률의 감소로 재개발 필요성 도출 - 장기적으로 화장로 추가 필요	
2. 공영장례 지원 서비스			
(준비단계) 장례지원신청, 영정제작 등은 장례준비 및 고독사 예방 등 (장례단계) 장례식장 분향소 설치와 입관, 장례위원 용품제공, 조문객 음식제공, 발인과 종교행사, 화장과 안치 등의 장례절차 (사후관리 단계) 사망신고, 사후 유품 정리 등 (지원금액) 1인당 750,000원		2019년 「제주특별자치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정 - 매년 시행계획 수립을 통한 사업 구체화 2024년, 1인당 최대 160만원 수준으로 현실화 반영	
3. 장사시설 효율적 운영 관리 방안			
- 양지공원 종합장사시설로 확장 - 전문성 강화 및 서비스 개선 - 홍보 및 첨단IT 기술 접목 - 공설묘지 재개발		- 양지공원 시설 개선(화장로 추가, 정비) - 동부공설묘지 재개발 - 용강별숲공원 자연장지 전환	

2. 제2차 계획의 제주도 장사시설 수급 추계 평가

1) 장사시설 수요 추계

- 장사시설 수요 추계는 시설 유형별로 수요와 공급을 비교하여 향후 과부족 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수급은 현재 시설이 설치되어 향후 공급이 확정적이거나, 시설 공사 중 또는 설치 계획이 확정되어 향후 공급이 가능한 모든 공급에서 미래 수요를 감하여 산출함
- 제2차 계획 수립 당시 제주도 관내에는 공설묘지 34,082기, 법인묘지 1,203기, 기타 사설묘지 103,086기, 봉안시설 66,665위, 화장시설 1개소, 화장로 7기, 장례식장 47개소, 빈소 99개소가 잔여 공급량만이 남아 있었음

〈표 2-47〉 제주특별자치도 장사시설 공급 현황(제2차 계획 당시)

(단위: 기, 위, 개소)

구분	공설묘지	법인묘지	기타 사설묘지	공·사설 봉안시설	자연장	화장시설 (화장로)	장례식장 (빈소)
공급량	34,082	1,203	103,086	66,665	13,962	1(7)	47(99)

2) 장사시설 중장기 수급 종합계획(총괄)

(1) 양지공원 종합장사시설 확장

- 2차 계획에서는 다른 사례에서 서로 상호보완적인 기능을 하는 장사시설을 한 곳에 종합적으로 설치하는 추세임을 검토하여 양지공원에 장례식장, 자연장(산골시설), 공설묘지 등을 추가 조성하여 종합장사시설로 확장하는 것을 중장기 과제로 제시하였음
- 계획 기간 안에 이 내용이 추진되지는 못한 것으로 파악되나 화장로 증설과 함께 해당 내용이 이번 계획 수립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논의되었음

(2) 공설묘지

- 계획 당시에도 공급이 초과하나 공원화·현대화되지 않아 이용률이 적으므로 단기적으로 공설(동)묘지 재정비를 통한 묘지 공급을 추진할 것으로 계획함
- 화장률이 계속해서 높아지면서 실질적으로 공설묘지 사용률이 매우 낮아져 추가적인 공설묘지의 설치의 필요치 않은 상황이었으며 실제로 최근 5년간 추가 설치된 공설묘지는 없음
- 2019년부터 2023년까지 21,822명의 사망자 중 5,133구의 시신을 매장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실제로 매장률도 감소하고 있음

(3) 봉안시설

- 제2차 계획에서는 2035년까지는 충분히 봉안시설의 수요를 충족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사설 봉안시설 수요를 공설로 유인하기 위해 2030년 이후는 추가 설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제시하였음
- 봉안시설은 봉안당 17개소, 봉안묘 346개소, 봉안탑 5개소 등 368개소가 있으며 2023년 기준으로 봉안공간 130,589위 중 65,964위가 안치되어 64,625위의 공간이 남아있음
- 이중 공설봉안당은 27,296위, 공설 봉안묘는 433기의 공간이 남아있음

(4) 화장시설

- 단기적으로는 화장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고 장기적으로 추가 화장시설 건립 검토가 필요함을 언급함
- 제주도 특성상 최근 2년간 일반시신은 약 7,762구의 화장이 이루어졌으나 개장유골의 경우 그보다 2.4배 가량 많은 18,463구의 화장이 이루어짐

(5) 장례식장

- 단기적으로는 관내 병원/전문 장례식장 이용으로 수요를 충족할 것으로 예상함
- 장기적으로 화장시설 건립 시에 종합장사시설 건립 차원에서 공영장례식장을 함께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고자 하였으나 현재 공영장례식장이 별도로 조성되지는 않았음
- 제주도에는 종교시설과 마을 장례식장이 다수 발달되어 있어 장례 수요에 대응하고는 있으나 전문장례식장이, 특히 서귀포지역에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므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6) 자연장

- 단기적으로 동부공설묘지 재정비를 통하여 용강별숲공원이라는 자연장지를 조성함
 - 용강별숲공원: 잔디형 24,060기, 수목형 3,400기, 정원형 2,540기
- 어승생한울누리공원은 만장되었고 서귀포추모공원은 안장능력의 약 20%인 824기를 추가 안장 가능하며 서귀포성산읍자연장지는 안장능력의 약 90%에 해당하는 6,401기의 추가 안장 공간이 있음

3) 취약계층 장례복지 지원

- (장례지원 편차) 장사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시장등은 무연고 사망자 시신 처리 의무가 있으나 ‘장례지원 없이 시신만 처리’만 하는 등 장례지원에 있어 지역별로 편차가 있음
- (공영장례 확대) 장사법 개정(’21. 12. 개정 및 ’22. 6. 시행)으로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무연고 사망자 장례의식 등 최소한의 존엄이 보장되도록 장례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장례 취약계층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및 사업 상담, 표준모델 제시 등을 통해 지역별 차이를 좁혀갈 필요가 있다고 분석됨
- 그러나 제주에서는 공영장례 지원 정책을 실시하여 무연고 사망자, 장례를 치르기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사망 시 장례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 중으로 타지역에 비하여 취약계층의 장례복지 지원에 앞서 나가고 있다고 볼 수 있음

4) 묘지 정책을 위한 워킹그룹 운영

(1) 운영목적

- 장사문화의 변화에 따라 제주도의 실정에 맞는 장사정책을 구상하고 이용률이 저조한 공설묘지 등을 정리하여 토지이용률을 향상 시키는데 있음
- 무연고묘역 등을 정비하여 혐오스러움을 탈피하고 장례문화의식에도 변화를 추구하는데 있음

(2) 운영방향

- 화장율 증가 및 매장 감소에 따른 공설묘지 활용방안 연구
- 봉안당 및 자연장지 이용 선호도 증가에 따른 장사시설 수급계획 방향제시
- 무연고묘역 등을 정비하여 실정에 맞는 자연장지 또는 공원화 하는 방안 제시
- 개장 등으로 인하여 파헤쳐진 묘지관리에 따른 방안마련
- 타시도와 다른 장례문화의식에도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 강구 등
- 인적 및 예산 등을 감안하여 일정구역을 시범구역으로 지정하여 개선하여 나가고 수정·보완해 나가면서 점차 확대



〈그림 2-3〉 묘지관리 정책 개선을 위한 워킹그룹

3. 시사점

■ 장사시설 수요와 공급 현황

- 화장률 증가: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적으로 화장률이 높아지며 매장 수요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이에 따라 공설묘지 추가 설치의 필요성이 줄어들음.
- 봉안시설의 수요 관리: 현재 봉안시설의 남은 공간이 충분한 상태지만, 2030년 이후 수요 증가 가능성에 대비한 공설 봉안시설 추가 설치 검토가 필요함.

■ 화장시설 확충 필요성

- 단기적으로는 공급이 충분하나 장기적으로는 화장로 증설 논의가 있었으며 이같은 상황은 현재도 비슷하여 단순히 수급의 문제보다는 지역적 공급, 재난에 대한 대처, 시설 노후화에 따른 대처 측면에서 화장로 증설 또는 확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종합장사시설 구축의 관점에서 화장시설 확충을 고려할 수 있음

■ 공설묘지 재정비 및 활용

- 공설묘지의 활용률 저조: 매장률 감소로 공설묘지의 이용이 줄고 있어 2차계획 당시 묘지 공급에 대한 계획은 불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현재 공설묘지를 재정비하는 방안에 대한 계획이 필요함
- 토지 활용 극대화: 공설묘지 등 활용률이 저조한 지역을 자연장지 또는 공원화하여 지역 발전과 환경 개선에 기여해야 함

■ 취약계층 장례복지 지원 강화

- 공영장례 활성화 필요: 장례법 개정으로 취약계층 및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 제주도는 이미 적극적인 공영장례 지원을 시행 중이며,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개선해 가야 함

■ 자연장지 선호 증가

- 자연장지 조성 확대: 동부공설묘지를 자연장지(용강별숲공원)로 조성한 사례와 같이 자연장지에 대한 선호가 증가하고 있어, 향후 자연장지 공급을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음
- 기존 시설 활용 극대화: 이미 운영 중인 자연장지의 안장률을 높이고, 필요한 경우 추가 조성을 검토해야 함

■ 장사문화 변화와 정책 개선

- 장례문화 변화에 따른 정책 조율: 매장에서 화장 및 봉안, 자연장으로 전환하는 추세에 맞춰 제주도에 특화된 장사 정책 수립이 필요함
- 무연고 묘역 정비: 혐오감 해소와 토지 활용 효율화를 위해 무연고 묘지를 정비하고, 이를 자연장지나 공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함

■ 전문 장례식장 확충 필요

- 제주 전반에 걸쳐 전문장례식장 부족한 상황이며, 특히 서귀포 시내권과 동부지역에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므로 사설 장례식장의 유치, 공설장례식장의 설치와 같이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제4절 사례조사

1. 국내 사례

1) 서울 ‘추모공원’

(1) 시설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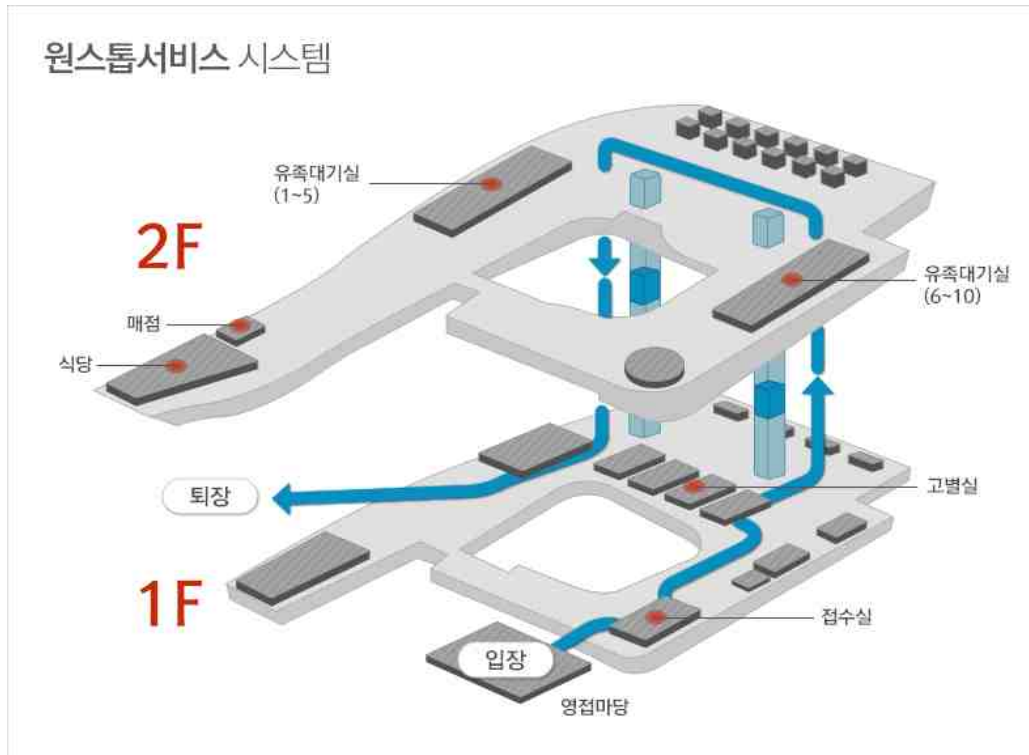
- 위치 :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대로 12길 74
- 건립예산 : 약 2,436억원
- 개원 : 2011년 12월
- 대지면적 : 약 36,453㎡(11,027py)
- 화장로 : 11기(1기당 1일 4~5회 화장 가능(회당 평균 80분 소요))
- 주요시설: 화장로 11기, 영접마당, 중정, 봉송로, 고별실(5실), 수골홀, 유족대기실(10실), 카페테리아, 식당/매점, 갤러리, 유택동산, 주차장(소형 97대, 대형 26대)

(2) 시설특성

- 도심형 화장전용시설, 쾌적성을 강조한 공원형 장사시설임
 - 서울시에서는 상당 수 서울시민이 화장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장례기간을 연장하거나 성남, 인천 등 경기지역 화장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불편을 겪는 것에 대응하고자 1998년 이후 후보지 실사를 시작으로 화장시설 건립을 추진하였으나, 장사시설 설치에 대한 반대로 화장시설 완공까지 총 14년이 소요됨
 - 도심형 시설에 걸맞게 무연무취의 최첨단 화장로를 갖추고 있으며, 유족 및 방문자가 원스톱으로 전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배치한 것은 물론, 화장문화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의 특성이 있음
- 유족 및 방문자를 위한 ‘원스톱 시스템’의 시설배치가 되어 있음
 - 시설은 크게 화장시설, 특화시설, 휴게시설, 식음시설, 공원, 주차장으로 구분되며,

무연무취의 최첨단 화장로를 갖춘 화장시설과 영접마당, 중정, 봉송로, 고별실, 화장홀, 수골홀로 마련된 휴게시설로 전문화된 화장서비스를 가능케 함

- 유족동선에 따른 시설 배치로 이용객 편리성을 제고하는 한편, 서비스 제공과 기술에 투입되는 인력 배치도 원스톱 서비스에 맞춰 이루어짐



○ 화장문화 활성화를 위한 ‘아름다운 여행’ 프로그램 운영함

- 화장문화와 장사시설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제고를 위해 초·중·고생 체험학습과 노인 평생학습 프로그램으로 대상별로 전문화하여 운영하고 있음

<그림 2-4> 서울 추모공원 사례사진



자료) 서울시설공단 홈페이지

- 또한, 무연 무취의 최첨단 화장로를 갖추고 있으며, 화장문화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의 특성이 있음
- 서울추모공원의 경우 서울, 고양, 파주시민에 한해 아래와 같은 이용료를 부담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상당히 저렴한 수준으로 이용이 가능한 상황임

〈표 2-48〉 서울추모공원 시설 이용료

(단위: 원)

구분		이용료		비고
		서울·고양·파주시민	기타시민	
화장시설	대인	120,000	1,000,000	-
	소인	100,000	400,000	-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희생. 공헌자	무료	무료	-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희생. 공헌자의 배우자	50,000	50,000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무료	무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무료	무료	-
	자녀가 관내 시민인 타 지역 거주 사망자 (관내 지역 병원에서 사망 또는 관내 지역 장례식장을 이용한 경우)	-	400,000	-
	군 복무 중 사망한 현역 군인	120,000	500,000	-
	죽은 태아(산모 주민등록주소지 기준)	50,000	200,000	-
	개장 유골	60,000	400,000	-
봉안시설 (재사용)	일반 시민	100,000	300,000	매5년마다
	관리비	100,000	180,000	매5년마다
자연장	일반 시민	500,000	이용불가	40년(연장안됨)
	산골시설	일반인	무료	무료
산골시설	일반인	무료	무료	-

자료) 서울시립승화원

〈그림 2-5〉 추모공원 주요시설 전경



자료) 서울시설공단 홈페이지

2) 화성 함백산 추모공원

(1) 시설 개요

- 위치: 경기도 화성시 매송면 서해로 2448-32
- 면적: 136,019㎡(연면적 16,959㎡)
- 준공연도 : 2021년
- 사업비 : 1,714억원(주민지원사업비 395억원)
- 규모 : 대지면적 133,778㎡, 연면적 16,942㎡(지하 1층, 지상2층)
- 주요시설 : 화장시설(화장로 13기), 장례식장(8실), 봉안시설(25,083기), 자연장지(25,934기)
- 운영주체 : 화성도시공사(식당과 매점, 장례식장은 인근 마을 주민협의체)

(2) 주요시설 및 특성

- 화성시, 부천시, 안산시, 안양시, 시흥시, 광명시 등 6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건립한 광역형 종합장사시설은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장사시설 수급 관리를 위해 2021년 7월부터 운영을 시작함
 - 군포시는 공동운영에 추가 참여 의사를 밝혔으며, 2023년 4월 군포시의회에서 공동운영 참여 동의안이 가결되었고, 기존 6개 시의회의 동의 절차가 남아 있는 상황임
- 경기도 서부권의 6개 지자체가 함께 투자해 건립한 이 시설은 개원 한 달 만에 가동률 95%를 기록함. 공모방식으로 입지가 선정되어 인근 주민들에게 식당과 매점 운영권을 제공했으며, 참여한 6개 시 주민들에게는 이용 요금 할인이 적용되어 지역민이 주도적으로 유치한 상생 협력 사례임
- 화장시설(해가빛썩터): 화장로 13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일일 10회차까지 최대 55구 화장 가능
- 봉안당(별빛썩터): 23,697기 안치 가능하며, 최초 15년을 기준으로 1회 연장 가능
- 장례식장(달빛썩터): 빈소 8개소, 영결식장, 안치실, 염습실 등 보유
- 유택동산: 이용자가 직접 산분하며, 산분된 유골은 일정기간 후 임의 산분됨
- 자연장지(바람마루): 잔디·식재 밑에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묻어 안치
 - 잔디장(8,981㎡): 14,209기 안치 가능하며, 그린나래숲, 햇살언덕숲, 하늘숲, 안식의 숲, 문화예술인 특화묘역으로 구분됨
 - 수목장(6,516㎡): 7,488기 안치 가능하며, 구름향기숲, 하늘마루숲, 별빛추억숲으로 구분됨
 - 최초 30년만 이용 가능하며, 골분 반환이 불가능함

〈그림 2-6〉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3) 용인 평온의 숲

(1) 시설개요

- 시설명: 용인시 평온의 숲
- 위치: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평온의숲로 77
- 개장시기: 2012. 12
- 면적: 585,206.6㎡(건축연면적 28,127㎡)
- 주요시설: 나래원(화장로 11기), 평온마루(48,144기), 예정원(14,741기), 장례식장(12실)

(2) 주요시설 및 특성

- 용인 평온의숲은 나래원(화장시설), 평온마루(봉안시설), 예정원(자연장지), 장례식장, 유택동산 등이 설치되어 있음
 - 2013년 1월 주요시설(장례식장, 화장장, 봉안당)에 대한 운영이 시작되었으며, 2014년 4월 자연장지 시범구역 개장을 통해 자연장지 운영 시작
- 화장시설(나래원): 화장로 11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일일 8회차까지 최대 41구 화장 가능
- 봉안당(평온마루): 48,144기 안치 가능하며, 최초 15년을 기준으로 1회 연장 가능
- 장례식장: 빈소 12개소, 안치실, 연습실 등 보유
- 유택동산: 이용자가 직접 산분하며, 산분된 유골은 일정기간 후 유택동산 옆 잔디 공터에 안치됨
- 자연장지(예정원): 잔디·식재 밑에 골분을 담은 용기를 묻거나 골분과 흙을 섞어 안치
 - 잔디장(8,981㎡): 4,311기 안치 가능하며 개인형과 가족형 (4위, 6위)으로 구분
 - 수목장(6,516㎡): 652기 안치 가능하며 화단형(4위, 6위)과 가족·공동형(12위)으로 구분
 - 최초 30년 이용 가능하며 가족묘의 경우 60년, 80년까지 연장 가능

- 장례문화의 변화로 화장률이 증가하고 있으나 화장시설이 부족하여 타 지자체시설 이용으로 높은 비용을 들여야 했던 용인 시민들의 고충을 해소하고, 시민 체감 복지 증진에 기여함
- 용인 평온의숲은 장래·화장·봉안·자연장이 한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또한, ‘영옥 생성업체’를 유치하여 화장 유골분의 지속적인 관리가 어려운 현실에 대한 대안적인 장묘문화인 영옥 방식을 도입함
- 봉안시설(평온나래)은 국가유공자를 위한 공간을 마련한 사례 중 하나임

〈그림 2-7〉 용인 평온의 숲 전경



자료) 용인시 평온의 숲 홈페이지

〈그림 2-8〉 용인 평온의 숲 자연장지



〈표 2-49〉 용인시 평온의 숲 이용요금 안내

구분			기준	요금(원)	
				관내	관외
화장시설	대인		만 15세 이상	100,000	900,000
	소인		만 15세 미만	80,000	400,000
	죽은 태아		-	50,000	150,000
	개장유골		-	60,000	250,000
	국가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 장기기증자 등			무료	무료
	국가유공자 배우자, 용인시 병역명문가			50,000	해당없음
봉안시설	봉안료	사용료	개인1위(1구당)	800,000	1,300,000
			부부2위(1구당)	1,000,000	1,500,000
			가족4위(1구당)	900,000	1,400,000
		최초관리비(1구당)		600,000	900,000
자연장지	잔디장	사용료	개인1위(1구당)	500,000	750,000
		최초관리비(1구당)		600,000	900,000
	수목장	사용료	가족4위(1구당)	750,000	1,100,000
			가족6위(1구당)	700,000	1,000,000
			공동12위(1구당)	600,000	900,000
		최초관리비(1구당)		600,000	900,000
기간연장시(15년)				해당 사용료 및 관리비의 50%	

자료) 용인시 평온의 숲 홈페이지

4) 울산 하늘공원

(1) 시설개요

- 위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동면 보삼길 550
- 건립예산 : 약 552억원
- 개원 : 2013년 3월
- 대지면적 : 약 98,026㎡
- 화장로 : 10기
- 화장 가능횟수 : 1기당 1일 1.5~2회 (회당 평균 90분 소요)
- 주요시설 : 승화원(화장로 10기), 장례식장(빈소 5실), 추모의집(20,846구), 자연장지(60,500구), 유택동산

(2) 주요시설 및 특징

- 자연장지를 포함한 최첨단 종합장사시설, 노후된 화장시설을 대체하기 위한 종합장사시설로 장례식장, 승화원, 추모의집, 자연장지, 유택동산 등이 설치되어 있음
 - 울산광역시는 2011년 기준 전국에서 3번째로 높은 화장률(79.8%)을 기록. 지역의 화장중심의 장사수요에 대응하고자 1973년 건립된 화장시설을 대신할 종합장사시설 건립을 추진함
- 2001년 화장장 유치 공모를 추진한 이후, 지역 발전기금 200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하며 옛 탄광 부지를 예정지로 선정했으나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채 진행된 결정으로 인해 반대가 발생, 결국 무산됨. 이후 새로운 후보지를 모색한 끝에 2003년 울주군 삼동면의 자발적 유치 신청을 통해 본격적으로 시설 건립이 추진됨
 - 전국 종합장사시설 유치사업 중 울산시 하늘공원은 주민들의 자발적 신청으로 투표 없이 확정된 첫 사례로, 님비 현상을 극복한 국내 최초의 모범사례로 기록됨
- 종합장사시설로 자연장지를 포함해 배치되어 운영되고 있음
 - 장례식장, 승화원, 추모의 집, 자연장지 등 부대시설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시설을 공원 형태로 운영하고 있음
 - 사무와 서비스를 맡는 운영팀과 화장 및 방재를 기술적으로 관리하는 시설팀으로 나뉘어 운영되며, 장례식장과 장례용품 등 5개 시설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체제로 관리하고 있음

<그림 2-9> 울산 하늘공원 사례사진



자료) 울산시 하늘공원 홈페이지

〈표 2-50〉 울산시 하늘공원 자연장지 이용요금 안내

사용용도		요금(일반)(원)		요금(감면 적용 시)(원)	
		관내	관외	관내·삼동주민	양산주민
화장 시설	대인	140,000	800,000	28,000	300,000
	소인	120,000	500,000	24,000	200,000
	죽은태아	50,000	250,000	10,000	100,000
	개장유골	60,000	300,000	12,000	120,000
봉안당 (15년)	개인단	330,000	이용불가	165,000(관내)	-
	부부단	330,000(1구당)	1,000,000	-	-
유택동산		10,000	10,000	2,000(삼동주민)	
자연장 (30년)	잔디장	300,000	1,000,000	150,000	500,000
	수목장	1,400,000	사용불가	700,000	사용불가

자료) 울산시 하늘공원 홈페이지

5) 경주 하늘마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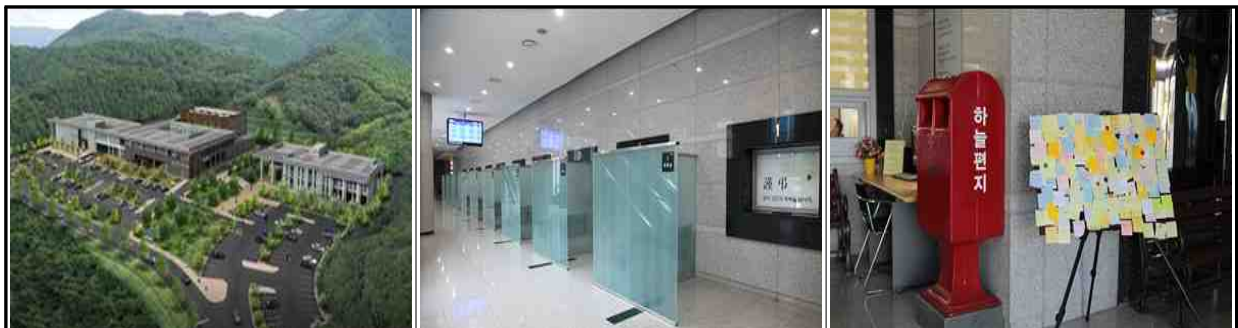
(1) 시설개요

- 위치 : 경상북도 경주시 서면 하늘마루길 330
- 건립예산 : 약 370억원(국비 132억원, 도비 32억원, 시비 206억원)
- 개원 : 2012년 11월
- 대지면적 : 약 43,013㎡(13,077py)
- 화장로 : 7기
- 화장 가능횟수 : 1기당 1일 4회 (회당 평균 120분 소요)
- 주요시설 : 화장시설, 장례식장, 봉안당, 유택동산, 야외쉼터 등

(2) 주요 특징

- 경주 하늘마루는 1932년에 건축된 동천동의 기존 화장장이 노후화되면서 처리 기능이 원활하지 않아 2008년에 시립화장시설 현대화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전국 최초로 부지 공모제를 통해 대상지를 확정된 사례임
- 경주 하늘마루 설치 과정에서 이·통장, 부녀회장, 경로당회장, 자생단체장 등 각 읍면동의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시민 견학을 실시해, 화장시설에 대한 넘비 현상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음
- 공해 배출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최첨단 장비를 도입하고, 장례부터 봉안까지 원스톱 장사 시스템을 구축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고 있음

〈그림 2-10〉 경주 하늘마루 사례사진



6) 세종은하수공원

(1) 기본현황

-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정안세종로 1527
- 준공연도 : 2010년
- 사업비 : 약 500억원
- 규모 : 대지면적 360,580㎡, 건축연면적 17,293㎡
- 주요시설 : 장례식장, 화장장, 봉안당, 자연장지, 부대시설(관리동, 홍보관, 유택동산)
- 운영주체 : 세종시설공단
- 특징
 - 장사시설의 공원화를 통해 주거지역과 인접거리에 위치(세종시 주거지역과 약 3km)
 - 봉안당(야외 봉안시설) 조성하여 개방적인 느낌

(2) 주요시설

- 장례부터 봉안까지 이용객의 동선을 최소화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친환경적이면서 고품격 시설을 제공하여 기존 장사시설의 부정적 이미지를 탈피함
- 장례식장, 화장장, 봉안당, 자연장이 결합한 종합장사시설로, 화장 위주로 전환되고 있는 장사문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홍보관을 통해 장례문화 교육의 장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주요시설로 해님의 집(화장), 달님의 집(봉안), 자연장이 있으며 봉안시설은 봉안당, 봉안담, 유택동산으로 구성되어 있고, 자연장지의 경우 잔디장, 도시형 수목장, 산림형 수목장으로 구성되어 있음
- 수목장의 경우 수목장립 형태인 도시형 수목장(미리별동산), 산림형 수목장(별누리·달누리숲)이 각각 조성되어 있음

- '늘해랑' 시민공원은 평소 시민들이 산책을 즐기고, 어린이들의 생태학습장으로 활용되는 공간으로, 코로나 이전에는 매년 가을 은하수 공원 축제를 개최해 1만 명 이상의 시민들이 가족 단위로 방문하여 벼룩시장, 사생대회, 걷기대회, 음악 공연 등을 즐기며 시민과 함께하는 공간으로 조성됨
- 계획도시 특성상 관외 이용 비율이 높은 시설임

〈표 2-51〉 은하수 공원 화장 이용료

구분	관내	대전, 충남, 충북	관외
대인 (만15세 이상)	160,000	320,000	800,000
소인 (만 15세 미만)	130,000	260,000	650,000
사산아	50,000	100,000	250,000
개장유골	60,000	130,000	300,000

〈표 2-52〉 은하수 공원 봉안당 이용료(15년)

구분		이용료	관리비	합계
관내 (하단참고)	개인단	270,000	110,000	380,000
	부부단	410,000	160,000	570,000
관외	개인단	810,000	330,000	1,140,000
	부부단	1,230,000	480,000	1,710,000
세종시 건설관련 개장유골	개인단	190,000	110,000	300,000
	부부단	280,000	160,000	440,000

〈표 2-53〉 은하수 공원 자연장-잔디장 이용료(30년)

구분	이용료(원)		관리비(원)		합계(원)	
	관내	관외	관내	관외	관내	관외
개인장	510,000	765,000	140,000	210,000	650,000	975,000
행복개장	360,000	-	140,000	-	500,000	-
가족4기	2,040,000	3,060,000	560,000	840,000	2,600,000	3,900,000
가족6기	3,060,000	4,590,000	840,000	1,260,000	3,900,000	5,850,000
가족8기	4,080,000	6,120,000	1,120,000	1,680,000	5,200,000	7,800,000
종중장	360,000	-	140,000	-	500,000	-

자료) 은하수 공원 홈페이지

〈표 2-54〉 은하수 공원 자연장-수목장 이용료(30년)

구분	도시형 수목장		산림형 수목장	
	관내(원)	관외(원)	관내(원)	관외(원)
공동목	930,000	1,400,000	1,700,000	2,550,000
가족 4위목	3,720,000	5,600,000	6,800,000	10,200,000
가족 6위목	-	-	10,200,000	15,300,000
가족 8위목	7,440,000	11,200,000	13,600,000	20,400,000

자료) 은하수 공원 홈페이지

〈그림 2-11〉 세종은하수공원



자료) 은하수 공원 홈페이지

2. 자연장지 조성 사례

1) 서울시립 용미리묘지 자연장지

(1) 시설개요

- 위치 :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진지로 128일원
- 안치규모 : 12,000기
- 개시 : 2016년 8월
- 대지면적 : 약 8,500㎡(2,571py)
- 세부구성 : 수목형(4,312기), 정원형(3,728기), 언덕형(832기), 영원석(368기), 치유석(656기), 사모석(1,376기), 환생석(480기) 등

(2) 주요 특징

- 공설묘지시설인 서울시립 용미리 제1묘지가 만장됨에 따라 구역별 재개발을 진행하며 변화하는 장례문화에 맞춰 자연장지를 계속 확충해 나가고 있음
- 기존 수목형 자연장지가 2016년 8월 말에 만장을 예상함에 따라, 공간 특성에 맞춘 다양한 형태의 자연장지를 추가로 조성하였음
- 용미리 1묘지 내 기존 바위를 활용한 자연친화적인 암석원 자연장지가 국내 최초로 시도되었음
 - 각 장소별로 영원, 치유, 사모, 환생석의 테마를 부여하고, 그에 맞는 꽃말을 지닌 식재로 꾸며 스토리텔링 공간으로 조성함
 - 암석원은 영원석, 치유석, 사모석, 환생석으로 분류되어 운영되고 있음
 - 다양한 자연장 선택지를 유족이 공간 특성에 맞게 직접 선택할 수 있게 하여 기존 2가지 형태의 자연장보다 선택의 폭이 크게 확대됨
- 서울시설공단은 용미리 제1묘지에 1만 2천기의 자연장지를 추가로 조성해 2016년 1월부터 운영 중에 있음
- 용미리묘지의 자연장지에는 사망 당시 서울시, 고양시, 파주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이 안장될 수 있음

<그림 2-12> 서울시립 용미리묘지 자연장지 사례사진



2) 인천가족공원 자연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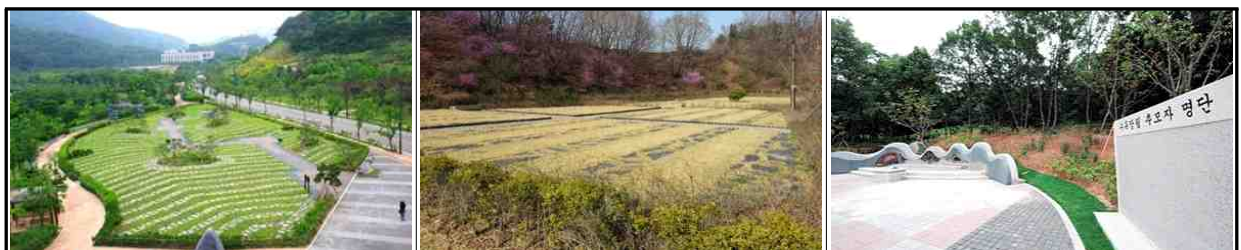
(1) 시설개요

- 위치 : 인천광역시 부평구 평온로 61 일원
- 안치규모 : 6,315기
- 개시 : 2015년 2월
- 대지면적 : 약 28,356㎡(8,578py)
- 세부구성 : 수목장림(만장), 잔디장, 정원식수목장(만장) 등
- 부대시설 : 합동헌화대, 정자 등

(2) 주요 특징

- 새로운 장사문화를 선도하기위한 장사시설로 조성함
 - 인천가족공원 자연장 내에 장사문화 홍보관을 건립하여 친환경적인 자연장 홍보, 장사문화 홍보, 세계 각국의 장사문화 간접체험, 제사상 차림 등 장사예절 교육 등을 운영하고 있음
- 인천가족공원 자연장은 공동묘지 형태로 자연적으로 조성되었다가 묘지공원 결정고시 후 운영하고 있음
- 인천가족공원 내 화장장 및 봉안당과 함께 위치하고 있음

<그림 2-13> 인천가족공원 자연장 사례사진



3. 묘지 재개발 사례

1) 양구 봉안공원

(1) 시설개요

- 위치 :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금강산로 518-40 일원
- 안치규모 : 4,368기(봉안시설 2,868기, 자연장 1,500기)
- 개시 : 2009년 1월
- 대지면적 : 약 17,941㎡(5,427py)
- 주요시설 : 봉안시설(전면 개폐식 봉안담), 자연장(잔디형, 정원형, 수목형), 장례식장 등

(2) 주요 특징

- 매장문화에서 화장문화로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장례문화의 추세에 발맞춰 청정지역인 양구지역에 종합적 공원형 장사시설을 설치, 주민에게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군 핵심과제로 선정 추진하였음
- 지역주민의 설치반대가 있었으나 군에서 지속적인 설명과 의견 수렴을 통해 설치하게 되었음
- 2009년 양구지역 화장률은 33% 대에 머무르며 전국 평균인 65%의 절반 수준에 그쳤으나 2015년에는 78%를 기록하는 등 화장률의 급속한 증가로 나타남

〈그림 2-14〉 양구 봉안공원 사례사진



2) 서산 희망공원

(1) 시설개요

- 위치 : 충청남도 서산시 인지면 산동리 산 32-1 일원
- 안치규모 : 40,023기(자연장 39,257기, 봉안시설 766기)
- 개시 : 2015년 7월
- 대지면적 : 약 109,523㎡(33,130py)
- 주요시설 : 봉안당, 자연장지, 휴게공간, 녹지공간(수목림 조성) 등

(2) 주요 특징

- 서산시 희망공원 봉안평장의 만장 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친환경 장사시설인 자연장지를 조성하였음
- 2015년 전국 지자체로는 최초로 희망공원 내에 1,891기를 안장할 수 있는 유공자 묘역을 별도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유공자의 훈장을 보관할 수 있는 보관함을 설치하였음
- 희망공원 내에는 희망편지 우체통을 운영하여 장사시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기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음

〈그림 2-15〉 서산 희망공원 사례사진



4. 국외 사례

1) 오스트리아⁶⁾

(1) 국가 차원의 사후관리 보장

- 오스트리아 장사법(1970년 제정)에 따르면 오스트리아 국민은 동일한 기준으로 매장과 화장이 모두 가능함
- 빈 시민의 경우 시에서 관리하는 공동묘지에 안장될 수 있으며, 최종 주거지를 기준으로 정해진 안식 구역 내에서 안치됨

(2) 구체적인 장사방법

- 1인 매장, 가족묘, 매장 장소, 무덤 이용에 관한 구체적인 조항이 명시되어 있으며, 모든 무덤에 고유번호가 부여되어 정확한 위치 확인이 가능함

(3) 장사시설 현황

- 1870년에 설계된 빈 중앙묘지는 7차례 확장을 거쳤으며, 2차 세계대전 중 입은 손상을 복구한 후 다양한 종파의 묘지와 의식장소로 형성됨
- 종교묘지는 개신교, 유대교, 불교, 이슬람, 시리아 정교회, 무슬림 등 각 종교의 특색을 반영하여 구성됨
- 명예묘역에는 음악, 과학, 건축, 정치, 스포츠 등 각 분야에서 공적을 남긴 저명인사들이 안장되어 있으며, 베토벤, 슈베르트, 브람스 같은 음악가들의 묘지는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자리잡고 있음
- 숲 묘지는 2009년에 신규로 조성된 수목형 자연장지로, 자연의 특성을 유지하며 36주 나무를 중심으로 12개 안장 구획이 배치되고, 각 구획은 2개의 유골함을 수용할 수 있음

6) 부산광역시 장사시설 지역수급계획 수립 용역

2) 스페인 몬주익 묘지

- 연혁: 1983년 3월 개원, 1997년 화장로 4기 설치
- 주요시설: 화장시설, 매장묘역, 자연장지, 유택동산 등
 - 화장시설 내 화장로 4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1일 최대 화장 건수는 45회
 - 자연장지는 화초형 및 수목형 정원으로 구성되며, 유골을 뿌리거나 유골용기를 묻을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 있음
 - 산분장지는 피라미드 모양의 공동유택동산인 안식의 정원으로, 화단으로 조성된 유택동산에 화장 유골을 뿌릴 수 있도록 조성되어 있음
- 몬주익 묘지는 화장장과 묘지 역할 외에도 도서관, 맞춤형 투어, 콘서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시민뿐만 아니라 관광객에게도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고 있음
- 바르셀로나 장사시설관리사무소는 묘지의 유지 관리, 사용자 편의 제공, 고인의 시신 운구, 묘지의 문화와 역사 보존 및 전파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돌로 꾸며진 화장시설은 묘지가 지어지기 전에 사용되었던 담을 재활용하였으며, 자연장지는 유골을 뿌리거나 생화학적으로 분해 가능한 용기를 묻는 방식으로 디자인되어 있음
- 봉안시설은 나뭇잎 또는 사이프러스 나무를 형상화하여 설계되었으며, 유택동산은 피라미드 형태의 안식의 정원으로 조성된 공동 유택동산임

<그림 2-16> 몬주익 묘지 내·외부 전경



3) 스톡홀름 우드랜드

- 스톡홀름시 정부가 운영하는 시립묘지는 약 30만 평 규모로 조성되었으며, 뛰어난 조경 설계로 1994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됨
 - 도시 외곽에 위치해 대규모 공원 형태로 만들어짐
- 1914년 9월 국제공모를 통해 예술적으로 아름다운 묘지를 조성하려 했으며, 공모에 당선된 Asplund와 Lewerentz가 1961년까지 5개의 장례식장, 화장시설, 묘지, 산골장소 등을 건설함

<그림 2-17> 스톡홀름 우드랜드 주요시설



4) 일본 요코하마 시립묘지, '메모리얼 그린'

- 요코하마시의 시립묘지인 메모리얼 그린은 2003년 폐업한 요코하마 드림랜드 부지를 철거하고, 2008년에 준공되었으며 도심 내 묘지와 야구장, 공원을 함께 조성한 공간임
- 묘지공원에 대한 혐오감을 줄이기 위해 옆에는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었음
- 기존의 녹지를 최대한 보존하여 야구장, 풍부한 수목, 화장장, 위령비형 합장묘, 잔디형 평장묘원 등을 갖추고 있음
- 야구장과 인근 마타노공원을 포함해 총 면적이 6.1ha에 달하며, 그 중 3.0ha가 공원으로 사용되어 공원과 묘지가 5:5 비율로 조성되어 자연과 하나된 묘지공원의 개념을 잘 살리고 있음
 - 시설 구성: 잔디밭형 묘지(7,500구획), 합장식 묘지(3곳 3,000기 수용), 위령비형 합장식 묘지(1곳 12,000기 수용), 주차시설(약 400대), 식당 및 편의시설 포함

- 특히 위령비형 합장식 묘지는 물을 형상화한 큰 원형 조형물 아래 약 12,000명을 봉안할 수 있으며, 내진설계가 되어 있어 지진에도 안전하고 가격도 매우 저렴함

〈그림 2-18〉 메모리얼그린묘지 관련 사진



5) 일본 나고야시 제2화장장

- 나고야 제2화장장 인근에 대형 쇼핑몰이 입주하였음
- 당시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 배출과 지가 하락에 대한 우려로 화장시설 건립 반대가 극심하였음
- 당국은 직접적인 경제적 보상보다는 주변 도로 정비와 체육관이 있는 지역 교류회관 건립 등 지역 인프라 개선을 통해 주민 반대 여론에 대응하였음
- 이후 대형 쇼핑몰이 화장장 인근에 들어서면서 주민들의 지가 하락 우려가 해소되었음



〈그림 2-19〉 나고야 제2화장장 인근 대형쇼핑몰
자료) 서울특별시 장사시설 수급 중장기계획(2018~2022)

5. 친환경 장법 사례

1) 빙장

- 빙장은 시신과 같은 유기물을 동결 건조시켜 자연 상태의 토양으로 환원시키는 친환경 장법으로, 스웨덴 생물학자 수잔 위 메삭(Susanne Wiige Masak)에 의해 발명됨
- 빙장의 진행절차는 다음과 같음

〈표 2-55〉 빙장의 진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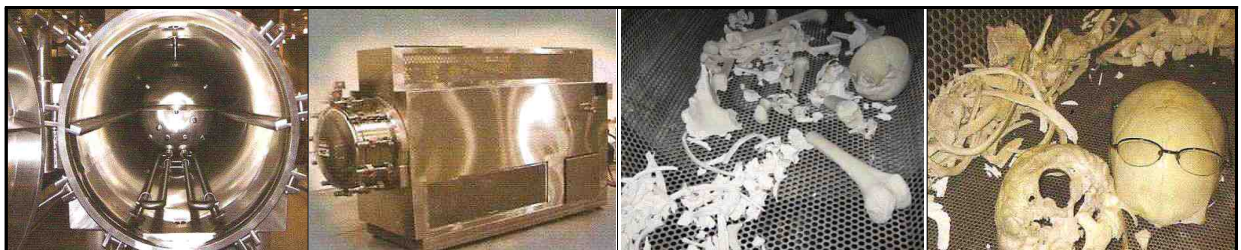
구 분	세부내용	모식도
1단계	시신을 -18℃로 보관함	
2단계	-196℃의 질소탱크에 시신과 관을 넣어 순간적으로 동결	
3단계	동결된 시신과 관을 기계적 진동을 가해 작은 조각으로 분쇄	
4단계	분쇄된 조각 중 금속 성분과 수분 제거	
5단계	건조된 가루를 녹말상자에 보관 (향후 땅에 묻고 그 위에 나무나 잔디를 심을 수 있음)	

- 빙장의 장점은 공기나 수질 오염이 없으며, 6~12개월 내에 자연에서 분해되어 기존 매장이나 화장에 비해 환경 피해가 적고, 매장 기간이 짧아(약 12개월) 매장지 순환이 빠름
- 하지만 빙장을 위한 시설이 고가라는 단점이 있으며, 빙장 후 남은 잔해물 중 유기화될 수 있는 성분에만 집중하고 다른 성분 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음
- 국내에서도 2008년 한나라당 박재원 의원 등이 발의한 장사법 개정안에 빙장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발표되었으나, 당시 실증적 자료 부족과 시기상조라는 의견으로 통과되지 않음

2) 알칼리 가수분해

- 3세대 친환경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는 알칼리 가수분해(수분해장)는 시신을 완전히 분해하여 인산칼슘 성분만 남기며, 2차적인 부패 과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빠르게 자연으로 돌아가는 방법’임
- 그래서 수분해장은 친환경 화장의 개념으로 바이오화장(Bio-Cremation)이라고도 불림
- 수분해장 과정은 화장과 유사하지만, 화석 연료를 적게 사용하고 유해 화학물질을 배출하지 않음
- 나무관 대신 천연 실크 관을 사용하여 시신을 물에 잠기게 한 후, 알칼리 성분인 수산화칼륨을 섞은 수백 리터의 물을 150~170℃로 가열하여 3시간 내에 흰 뼈만 남게 됨
- 이 과정은 화학적으로 자연적인 부패와 매우 유사하며, 어떤 유기물도 남지 않고 완전히 분해됨
- 수분해장에는 ‘레조메이터(Resomator)’라는 고가의 첨단 장비(30만 파운드)를 사용하는데, 1회 사용 비용은 화장 비용과 비슷한 300파운드(약 57만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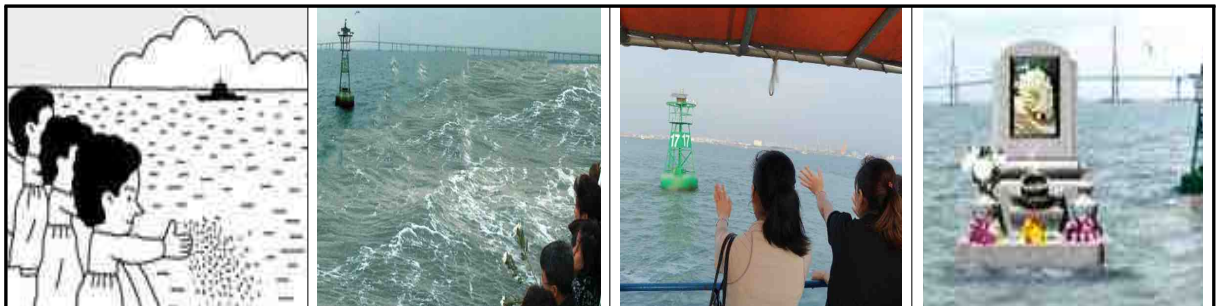
〈그림 2-20〉 알칼리 가수분해 진행과정



3) 바다장

- 바다장이란 화장한 유골을 바다에 뿌려 장사하는 방식임
- 2012년 8월, 바다장 합법화를 위한 장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제출되었으나 반대로 인해 무산되었으며, 현재 법적으로 바다장례를 규정하는 법규는 없음
- 2012년 6월 19일, 국토교통부는 “해양산분 제도 도입을 위한 타당성 평가 용역”에서 바다장이 폐기물 관리법 상 폐기물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나, 불법도 합법도 아닌 상황임
- 바다장은 회사에서 운영하는 방법과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방법 두 가지로 운영되고 있음
 - 회사 운영: 인천 연안부두와 안산 오이도 앞바다에서 유람선을 이용하여 진행
 - 개인 운영: 부산과 목포에서 낚시배를 이용해 진행됨

<그림 2-21> 바다장 개념 및 사례



6. 시사점

1) 국내 사례

○ 서울 추모공원

- 특징: 도심형 화장전용시설, 최첨단 화장로, 원스톱 시스템,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시사점: 첨단 기술과 쾌적한 환경 제공으로 주민 수용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함.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장사문화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제고가 필요함

○ 화성 함백산 추모공원

- 특징: 6개 지자체 공동 투자, 지역 주민과 상생 협력, 최대 55구 화장 가능
- 시사점: 지자체 간 협력으로 대규모 장사시설을 공동 운영하는 모델이 효과적이며, 지역 주민과의 상생을 통해 시설 설치에 대한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음

○ 용인 평온의 숲

- 특징: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원스톱 서비스 제공, 영욕 방식 도입
- 시사점: 장례, 화장, 봉안, 자연장이 한자리에서 이루어지는 원스톱 서비스의 편리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음. 대안적인 장묘문화 도입을 통해 다양한 장사방식을 제공해야 함

○ 울산 하늘공원

- 특징: 최첨단 종합장사시설, 자발적 주민 신청을 통한 님비 극복
- 시사점: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님비 현상을 극복한 사례로, 주민 의견 수렴과 참여가 중요함

○ 세종 은하수공원

- 특징: 도심 근처 위치, 공원화된 장사시설, 다양한 봉안 및 자연장 형태
- 시사점: 도심과 가까운 위치에 친환경적이고 고품격 시설을 제공함으로써 부정적 이미지를 탈피할 수 있음. 공원화를 통해 시민들에게 열린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함

2) 국외 사례

○ 오스트리아 빈 중앙묘지

- 특징: 종교별 묘지와 명예묘역 조성, 자연장지 운영
- 시사점: 종교와 문화적 다양성을 고려한 묘지 운영이 필요하며, 자연장지 도입으로 친환경 장사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음

○ 스톡홀름 우드랜드

- 특징: 공원형 묘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대규모 자연장지
- 시사점: 아름다운 조경과 공원형 묘지를 통해 장사시설의 긍정적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으며, 자연장지를 활성화하여 지속가능한 장사문화를 추구해야 함

○ 일본 요코하마 메모리얼 그린

- 특징: 도심지 내 묘지와 공원 조성, 녹지 보존, 다양한 장사 형태
- 시사점: 도심지 내 공원과 묘지를 함께 조성함으로써 자연과 일체가 된 장사공간을 제공할 수 있음. 녹지 보존과 다양한 장사 형태 제공이 중요함

3) 시사점

- 첨단 기술과 쾌적한 환경: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첨단 기술을 활용한 무연무취의 화장시설과 쾌적한 환경 제공이 중요함
- 지자체 간 협력: 대규모 장사시설은 지자체 간 협력을 통해 공동 운영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
- 원스톱 서비스: 장례, 화장, 봉안, 자연장이 한자리에서 이루어지는 원스톱 서비스가 편리성을 증대시킴
- 주민 참여와 상생: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 주민과의 상생을 통해 님비 현상을 극복할 수 있음
- 친환경 및 고품격 시설: 도심 근처에 친환경적이고 고품격 장사시설을 제공함으로써 부정적 이미지를 탈피할 수 있음

- 종교와 문화적 다양성: 종교와 문화적 다양성을 고려한 묘지 운영이 필요함
- 자연장지 활성화: 자연장지 도입으로 지속가능한 장사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음
 - 다만 지금의 자연장지 형태 역시 토지를 장사시설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형태임에 따라 국가정책에 따라 일종의 표식을 남기지 않거나 최소화하는 산분장에 대한 검토 혹은 사자(死者)들의 공간이 아닌 누구나 올 수 있는 복합공원 형태의 조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제5절 장사시설 조성 관련 갈등 지자체 사례

1. 홍성화장장 현대화 사업 사례⁷⁾

1) 사례 개요

- 홍성군은 새로운 장묘문화에 대응하기 위해 주변 자연과 건물이 조화를 이루는 현대식 화장장을 신축하여 누구나 찾고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 2001년 12월 화장장 현대화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함
- 유족과 방문객들의 편의를 위해 화장장, 납골당, 장례식장을 한 장소에 건립하여 장례, 화장, 납골 등 모든 절차를 마칠 수 있도록 계획하였음
-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필요했으므로 국비와 도비 외에도 도내 타 시·군으로부터 출연금을 협조받아 진행하였고, 2003년부터 연차적으로 납부하여 2005년 6월 13일까지 14개 시·군에서 출연금을 전액 납부하였음
- 화장장 현대화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이 반대하고 주민 수혜사업을 요구하는 등 군과 합의점을 도출하기 어려웠으나, 주민들의 협조로 2005년 6월 24일 합의에 이르렀고, 2005년 9월 21일 착공하여 2007년 5월 20일에 사업을 완료하였음

2) 주민 참여적 측면의 시사점

- 홍성군 화장장 건립계획은 전형적인 DAD 방식으로 발표되어 인근 마을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됨
- 주민들은 화장장 현대화 사업에 따른 알 권리를 요구하며 봉서 마을 총회에서 화장장 현대화 사업 결사반대를 결의하였고, 주민대표들이 군청 사회복지과를 방문해 반대 입장을 전달하며 백지화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제출하였음
- 이에 군청은 17회의 주민간담회 및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여, 군 관계자 및 주민대표 약 20명이 참여해 8개 사항에 대해 합의에 이르렀음

7) 지방행정연구 제 20권 제3호_장사시설과 관련된 갈등해결방안 연구 자료_이수장 외

<주요 합의 내용>

- | | |
|-----------------|-----------------|
| 1. 경지정리사업 실시 | 5. 마을 안길 교량건설 |
| 2. 복지회관 신축 | 6. 장례식장 신축 |
| 3. 농기계 보관 창고 신축 | 7. 장례식장 시설 위탁관리 |
| 4. 마을 안길 아스콘 포장 | 8. 기계화 경작로 사업 등 |

- 홍성군 의회는 화장장 현대화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주민과의 협의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며 사업비 승인 심사와 관련 조례에 대한 결정을 통해 주민과 협의할 것을 강조함
- 홍성군 의회의 이러한 역할은 지역주민과 협의를 도출해 갈등을 완화하는 데 기여하였으며, 공식적인 제도를 통해 갈등 해소의 기반을 마련하였음
- 3년에 걸친 협상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주민참여를 강화하고 갈등을 해결할 수 있었음

2. 서울시 추모공원 사례⁸⁾

1) 사례 개요

- 1998년 11월, 서울시는 시설관리공단에 전담팀을 구성하여 제2 화장장 건립 후보지 선정과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12월에 후보지 선정을 위한 기초조사에 착수하여 서울 및 경기도 내 50여 개 후보지를 선정함
- 이후 평가를 거쳐 서울 지역 13개소, 경기도 지역 12개소를 후보지로 선정하였음

〈표 2-56〉 서울시 제2 화장장 건립에 대한 지역주민 반대의견

지 역	주민 반대의견
중랑구 망우동	• 상대적 집값 하락 등 경제적 피해 지역 부각, 애국지사 묘역 등 성역화 된 공원에 대표적 혐오시설 건립 절대 불가
마포구 상암동	• 2002 월드컵 경기장, 인천공항 관문 지역에 연기, 냄새 등 오염건축물 붕괴 우려, 쓰레기 더미 위에 추모 공원은 어불성설
강서구 오곡동	• 기존 화장장과 동일선상에 위치, 남동부 주민 이용 불편, 혐오시설 집중으로 공동화 현상 초래, 비행기 소음으로 경건·엄숙 분위기 저해
은평구 신사동	• 부지 협소 및 급경사로 공원 기능 미흡, 도로 협소 및 주택가 통과로 접근 곤란, 대기오염, 소음 등 환경문제로 주거환경 및 면학 분위기 훼손
송파구 장지동	• 지역 쓰레기소각장, 변전소, 지역난방 공급시설 예정 부지로 집값하락 등 불이익 가중, 산림 없고 군부대 사격장 소음으로 추모공원 부지로 부적합
서초구 원지동	• 그린벨트로 30년간 묶인 청계산 지역으로 서울시에서 ‘절대보존지역’으로 발표한 곳, 경부고속도로 및 주변도로 완전마비 우려
서초구 내곡 1동	• 지역 생활 쓰레기 소각장의 예에서처럼 무색·무취라는 화장시설 불신, 부가가치가 많은 산림을 훼손하려는 의도 이해할 수 없음.
서초구 내곡 2동	• 지역 부지 협소 및 문화재보호구역(현인릉 인근)으로 개발 불가, 서울공항 출입 국민들에게 국가이미지 손상 우려
서초구 내곡 3동	• 지역 예비군훈련장 등으로 개발 불가능, 서울의 허파기능을 하는 곳에 화장설비 노후화하면 환경오염은 필연적, 차량·군부대 소음으로 추모공원 입지 부적합

8) 화성시 화장장 입지 갈등 및 해결방안_박소영

지 역	주민 반대의견
강동구 고덕동	암사 정수장 물에 뿔가루 섞일 우려, 혐오·기피시설이 집중되어 추모공원의 당초 이미지 훼손, 주거지와 너무 근접하고 미사리 문화유적 훼손 우려
강남구 자곡동	서울공항 국빈 왕래 시 국가 이미지 실추 및 경호문제 발생, 동일생활권 내에 이미 이미 혐오·기피시설 입지, 주변도로 장례행렬로 상습정체 가중
도봉구 도봉동	입지 시 산림훼손 및 도봉산 이미지 실추, 구민 숙원사업은 미루고 추모공원 우선입지는 곤란, 다이옥신 배출 등 화장설비 불신

- 서울시 추모공원 건립을 둘러싼 갈등은 후보지 선정을 위한 공청회 및 토론회 과정에서 시작됨
- 추모공원건립추진협의회는 서울 지역 13개 후보지에 대해 일반 시민과 해당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4차례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나, 대부분의 지역에서 화장시설을 혐오시설로 인식하여 반대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음
- 반대 이유로는 환경오염, 주거환경 침해, 교통난 가중 등이 공통적으로 제기되었음

<표 2-57> 서울시 추모공원 추진과정

날짜	주요 내용
1997.	서울시 장묘제도 개선 및 시설확충방안 연구용역
1997.8	서울시 장묘시설설치·관리 조례 개정
1997.9	화장 중심 장묘문화 정착을 위한 시민공청회
1998.9	한국장묘문화개혁범국민협의회 발족(각계 시민대표 11명)

- 서울시 추모공원 건립은 변화하는 장례문화에 맞춰 반드시 필요한 시설로 인정받았으나, 지역 주민들은 자기 지역에 입지하는 것에 극렬히 반대하였음
- 추진협회가 4차례 공청회를 열었으나, 지역 의원과 주민들의 반대로 3차례가 무산되었으며, 서초구 주민들은 법률적 문제를 제기하고 일부는 소송까지 제기하며 반대 운동을 이어갔음

- 또한, 추모공원 조성 현장에서 주민들이 현장 접근을 막는 등 갈등이 폭력으로 번질 위험이 있었음
- 이 갈등의 원인은 보상적, 법 제도적, 정치적, 생활 피해 요인 등으로 나뉘어 분석할 수 있음

〈표 2-58〉 서울시 서초구 장사시설 입지 갈등 요인

요인		갈등 내용
보상적(경제적) 요인	재산 가치 하락	• 장사시설의 입지로 인하여 재산가치 하락
	보상의 적절성	• 개발제한구역의 적절한 보상
법·제도적 요인	주민참여 배제	• 입지 선정 시 주민참여 배제
정치적 요인	정치환경	• 서울시와 기초자치단체간 대립적 정치
생활피해 요인	환경오염	• 추모공원 건립 시 산림 훼손우려
	교통체증	• 경부고속도로, 양재대로, 의왕~과천 간 교통체증 증가
	지역이미지 훼손	• 행정 이미지 훼손

2) 성공 요인

(1) 주민의식 전환과 정책실행

- 서울시는 추모공원과 같은 비선호시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정부 정책을 알리기 위해 공청회와 공람을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였으며, 2001년 4월 2일 서울지역 13개 후보지가 속한 9개의 자치구 생활복지국장을 소집하여 부지 선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기로 결정함
- 자치구별로 지역대표를 선정해 주민과 시·구의원들이 공청회에서 주민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원고 제출을 요청하였으며, 4차례에 걸쳐 부지 선정 관련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음

(2) 적절한 보상을 통한 형평성의 확보

- 시설 입지 지역 주민들은 단기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다양한 피해를 입게 되므로 정부는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제공해야 함

- 서울시 추모공원의 경우, 서초구 주민들과의 협상을 통해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그 내용은 추모공원 부지 내에 국가중앙의료원을 건립하여 의료단지를 조성하고, 화장로를 축소하여 설치하는 것과 납골시설의 일부는 자치구에서 확보하는 방안이었음
- 이러한 보상과 협상을 통해 주민들의 반대를 완화하고 지역적·경제적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었음

〈표 2-59〉 서울시 서초구 장사시설 입지 갈등 해결 방법

요인		갈등 해결 방법
보상적(경제적) 요인	재산 가치 하락	장사시설 규모 축소, 의료단지 조성, 형평성 보상의 적절성 있는 보상
	보상의 적절성	
법·제도적 요인	주민참여 배제	공청회, 공람을 통한 주민의견 수렴
정치적 요인	정치환경	기자회견을 통한 정치권 압박
생활피해 요인	환경오염	녹지 훼손 최소화
	교통체증	교통체증 개선
	지역이미지 훼손	추모공원 건설의 정당성

3. 수원시 화장장 사례9)

1) 사례 개요

- 수원시가 과거 운영하던 시립화장장은 팔달구 인계동에 위치해 있었으며, 시설 노후와 인근 주민들과의 갈등으로 인해 1988년부터 새로운 부지를 모색하였으나, 주민 반발로 이전을 추진하지 못함
- 수원시는 화성군 봉담면 외 3개소를 시작으로 후보지 20여개소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였으나 현지 지역 주민의 반발로 무산되고 성남 화장장을 확장하여 공동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협의하였으나 이 역시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됨
- 타 지역 시설 유치가 어려워지자, 수원시는 관내 장사시설 설치를 원칙으로 하고, 지역 민원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오지지역을 시설 입지로 선정하기 위한 행보를 시작함

〈표 2-60〉 수원시 장사시설 주요 내용

날짜	주요 내용
1994.10.	• 화장장 건립 기본계획 용역
1995.2.	• 건립대상 지역 확정
1995.2.	• 시장, 장례식장과 납골당 운영권 주민에게 유상임대 발표
1995.2.	• 주민시위, 시청 앞 올림픽공원 400명
1995.2.	• 주민시위, 이의동 청소차고지 앞 200명
1995.3.	• 주민시위, 시청 앞 올림픽공원 250명
1995.3.	• 주민시위, 용인군 상현리 독바위 130명
1995.6.	• 설계응모작품 마감
1995.6.	• 도시계획 시설결정 고시(경기도 고시 제95-194호)
1995.6.	• 도시계획 시설결정 고시(경기도 고시 제95-107호)
1995.9.	• 설계응모작품 심사(최우수작-진우종합건축사)
1995.10.	• 토지보상심의위원회 개최
1995.10.	• 실시설계용역 및 교통영향평가 용역발주
1995.10.	• 토지보상계획 공고
1995.11.	• 반대 주민 대표자 10명 일본 화장장 견학

9) 화성시 화장장 입지 갈등 및 해결방안_박소영

날짜	주요 내용
1995.12.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계약
1996.6.	• 이의동 쓰레기 적환장 주변 상수도 설치
1996.7.	• 이의동 396-2, 402-4번지 상수도 설치
1996.8.	• 기본설계 준공
1997.3.	• 이의동, 하동 공설묘지 분묘 14,993기 이장
1997.4.	• 실시설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의뢰
1997.12.	• 공사발주
2001.1.	• 연화장 개장

- 수원시 화장장 입지 선정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과 사전 설명이 부족하여 민원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주로 기피시설 주변의 지가 하락에 대한 보상책과 행정규제로 인한 피해의식 때문이었음. 또한, 형식적인 환경영향평가와 정보 공개의 부족으로 인해 환경오염 및 건강 피해에 대한 불안감도 작용함

〈표 2-61〉 수원시 장사시설 입지 갈등 요인

요인		갈등 내용
보상적(경제적) 요인	재산가치의 하락	• 장사시설로 인한 재산가치의 하락
	보상의 적절성	• 보상내용 범위가 명확하지 않음
법·제도적 요인	주민참여 여부	• 주민참여 배제
	정보의 공개	• 형식적인 환경평가로 인한 불신
	행정규제	• 각종 행정규제에 대한 주민의식 피해
정치적 요인	정치환경	• 공약 남발
	환경단체	• 무책임한 선동
	언론의 영향	• 일방적인 언론 보도
생활피해 요인	환경오염	• 화장장으로 인한 환경오염 우려
	지역이미지 훼손	• 장의 차량 통과로 인한 지역이미지 훼손

2) 성공 요인

- 수원시 연화장은 2001년 개장 당시 대한민국 환경문화상 조경 부문을 수상하였으며, 시설 관리는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례식장 운영은 지역 주민 공동체 법인이 위탁 운영하고 있음
- 화장장 건립 과정에서 주민들과의 의견 조율이 충분히 이루어졌으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방정부의 협력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
- 수원시 화장장 건립을 위한 해결방안으로는 주민 숙원사업 시행, 배수관 부설공사, 마을 진입로 확장, 자연취락지구 개발 등의 간접 보상과, 기존 묘지시설을 활용한 화장시설 설치, 주민에게 장례식장과 납골당 운영권 임대 등의 인센티브 제공이 있었음
- 수원시 화장장은 무연, 무취의 최첨단 시설로 조성되었으며, 인근 지역을 쾌적한 공원으로 만들어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고, 장의 차량을 마을로 진입하지 않도록 하여 혐오감을 최소화하였음

〈표 2-62〉 수원시 장사시설 갈등 해결 방법

요인		갈등 해결 방법
보상적(경제적) 요인	재산가치의 하락	• 납골당 운영권을 지역대표회에 임대
	보상의 적절성	• 마을 주민숙원사업 실시
법·제도적 요인	행정규제	• 이의동 지역 기반시설 확충, 상수도설치, 도로개설 등
정치적 요인	정치환경	• 지속적인 홍보
	환경단체	
	언론의 영향	
생활피해 요인	환경오염	• 초현대식 무연, 무취 최첨단 시설 및 공원조성
	지역이미지 훼손	• 일본 선진 화장장 장묘시설 시찰

제6절 시설별 사용료 사례10)

1. 보안시설 사용료

- 공설보안시설의 경우 지역마다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 보안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평균적으로 보안당은 40만원, 보안묘와 보안담은 130만원, 보안탑은 12만원 가량 사용료가 책정되어 있음

<표 2-63> 보안당 사용료 사례(공설, 관내)

(단위: 원)

구분	보안당	보안묘	보안담	보안탑
보안시설 평균	398,641	1,296,857	1,383,168	125,000
가조공설공원묘지 보안당	100,000			
가평군공설보안묘(이곡리)		200,000		
갑향군립묘원(보안)	200,000			
강남구추모의집	650,000			
강동구추모의집	200,000			
거제시추모의집	300,000			
거창공설공원묘지 보안당	200,000			
경신하늘뜰공원보안당	500,000			
경주시공설보안당	100,000			
경주하늘마루보안당	650,000			
고성군공설보안당	100,000			
고성군추모의집	280,000			
고창군추모의집	250,000			
공주나래원보안당	1,000,000			
광명메모리얼파크	500,000			
광양시공설보안당 영세장	180,000			
광주영락공원 제1보안당	960,000			
광주영락공원 제2보안당	960,000			
광진구추모의집	800,000			
구미시공설승조당 제1관	200,000			
군산시공설추모관	100,000			
금산군공설보안당	150,000			
금오영당	195,000			
김포시추모공원(보안담)	350,000			

10) 한국장례문화진흥원의 ‘장사시설 현황 및 가격정보’ 자료를 정리한 것으로 양지공원 제3추모관을 비롯하여 누락된 시설들이 있으며 운영 방식에 따라 사용료 체계가 매우 다양하고 상이하므로 단순 참고자료로 확인할 필요가 있음

구분	봉안당	봉안료	봉안담	봉안탑
김해추모의집 제1봉안당	250,000			
김해추모의집 제2봉안당	250,000			
남원시승화당	100,000			
남해추모누리 안락원	460,000			
노들하늘공원(동작구추모의집)	800,000			
논산시양지추모원	250,000			
대전추모공원(봉안)	200,000	363,000		
도봉구추모의집	800,000			
동대문구추모의집	650,000			
동두천시안흥동공설봉안시설	544,300			
동해시매화당	190,000			
매화원	200,000			
목포추모공원 추모의집	100,000			
무주추모의집(봉안)	300,000			
무지개뜨는언덕	500,000			
보령시모란공원 봉안당	700,000	5,280,000	2,300,000	
부산영락공원 봉안당	120,000			
부산추모공원	326,000		597,000	
사천시 누리원(봉안시설)	340,000			
산청군공설묘지 본향원	175,000			
삼척시 추모공원 봉안당	336,000			
서귀포추모공원	50,000			
서남권추모공원봉안당	1,300,000			
서대문구추모의집	350,000			
서산시 희망공원(봉안시설)	50,000			
서울시립승화원 추모의집	100,000			
석문공설묘지(가족봉안묘)	3,399,000			
성동구추모의집	800,000			
성북구추모의집	1,070,000			
성산읍공설봉안당	20,000			
세종시추모의집	287,000			
속초시공설봉안묘		810,000		
속초시추모의집	200,000			
수원시연화장 추모의집	800,000			
순천시립추모공원 1봉안당	180,000			
아산시공설봉안당	300,000			
안동하늘공원	300,000			
안향정	268,700			

구분	봉안당	봉안료	봉안담	봉안탑
양구군공설봉안담			652,840	
양양군봉안당	240,000			
양지공원제1추모의집	100,000			
양지공원제2추모의집	100,000			
어성정	509,200			
여수시제1봉안당	620,000			
여수시제2봉안당	620,000			
여주추모공원 봉안담	600,000			
영명각(서천군 공설봉안당)	150,000			
예산군추모의집 제1관	350,000			
오룡군립묘원(봉안)	200,000			
오산시립쉼터공원	500,000			
옥천군봉안당 선화원	175,000	300,000		
완도군추모공원봉안당	70,000			
용미리건물식추모의집	100,000			
용미리벽식추모의집	100,000			
용미리분묘형추모의집	100,000			
용미리왕릉벽식추모의집	100,000			
용인평온의숲(평온마루 봉안당)	450,000			
울릉군 추모공원	130,000			
울산하늘공원(봉안시설)	440,000			
울진군립추모원(봉안시설)	600,000			
은하수공원 달님의집(봉안당)	680,000			
의령군납골당	450,000			
의왕하늘쉼터(봉안담)			3,200,000	
이천시립추모의집(봉안)	350,000			
익산시추모의집	200,000			
인천가족공원 금마총	350,000			
인천가족공원 만월당	350,000			
인천가족공원 별빛당	1,250,000			
인천가족공원 추모의집	350,000			
인천가족공원 평온당	1,250,000			
장례문화사업소 하늘누리 제1추모원	100,000			
장례문화사업소 하늘누리 제2추모원	100,000			
장미원	200,000			
장성군추모공원	300,000			
전주효자공원봉안당	225,000			
정명각	118,000			

구분	봉안당	봉안료	봉안답	봉안탑
정선하늘원	300,000			
제천시영원한쉼터봉안당	160,000			
종로구추모의집	800,000			
중구추모의집	800,000			
증평군 추모의 집	740,000			
진주안락공원 추모당	200,000			
진천군추모의집	1,118,000			
창원시립마산영생원	170,000			
창원시립상복공원 제1봉안당	170,000			
창원시립진해천자원	290,000			
천안추모공원 봉안당	300,000			
청양군추모공원(봉안당)	200,000			
청주시목련원 제1목련당	300,000			
춘천안식공원(안식의집)	311,800			
충주시 천상원	300,000			
칠곡군공설봉안당	13,000			
태백시추모관	113,000			
태안군 공설 영묘전	328,000			
통영시공설봉안당	200,000			
평창군공설묘지 봉안당			166,000	
평택시립추모관	527,000			
하남시 마루공원(봉안시설)	900,000			
하늘공원(부곡동공설공원묘지)	367,000			
하늘내린 휴공원(개인단)	300,000			
함안군공설봉안당	200,000			
함양군구룡공설공원묘지 봉안료		175,000		
함양군구룡공설공원묘지 봉안탑				125,000
합천군공설봉안당	700,000			
홍성추모공원봉안당	600,000			
홍천군공설묘원 봉안당	300,000	1,500,000		
화성시추모공원(비봉)	500,000	650,000		
화성함백산추모공원(봉안)	500,000			
화천공설봉안당	250,000			
횡성공설추모공원(봉안시설)	150,000			
휴마루	500,000			

주1) 비교를 위해 관내 이용자를 기준으로 정리함

주2) 현재 발췌된 자료상 양지공원 3봉안당의 자료는 공시되지 않아 포함되지 않음

자료)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한국장례문화진흥원

2. 자연장지 사용료

- 공설자연장지의 경우 지역마다 차이는 있으나 평균적으로 잔디형은 42만원, 수목형은 85만원, 정원형은 54만원 등으로 사용료가 책정되어 있음

〈표 2-64〉 자연장지 사용료 사례(공설, 관내)

(단위: 원)

구분	잔디형	수목형	정원형	기타
자연장지 평균	425,125	846,067	536,667	504,083
경신하늘뜰공원자연장지	400,000			
경주하늘수목장림		290,000		
고창푸른숲자연장	250,000	300,000	300,000	
공주나래원자연장	600,000	600,000		
광양시공설자연장	550,000			
구례군 공설자연장지	300,000			
국립하늘숲추모원		735,000		
김포시추모공원(자연장지)	500,000			
남부권공설묘지 자연장지	257,200			
남원시추모공원(자연장지)	500,000			
남해추모누리공원 자연장지	300,000			
내촌공설자연장지				400,000
대전추모공원(자연장)	650,000	1,500,000		
동해시하늘정원자연장지				410,000
무장녹두숲자연장	250,000	300,000		
무주추모의집(자연장)	450,000			
보배숲추모공원	850,000	2,200,000		1,350,000
사천시 누리원(자연장지)	400,000			
삼척시 추모공원 2단지 자연장	410,000			
서귀포추모공원 자연장지	100,000			
서남권추모공원자연장지	500,000			
서산시 희망공원(자연장지)	450,000			
서울시립자연장시설	500,000			
선재리공설묘지 자연장지	90,000			
수원시연화장 자연장지	500,000			
순천시립자연장지	400,000			
신월공설자연장지				300,000
양구군공설자연장지				174,500

구분	잔디형	수목형	정원형	기타
여수시공설자연장지(잔디형)	320,000			
여주추모공원 자연장지	350,000			
연평리공설묘지 자연장지	90,000			
영락공원청마루동산	348,000			
오룡군립묘원 자연장지	400,000			
와동 꽃빛공원 자연장지	489,000	626,000		
완도군추모공원자연장지	700,000			
울산하늘공원(자연장지)	300,000	1,400,000		
울진군립추모원(자연장지)	600,000			
웅양공설공원묘지	500,000			
월곡리 공설자연장지	750,000			
은하수공원 자연장지	650,000	930,000		
의성군 천제공원(자연장지)	600,000	600,000		
의왕하늘습터(자연장)	680,000	680,000		
이작리공설묘지 자연장지	90,000			
익산시공설자연장지	350,000			
인천가족공원 자연장	610,000	610,000	1,010,000	
자연숲추모공원 수목장립	900,000	1,470,000		
장봉리공설묘지 자연장지	90,000			
전주효자자연장	300,000			
정왕공설자연장지	300,000			
제주시어승생한울누리공원	100,000		300,000	
제천시공설자연장지	500,000			
청솔공원 자연장지	276,000			
청주시목련공원자연장				390,000
춘천안식공원 잔디장	430,940			
태백공원묘원 자연장지	500,000			
함안하늘공원(자연장지)	400,000	450,000		

주1) 비교를 위해 관내 이용자를 기준으로 정리함

주2) 현재 발체된 자료상 용강별숲공원의 자료는 공시되지 않아 포함되지 않음

자료)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한국장례문화진흥원

3. 화장시설 사용료

1) 기본 현황

- 전국의 화장시설은 전체 62개소이며 그 중 1곳은 국립소록도병원화장장으로 해당 병원 전용으로 운영되고, 1곳은 아름다운청계공원으로 개장유골의 화장만을 담당하고 있음
- 제주에는 양지공원 1개소의 화장시설이 운영 중임
- 화장시설의 사용료는 각 지역의 장사시설 관련 조례에서 명시하고 있음
- 대부분 관내 사용료와 관외 사용료에 차등이 있으며 인접 지역, 등록기준지 등의 조건으로 세분화하여 운영되는 곳도 있음
- 양지공원의 관내주민 화장 이용료는 가장 낮은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으며 관외주민 화장이용료 역시 울릉군 다음으로 가장 낮은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음
- 인건비 및 경비의 증가, 화장시설 이용자의 증가 등으로 운영비 충당에 어려움이 발생하면서 최근 「제주특별자치도 장사시설 사용료 원가분석 및 현실화 방안」 연구를 통해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추진 중임



〈그림 2-22〉 전국 화장장 현황

자료) 2023-2027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

2) 관내 사용료

〈표 2-65〉 전국 화장장의 관내 사용료

(단위: 원)

시설명(가나다순)	대인	소인	개장유골	죽은태아	비고
평균	93,967	68,883	51,733	36,850	
경주하늘마루	150,000	100,000	100,000	50,000	
고성군공설화장장	50,000	30,000	25,000	18,000	
공주나래원	100,000	80,000	80,000	50,000	
광양시화장장	100,000	60,000	60,000	30,000	
광주영락공원	90,000	60,000	23,000	60,000	
구미시추모공원	100,000	80,000	60,000	40,000	
군산시승화원	60,000	45,000	30,000	15,000	
김천시화장장	50,000	40,000	20,000	10,000	
김해추모의공원	100,000	60,000	60,000	50,000	
남도광역추모공원	70,000	44,000	31,000	24,000	
남원시승화원	60,000	40,000	30,000	20,000	
남해추모누리 영화원	60,000	40,000	40,000	30,000	
대구명복공원	180,000	140,000	100,000	90,000	
대전시정수원	90,000	65,000	45,000	40,000	
동해삼척 공동화장장(승화원)	100,000	80,000	50,000	50,000	
목포추모공원	90,000	40,000	40,000	30,000	
문경예송원	50,000	40,000	30,000	20,000	
밀양시공설화장시설	70,000	50,000	40,000	30,000	
부산영락공원	120,000	84,000	60,000	45,000	
사천시 누리원(화장시설)	70,000	50,000	40,000	35,000	
상주시승천원	100,000	80,000	50,000	50,000	
서남권추모공원	70,000	45,000	30,000	20,000	
서울시립승화원	120,000	100,000	60,000	50,000	
서울추모공원	120,000	100,000	60,000	50,000	
성남시장례문화사업소	50,000	44,000	26,000	20,000	
속초시승화원	100,000	80,000	70,000	50,000	
솔향하늘길	150,000	100,000	100,000	50,000	
수원시연화장 승화원	150,000	120,000	100,000	50,000	
순천시립 추모공원	58,000	45,000	32,000	26,000	
승화원(화장장)-여수	60,000	42,000	30,000	21,000	
안동장사문화공원	150,000	100,000	100,000	50,000	
양지공원	50,000	35,000	18,000	24,000	
영주시화장장	50,000	40,000	30,000	25,000	
용인 평온의 숲(나래원)	100,000	80,000	60,000	50,000	

시설명(가나다순)	대인	소인	개장유골	죽은태아	비고
평균	93,967	68,883	51,733	36,850	
울릉하늘섬공원	30,000	20,000	20,000	10,000	
울산하늘공원	140,000	120,000	60,000	50,000	
울진군립추모원	100,000	60,000	40,000	40,000	
원주추모공원 화장장	100,000	80,000	80,000	40,000	
은하수공원 해님의집(화장장)	160,000	130,000	60,000	50,000	
의성군공설화장장	100,000	60,000	40,000	40,000	
익산시정수원	60,000	45,000	24,000	26,000	
인천가족공원 화장시설	160,000	130,000	100,000	50,000	
전주시승화원	70,000	53,000	28,000	24,000	
정선하늘터	100,000	80,000	50,000	80,000	
제천시영원한쉼터	50,000	30,000	30,000	15,000	
진주시안락공원	70,000	56,000	42,000	38,000	
창원시립마산화장장	70,000	50,000	30,000	25,000	
창원시립상복공원	70,000	50,000	30,000	25,000	
천안추모공원	100,000	80,000	50,000	30,000	
청주시목련공원	100,000	50,000	50,000	30,000	
춘천안식원	70,000	60,000	40,000	30,000	
충주시하늘나라	100,000	70,000	70,000	35,000	
태백시화장장	100,000	80,000	50,000	50,000	
통영시추모공원	100,000	70,000	50,000	40,000	
포항시구룡포화장장	40,000	30,000	20,000	10,000	
포항시우현화장장	50,000	40,000	30,000	20,000	
하늘내린도리안	70,000	60,000	40,000	30,000	
함안하늘공원(화장시설)	80,000	60,000	40,000	30,000	
홍성추모공원화장장	300,000	200,000	200,000	70,000	
화성함백산추모공원(화장)	160,000	130,000	100,000	50,000	

자료)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한국장례문화진흥원

3) 관외 사용료

〈표 2-66〉 전국 화장장의 관내 사용료

(단위: 원)

시설명(가나다순)	대인	소인	개장유골	죽은태아	비고
평균	622,492	373,525	286,356	189,259	
경주하늘마루	700,000	400,000	400,000	200,000	
고성군공설화장장	400,000	200,000	150,000	90,000	
공주나래원	1,000,000	900,000	400,000	200,000	
광양시화장장	530,000	320,000	320,000	160,000	
광주영락공원	900,000	800,000	340,000	800,000	
구미시추모공원	600,000	350,000	250,000	170,000	
군산시승화원	500,000	300,000	300,000	150,000	
김천시화장장	400,000	250,000	200,000	100,000	
김해추모의공원	500,000	300,000	200,000	125,000	
남도광역추모공원	500,000	200,000	150,000	40,000	
남원시승화원	600,000	300,000	300,000	150,000	
남해추모누리 영화원	500,000	300,000	200,000	200,000	
대구명복공원	1,000,000	700,000	500,000	400,000	
대전시정수원	570,000	290,000	170,000	140,000	
동해삼척 공동화장장(승화원)	600,000	400,000	300,000	200,000	
목포추모공원	550,000	200,000	150,000	40,000	
문경예송원	600,000	350,000	350,000	200,000	
밀양시공설화장시설	450,000	350,000	200,000	150,000	
부산영락공원	480,000	336,000	240,000	180,000	
사천시 누리원(화장시설)	500,000	300,000	150,000	120,000	
상주시승천원	500,000	350,000	300,000	180,000	
서남권추모공원	500,000	300,000	300,000	150,000	
서울시립승화원	1,000,000	400,000	400,000	200,000	
서울추모공원	1,000,000	400,000	400,000	200,000	
성남시장례문화사업소	1,000,000	500,000	400,000	300,000	
속초시승화원	700,000	400,000	300,000	200,000	
솔향하늘길	700,000	400,000	400,000	200,000	
수원시연화장 승화원	1,000,000	500,000	500,000		
순천시립 추모공원	405,000	202,000	202,000	135,000	

시설명(가나다순)	대인	소인	개장유골	죽은태아	비고
평균	622,492	373,525	286,356	189,259	
승화원(화장장)-여수	-	-	-	-	
안동장사문화공원	900,000	600,000	600,000	300,000	
양지공원	120,000	84,000	70,000	48,000	
영주시화장장	350,000	280,000	210,000	175,000	
용인 평온의 숲(나래원)	900,000	400,000	250,000	150,000	
울릉하늘섬공원	60,000	40,000	40,000	20,000	
울산하늘공원	800,000	500,000	300,000	250,000	
울진군립추모원	400,000	250,000	220,000	150,000	
원주추모공원 화장장	700,000	400,000	400,000	200,000	
은하수공원 해님의집(화장장)	640,000	520,000	245,000	200,000	
의성군공설화장장	900,000	500,000	500,000	250,000	
익산시정수원	500,000	300,000	300,000	150,000	
인천가족공원 화장시설	1,000,000	400,000	400,000	300,000	
전주시승화원	500,000	320,000	180,000	140,000	
정선하늘터	700,000	500,000	300,000	400,000	
제천시영원한쉼터	1,000,000	600,000	600,000	240,000	
진주시안락공원	352,000	286,000	198,000	154,000	
창원시립마산화장장	500,000	300,000	200,000	100,000	
창원시립상복공원	500,000	300,000	200,000	100,000	
천안추모공원	500,000	400,000	200,000	150,000	
청주시목련공원	500,000	200,000	200,000	100,000	
춘천안식원	700,000	500,000	400,000	300,000	
충주시하늘나라	500,000	350,000	260,000	130,000	
태백시화장장	700,000	500,000	300,000	400,000	
통영시추모공원	800,000	400,000	300,000	200,000	
포항시구룡포화장장	320,000	240,000	160,000	80,000	
포항시우현화장장	400,000	320,000	240,000	160,000	
하늘내린도리안	700,000	500,000	200,000	100,000	
함안하늘공원(화장시설)	500,000	350,000	250,000	150,000	
홍성추모공원화장장	600,000	300,000	300,000	200,000	
화성함백산추모공원(화장)	1,000,000	400,000	400,000	300,000	
평균	622,492	373,525	286,356	189,259	

자료)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한국장례문화진흥원

4. 시사점

- 제주 장사시설의 이용료는 전반적으로 낮게 책정되어 있음
- 공설봉안시설의 경우 지역마다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 봉안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평균적으로 봉안당은 40만원으로 책정되어 제주의 10만원과는 차이가 있음
- 공설자연장지의 경우 지역마다 차이는 있으나 평균적으로 잔디형은 42만원, 수목형은 85만원, 정원형은 54만원 등으로 사용료가 책정되어 있어 제주의 잔디형 10만원과는 차이가 있음
- 화장료 역시 관내 대인 기준으로 5만원으로 다른 지역의 10만원 가량보다 저렴함
- 그런데 화장료의 경우 지역 주민을 위해 저렴한 이용료를 부과하기 때문이며 관외 대인의 경우 제주는 12만원인데 반해 전국 평균은 62만원 가량으로 관내보다 6배 가량 높은 이용료를 부과하고 있음
- 이로써 관내 주민들에게는 낮은 이용료를 부과하여 발생하는 손실분을 관외 주민들에게 부담시켜 손실을 경감시키는 구조이나 제주의 경우 지리적 특성상 관외 이용비율이 현저히 낮기 때문에 이러한 효과가 거의 발생하지 않으므로 장사시설 전체적인 손실폭이 큰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앞으로 제주 장사시설의 낮은 이용료 수준을 전반적으로 전국 평균 수준으로 높일 필요가 있으며 관외 이용료도 좀더 인상하여 장사시설의 손실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음

제3차 제주특별자치도 장사시설 중·장기 수급계획



제3장 주민의식 조사

제3장 주민의식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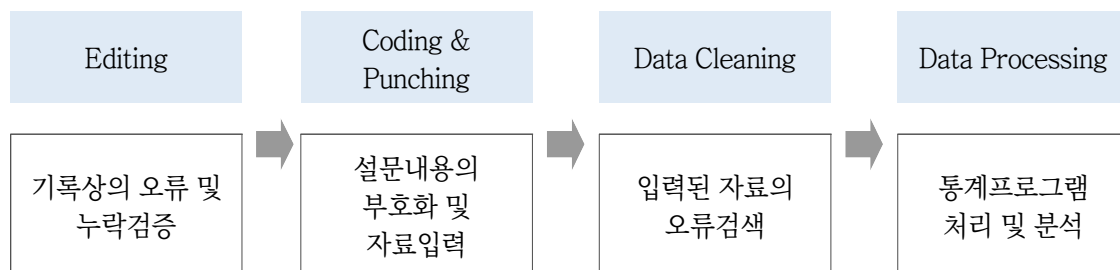
1. 조사 개요

1) 조사 목적

-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민을 대상으로 장례시설에 대한 인식 및 도입 방향, 희망하는 장례 방식 선호도 등 장사시설에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장사시설 수급 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2) 조사 대상 및 조사 방법

- 조사 기간: 2024년 4월 30일~ 5월 21일(3주간)
- 조사표본: 438부(회수 기준)
- 조사 대상: 제주특별자치도 거주 주민 대상
- 조사 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대면 및 배포조사
- 자료처리 및 분석 방법
 - 수집된 자료는 Editing, Coding & Punching, Cleaning, Data Processing 과정을 거친 후 SPSS 26.0 프로그램으로 통계처리 하였음



〈그림 3-1〉 자료처리단계

3) 조사 내용

- 장사시설 이용경험, 장사시설 서비스 만족도, 향후 장사시설 이용 의사, 신규 설치방안에 대한 의견 및 재개발 의견 등

〈표 3-1〉 주민의견 조사 주요 내용

구분	주요 조사 내용
응답자 일반사항	연령, 성별, 학력, 거주형태, 거주기간, 거주지역, 생활수준
장사방법에 관한 인식	- 본인이 희망하는 장례장소(예: 자택, 공설 장례식장 등) - 본인이 희망하는 장법(예: 매장, 화장) - 매장 시 희망하는 묘지유형 및 형태 - 화장을 희망하는 이유 - 화장 후 희망하는 유골처리 방법(예: 봉안시설, 자연장, 산골 등) - 선호하는 봉안시설 유형 - 선호하는 자연장시설 유형 - 한시적 매장제도에 대한 인식
제주도 장사정책	- 장사시설 중 자연장 인지여부 - 재개발된 장사시설의 건립 방향 장사시설(예: 자연장지, 봉안시설) - 자연장지를 희망하는 이유 - 제주도 장사시설을 이용하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것 - 추가 장사시설(화장시설 포함) 설치 필요 및 도입 찬성 또는 반대 여부 - 장사시설 설치 시 갈등해소를 위한 방안

2. 주요 조사 결과

-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장례시설에 대한 인식, 선호하는 장례 방식, 장사시설의 도입 방향에 대한 의견을 조사함
- 장례 장소 선호도: 전문장례식장을 선호하는 비율이 63.01%로 가장 높았고, 병원장례식장은 31.74%였으며 자택에서 장례를 치르고자 하는 비율은 매우 낮았음(0.46%)
- 장사방법 선호도: 화장을 선호하는 비율이 83.79%로 대다수를 차지하였고 매장을 선호하는 비율은 15.53%로 나타남
- 묘지 유형 희망도: 개인이나 가족묘지를 선호하는 비율이 9.59%로 가장 높았고, 공설묘지를 선호하는 비율이 6.16%로 뒤를 이음
- 매장 희망 이유: 전통적 관습 및 선례를 존중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5.94%로 가장 높음
- 화장 후 유골 안치 방법: 봉안시설에 안치하고자 하는 비율이 50.23%로 가장 높았고 자연장을 선호하는 비율도 20.09%로 나타남
- 자연장 인지도: 이름만 들어본다는 응답이 36.30%로 가장 많았으며, 자연장의 종류나 방법을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10.73%로 낮은 편이었음
- 자연장 긍정률: 자연장에 대해 긍정적이라는 응답이 41.10%, 매우 긍정적이라는 응답이 9.82%로 나타남
- 자연장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 환경보존 등 친환경적이라는 응답이 18.04%로 가장 높았음
- 자연장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 유골의 소홀한 관리 (2.97%)와 조상에 대한 예의 부족 (2.51%)이 주요 이유로 나타남
- 부족한 장사시설: 화장시설이 43.15%로 가장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봉안시설이 24.20%로 뒤를 이음

■ 시사점

- 조사 결과, 제주지역 주민들은 화장을 선호하며, 전문장례식장과 병원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르기를 희망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볼 때 현대 사회에서 간편하고 효율적인 장례 방식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졌음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음
- 화장을 선호하는 이유로는 화장 문화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자식에게 부담을 주기 싫다는 응답이 많았음. 이는 전통적인 매장 방식에서 벗어나,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화장 방식을 선호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음을 시사함
- 또한, 자연장에 대해 좋은 인식을 갖고 있으며 계속해서 긍정적 인식이 증가하고 있어 자연친화적인 장례 방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이에 따라, 공설의 경우 봉안시설과 비교할 때 자연장지 이용률이 봉안시설을 앞선 것으로 나타남. 이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자연장을 포함한 다양한 장사 선택지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 마지막으로, 화장시설과 봉안시설의 부족이 주요 문제로 지적되었음. 실제로는 지금 당장 시설의 공급이 부족한 것은 아니나 거리상 이용하기 쉽고 편리한 시설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판단됨. 이에 대한 대책으로 공설 봉안시설의 추가 설치보다는 각 지역에 배치되어 있는 기존 공설묘지의 정비 및 재개발이 필요함. 이 과정에서 경제적 지원을 통한 지역 주민의 반발 완화 및 인근 지역의 생활 환경 개선도 중요함

제4장 장사시설 중장기 수급계획

제1절	기본방향
제2절	장사시설 수요·공급 추계
제3절	장사시설 조성 방안
제4절	장사시설 설치·조성 관련 갈등해소 방안
제5절	효율적 장사시설 운영방안
제6절	공설·공동묘지·무연묘 등 조사와 처리 및 개발방안
제7절	장례문화 개선 및 발전 방안
제8절	연차별 추진계획

제4장 장사시설 중장기 수급계획

제1절 기본방향

1. 계획 수립의 기본 방향

1) 기본 전제

- 수립기간은 2024년~2028년까지의 5년간 계획으로 수립함
- 지역수급계획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종합계획과 지역수급계획 수립 지침 등 상위계획의 내용을 반영하여 수립됨
- 지역의 지리적 특성, 주민의 장사방법 선호 등을 분석하여 장사시설의 적정 수급을 통해 품위 있는 장례문화의 확산을 목표로 함
- 장기적 관점에서 향후 15년간 장사시설의 수요와 공급을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5년간 수급 분석 및 장사시설 확충을 실행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함
- 장기적으로는 관할 구역의 장사시설 수요 예측에 중점을 두되, 장사시설 확충, 기존 시설의 조경 보완 등 공간 재구성과 재정계획을 포함한 실행계획에 초점을 맞추어야 함

2) 상위계획(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 주요 추진방향

〈표 4-1〉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 주요 추진방향

분야	과제	현재(2022)	개선(2027)
지속 가능한 장사시설	화장수용능력 확대	- 지역별 화장시설 - 수급 불균형 존재	서울, 경기(특히동북부지역), 부산, 대구지역 화장로 확대로 지역별 수급 불균형 해소
	친자연적 수요자 중심	봉안 67.2%, 자연장 24.5%, 산분 8.2%('20년)	- 자연장지 이용률 확대(30%) - 산분장이용률(30%)
		획일적 형태 자연장지 조성	- 공원형 및 정원형, 수목형 자연장지 조성 - 복합 장사문화시설로 다변화
	집단묘지 재개발	만장된 집단묘지 정비 부진	- 분묘개장촉진 및 - 집단묘지 개발 활성화
"	평가제도 도입	장사시설 평가 미흡	-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 - 장사시설관리 내실화
장례서비스 질 제고	장사정책 협력 네트워크 강화	장사정책협의체구성·운영	상설자문기구설치·운영을 통한 협의·소통활성화
	장사제도 개선	- 자연장지 조성규제 합리화 - 장사서비스 개선	산분장 제도화 및 자연장지조성확대, 장사법 전면개정 추진
	장례지도사 인력관리	장례지도사 자격관리 미흡	장례지도사 관리체계 마련 및 위상 강화
	종사자 교육개선	장례식장 인력 교육수행	‘안치 연습을 하는 자’ 등 형평성 있는 교육 확대
국가책임 강화	재난대응강화	국가재난장례식장 지정 및 장례지원반 운영	재난대비 장사분야 비상운영체계 마련
	감염관리강화	보건 및 감염 관리 강화 필요	시신 감염정보 연계체계 마련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 무연고 사망자 국가장례지원 - 사업 실시	취약계층 장례지원 확대
	장사지원센터 역할강화	(한국장례문화진흥원) 위탁사업 수행기관 역할	(한국장례문화진흥원) 공공기관 위상 강화
새로운 장사문화 선도	장사정보시스템 고도화	- 화장예약서비스 제공 - 온라인 추모서비스 시작	- 차세대 장사정보시스템 구축 - 온라인 추모서비스 고도화
	대국민 장사서비스	- 거래명세서 발급 - 가격정보 등록	- 가격정보 현행화 및 편리성 확대 - 장사담당공무원 역량 강화
	웹다잉 기반 마련	- 중장년층·노년층위주 - 친자연적 장례문화 홍보	사전장례의향제도 도입
	인식개선 홍보	- 장사시설거부감·혐오감해소 - 미흡	기념일·기념주간행사및 장례문화 인식개선 확산

자료) 2023-2027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

2. 제주특별자치도 장사시설 수급계획 기본방향

1) 상위계획의 방향과 부합하는 추진방향 설정

-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보건복지부」의 국가 장사정책의 비전은 ‘장사정책 공적 책임 강화, 친자연·지속 가능한 장사시설 확산’으로 설정됨
- 이를 달성하기 위한 목표로 ‘지역별 균형 있는 장사시설 공급’과 ‘재난 대응 등 “국가 책임 강화”’에 따라 부족 화장로 확충, 산분장 이용률 제고,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 등의 목표가 있음
- 이를 감안할 때 제주에서도 계속해서 늘어가는 화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화장로의 확충 필요성 검토, 공설묘지 부지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자연장지 전환,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 등 복지 차원의 장사서비스 제공을 위한 방안 마련 등을 목표로 설정

2) 자연 친화적 접근

- 이번 국가 장사시설 수급계획은 국가장사 관련 기본 계획과 정책에 기초한 자연 친화적인 방향으로 접근함으로써 친환경적이고, 다음 세대에 대한 부담이 적은 종합장사시설의 확충 등을 통해 원스톱 서비스로 보다 편리한 장사 제도를 수립하고 있음
- 제주에서는 장사시설로 인한 천혜의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이를 잘 관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활용도가 낮은 공설묘지의 재정비 및 공원화 등 활용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자 함
- 님비(NIMBY) 현상이 발생하는 장사시설 특성 상 새로운 부지, 새로운 시설을 물색하기보다는 기존의 시설과 부지를 활용하여 필요한 시설을 공급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계획임
- 이러한 시설적, 서비스적 측면의 확충과 더불어 주민들의 장례문화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방향이 필요함

3) 장사 이미지 개선

- 장사시설을 혐오시설 이상이 아닌 우리 사회의 한 부분으로 친근한 시설로서 생활 편의시설이라는 인식 전환 캠페인과 함께, 이러한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설계단계에서부터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선진국에서 접근하는 방법처럼 장례식장이 장례를 위한 절차를 수행하는 장소 이상의 역할을 함으로써 더욱 밀접한 역할을 하도록 장려함
- 또한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동등하게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장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공영장례 정책, 서비스 및 시설을 공급하기 위한 제반 여건 등을 검토하고자 함

4) 제주 장사시설 수급계획 비전 및 목표

(1) 비전 및 목표

〈표 4-2〉 제주 장사시설 수급계획 비전 및 목표

비전	도민 누구나 함께 머무르는 친자연적 장사시설 확충
목표	• 도민 누구나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장사시설의 공급과 관리 • 제주특별자치도의 공적 책임 강화
세부목표	• 화장로 공급 관리 • 공설묘지의 활용 증대를 위한 자연장지 전환 조성 •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

비전	도민 누구나 함께 머무르는 친자연적 장사시설 확충		
목표	적절한 시기, 적정 수의 장사시설 공급과 관리 제주의 공적 책임 강화(공설장례식장, 공설묘지 개발·정비, 공영장례 지원 등)		
추진계획	장사시설의 설치·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화장수용능력 단계적 확대 • 친자연적·수요자 중심 장사시설 조성·관리 • 공설묘지의 자연장지 전환 및 개발 • 공설장례식장 등 확충 • 무연분묘 정비, 발생방지 방안	장사시설에 관한 갈등 조정 등에 필요한 사항 • 부대시설 운영권 부여 • 경제적 기반 마련으로 주민 소득 증진 지원 • 지역주민 지원을 통한 건립 유도 • 인근 주민지원 사업으로 마을시설 확충	제주 장례문화 개선 및 발전 방안 • 사업소 설치 등 장사시설 효율적 운영 개선 • ‘미리 준비하는 장례’ 확산 기반 마련 • 무연고자 취약계층 장례복지 확대 • 장례문화 인식개선 및 홍보

(2) 추진계획

〈표 4-3〉 제주 장사시설 수급계획 세부 추진계획

세부계획	주요 계획
화장수용능력 단계적 확대	장사시설의 설치·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친자연적·수요자 중심 장사시설 조성·관리	
공설묘지의 자연장지 전환 및 개발	
공설장례식장 설치 - 동부	
무연분묘 정비, 발생방지 방안	
부대시설 운영권 부여	장사시설에 관한 갈등 조정 등에 필요한 사항
경제적 기반 마련으로 주민 소득 증진 지원	
지역주민 지원을 통한 건립 유도	
인근 주민지원 사업으로 마을시설 확충	
‘미리 준비하는 장례’ 확산 기반 마련	제주 장례문화 개선 및 발전 방안
무연고자·취약계층 장례복지 확대	
장례문화 인식개선 및 홍보	
분묘설치기간 제한 정책 안내, 장례지도사 활용등	

5) 추진일정별 주요 사업

〈표 4-4〉 제3차 장사시설 수급계획 주요사업

(단위: 백만원)

구 분		사업 내용	중·장기 수급계획			비고
			‘24~28년	‘29년 이후 (~40년)	추정 사업비	
합계		화장로 확충 2만 기준	11,659	67,508	79,167	
주요 사업	화장로 확충	(1안) 양지공원 종합장사시설화	종합장사시설화 검토 등 기반 마련 (타당성, 공론화 등)	종합장사시설화 운영	21,000	화장로 2기
		(2안)서귀포시 종합장사시설 설치			45,000	화장로 4기
	봉안시설	공설봉안당 설치(필요시)	봉안 추이 검토	필요시 공설봉안당 설치 (종합장사시설 연계)	5,000	제3추모 공원 규모 (2만위)
	공설묘지 개선	❶ 공간정비 및 관리 (매장률 上.80%이상) ❷ 자연장 공간 조성 (매장률 下.20%이하) ❸ 공원화·재개발	· 대상지 2곳 선정·조성 · 분묘실태 조사	총 14개소 중 4개소 정비(❶), 7개소 개선(❷❸)	13,787	❶4개소 ❷5개소 ❸2개소
	자연장지 장법 다양화	제주 문화 연계한 다양화 (화초형, 수목형, 정원형, 수목장립 등)	대상지 1곳 조성 (서귀포추모공원)	용강별숲 미사용공간 확장	8,790	
	장례식장 확충	❶장례편의시설 → 공설장례식장	동부공설장례식장 신설 (설계 등 착수)	운영	3,650	서귀포 (동부)
		❷전문장례식장	병원·민간 등 확충	운영	-	서귀포 (시내)
운영 개선	시설 운영 현실화 (제주 장사시설 사용료 전국 최저 → 전국 평균 수준 인상 방안)		조례 개정·운영	제도 개선	-	
	공영장례 지원 및 인식전환을 위한 홍보		지속적 추진		188.7/ 1년	만원/년 평균

제2절 장사시설 수요·공급 추계

1. 기본전제

1) 수급분석 기본 방향

- 제주 장사시설 수급계획은 국가전략계획 수립의 기본방향과 전략을 기초로 정책방향을 설정함
-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친환경, 복지적 장사문화 구축을 장사정책의 국가비전으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제주 장사시설 수급계획에 있어서도 자연친화적 종합장사시설 확충에 역점을 두고 수급계획의 방향을 설정함

2) 수급분석 전제와 가정

- 수급추계의 기본전제는 수요와 공급으로 구분하는데, 수요는 추계기간과 수요대상, 공급은 시설유형과 공급단위로 나뉘며, 전체 수급 계획은 제주도민의 수요에 맞춘 안정적 공급과 제주의 전체 장사시설의 균형에 있음
- 장사문화가 급격하게 변화함에 따라 장사시설의 효율적인 공급 및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시설의 발전이 중장기적인 비전하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수급계획 대상기간을 2040년까지로 설정함
- 제주 장사시설의 수급추계는 현재 실시하고 있는 장사시설-화장장, 봉안시설, 장례식장 등의 시설을 포함함
- 제주특별자치도가 기본적으로 제공하거나 제공 계획을 가지고 있는 시설 유형으로만 실시하되, 현재의 장사에 대한 시민의식 및 욕구조사의 결과 나타난 선호도를 토대로 추계함

3) 장사시설 수급추계의 방법 및 절차

(1) 1단계: 인구 및 사망자 추계

- 장사시설 수요예측은 인구 및 사망자로부터 시작되며, 인구와 사망자 수는 2014~2023년의 최근 10년간의 제주 인구, 출생자, 사망자 등의 자료를 활용함
- 이를 통계적 기법을 적용하여 향후 2040년까지의 인구, 사망자 등을 추정함

(2) 2단계: 매장 및 화장수요 추정

- 사망자 중 화장자수 즉, 화장 수요는 2014년~2023년까지 10년간 누적된 시계열 자료를 가지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일정한 수준(2040년 화장률 95%)에 수렴할 것으로 가정하여 분석함
- 도출된 화장률을 이용하여 화장수요를 추정함
- 매장수요는 사망자수 중 화장수요를 뺀 수요로 추계함

(3) 3단계: 장사시설 유형별 수요추계

-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 수요를 2014년~2023년까지 10년간 누적된 시계열 자료를 가지고 각 시설별 주민의 선호도 변화를 반영하여 예상수요를 추계함

(4) 4단계: 장사시설 수급추계

- 장사시설 수요와 공급을 비교하여 향후 과부족 상태를 추계함

2. 인구 변동 추계

1) 인구 추계

(1) 출생·사망자 추이

- 아래의 표는 최근 10년간 제주 인구추이 및 출생·사망 현황임
- 제주 인구는 2023년 675,252명으로 2014년 대비 11.2% 감소하였음
- 출생아 수는 2023년 3,279명으로 2014년 대비 41.0% 감소하였으며, 사망자수는 2023년 4,700명으로 2014년 대비 41.3% 증가하였음
 - 코로나19 이후부터 사망자가 급격히 증가함

〈표 4-5〉 제주최근 10년 인구추이 및 출생·사망 현황

(단위: 명, 천명당)

구분	인구			출생아 수		사망자수	
	계	남	여	계	조출생률 (천명당)	계	조사망률 (천명당)
2014	607,346	304,656	302,690	5,556	9.1	3,326	5.4
2015	624,395	313,428	310,967	5,678	9	3,418	5.4
2016	641,597	322,545	319,052	5,533	8.6	3,532	5.5
2017	657,083	330,823	326,260	5,071	7.7	3,767	5.7
2018	667,191	335,719	331,472	4,861	7.2	3,971	5.9
2019	670,989	337,345	333,644	4,545	6.7	4,030	6.0
2020	674,635	338,609	336,026	4,014	5.9	3,986	5.9
2021	676,759	339,177	337,582	3,797	5.6	4,307	6.3
2022	678,159	339,590	338,569	3,639	5.3	4,799	7.0
2023	675,252	337,976	337,276	3,279	4.8	4,700	6.9

자료) 인구: 주민등록인구통계, 출생아수 및 사망자수: 국가통계포털(kosis.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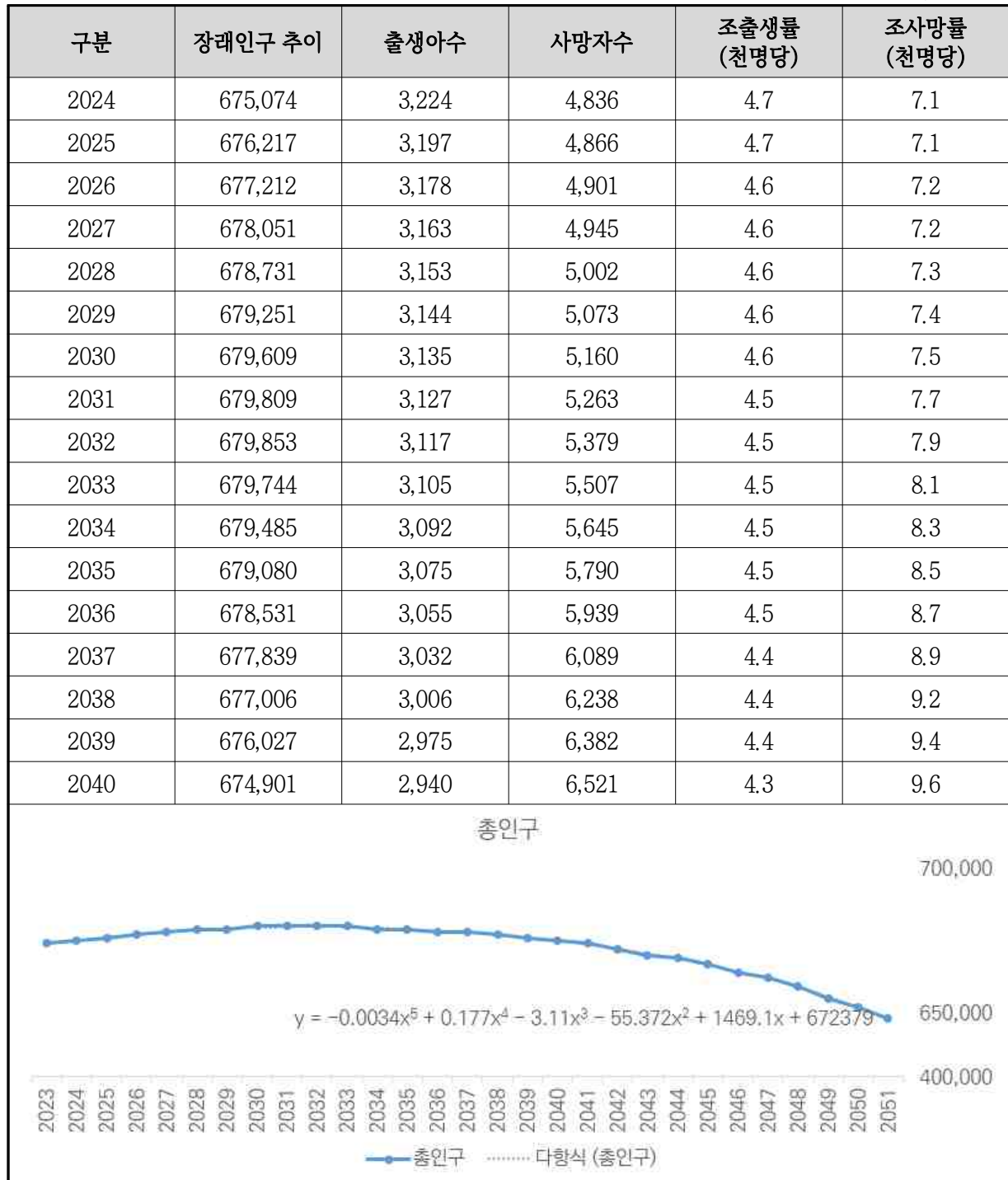
(2) 인구 및 출생·사망자수 추정

- 통계청에서는 2022년까지의 인구 추계를 기준으로 2052년까지의 시도지역 인구를 추계함¹¹⁾
 - 향후 30년간 연도별로 추정한 것으로 인구변동요인(출산, 사망, 이동)의 장래수준을 중위, 고위, 저위로 설정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중위로 설정한 값을 적용함
- 2024년부터 2040년까지의 인구 추계 값에 장래인구추계는 미래의 인구를 변동시키는 출산과 사망 및 국제순이동에 대한 가정에 기초해 작성한 결과이므로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음
 - 인구추계는 인구변동요인에 대한 특정 가정이 장래에 실현된다면 나타날 결과를 계산한 수치이므로, 실제 실현되는 인구와는 다를 수 있음
 - 정부정책변화(출산, 보건 및 외국인 정책 등) 또는 인구학적 행동의 특성 변화가 인구변동요인의 추세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 특히, 시간이 경과할수록 추계결과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게 됨
- 천명 단위로 산출되었기 때문에 이를 엑셀 차트 분석을 통하여 5차함수 다항식의 추세선을 도출하고 이에 따른 연도별 인구, 사망자수 등을 재산출하여 적용함
- 예측 결과 제주의 장래인구는 2034년까지 조금씩 증가하였다가 2040년에는 674,901명으로 2024년과 거의 유사해질 것으로 예측됨
- 출생아수는 2040년까지 2,940명으로 2024년 대비 약 8.8%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사망자수는 2040년까지 6,521명으로 34.8%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됨

11) 시도별 장래인구추계(2022~2052), 통계청, 2024. 5. 28. 발표

〈표 4-6〉 제주특별자치도 장래인구 추이(2023~2040)

(단위: 명, 천명당)



자료) 시도별 장래인구추계(2022~2052), 통계청, 2024. 5. 28.

3. 화장 추이

1) 연도별 화장률

- 화장률이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2018년 70.8%이던 화장률이 2023년에는 82.3%까지 증가한 추이를 나타냄

〈표 4-7〉 연도별 화장률

(단위: 명, 건, %)

구분	인구수	사망자수(A)	화장수(B)	화장률(B/A)	비 고
2018년	667,191	3,971	2,812	70.8%	
2019년	670,989	4,030	2,946	73.1%	
2020년	674,635	3,986	3,044	76.4%	
2021년	676,759	4,307	3,350	77.8%	
2022년	678,159	4,799	3,892	81.1%	
2023년	675,252	4,700	3,870	82.3%	

주) 위의 화장률은 시설의 공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서 양지공원에서 시행된 화장횟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것으로 앞선 현황에서 제시된 주민등록 기준 제주 주민을 기준으로 산출된 화장률과는 차이가 있음¹²⁾
자료) 제주특별자치도 내부자료

2) 향후 화장률 추정

- 화장률의 추이를 살펴보면 제주의 화장률은 전국과 시기의 차이는 있으나 증가 추세는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음
- 제주의 화장률은 전국의 평균 화장률과 비교해보면 약 7년 정도의 차이를 두고 증가해가는 것을 볼 수 있음
- 따라서 제주의 5년 후인 2028년은 이보다 7년 전인 2021년의 전국 화장률인 90.8%로 추정하고 단계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적용하여 향후 화장수요를 추정하고자 함

12) 한국장례문화진흥원에서 공표하는 지역별 화장률은 다른 지역에서 사망하여 그 지역 화장시설에서 화장한 경우에도 제주의 화장자수에 포함하고, 양지공원 화장장을 이용한 다른 지역민의 값은 배제되어 집계되기 때문에 제주의 시설 수급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양지공원에서 이루어진 화장자 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함

〈표 4-8〉 연도별 화장률 추이 비교

(단위: %)

구분	15	16	17	18	19	20	21	22	23
전국	80.8	82.7	84.6	86.8	88.4	89.9	90.8	91.7	92.5
제주	64.2	67.7	69.4	70.8	73.1	76.4	77.8	81.1	82.3

주) 한국장례문화진흥원에서 공표한 화장률을 토대로 비교를 위해 2018년 이후 제주 화장률은 위의 값으로 보정함

3) 화장수요 추정

- 제주 관내 사망자의 화장 수요는 2024년 4,091구에서 2028년 4,542구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함(화장률 84.6%→90.8%)
- 최근 관외 이용자 및 개장유골의 비율을 반영하여 양지공원의 화장 이용수요는 2024년 13,596구, 2028년 15,095구의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함
- 이를 일평균 횡수로 환산하면 2024년 일평균 37.2구에서 2028년 일평균 41.4구의 화장 필요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표 4-9〉 화장수요 추정

(단위: 명, %)

구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40년
일반 시신	사망자수	4,836	4,866	4,901	4,945	5,002	6,521
	화장률(%)	84.6	86.8	88.4	89.9	90.8	95.0
	화장수요	4,091	4,224	4,332	4,446	4,542	6,195
개장유골(232.4%)		9,505	9,814	10,065	10,330	10,553	14,394
연간		13,596	14,038	14,397	14,776	15,095	20,589
일평균 화장횟수		37.2	38.5	39.4	40.5	41.4	56.4
일반시신		11.2	11.6	11.8	12.2	12.5	17.0
개장유골		26.0	26.9	27.6	28.3	28.9	39.4

- 주1) 화장률은 제주의 수치가 전국의 화장률 수치 흐름을 따르는 것을 감안하여 적정수치를 반영하였고 2029년 이후의 수치는 목표치 95%에 대하여 등차급수법에 따라 산정함
- 주2) 개장유골은 최근 5년간의 제주 주민 기준 일반시신 화장량 대비 개장유골 화장 비율(232.4%) 평균을 적용함

4) 연도별 필요 화장로수 추계 결과

-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제2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 당시에 제시된 화장로 수급 추계 방식은 다음과 같음¹³⁾

〈표 4-10〉 화장로 수급 체계방식

화장로 부족 = 현재 화장로 수 - 필요 화장로 수(예비 화장로 포함)	
○ 필요 화장로 수 = 화장건수(수요) / (1로 당 1일 적정 처리건수 4건 × 360일)	
- 화장건수(수요) = (사망자 수 × 화장률) + (죽은 태아 + 개장유골)	
* 예비 화장로 : 고장 등에 대비하여 시설 당 최소 1로씩 필요	
- 화장로 적정 처리건수(4건) : 화장로 1로 당 1일 적정한 처리건수	

자료) 제2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2018.03.), 보건복지부

- 위의 조건에 따라 제주에서 필요한 화장로 수를 추정한 결과 2028년까지 6로, 2040년까지 총 7로의 화장로가 필요한 것으로 산정됨
- 현재 양지공원에서 가지고 있는 화장로 개수는 8로이므로 공급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됨
- 개장유골 화장로 공급 추가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는 하지만 최근 7년간 개장유골 화장량의 큰 변화는 없었으며 개장유골 특성상 지속적으로 화장량이 증가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윤달과 같이 일정시점에 몰리는 것이 문제로 볼수 있기 때문에 사망 후 바로 화장해야 하는 일반시신과 달리 이는 화장 예약 시스템을 통해 조절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지금 상황에서 개장유골 전용 화장로를 추가 전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됨
- 다만 주민의견 결과 양지공원의 경우 지리적으로 제주 동·서부, 서귀포 해안 지역 등에서 거리가 멀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외곽 지역에 소규모 화장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검토해볼 수 있음

13)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에는 관련 내용 언급이 없어 제2차 계획의 내용을 준용함

〈표 4-11〉 화장시설 필요 화장로 수 추계

(단위: 회, 기)

구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40년
화장 수요 (회)	일반시신	4,091	4,224	4,332	4,446	4,542	6,234
	개장유골 (전체의 4분의1)	2,376	2,454	2,516	2,583	2,638	3,621
	계	6,467	6,678	6,848	7,029	7,180	9,855
일평균 화장 횟수 (화장 수요 ÷ 365일)	일반시신	11.2	11.6	11.9	12.2	12.4	17.1
	개장유골	6.5	6.7	6.9	7.1	7.2	9.9
	계	17.7	18.3	18.8	19.3	19.7	27.0
화장로 공급 필요량	일반시신 (일평균 ÷ 4회 ¹⁴⁾)	2.8	2.9	3.0	3.0	3.1	4.3
	개장유골 (일평균 ÷ 6회)	1.1	1.1	1.1	1.2	1.2	1.7
	예비 1기	1	1	1	1	1	1.0
	합계	4.9	5.0	5.1	5.2	5.3	6.9

주) 양지공원 화장장에는 한번에 4기의 화장이 가능한 개장유골 화장을 위한 전담 화장로가 있어 전체 수요의 4분의 1로 적용하고 일평균 횟수는 6회로 적용함

14) 하루 적정처리건수를 3회로 낮추어 볼 경우 수치상 2038년부터 화장로가 부족해질 것으로 예상됨

4. 매장 수요 추계

1) 매장 현황(자체 집계¹⁵⁾)

- 제주특별자치도의 사망자는 2013년 3,317명에서 2023년 4,700명으로 증가하였으며 그 중 매장자 수는 1,331명에서 921명까지 감소함
- 2021년 들어 매장자가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사망자가 증가한 영향도 있겠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몰림 현상으로 화장이 어려워 매장을 택한 영향도 있을 것으로 추정함

〈표 4-12〉 매장 현황

(단위: 명)

연도별	사망자	매 장 자				비고
		계	공설	기타	매장률(%)	
2013	3,317	1,331	137	1,194	40.1	
2014	3,300	1,205	99	1,106	36.5	
2015	3,339	1,196	101	1,095	35.8	
2016	3,542	1,145	77	1,068	32.3	
2017	3,738	1,143	101	1,042	30.6	
2018	3,971	1,187	94	1,093	29.9	
2019	4,030	1,065	73	992	26.4	
2020	3,986	1,049	46	1,003	26.3	
2021	4,307	1,110	61	1,049	25.8	
2022	4,799	1,037	47	990	21.6	
2023	4,700	991	70	921	21.1	

주) 사망자 수 : 주민등록 인구통계 지역별 사망말소 현황 기준(행정안전부)

15) 도, 각 행정시 등 개별적으로 집계된 매장 신고 등의 수치로 추정된 것으로 전체 사망자 중 화장자를 뺀 값보다 다소 높게 집계되어 있음

○ 지역별로 보면 제주시보다는 서귀포시의 매장률은 다소 높게 나타남

〈표 4-13〉 행정구역별 매장 현황

(단위: 명)

구 분	제주시					서귀포시				
	사망자	매 장 자			매장률	사망자	매 장 자			매장률
		계	공설묘지	기타			계	공설묘지	기타	
2013	2,249	796	61	735	35.4	1,068	535	76	459	50.1
2014	2,194	682	52	630	31.0	1,106	523	47	476	47.2
2015	2,264	718	58	660	31.7	1,075	478	43	435	44.4
2016	2,440	689	24	665	28.2	1,102	456	53	403	41.4
2017	2,580	693	52	641	26.9	1,158	450	49	401	38.9
2018	2,702	707	44	663	26.2	1,269	480	50	430	37.8
2019	2,726	608	38	570	22.3	1,304	457	35	422	35.1
2020	2,700	564	17	547	20.8	1,286	485	29	456	37.7
2021	2,953	668	31	637	22.6	1,354	442	30	412	32.6
2022	3,271	608	23	585	18.6	1,528	422	24	405	28.1
2023	3,222	569	27	542	17.7	1,478	422	43	379	28.5

주) 사망자 수 : 주민등록 인구통계 지역별 사망말소 현황 기준(행정안전부)

2) 매장 수요 추이

- 아래는 화장수요를 바탕으로 추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사망자수에서 화장하지 않는 사망자수로 산출한 매장수요임
- 2019년~2040년까지의 매장률 및 화장률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음
- 제주의 매장자수는 2023년 830명(매장률 17.7%)으로 추정되고 화장률의 지속적인 증가와 대비되어 2028년 460명(매장률 9.2%)으로 매장률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2040년에는 매장률 5.0%인 326명까지 감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표 4-14〉 연도별 사망자, 화장자, 매장자 현황 및 추계(2019~2040)

(단위: 명, %)

연도	사망자수 (명)	화장자 수 (명)	매장자 수 (명)	화장률 (%)	매장률 (%)	비고
2019	4,030	2,946	1,084	73.1	26.9	
2020	3,986	3,044	942	76.4	23.6	
2021	4,307	3,350	957	77.8	22.2	
2022	4,799	3,892	907	81.1	18.9	
2023	4,679	3,914	765	83.7	16.3	주)
2024	4,836	4,091	745	84.6	15.4	
2025	4,866	4,224	642	86.8	13.2	
2026	4,901	4,332	569	88.4	11.6	
2027	4,945	4,446	499	89.9	10.1	
2028	5,002	4,542	460	90.8	9.2	
2029	5,073	4,624	449	91.2	8.9	
2030	5,160	4,721	439	91.5	8.5	
2031	5,263	4,834	429	91.9	8.2	
2032	5,379	4,959	420	92.2	7.8	
2033	5,507	5,097	410	92.6	7.5	
2040	6,521	6,195	326	95.0	5.0	

주) 2023년의 수치는 한국장례문화진흥원에서 공표하는 2023년 화장률 수치와 동기화하기 위하여 해당 자료의 값을 적용함

5. 봉안 수요 추계

1) 최근 5년간 안치 추이 분석

○ 최근 5년간 제주의 사망자수와 관내 주민의 봉안당 안치 비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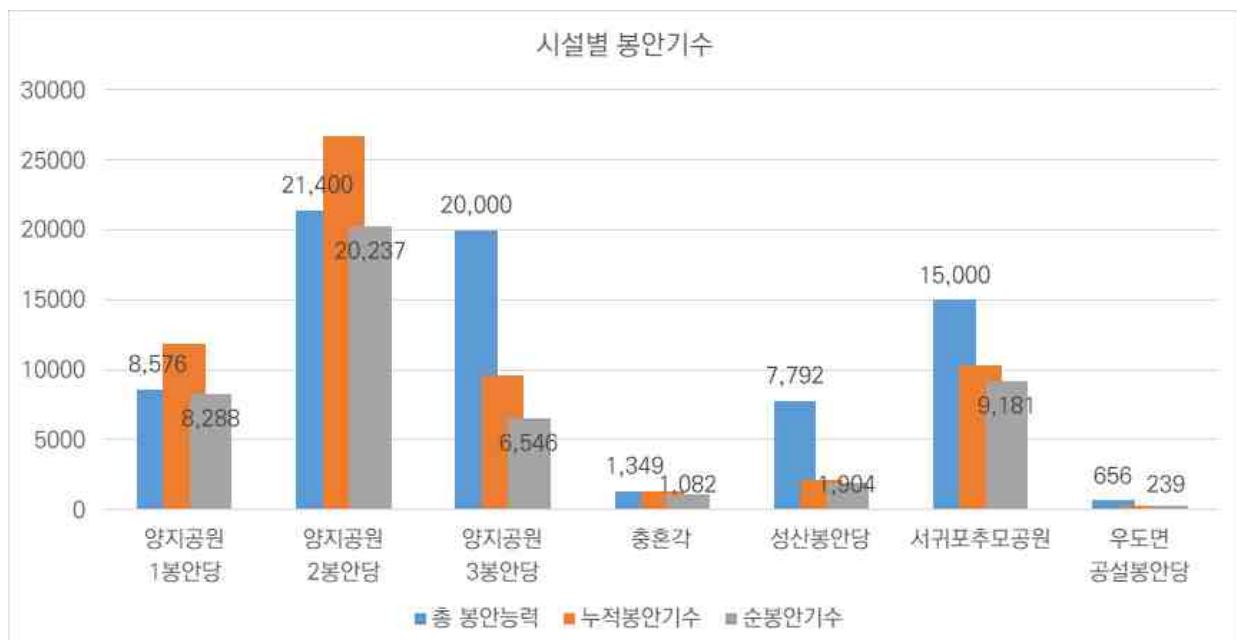
○ 최근 5년을 기준으로 볼 때 공설봉안시설에 안치된 기수는 11,192기에 해당함

〈표 4-15〉 공설봉안당 안치 추이

(단위: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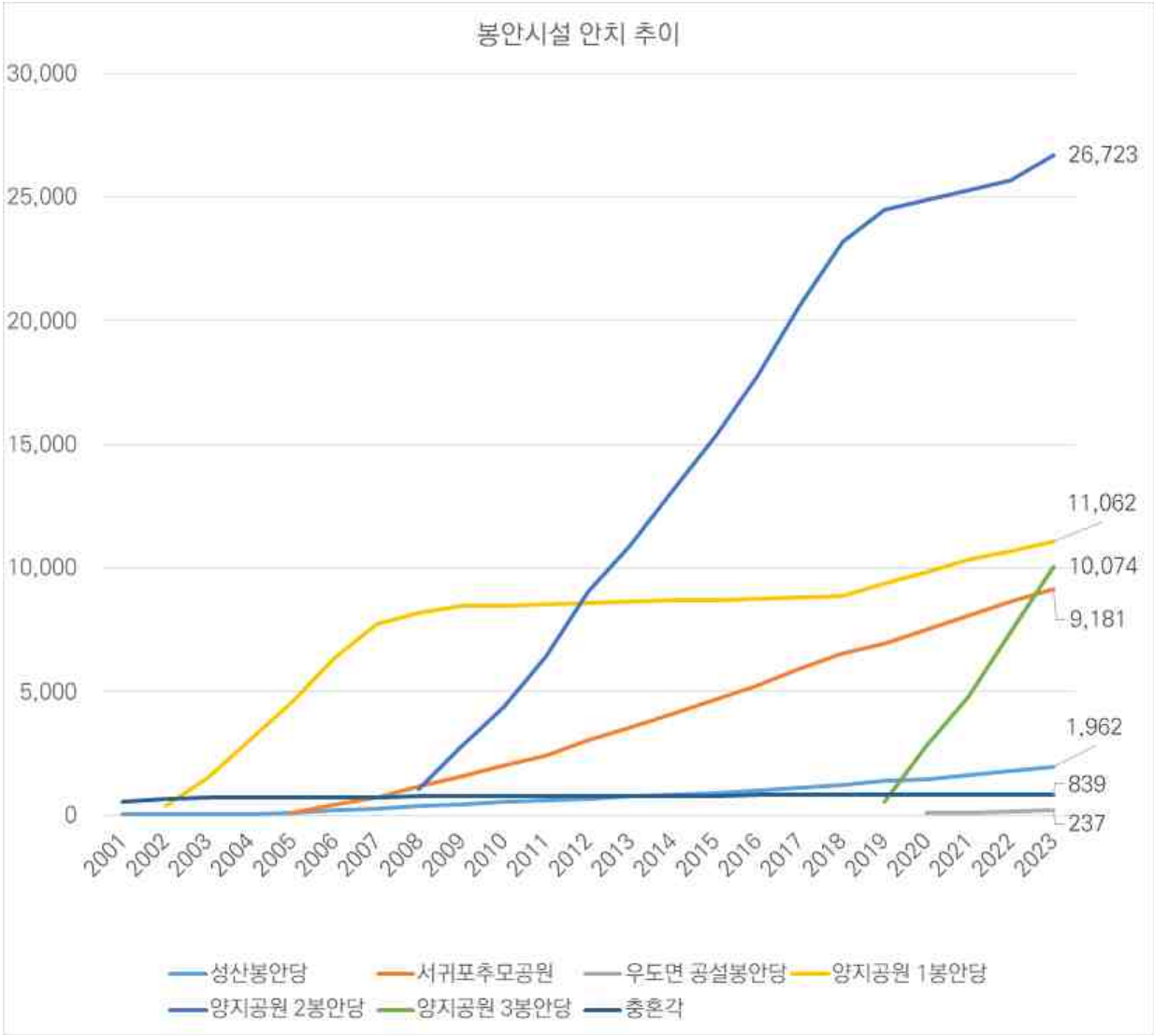
구분	양지공원				성산 봉안당	서귀포 추모공원	우도면 공설봉안당	합계
	1추모의집	2추모의집	3추모의집	총혼각				
2019	151	745	561	-24	125	372	-	1,930
2020	94	-312	2,057	-17	93	406	95	2,416
2021	124	-40	1,717	-1	68	435	7	2,310
2022	56	-521	1,682	-16	153	375	70	1,799
2023	152	234	1,881	-14	129	290	65	2,737
계	577	106	7,898	-72	568	1,878	237	11,192

주) 안치자수: 반환¹⁶⁾기수를 합쳐서 산정함



〈그림 4-1〉 공설봉안당 봉안현황

16) 반환된 유골은 주로 자연장지, 호국원에 안장되는 것으로 파악됨



<그림 4-2> 공설봉안당 안치 추이

2) 봉안 수요 추계

- 최근 5년간의 비율을 볼 때 개장유골은 화장자수 대비 약 2.25배 가량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봉안시설 안치 비율은 최근 5년간의 증감률을 반영한 봉안시설 이용비율을 각 연도별로 적용하여 전체 공설 봉안시설의 향후 이용 추이를 산정함
- 사망자수 증가, 개장유골 증가 추세가 계속된다면 봉안시설 이용자도 조금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17)자연장 확산과 봉안공간 반환량 증가로 봉안시설 이용비율은 조금씩 감소할 수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음

〈표 4-16〉 봉안시설 안치 추계

구분	봉안시설 안치자수(기)	화장자수(명)	개장유골(기)	봉안시설 이용비율	비고
2019	2,953	2,946	5,445	35.2%	
2020	3,817	3,044	8,679	32.6%	
2021	3,578	3,350	5,968	38.4%	
2022	4,224	3,892	7,964	35.6%	
2023	4,833	3,870	10,499	33.6%	
2024	4,522	4,091	9,505	33.3%	
2025	4,693	4,224	9,814	33.4%	
2026	4,650	4,332	10,065	32.3%	
2027	4,656	4,446	10,330	31.5%	
2028	4,680	4,542	10,553	31.0%	
2029	4,764	4,624	10,744	31.0%	
2030	4,864	4,721	10,969	31.0%	
2031	4,981	4,834	11,232	31.0%	
2032	5,110	4,959	11,522	31.0%	
2033	5,252	5,097	11,843	31.0%	
2034	5,403	5,244	12,184	31.0%	
2035	5,563	5,399	12,545	31.0%	
2036	5,728	5,559	12,916	31.0%	
2037	5,895	5,721	13,293	31.0%	
2038	6,061	5,882	13,667	31.0%	
2039	6,224	6,041	14,036	31.0%	
2040	6,383	6,195	14,394	31.0%	

주) 안치자수: 반환기수 미포함

17) 사망자 및 개장유골의 자연장 이용률이 예상보다 크게 증가할 경우 봉안시설 이용자는 감소추세로 돌아설 수 있음

- 앞서 본 바와 같이 현재 자연장지 확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므로 단기간 내에 봉안당을 건립하기보다는 이용 추이를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함
- 예를 들어, 봉안시설의 안치 추이가 유지될 경우에 안치가능 공간이 1만기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2030년 정도에는 추이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봉안공간 확보에 대한 검토를 시작하는 것이 적절할 것임
- 봉안시설 이용률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요인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음
 - 자연장지 이용률 증대: 봉안시설 수요 감소
 - 반환공간 재이용률 저조: 봉안시설 수요는 동일하나 공간 사용(부족) 속도가 빠름
 - 제2공항 건설에 따라 발생하는 개장유골 등이 최소 3,500여기 가량 될 것으로 예상하고 이를 수용하는 목적을 겸하여 성산읍 봉안당에 추가 안치공간을 조성하였음
 - 실제 발생량은 이보다 많을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개발과정이 진행될 경우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표 4-17〉 반환량을 감안한 봉안공간 추계

구분	봉안시설 안치자수(기)	반환(기)	안치가능공간(기)	비고
2019	2,953	1,023	36,558	
2020	3,817	1,401	34,142	
2021	3,578	1,268	31,832	
2022	4,224	2,425	30,033	
2023	4,833	2,096	27,296	
2024	4,522	1,643	24,417	
2025	4,693	1,767	21,490	
2026	4,650	1,840	18,680	
2027	4,656	1,954	15,978	
2028	4,680	1,860	13,157	
2029	4,764	1,812	10,206	
2030	4,864	1,846	7,188	
2031	4,981	1,862	4,070	
2032	5,110	1,867	827	
2033	5,252	1,850	-2,576	
2034	5,403	1,848	-6,131	
2035	5,563	1,855	-9,839	
2036	5,728	1,856	-13,711	
2037	5,895	1,855	-17,751	
2038	6,061	1,853	-21,959	
2039	6,224	1,853	-26,330	
2040	6,383	1,854	-30,859	
평균	4,947	1,794		

주) 반환량은 해당 연도의 직전 5개년 반환량 평균값을 적용함

- 각 지역별로 접근성에 따라 이용 정도가 다른 점을 감안하여 지역별로 봉안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제주시 봉안 추계

- 제주시에 위치한 봉안시설의 잔여공간은 2023년말 기준 15,589기임
- 각 시설별 잔여공간의 비율, 최근 5년간의 반환량 등을 감안하면 제주시의 봉안시설은 2030년 중 만장될 것으로 예상되며 시설별로 제주시 봉안 수요를 배분할 경우 다음과 같음

〈표 4-18〉 제주시 봉안 수요 추계

구분	제주시 봉안 수요	양지공원 1추모의집	양지공원 2추모의집	양지공원 3추모의집	총혼각	우도면 공설봉안당	잔여공간
2023년 현재 잔여공간		288	1,163	13,454	267	417	15,589
2024	2,239	-253	-398	2,857	-14	47	13,350
2025	2,280	-154	-242	2,633	-12	57	11,070
2026	2,337	-48	-41	2,388	-12	49	8,732
2027	2,320	68	134	2,073	-14	58	6,412
2028	2,481	175	444	1,820	-13	55	3,931
2029	2,593	294	797	1,461	-13	53	1,339
2030	2,643	668	1,474	459	-13	54	-1,305
2030년말 잔여공간		-462	-1,006	-238	358	43	-1,305

주1) 시 전체 봉안수요: 지역별 사망자수 대비 봉안시설 이용 비율 등을 반영하여 지역별(제주/서귀포) 전체 봉안수요를 안분함

주2) 시설별 봉안수요: 지역별로 안분한 전체 봉안 수요를 시설별로 최근 5년간 안치 및 반환량 평균 등을 반영하여 안분함

■ 서귀포시 봉안 추계

- 서귀포시에 위치한 봉안시설의 잔여공간은 2023년말 기준 11,707기임
- 각각 시설별 잔여공간의 비율, 최근 5년간의 반환량 등을 감안하면 서귀포시의 봉안시설은 2038년 중 만장될 것으로 예상되며 시설별로 서귀포시의 봉안 수요를 배분할 경우 다음과 같음

〈표 4-19〉 서귀포시 봉안 추계

구분	서귀포시 봉안 안치자수	성산봉안당	서귀포추모공원	잔여공간
2023년 현재 잔여공간		5,888	5,819	11,707
2024	640	383	257	11,067
2025	646	394	252	10,421
2026	473	310	163	9,948
2027	382	272	110	9,566
2028	339	249	90	9,227
2029	358	252	106	8,869
2030	374	263	3,611	4,995
2031	417	285	132	4,578
2032	477	316	161	4,101
2033	552	353	199	3,549
2034	637	395	242	2,912
2035	730	442	288	2,182
2036	829	493	336	1,353
2037	931	544	387	422
2038	1,036	596	440	-614
2038년말 잔여공간		340	-954	-614

- 주1) 시 전체 봉안수요: 지역별 사망자수 대비 봉안시설 이용 비율 등을 반영하여 지역별(제주/서귀포) 전체 봉안수요를 안분함
- 주2) 시설별 봉안수요: 지역별로 안분한 전체 봉안 수요를 시설별로 최근 5년간 안치 및 반환량 평균 등을 반영하여 안분함
- 주3) 2030년 서귀포추모공원의 안치 예상수치는 제2공항 건설이 시작되면서 해당 부지에 대한 개장이 이루어질 것으로 추정하여 당초 예상 수치인 3,500여기의 개장 유골이 발생한다고 가정한 값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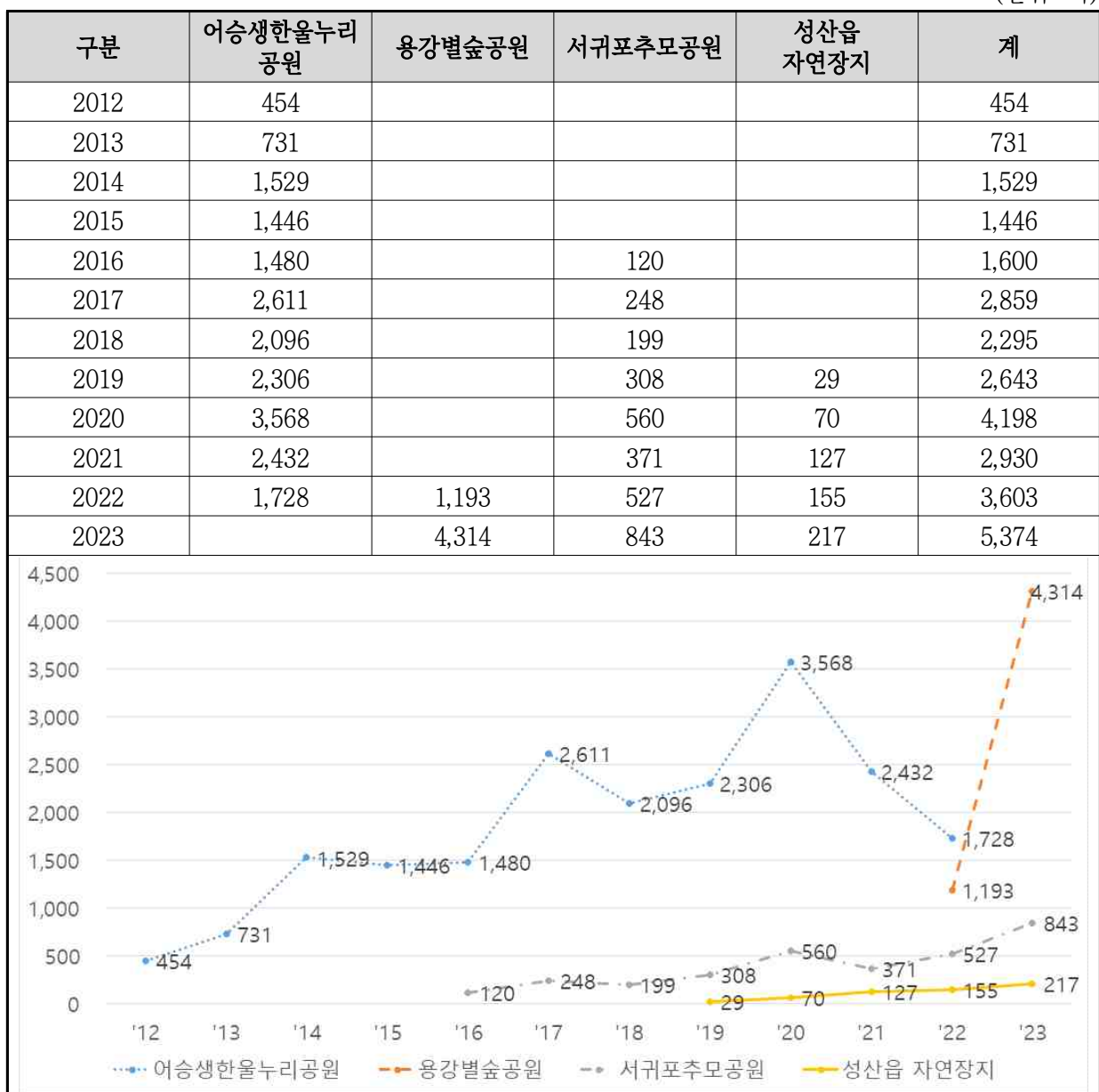
6. 자연장지 수급분석

1) 최근 5년간 안치 추이 분석

- 2012년 어승생한울누리공원이 조성된 이후 공설자연장지 안치 추이는 다음과 같음
- 특히 윤달이 있었던 2014, 2017, 2020, 2023년에는 묘지의 개장이 늘어나면서 자연장지 이용도 많아짐

〈표 4-20〉 공설자연장지 안치 추이(연도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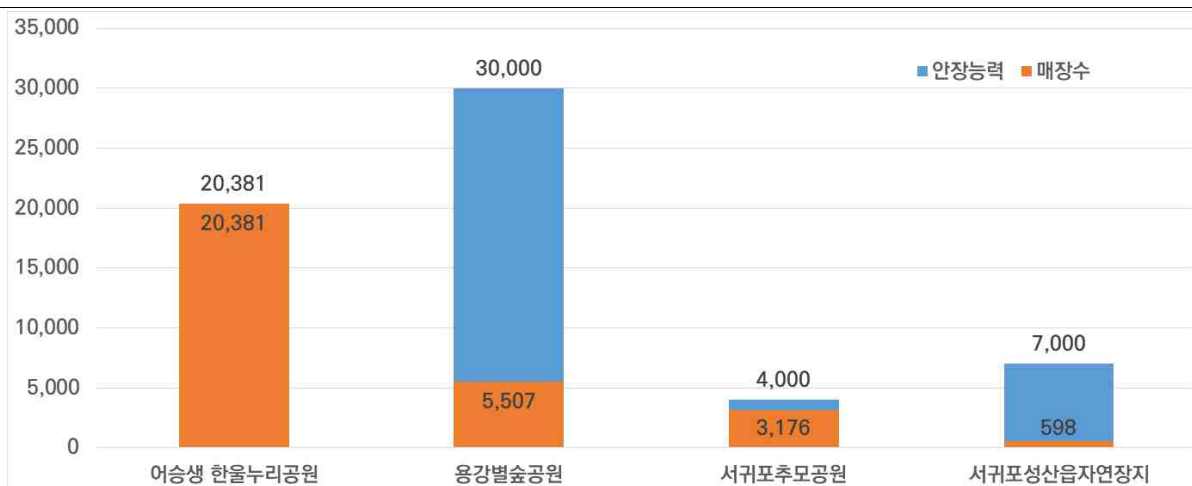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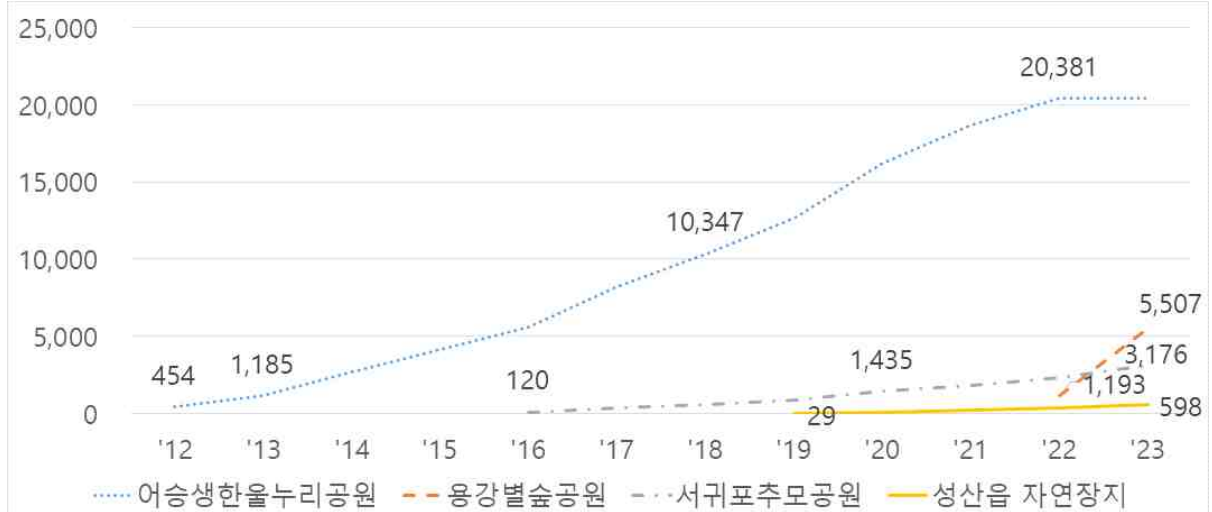
(단위: 기)



〈표 4-21〉 공설자연장지 안치 추이(누적)

(단위: 기)

구분	어승생한울누리공원	용강별숲공원	서귀포추모공원	성산읍 자연장지	비고
2012	454				
2013	1,185				
2014	2,714				
2015	4,160				
2016	5,640		120		
2017	8,251		368		
2018	10,347		567		
2019	12,653		875	29	
2020	16,221		1,435	99	
2021	18,653		1,806	226	
2022	20,381	1,193	2,333	381	
2023	20,381	5,507	3,176	599	



2) 자연장지 수요 추계

- 최근 5년간의 비율을 볼 때 자연장지 이용비율은 30%대에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이를 반영하여 화장자수와 개장유골 수에 적용하여 자연장지 예상 이용량을 추계함
- 사망자수의 증가, 장사문화 변화 등에 따라 자연장지 이용자는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다른 장사시설과 달리 자연장지는 조례에 따라 정해진 40년을 사용하고 나면 자동 반환되며 해당 공간은 다시 사용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음

〈표 4-22〉 자연장지 안치 추계

구분	안치자수 (기)	잔여공간 (기)	화장자수 (명)	개장유골 (기)	자연장지 이용비율(%)	비고
2019	2,643	47,824	2,946	5,445	31.5%	
2020	4,198	43,626	3,044	8,679	35.8%	
2021	2,930	40,696	3,350	5,968	31.4%	
2022	3,603	37,093	3,892	7,964	30.4%	
2023	5,374	31,719	3,870	10,499	37.4%	
2024	5,308	26,411	4,091	9,505	39.0%	
2025	5,600	20,811	4,224	9,814	39.9%	
2026	6,095	24,716	4,332	10,065	42.3%	
2027	6,797	17,919	4,446	10,330	46.0%	
2028	7,312	10,607	4,542	10,553	48.4%	
2029	7,444	3,163	4,624	10,744	48.4%	
2030	7,600	-4,437	4,721	10,969	48.4%	
2031	7,782	-12,219	4,834	11,232	48.4%	
2032	7,983	-20,202	4,959	11,522	48.4%	
2033	8,206	-28,408	5,097	11,843	48.4%	
2034	8,442	-36,850	5,244	12,184	48.4%	
2035	8,692	-45,542	5,399	12,545	48.4%	
2036	8,949	-54,491	5,559	12,916	48.4%	
2037	9,210	-63,701	5,721	13,293	48.4%	
2038	9,470	-73,171	5,882	13,667	48.4%	
2039	9,725	-82,896	6,041	14,036	48.4%	
2040	9,973	-92,869	6,195	14,394	48.4%	

주) 자연장지 이용비율 = 안치자수 ÷ (화장자수 + 개장유골)

2024년부터는 최근 5년간의 연평균 자연장지 이용비율 증가율을 반영하여 산정하였으며 다음계획기간인 2029년부터는 2028년과 동일한 비율을 적용함

- 앞서 추정한 자연장지 전체 이용 추계를 바탕으로 시설별 위치, 잔여공간 등을 감안하여 시설별 안치량을 추정한 값은 다음과 같음

〈표 4-23〉 자연장지별 안치 추계

(단위: 기)

구분	어승생한울누리 공원	용강별숲공원	서귀포추모공원	성산읍 자연장지	계
2018	2,096	-	199	-	2,295
2019	2,306	-	308	29	2,643
2020	3,568	-	560	70	4,198
2021	2,432	-	371	127	2,930
2022	1,728	1,193	527	155	3,603
2023	-	4,314	843	217	5,374
2024	-	3,950	824	534	5,308
2025	-	4,167	-	1,433	5,600
2026	-	4,536	1,190	369	6,095
2027	-	5,058	1,301	438	6,797
2028	-	5,441	1,382	489	7,312
2029	-	5,539	1,402	503	7,444
2030	-	5,655	1,427	518	7,600
2031	-	5,790	1,455	537	7,782
2032	-	5,939	1,486	558	7,983
2033	-	6,105	1,520	581	8,206
2034	-	6,281	1,556	605	8,442
2035	-	6,467	1,595	630	8,692
2036	-	6,658	1,634	657	8,949
2037	-	6,852	1,674	684	9,210
2038	-	7,045	1,713	712	9,470
2039	-	7,236	1,751	738	9,725
2040	-	7,420	1,789	764	9,973

주1) 각 시설별 안치량: 사망자수에 따라 자연장지 이용률을 반영한 안치량을 행정시별로 분배한 값과 시설별 최근 5년간 안치량 증가율을 반영하여 추정한 값을 평균하여 시설별 안치량을 추정함

주2) 서귀포추모공원은 2025년 일시적으로 만장되었다가 2026년 1만기 분량의 추가 공간이 마련될 예정임

○ 전체적인 수치로 보면 자연장지는 2030년 중 만장될 것으로 예상되나 앞의 안치 추계에 따라 시설별 만장시기를 추정해보면 다음과 같음

- 용강별숲공원: 2029년, 서귀포추모공원 2033년, 성산읍 자연장지: 2034년

〈표 4-24〉 자연장지별 잔여공간 추계

(단위: 기)

구분	어승생한울누리 공원	용강별숲공원	서귀포추모공원	성산읍 자연장지	비고
2018	10,034	-	3,433	7,000	
2019	7,728	-	3,125	6,971	
2020	4,160	-	2,565	6,901	
2021	1,728	30,000	2,194	6,774	
2022	-	28,807	1,667	6,619	
2023	-	24,493	824	6,402	
2024	-	20,543	-	5,868	
2025	-	16,376	-	4,435	
2026	-	11,840	8,810	4,066	
2027	-	6,782	7,509	3,628	
2028	-	1,341	6,127	3,139	
2029	-	-4,198	4,725	2,636	
2030	-	-9,853	3,298	2,118	
2031	-	-15,643	1,843	1,581	
2032	-	-21,582	357	1,023	
2033	-	-27,687	-1,163	442	
2034	-	-33,968	-2,719	-163	
2035	-	-40,435	-4,314	-793	
2036	-	-47,093	-5,948	-1,450	
2037	-	-53,945	-7,622	-2,134	
2038	-	-60,990	-9,335	-2,846	
2039	-	-68,226	-11,086	-3,584	
2040	-	-75,646	-12,875	-4,348	

7. 장례식장 수급분석

1) 제주 전체

- 제주의 장례식장은 병원 장례식장 3개소를 포함하여 전체 11개소의 전문 장례식장이 운영 중임
 - 그 중 10개소는 제주시예, 나머지 1개소만이 서귀포시에 위치해 있어 지역적으로 편향되어 있는 문제가 있음
- 장례식이 거행되는 빈소, 즉 분향실을 기준으로 보면 제주시 10개소에 49개소의 분향실이 있고 서귀포시에는 5개의 분향실이 있음
- 서귀포시의 전문장례식장이 1개소밖에 없지만 마을장례식장이 25개소 설치되어 있어 이를 보완해주고 있음
 - 그러나 마을장례식장은 시설 규모나 제공 가능한 서비스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 장례식장은 모두 사설 기관으로 제주도민이 사망할 경우 모두 관내 전문 장례식장을 이용한다는 가정 하에 수급 분석을 시행함
- 계획의 목표 기간인 2028년의 경우 사망자를 5,046명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는 일평균 14명정도에 해당하는 수치임
- 사망자 1명당 일반적으로 3일간의 장례의식을 진행한다고 가정할 경우 필요한 분향실 수는 42개소임
- 다만, 장례 특성상 3일 중 하루만 겹치더라도 다른 장소를 찾아야 하는 점 때문에 일반적으로 장례식장 분향실의 가동률이 100%일 수 없고 주로 1년 중 절반정도 장례가 진행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앞서 산정된 일평균 42개소 가량의 분향실 소요에 가동률 50%를 적용할 경우 약 84개의 분향실이 필요한 상황으로 제주에 공급 중인 54실의 분향실 수를 감안하면 약 30개의 분향실이 부족해지는 상황임

- 특히 이같은 현상은 전문장례식장이 1개소밖에 없는 서귀포지역에서 더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전문장례식장의 유치와 공설 장례식장의 설치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표 4-25〉 장례식장 수급 분석(제주 전체 전문장례식장 기준 수급 검토)

(단위: 명, 일, 개소)

구분	사망자수	일평균사망 자수	3일장 기준 분향일 소요	가동률 손실	필요 분향일 수	전문장례식장 분향일 수	분향일 부족
2024	4,836	14	42	50%	84	54	30
2025	4,866	14	42	50%	84	54	30
2026	4,901	14	42	50%	84	54	30
2027	4,945	14	42	50%	84	54	30
2028	5,002	14	42	50%	84	54	30
2029	5,073	14	42	50%	84	54	30
2030	5,160	15	45	50%	90	54	36
2031	5,263	15	45	50%	90	54	36
2032	5,379	15	45	50%	90	54	36
2033	5,507	16	48	50%	96	54	42
2034	5,645	16	48	50%	96	54	42
2035	5,790	16	48	50%	96	54	42
2036	5,939	17	51	50%	102	54	48
2037	6,089	17	51	50%	102	54	48
2038	6,238	18	54	50%	108	54	54
2039	6,382	18	54	50%	108	54	54
2040	6,521	18	54	50%	108	54	54

주) 3일장 기준 분향일 소요 = 일평균사망자수 × 3일

필요분향일수 = 3일장 기준 분향일 소요 ÷ (1-가동률손실)

- 제주 전체 전문장례식장, 종교시설 장례식장을 적용할 경우 전체 79개의 분향실이 설치되어 있어 2028년 기준 5개의 분향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됨
- 제주 전체 전문장례식장, 종교시설 장례식장, 의례회관 등을 적용할 경우 전체 103개의 분향실이 설치되어 있어 2028년 기준 19개의 분향실의 여유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다만, 이는 지역별 편차를 고려하지 않았고 의례회관의 경우 전문장례식장이 아닌 점¹⁸⁾을 감안할 때 전문장례식장 기준의 지역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표 4-26〉 장례식장 수급 분석(제주 전체 전문장례식장 + 종교시설 + 의례회관 기준 수급 검토)

(단위: 명, 일, 개소)

구분	필요 분향실 수	전문 + 종교		전문 + 종교 + 의례회관	
		분향실수	분향실 부족	분향실수	분향실 부족 (여유)
2024	84	79	5	103	(19)
2025	84	79	5	103	(19)
2026	84	79	5	103	(19)
2027	84	79	5	103	(19)
2028	84	79	5	103	(19)
2029	84	79	5	103	(19)
2030	90	79	11	103	(13)
2031	90	79	11	103	(13)
2032	90	79	11	103	(13)
2033	96	79	17	103	(7)
2034	96	79	17	103	(7)
2035	96	79	17	103	(7)
2036	102	79	23	103	(1)
2037	102	79	23	103	(1)
2038	108	79	29	103	0
2039	108	79	29	103	5
2040	108	79	29	103	5

주) 전문장례식장 분향실 54실, 종교시설 장례식장 분향실 25실, 의례회관 분향실 24실

3일장 기준 분향실 소요 = 일평균사망자수 × 3일

필요 분향실 수 = 3일장 기준 빈소 소요 ÷ (1-가동률손실)

18) 주민 설문조사 결과 ‘장례 장소 선호도’를 묻는 질문에서 94.7%가 병원 또는 전문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르길 원하고 있음(전문장례식장 63.0%, 병원장례식장 31.7%, 종교시설 4.1%, 자택 0.5% 등)

2) 제주시

- 제주시의 전문장례식장에는 49개소의 분향실이 있음
- 제주시 사망자를 기준으로 2028년에는 11개소의 분향실이 부족할 것으로 추정됨

〈표 4-27〉 장례식장 수급 분석(제주시 전문장례식장 수급 검토)

(단위: 명, 일, 개소)

구분	사망자수	일평균사망 자수	3일장 기준 분향실 사용일수	가동률 손실	필요 분향실 수	분향실수	분향실 부족
2024	3,315	9	27	50%	54	49	5
2025	3,336	9	27	50%	54	49	5
2026	3,360	9	27	50%	54	49	5
2027	3,390	9	27	50%	54	49	5
2028	3,429	10	30	50%	60	49	11
2029	3,478	10	30	50%	60	49	11
2030	3,537	10	30	50%	60	49	11
2031	3,608	10	30	50%	60	49	11
2032	3,687	10	30	50%	60	49	11
2033	3,775	10	30	50%	60	49	11
2034	3,870	11	33	50%	66	49	17
2035	3,969	11	33	50%	66	49	17
2036	4,071	11	33	50%	66	49	17
2037	4,174	11	33	50%	66	49	17
2038	4,276	12	36	50%	72	49	23
2039	4,375	12	36	50%	72	49	23
2040	4,470	12	36	50%	72	49	23

주) 3일장 기준 분향실 소요 = 일평균사망자수 × 3일
 필요 분향실 수 = 3일장 기준 빈소 소요 ÷ (1-가동률손실)

3) 서귀포시

- 서귀포시의 전문장례식장은 서귀포의료원 1개소의 분향실 5개소 뿐이고 다른 장례의식 소요는 의례회관을 통해 다수 이루어지고 있어서 전문장례식장의 추가 설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으로 볼 수 있음
- 서귀포시 사망자를 기준으로 2028년에는 19개소의 분향실이 더 필요한 것으로 추정됨
- 읍면지역의 경우 의례회관을 이용하여 최소한의 공급이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서귀포 시내권의 경우 인구 밀집 정도에 비해 단 1곳(서귀포의료원)의 전문장례식장이 있어 공급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임

〈표 4-28〉 장례식장 수급 분석(서귀포시 전문장례식장 수급 검토)

(단위: 명, 일, 개소)

구분	사망자수	일평균사망자수	3일장 기준 분향실 사용일수	가동률 손실	필요 분향실 수	분향실수	분향실 부족
2024	1,521	4	12	50%	24	5	19
2025	1,530	4	12	50%	24	5	19
2026	1,541	4	12	50%	24	5	19
2027	1,555	4	12	50%	24	5	19
2028	1,573	4	12	50%	24	5	19
2029	1,595	4	12	50%	24	5	19
2030	1,623	4	12	50%	24	5	19
2031	1,655	5	15	50%	30	5	25
2032	1,692	5	15	50%	30	5	25
2033	1,732	5	15	50%	30	5	25
2034	1,775	5	15	50%	30	5	25
2035	1,821	5	15	50%	30	5	25
2036	1,868	5	15	50%	30	5	25
2037	1,915	5	15	50%	30	5	25
2038	1,962	5	15	50%	30	5	25
2039	2,007	5	15	50%	30	5	25
2040	2,051	6	18	50%	36	5	31

주) 3일장 기준 분향실 소요 = 일평균사망자수 × 3일

필요 분향실 수 = 3일장 기준 빈소 소요 ÷ (1-가동률손실)

제3절 장사시설 조성 방안

1. 장사시설 건립계획 추진 기본방향

- 장사시설의 경우 다른 공공시설과 비교하여 건립 준비단계에서 완공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됨
- 따라서 장기적 관점에서 사전단계부터 단기·중기·장기 계획을 세워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함

〈표 4-29〉 장사시설 단계별 추진계획

구분	내용
1단계 (사전단계)	• 제주 공설장사시설 운영위원회 구성 • 제주 장사시설(화장장·봉안시설·자연장지) 타당성 검토 • 장사시설 건립 필요성 설명회 및 공청회 진행 • 도민 대상 홍보활동 강화 • 운영위원회·담당 공무원·주민대표 등 우수 장사시설 견학 • 주민편의시설에 대한 수요조사
2단계 (단기계획)	• 장사시설 입지 선정 및 부지확보 • 공설·공동묘지 조사를 통한 묘지 정리 계획수립 • 무연분묘 정리 등을 통한 묘지 전산화 작업 • 장사시설 조성을 위한 예산확보 및 투자계획 수립 • 토지 이용 계획 및 분묘 이전계획 수립(재개발 시) • 무연고 분묘에 대한 이장협의 및 개장작업, 사용 중단 조치(재개발 시) • 화장장·봉안시설·자연장 및 산분장 시설조성 계획수립 • 기본계획 및 각종 영향평가 진행, 실시설계 완료
3단계 (중·장기계획)	• 봉안시설 및 자연장·산분장 시설조성 • 기존 묘역 정비 및 개장 후 봉안시설에 안치(재개발 시) • 이장 및 개장작업 완료 • 주차장, 전용 진입로 개설 등 부대시설 설치 • 녹지공간 확보를 위한 공원 조성 및 주민 편의시설 설치 • 화장장, 봉안시설, 자연장 및 산분장 시설 설치 및 운영 • 유택동산, 추모공원, 가족 동산 등 조성 • 완공된 장사시설에 대한 추가적인 피드백 시행

2. 화장수용능력 단계적 확대

1) 개장 전용 화장로 운영 활성화

- 양지공원에는 전체 8기의 화장로 중 2기의 화장로를 각각 4개 구획으로 나누어 1로에서 한번에 4기의 개장유골 화장을 진행할 수 있는 개장유골 전용 화장로를 운영하고 있음
- 제주의 장사문화 특성 상 개장유골의 화장량이 타 도시에 비해 매우 많은 편이고 최근 장사 문화의 변화에 따라 분묘의 개장이 늘어나고 있으므로 개장 전용 화장로의 추가 운영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다만, 개장 전용 화장로 전환 시 일반 시신의 화장로 공급이 차질이 생길 수 있으므로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함
- 최근 윤달 3회를 포함한 7년간의 신고된 개장내역을 살펴보면 윤달이 있었던 2017년, 2020년, 2023년에 두드러지게 개장량이 늘어나기는 하나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향후 추이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양지공원 화장 실적에서 2023년 기준 개장유골 화장 실적이 10,499건임을 감안하면 약 천여건 정도가 미집계된 실적이 있으므로 이같은 차이도 감안하여 검토해야 함



<그림 4-3> 행정구역별 개장 실적 집계

2) 체격 조건에 따른 화장로 운영 검토

- 유럽 등에서는 사망자의 체격 조건에 따라 화장로 운영을 대형, 중형, 소형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음
- 최근 화장시설이 설치된 충주시, 경주시 등의 경우 대형 화장로를 설치·운영하는 곳이 있음
 - 경주시(경주하늘마루)의 경우 2023년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인 고효율 친환경 대형화장로 사업의 일환으로 전액 국비로 설치됨(사업비 7.6억원)
- 그러나 제주에서는 이전에 대형 화장로를 운영하였으나 체격 조건 등에 따라 실제 운영되지 못하고 대기하는 횟수가 많아 비효율적인 것으로 확인되어 지금은 설치하지 않고 있음
- 따라서 화장로 크기를 조정하여 운영하는 것 보다는 전반적인 시설 노후화를 막을 수 있는 개·보수 작업에 집중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 화장로의 관리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연료 교체, 정기적인 개·보수를 통한 화장로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방안이 검토되어야 함

3) 화장로 신·증축 검토

- 제주의 화장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해오고 있고, 앞으로도 증가가 예상됨
- 제주의 화장로 수를 추정한 결과 예비화장로를 포함하여 2040년까지 총 7로의 화장로가 필요한 것으로 산정되어 지금의 화장로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장비의 노후화·관리를 위하여 예상 필요 시기가 앞당겨질수도 있으므로 지속적인 시설 관리와 검토가 필요함
- 섬지역 특성상 화장시설의 고장, 자연재해 등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신·증축을 검토해볼 수 있으나 부지 확보, 현재 화장량 등을 고려하면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오래 전 사례이기는 하나 제주도처럼 육지로 이동할 수 있는 울릉군에서 화장장이 고장으로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어쩔 수 없이 매장으로 장례를 치르거나 포항으로

시신을 옮겨 화장을 치르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이 때문에 2000년대 초반 당시 기준으로 가구당 7백여만원의 추가 비용이 소요되었음을 확인함

- 양지공원 화장로에 문제가 발생하여 화장이 불가능할 경우 일평균 10여구 이상 발생하는 시신을 모두 육지로 옮겨 화장하는 것은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어려움이 있다고 보임
- 따라서 우선적으로는 잔여공간이 많은 공설묘지에 매장하여 장례를 치르도록 하고 이후 희망자에 대하여는 개장하여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에 안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함
- 이때 발생하는 공설묘지 사용료는 무상으로 지원하고 이후 개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도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하는 것을 검토해볼 수 있음

〈표 4-30〉 화장시설 필요 화장로 수 추계

구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40년
화장 수요	일반시신	4,091	4,224	4,332	4,446	4,542	6,195
	개장유골 (전체의 4분의1)	2,376	2,454	2,516	2,583	2,638	3,599
	계	6,467	6,678	6,848	7,029	7,180	9,794
일평균 화장 횟수 (화장 수요 ÷ 365일)	일반시신	11.2	11.6	11.9	12.2	12.4	17.0
	개장유골	6.5	6.7	6.9	7.1	7.2	9.9
	계	17.7	18.3	18.8	19.3	19.7	26.8
화장로 공급 필요량	일반시신 (일평균 ÷ 4회)	2.8	2.9	3.0	3.0	3.1	4.2
	개장유골 (일평균 ÷ 6회)	1.1	1.1	1.1	1.2	1.2	1.6
	예비 1기	1	1	1	1	1	1
	합계	4.9	5.0	5.1	5.2	5.3	6.9

주) 양지공원 화장장에는 한번에 4기의 화장이 가능한 개장유골 화장을 위한 전담 화장로가 있어 전체 수요의 4분의 1로 적용하고 일평균 횟수는 6회로 적용함

4) 캐비닛식 화장로 도입을 통한 효율성 증대

- 기존 ‘대차식 화장로’의 비효율·고비용 단점을 보완한 ‘캐비닛 방식’ 도입에 대한 검토가 계속 진행 중임
- 화장시설 신축 시 화장효율이 좋은 화장로(캐비닛 방식)를 적극 권고하고 단가 차등화, 국비 우선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함
- 다만, 아래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수골 과정에 있어서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지 여부로 인하여 캐비닛식 화장로의 도입이 어려운 측면이 있음

〈표 4-31〉 화장로별 특징

구분	대차식 화장로	캐비닛식 화장로
원리	• 관 입·퇴로가 동일하여 주연소실에서 연소 종료 후 다시 입·퇴로에서 냉각한 후 유골 수습	• 관 입·퇴로가 달라, 연소 종료 후 화장로 별도 퇴로로 나온 후 냉각하여 유골 수습
화장로 운영방식	• 매 화장 시 가열과 냉각 반복	• 화장로 예열 후 가열 상태 유지
연료 효율	• 화장로 가열과 냉각에 따라 연료소모 많음	• 상대적으로 적은 연료 사용
내구성	• 1일 수차례의 가열·냉각 반복에 따라 내화 부품 등 내구성 저하	• 1회 가열 후 인위적인 냉각과정 없어 내구성 양호
오염물질	• 가열·냉각 시 온도차로 인한 배기가스 및 분진 발생	• 상대적으로 적은 오염물질 배출
화장 능력	• 1일 8시간 기준 5회 운영 (화장 1시간, 냉각 30분 기준)	• 1일 8시간 기준 8회 운영 (화장 1시간 기준)
사용 국가	• 한국, 일본	• 대부분 국가
우리나라 현황	• 2021년 말 기준 전국 62개소 전체 화장시설에서 이용	• 990년대 남원시, 익산시 등 일부 화장시설에서 이용
장점	• 유족이 입회한 가운데 관 입로 및 수골이 가능하여 유족에게 안정감 제공	• 에너지 절감 및 유지보수비 감소
단점	• 연료비 및 유지보수비 증가	• 관 입로 및 수골 시 유족 입회 불가 • 대차식 화장로에 비해 더 넓은 설치공간 필요

자료) 2023~2027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

3. 친자연적, 수요자 중심 장사시설 조성 관리

1) 현대적이고 편리한 장사시설

(1) 시설 조성 방향 - 종합장사시설

- 보건복지부의 장사시설 장려정책에 따라 공동형 종합장사시설을 설치하여 추모공원으로 조성함으로써 더 이상 혐오시설이 아닌 누구나 찾아와 예술인들의 추모식 등 추모공원 등을 보며 기념할 수 있는 관광지로 탈바꿈시킬 필요가 있음
 - 시신을 처리하는 화장시설 외에도 봉안당, 자연장지, 유택동산, 장례식장 등 다양한 형태의 참배공간을 설치하여 추가적인 이동 없이 한 장소에서 복합적으로 장사 및 장례를 마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함
 - 이미 외국에는 예술인들의 묘역을 조성해 관광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 다수 있음
 - 오스트리아 빈 중앙묘지: 베토벤, 슈베르트, 브람스, 모차르트, 체르니, 살리에르 등 악성들의 묘지를 조성하고 또 다른 구역으로는 영화감독, 팝스타, 배우, 정치인 묘지를 조성함
 - 파리 페르라세즈 공원묘지: 오스카와일드, 쇼팽, 발자크, 이브몽땅 등 유명인 묘역을 유치, 홍보해 많은 사람들이 찾는 묘역으로 발전함
 - 이를 위해서는 단순히 화장시설 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자연장지, 봉안당 등의 종합장사시설의 조성이 수반되어야 함
 - 그리고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접목하여 참배객 외에도 다양한 사람들이 찾을 수 있는 복합 문화복지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시신을 처리하는 화장시설 외에도 봉안당, 자연장지, 유택동산, 장례식장 등 다양한 형태의 참배공간을 설치하여 추가적인 이동 없이 한 장소에서 복합적으로 장사 및 장례를 마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함

- 이미 외국에는 예술인들의 묘역을 조성해 관광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 다수 있음

- 오스트리아 빈 중앙묘지: 베토벤, 슈베르트, 브람스, 모차르트, 체르니, 살리에르 등 악성들의 묘지를 조성하고 또 다른 구역으로는 영화감독, 팝스타, 배우, 정치인 묘지를 조성함

- 파리 페르라셰즈 공원묘지: 오스카와일드, 쇼팽, 발자크, 이브몽땅 등 유명인 묘역을 유치, 홍보해 많은 사람들이 찾는 묘역으로 발전함

- 이를 위해서는 단순히 화장시설 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자연장지, 봉안당 등의 종합장사시설의 조성이 수반되어야 함

- 그리고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접목하여
참배객 외에도 다양한 사람들이 찾을 수
있는 복합 문화복지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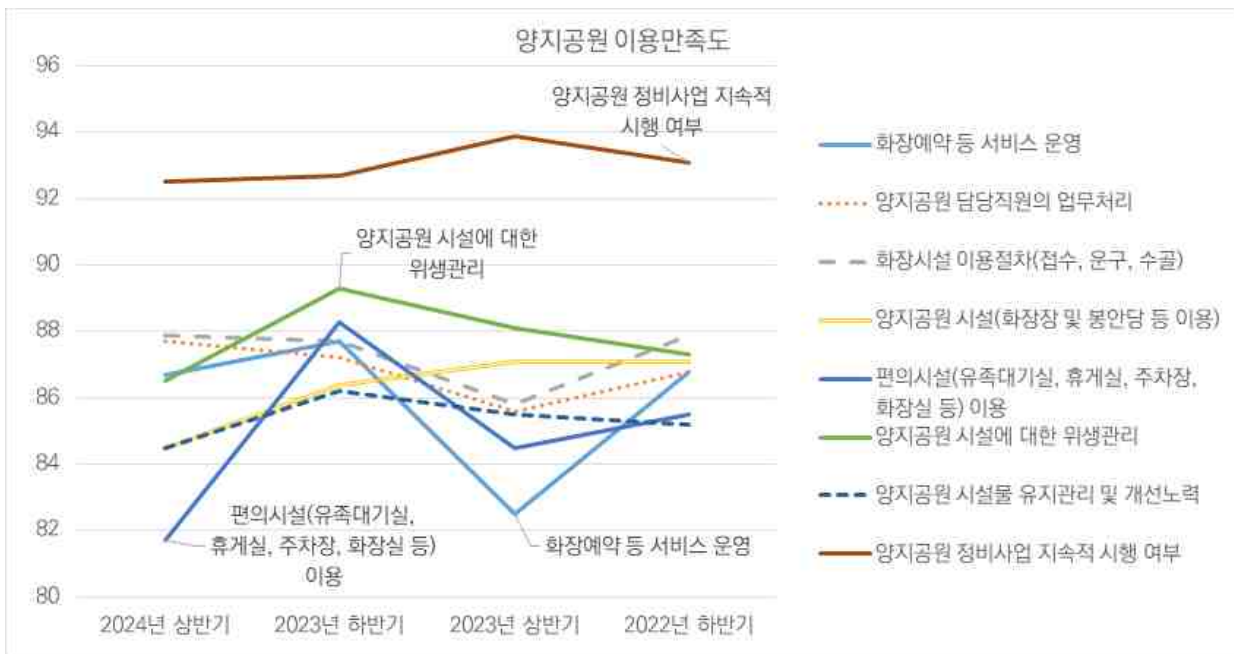


〈그림 4-4〉 페르라셰즈 묘지 안내

자료) 분당메모리얼파크 공식 블로그

(2) 편의공간 확충

- 노후화된 장사시설은 낙후된 외관·내부시설, 부족한 유족 편의시설로 품위 있는 장례 수행이 어렵고 장사시설에 대한 부정적 인식 형성의 원인이 됨
- 유가족 및 주민 수요에 맞는 시설로 변화하여 장사시설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함
- 양지공원에서 반기별로 이루어지는 이용만족도조사에 따르면 전반적인 사업시행, 위생관리 등의 기본적인 요소에 대해서는 꾸준히 만족도가 높게 나왔으나 편의시설 이용 측면이나 화장예약 등 서비스 운영 등 이용객들의 편의를 충족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간혹 점수가 낮게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음
- 양지공원의 경우 화장이 진행되는 시간동안 유가족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마음을 다스리고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확충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그림 4-5> 양지공원 이용만족도 조사 결과

(3) 화장시설

- 유족 편의를 위한 시설로 화장 과정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공간과 각종 편의시설, 안전대피시설이 요구됨
- 화장로, 대기실, 안치실, 고별실, 수골실, 식당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어 혐오시설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함
- 사용연한 경과 및 수요 증가에 대비해 최대 화장 능력을 갖춘 시설이 필요함
- 환경관리 대상시설로서 환경오염물질 규제 기준 강화에 대비하여 현대화된 친환경 시설을 구축해야 함
- 미래 화장 수요를 예측해 오염방지시설을 완비하고, 부대시설을 확충하여 친환경적이고 현대화된 화장시설을 통해 선도적인 장사문화를 추진해야 함
- 사회·환경친화적 화장로 도입
 - 친환경 연료 도입: 현재 화장로 연료는 청정연료 중 하나인 LPG를 사용중임
 - 공해방지: 화장로는 대기환경 보전법의 배출기준을 만족하는 시설을 목표로 대기오염 물질 저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함
 -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별도로 출입도로를 확보하여야 함
- 화장로를 확충할 때에는 기존 시설에 집중하여 화장로를 추가하는 방법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른 지역에 화장로를 설치하는 방법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임¹⁹⁾

(4) 자연장지

- 자연장지는 기존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최대한 보존·활용하여 조성해야 하며, 환경 친화적이고 자연스러운 배치를 고려해야 함
- 자연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자연장을 장려하는 정책을 통해 부족한 봉안시설 수요를 자연장지로 유도할 수 있도록 자연장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전략이 필요함
- 정부의 친자연적인 장사시설 조성 정책에 따라, 제주도에 테마가 있는 조화로운 자연장지 조성을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됨

19) 종합장사시설 조성 내용과 연계

- 각 지역에 이용률이 낮아진 공설묘지를 활용하여 자연장지 조성을 추진해야 하며, 공설묘지 개발방안과 연계하여 진행함
- 기존 공설묘지 등의 부지를 활용하면 주거지 등의 가시거리에 있지 않아 개발이 용이할 것으로 판단됨

(5) 봉안시설

- 봉안시설은 대중교통 접근이 쉽고, 주민들이 자주 방문할 수 있는 지역사회 친화적 시설로 조성되어야 함
- 봉안시설 설치 시, 봉안묘나 탑보다는 봉안당 형태로 설치를 권장함
- 이용객 중심의 시설 조성을 통해 봉안당 시설 인프라 부족 문제를 해소해야 함
- 제주 지역에 산재한 노후 공동묘지를 재개발하여 "노후 묘지의 개장 후 봉안"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봉안시설 확충 시, 화장, 봉안, 장례식장 등 최첨단 종합장사시설을 갖추어, 상담부터 장례 절차까지 한 번에 마무리할 수 있는 품위 있는 장례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 기존 봉안당의 획일적인 형식을 탈피하여, 새로운 봉안 안치 형태로 변화해야 하며, 웰다잉 장례문화 확산과 국민인식 전환을 위해 공설봉안당 또한 이러한 변화를 일부 수용해야 함
 - 사설봉안당의 서재형 봉안시설, 최첨단 봉안시설 등 다양한 형태로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는 것을 제안함
- 고려사항
 - 봉안시설 설치 시 지형지세와 풍향을 고려하여 시설을 배치하되, 이용률이 높은 시설임을 감안하여 부지의 대표 공간에 입지하도록 해야 함
 - 봉안시설에는 실내외 참배공간을 충분히 마련하여 간접참배를 유도하고, 고인과의 가상체험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해야 함. 충분한 관리 및 휴식 공간을 두어 성묘객의 편리한 참배활동이 가능하도록 설계해야 함

- 사이버 추모관, 영상 서비스, 스크린 설치, 유명인사 묘역 소개, SNS 홍보 등 IT 기술을 활용해 국민 인식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설계해야 함
- 자연채광과 환기를 최대한 활용하여 밝은 분위기를 연출하고, 시설 유지비 절감 효과를 고려하여 계획해야 함

○ 수급상황 반영

- 자연장지 이용 증가추세에 따라 봉안당의 수요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어 향후 이용 추이, 특히 자연장지 이용을 위해 유골을 반환하는 추이를 관찰하여야 함
- 단기간 내 봉안시설의 공급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나 자연장 이용을 권장하면서 봉안당의 안치율을 75% 정도로 관리함으로써(현재 63% 정도) 제2공항개발 등 도시개발에 따라 무연고 유골이 대규모로 발생하는 상황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 신규 봉안당 건립이 추진될 경우 종합장사시설 설치와 연계하여 추진 검토

2) 종합장사시설 조성(안)

(1) 종합장사시설 개요

- 사례를 살펴보면 종합장사시설을 조성할 때에는 개별 시설로서 추가 조성하는 것 보다는 화장시설이 첫 조성되는 과정에서 다른 장사시설들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가 많음
- 수급 분석상 8로로 운영은 가능한 상황이나 코로나19와 같은 사망자가 급격히 증가하는 재난상황이나 화장로의 노후화로 인한 가동률 감소 등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화장로 부족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 대안이 필요함
- 특히 제주는 화장을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는 여유율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이미 화장시설이 있는 제주의 경우 기존의 화장시설이 있는 양지공원을 중심으로 추가로 화장시설을 증축하면서 장례식장, 자연장지 등을 함께 설치하여 종합장사시설화 하는 방안과 지역적 특성, 접근성 등을 감안하여 다른 지역(서귀포시)에 화장시설을 새롭게 설치하면서 종합장사시설을 설치하는 두 가지 방안이 있음

(2) 양지공원 종합장사시설화

- 양지공원은 화장시설과 봉안당으로 구성되어 있음
- 여기에 공설장례식장과 자연장지를 추가로 조성하고 유족들과 도민들을 위하여 활용할 수 있는 휴게 및 문화공간을 함께 조성하여 양지공원을 종합장사시설로 만드는 방안임
- 기존의 화장로가 충분히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과부하를 막아줄 수 있는 정도의 규모로 화장로는 2기를 추가로 설치하고 앞쪽의 산림지대를 이용한 수목장림 조성을 제안하고 공설장례식장을 설치하여 향후 공영장례지원 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임
- 이를 위해 약 3만5천㎡ 가량의 인접 부지의 확보가 필요함



<그림 4-6> 양지공원 종합장사시설화 예상 구획도(안)

(3) 서귀포시 종합장사시설 조성

- 서귀포시에서는 화장장 이용을 위해 양지공원까지 이동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곳이 많아 서귀포지역 화장시설 설치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 서귀포시에서의 양지공원 접근성 문제 대안(설문조사 결과, 실무자 토론 등에서 도출)
- 따라서 종합장사시설을 조성하는 안으로 수요를 분산시킬 수 있도록 서귀포지역에 별도의 종합장사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제안함
- 다만, 별도의 장사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부지의 활용성, 주민들의 반발 등을 복합적으로 검토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추진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존의 장사시설을 활용하여 해당부지 인근으로 화장시설 및 기타 장사시설을 함께 설치함으로써 종합장사시설을 조성하는 방법을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서귀포추모공원의 인근부지에 화장로를 4기 설치하고 공설장례식장, 자연장지를 설치함으로써 종합장사시설을 설치할 수 있음
 - 이러한 경우 서귀포추모공원 인근으로도 다수 종종, 가족 묘지 등이 조성되어 있고 주거지에서는 이격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부지를 새로이 개발하는 것보다는 주민 반발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고 기존의 시설을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된 도로나 기반 시설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그림 4-7〉 서귀포추모공원에 종합장사시설을 설치할 경우 예시(안)

3) 자연장지: 장법 다양화 및 산분장지 조성

(1) 정의

- 장사제도의 핵심과제는 화장 문화의 확산에 따른 친환경 장사시설 확충과 더불어, 장사시설을 기피시설로 여기는 주민들의 인식 및 지역이기주의 현상을 극복하고 바람직한 장사법과 환경 친화적인 장사시설을 정착시키는 것임
- 이러한 장사 문제의 효율적 해결책으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것이 자연장 제도임
- 자연장은 화장 문화의 정착과 화장시설 확충이 전제되어야 하며, 화장한 유골에 대한 경건한 처리, 친환경적 장법, 관리의 편리성, 경제적 효과 등을 고려한 자연친화적 시설이어야 함
- 자연장지는 기존 공설묘지를 재활용하거나, 집단묘지 내에 소규모 자연장 구역을 조성하거나, 묘지로 허가된 산림지역을 자연장 구역으로 전환해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자연장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잔디, 수목, 화초 등의 상징물 밑이나 주변에 묻는 장법으로, 상징물에 따라 잔디장, 수목장, 화초장으로 나뉘며,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대표적인 자연장은 잔디장과 수목장임
- 기존의 매장·봉안 방식은 환경을 파괴하고 국토를 잠식하는 폐해가 크지만, 자연장은 환경 친화적이며 미래세대와 공유할 수 있는 선진국형 장법으로, 공간 활용성 등에서 많은 장점이 있음
- 자연장은 유골을 안장하고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최소한의 설비만을 허용하며, 인위적인 석물 등의 설치에 제한하는 방식임
- 자연장은 자연회귀사상을 바탕으로 하여, 한 번 유골을 안장하면 반환이나 이장이 불가능한 영구적인 장법으로 기존의 봉안·매장 방식과는 다름

(2) 종류

- 잔디형 자연장은 잔디 공원을 조성하여, 굴토는 지름 15cm, 깊이 50cm로 굴착하여 유골을 매장함
- 수목장은 한 그루의 추모목에 12~24위 정도의 유골을 안치하며, 굴착 규격은 지름 15cm, 깊이 50cm로 동일함
- 그 외에도 정원형, 암석원, 언덕형, 능선형 등의 다양한 자연장 방식이 있음
- 화장한 유골의 골분은 자연 친화성을 고려해 용기 없이 마사토와 혼합하여 매장함
- 자연장지 내에는 개인표시 부착이 불가능하며, 주로 구역 입구에 고인의 성명을 표기하는 방식을 채택함
- 자연장지 공급 확대를 위한 전략
 - 문중 및 종중 등이 자연장지를 설치할 경우, 지원 제도를 마련하여 자연장법 확산에 노력해야 함
 - 자연장법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연장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전략 수립이 필요하며, 주민을 대상으로 한 홍보 활동을 강화해야 함
 - 자연장지 조성 시 기존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최대한 보존·활용하도록 하며, 기존 묘지를 재활용하거나 재개발하여 자연장지를 조성하도록 해야 함
 - 화장시설 신축 시 자연장지 조성을 필수적으로 고려하고, 신도시 건설 시 택지 개발 규모가 330만㎡ 이상인 경우 자연장지 조성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함
 - 품격 있는 추모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첨단 기술을 접목한 자연장을 도입해야 함
 - 친환경 자연장지 신규 설치 시 시민의 이용 편리성을 고려하여 친환경 설계를 도입하고, 주민의 휴식 공간으로도 활용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함
 - 생태하천과 산책로 등을 설치하여 친환경 휴식 및 자연학습 공간으로 조성해야 함

〈그림 4-8〉 자연장 종류



(3) 조성방안

- 자연장지 선호가 높아지고는 있으나 인식이 부족하고, 공급 및 접근성 문제로 수요는 더디게 증가하고 있음
- 지역 여건과 지역민 수요에 맞는 다양한 자연장 형태를 조성하고,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공원형 자연장지 조성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제주의 선행사례인 용강별숲공원은 좋은 예시가 되고 있음
- 국가계획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들은 수목장을 선호하나 공설 수목장립은 부족한 상황으로 공원형 자연장지, 수목형 자연장지 등 도민 수요조사를 통해 주민 눈높이에 맞는 장사방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추가로 공설자연장지를 조성한다면, 해외의 사례와 같이 도심권에 공원화 형식으로 조성하는 방안과, 외곽에 공설묘지 부지를 활용하여 대규모 종합장사시설로서의 자연장지 조성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4) 산분장

- 산분장이란 화장한 유골을 산·바다 또는 특정 장소 등에 뿌리는 장사방식임
-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에 따르면, 산분장을 제도화하는데, 2020년 8.2%였던 산분장 이용률을 2027년에 3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하며 이를 통해 친자연적 장례문화를 확산하고자 함

〈그림 4-9〉 산분장



4. 장례식장 확충 방안

1) 공설장례식장 도입

(1) 공설장례식장의 운영 현황(전국 26개소)

- 전국적으로 공설장례식장은 26개소가 운영 중이며 자치단체 중 공설장례식장이 없는 곳은 제주를 비롯하여 서울, 인천, 광주, 대구, 대전, 전라남도 등이 있음

〈표 4-32〉 공설장례식장 현황

지방자치단체		시 설 명	시 설 규 모	
부산시 (1)	금정구	부산영락공원장례식장	연면적	2,140㎡(지상2층) / 2001. 3.
			시설종류	분향실 10, 안치실, 염습실, 상담실, 식당 등
울산시 (1)	울주군	울산하늘공원장례식장	연면적	2,963㎡(지상3층) / 2013. 3.
			시설종류	분향실 5, 안치실, 염습실, 상담실, 식당 등
세종시 (1)	산울동	은하수공원장례식장	연면적	4,368㎡(지상2층) / 2018. 12
			시설종류	분향실 10, 안치실, 염습실, 영결식장, 식당 등
경기도 (5)	화성시	화성함백산장례식장	연면적	3,131㎡(지상2층) / 2021. 10
			시설종류	분향실 8, 안치실, 염습실, 영결식장, 식당 등
	수원시	수원시연화장장례식장	연면적	2,194㎡(지하2, 지상2층) / 2021. 12(재개장)
			시설종류	분향실 12개, 안치실, 염습실, 상담실, 식당 등
	용인시	용인평온의숲장례식장	연면적	6,640㎡(지하1층, 지상3층) / 2013. 1.
			시설종류	분향실 12개, 안치실, 염습실, 상담실, 식당 등
	연천군	연천군장례식장	연면적	1,337㎡(지상2층) / 2007. 5
			시설종류	분향실 5개, 안치실, 염습실, 상담실, 식당 등
충청북도 (1)	청주시	청주시장례식장	연면적	4,620㎡(지하1층, 지상2층) / 2007. 11
			시설종류	분향실 6개, 안치실, 염습실, 상담실, 식당 등
			연면적	2,003㎡(지상2층) / 2007. 10
			시설종류	분향실 5, 안치실, 염습실, 주방, 휴게실 등
충청남도 (1)	홍성군	홍성추모공원장례식장	연면적	1,725㎡(지하1층, 지상2층) / 2007. 8.
			시설종류	분향실 5, 안치실, 염습실, 휴게실, 주방 등
전라북도 (1)	장수군	장계공설장례식장	연면적	992㎡(지상2층) / 2022. 10
			시설종류	분향실2, 안치실, 염습실, 사무실, 주방 등
경상북도 (1)	경주시	경주하늘마루장례식장	연면적	3,323㎡(지상2층) / 2012. 11
			시설종류	분향실 5, 안치실, 염습실, 영결식장, 관리실 등

지방자치단체		시 설 명	시설규모	
강원도 (8)	삼척시	도계장례식장	연 면 적	587㎡(지상3층) / 2008. 7.
			시설종류	분향실 3, 안치실, 염습실, 식당 등
	화천군	화천군공설장례식장	연 면 적	1,320㎡(지하1층, 지상2층) /
			시설종류	분향실 3, 안치실, 염습실, 사무실, 식당 등
	평창군 평창군	평창장례식장	연 면 적	230㎡(지상3층) / 1998. 8.
		진부장례식장	시설종류	분향실 4, 안치실, 염습실, 식당 등
			연 면 적	870㎡(지하1층, 지상2층) / 2012. 12
			시설종류	분향실 3, 안치실, 염습실, 주방 등
	홍천군	홍천군장례식장	연 면 적	1,761㎡(지하1층, 지상2층) / 2009. 2
		서석장례식장	시설종류	분향실 5, 안치실, 염습실, 주방 등
			연 면 적	713㎡(지상 1층) / 2021. 6
			시설종류	분향실 3, 안치실, 염습실, 주방, 사무실 등
	인제군	하늘내린도리안	연 면 적	632㎡(지상2) / 2008. 6
			시설종류	분향실 3, 안치실, 염습실, 주방 등
	양구군	양구군장례식장	연 면 적	1,108㎡(지상2층) / 2008. 7
			시설종류	분향실 3, 안치실, 염습실, 주방, 휴게실 등
경상남도 (6)	창원시	창원시립상복공원 장례식장	연 면 적	4,928㎡(지하1층, 지상2층) / 2012. 6
			시설종류	분향실 10, 안치실, 염습실, 영결식장, 상담실 등
	사천시	사천공설장례식장	연 면 적	821㎡(지상3층) / 2021. 7.
			시설종류	분향실 4, 안치실, 염습실, 상담실, 식당 등
	창녕군	창녕군공설장례식장	연 면 적	1,092㎡(지상2층) / 2009. 5
			시설종류	분향실 4, 안치실, 염습실, 식당, 사무실 등
	함안군	함안하늘공원장례식장	연 면 적	1,702㎡(지상2층) / 2020. 10.
			시설종류	분향실 4, 안치실, 염습실, 참관실, 영결식장 등
	남해군	창선공익장례식장	연 면 적	955㎡(지상1층) / 2010. 11.
			시설종류	분향실 3, 안치실, 염습실, 휴게실, 식당 등
		남해추모누리장례식장	연 면 적	862㎡(지상2층) / 2007. 5.
			시설종류	분향실 3, 안치실, 염습실, 사무실, 식당 등

(2) 도입방안 - 동부 공설장례식장 조성

① 도입 배경

- 제주에는 대부분의 전문 장례식장이 제주시 쪽에 분포되어 있고 동부와 서부로 나누어볼 때도 동부권에서 전문장례식장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짐
- 공설장례식장의 경우 개별적으로 장례식장만을 설치한 사례는 거의 없으며 대부분 기존의 장사시설(화장시설, 봉안시설 등) 부지에 함께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제주의 공설장례식장 역시 기존의 공설 장사시설과 함께 조성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됨
- 여러 공설 시설 중 성산을 공설묘지에는 2000년부터 ‘장례편의시설’이 운영 중인데 주민들의 필요에 따라 마을 장례식장 형태로 운영은 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장례식장으로 운영되기에 기준에 충족되지 않고 있음
- 비교적 최근에 봉안시설이 추가 조성되고 주차장 등도 추가 설치, 대중교통 운행노선과 인접하여 접근성이나 이용편의성이 좋을 것으로 보임

② 성산을 공설묘지 장례편의시설 현황

- (주요시설) 안치실 1개소(염습실 겸용), 분향실 1개소, 접객실(편의시설) 1개소 등
- (설치면적) 안치실 35.4㎡, 분향실 79.2㎡, 편의시설 293.56㎡
- (이용실적) 2023년 50건, 2024년 3월말 기준 15건 ※1건당 소요일 3일

〈표 4-33〉 성산을 공설묘지 장례편의시설 운영 현황

(단위: 건)

연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총계
2021	3	3	4	4	2	4	3	-	-	1	4	3	31
2022	2	2	9	9	2	4	4	4	2	5	1	3	47
2023	3	2	6	7	8	8	1	-	2	4	2	7	50

- 현재의 이용률로는 1년의 절반 가량(가동률 50%)이 장례절차에 이용되고 있으며 장례 특성상 3일 중 하루만 장례가 겹쳐도 이용할 수 없기에 실제 수요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됨

③ 시설 이용의 문제점

- 이처럼 성산읍 장례편의시설은 읍면지역 마을의 의례회관처럼 운영되면서 행정적으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공설장례식장 설치운영)에서 제시하는 요건에 부족한 상황임에 따라 장례식장이 아닌 장례편의시설로 운영²⁰⁾되고 있는 실정임
- 또한 전문 장례지도사 없이 시설관리를 위한 직원(공무직)이 안치실 및 안치 냉장고를 관리하고 있어 의료폐기물 처리에 미숙하고 병원균 감염 등의 위험에도 노출되어 있는 것 외에도 다음과 같은 개선 필요사항이 있음
 - 안치실, 염습실 구분 없이 한 공간에서 사용. 장례지도사 없음
 - 안치실(염습실 포함) 내에 상하수도 시설 및 비상발전기 없음
 -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및 보관시설과 환기시설 및 폐수처리시설 없음

④ 공설장례식장 도입(안)

- 위치: 성산읍 수산리 4711 공설묘지 내
- 면적: 825㎡(지하1층, 지상2층) - 서귀포의료원 참조
- 시설: 안치실, 염습실, 관망실, 분향실 5개(일반4, 무연고1, 예비용 1), 접객실 4개, 식당 등 편의시설
- 건축비: 3,650백만원(공사비 3,000백만원, 자산취득비 350백만원, 용역비 300백만원)

⑤ 기대효과

- 2000년부터 운영된 장례편의시설을 적정하게 장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설장례식장을 설치
- 안치실·분향실 등을 확대 설치하여 성산읍을 포함한 제주 동부 지역주민들의 이용편의와 장례비용 감소

20) 2024. 2월 도 안전관리실태 안전감찰시 지적



〈그림 4-10〉 공설장례식장 배치도(안)

2) 서귀포 전문장례식장 확충

- 제주 전체 11개소의 전문 장례식장이 운영 중인데 그 중 10개소는 제주시예, 나머지 1개소만이 서귀포시에 위치해 있어 지역적으로 편향되어 있는 문제가 있음
 - 서귀포시의 전문장례식장이 1개소밖에 없지만 마을장례식장이 25개소 설치되어 있어 이를 보완해주고 있음
 - 그러나 마을장례식장은 시설 규모나 제공 가능한 서비스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 전문장례식장 1개소에는 5개의 분향실이 있어 매우 부족하며 특히 읍면지역의 경우 의례회관을 이용하여 수요에 대처할 수 있으나 서귀포 시내권은 이를 수용하기 어려움
- 따라서 서귀포 시내권을 중심으로 전문장례식장의 유치가 필요한 상황임
- 앞선 수급분석에 따르면 서귀포시에서는 전문장례식장만을 기준으로 하면 연간 19개소의 분향실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전문장례식장의 공급 또는 유치가 필요한 상황임

제4절 장사시설 설치·조성 관련 갈등해소 방안

1. 기본방향

1) 갈등관리 필요성

- 화장시설 등 장사시설은 국민의 편의와 복리 증진을 위한 필수 시설이지만, 여전히 혐오·기피 시설로 인식되고 있음
- 이해관계자 간 갈등 관리가 소홀할 경우,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원활한 집행이 어려워지거나 지방비 매칭 등 행정 절차가 지연되는 사례가 많음
- 설치 예정지와 인접 지역 주민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장사시설에 대한 인식 개선 및 교육·홍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설득과 대화를 통해 신뢰와 협력을 기반으로 한 추진이 필요함

2) 실효성 확보

- 국가에서는 국비 지원단가 현실화 및 유치지역에 대한 혜택 지원, 지역 주민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 장사시설 설치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

3) 갈등 조정 방향

- 장사시설의 설치·조성과 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은 크게 기술적 접근과 협상적 접근, 보상적 접근으로 구분할 수 있음

〈표 4-34〉 장사시설 조성에 따른 갈등 조정 방향

구분	내용
기술적 접근	• 주변 환경 또는 주민생활 등의 유해성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환경공해방지시설 및 재해예방 시설 설치 및 환경 배출 오염물질에 대한 모니터링 추진 • 주변 환경과 어울릴 수 있는 도시숲, 수목원, 자연휴양림, 생태공원 등 자연과 어우러지는 장사시설 조성을 통한 주민의 거부감을 낮추고, 휴식공간을 제공
협상적 접근	• 입지 예정 지역주민과의 이견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 설명회, 의견조사, 선진지 견학 등을 진행하고, 장사시설 사전단계에서 부터 주민의 의견이 수렴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참여를 보장하여야함.
보상적 접근	• 주민과 협의를 통해 경제적·비경제적 보상 등을 제공하여 장사시설을 추진 • 지역주민 숙원사업, 경로당·체육시설·문화시설 등 편의시설 제공, 장사시설 이용료 감면 등

- 장사시설 관련 갈등은 지역주민 외에도 장사시설이 보통 지역 외곽에 조성되는 것을 감안, 접경지역 주민의 반대도 많기 때문에 상황에 맞는 갈등 해결 방안이 필요함

〈표 4-35〉 장사시설 조성에 따른 갈등 및 해결방안 유형

구분	요인	해결 방안
인근지역	설치 반대	• 주민설득과 소통, 유사사례로 타지자체 설치가동 중인 장사시설 견학 등을 통해 시설에 대한 이해와 지속적인 설득, 인센티브 지원(이용료)
해당지역	인센티브 지원 관련 (주민편의시설, 이용료 등)	• 주민설득과 신뢰성,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기금지원 및 부대시설 운영권 부여로 인한 수익 창출 및 장사시설 내 지역주민 채용 고려
공동사업 추진 지자체간 갈등	협약서 (분담금 등)에 대한 의회와 집행부 간의 갈등	• 대화와 타협, 협약서 부분 변경 등을 통한 이해 절충 • 지자체 간 거버넌스 운영
민간사업 시행사	사업추진 일정 불일치	• 사전적 협의와 진행 과정 모니터링

○ 장사시설 조성에 따른 갈등 유형별 해결 사례

〈표 4-36〉 장사시설 조성에 따른 갈등 유형별 해결 사례

구분	주요 원인	해결 사례
홍성군	• 인근 주민 반대 • 공동 화장장 건립을 위한 시·군 분담비 협의문제	• 주민홍보를 통한 인식개선 노력 • 홍성군 화장장 주변 지역주민 지원 기금 설치 및 운영을 통한 주변 마을 지원 • 사업비 산출 조정 및 지자체 간 분담금 일부 조정
춘천시	• 입지 주민 반대	• 전담부서 개설 • 화장장 주변 지역 주민지원 기금설치 조례를 통한 주민지원 • 주민홍보, 인식개선 및 교육
정읍시	• 김제시 주민 반대	• 전북도 갈등 조정 자문위원회 운영(실무회의 4회, 자문회의 5회)을 통한 사업추진 결정 • 화장장 대상지 주민 인센티브 제공

2. 장사시설 설치에 따른 지원 방안

1) 부대시설 운영권 부여

- 시설 내의 매점·식당·자판기·주차시설 등에 대한 운영권을 지역 주민들에게 부여하여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주요 사례로 제시됨
- 다만, 장례식장, 화장장 등 주요시설에 대한 운영권 부여는 전문성 측면에서 배제되어야 함
 - 특히, 주요 시설의 운영권에 대한 문제는 운영의 목적성을 고려했을 때 적자 운영이 예상될 수 있어 주민들이 직접 운영 시 경영악화로 인한 적자 발생에 대한 문제가 주민들에게 피해로 다가갈 수 있기에 지양할 필요가 있고 사례도 찾기가 어려운 실정임
- 시설 내 매점, 식당, 장례용품, 직원 채용 등 부대사업에 대한 운영권을 부여하는 것은 다른 지역에서도 전반적으로 찬성하는 분위기임
 - 수원시 연화장은 장례식장 운영권을 지역주민에게 제공하여 신속하게 합의한 사례임
 - 2000년 8월 수원시는 도심 화장장을 변두리로 이전하면서 하동과 이의동의 주민들 174세대가 100만 원 정도(최소 100~300)를 투자해 (주)수원시장례식장 운영회를 구성하여 운영토록 허락함

- 투자에 대한 연 배당률은 대략 50% 상회, 2008년 매출액 약 87억 원, 2015년 약 100억 원(경기도 2015)
- 또한, 성남시 장례문화시설은 장례식장 운영권을 지역주민에게 제공, 현재 제1 화장장에 이어 제2 화장장도 운영 중에 있음

2) 지역주민 지원을 통한 건립 유도

- 화장시설 설치지역 주민지원 강화를 통해 장사시설 건립을 추진해야 함
- (장사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및 제4항) 장사시설 등의 운영권 지역 주민 우선 지원, 필요시 조례로 기금을 설치하여 지역주민 지원이 가능함
- 화장 시 관내·관외 요금 차이*를 두어 상대적 혜택 부여
 - 장사법 제2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조례로 정하는 화장시설 사용료는 당해 지역의 주민과 다른 지역의 주민을 구분하여 달리 부과할 수 있음
- 다만, 원치 않게 타 지역 화장시설 이용할 경우 과도한 요금 차이에 대한 지역민의 사용료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 지원금 지급을 통해 이를 완화하고 있음
- 사용료 경감 방안
 - ① 인근 지자체와 업무협약으로 관내 요금 적용(제주에서는 지리적으로 적용이 어려움)
 - ② 관내 인정 대상의 완화(자녀 또는 보호자가 제주 거주자일 경우 관내로 인정)
 - ③ 화장시설이 설치된 지역과 업무협약을 맺어 해당 지자체 주민에 대해서는 관내 요금 적용

3) 경제적 기반 마련으로 주민 소득 증진 지원

- 종합장사시설 인근 상업시설, 유원지, 캠핑장 등을 개발하고 관리권한을 지역주민자치 단체에 부여하고 장사시설을 찾는 방문객에게 할인 혜택 등을 부여함
- 주변 환경을 활용하여 교육 콘텐츠 개발과 이를 활용한 교육장 운영, 다양한 관광자원 개발을 추진함
- 공설공원묘지 외에 마을공동묘지 등의 토지는 소유가 마을회, 노인회, 어촌계, 산림계 등에 해당하는 기타단체 소유로 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집단 묘지 등을 재개발할 때에는 마을 공동사업 등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주민 소득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음

4) 종합장사시설 인근 주민지원 사업으로 마을시설 확충

- 인근 지역에 경로당, 마을회관 등을 현대식 건물로 신축하여 고령화된 지역주민들의 쉼터 역할을 제공함
- 냉난방 시설, IPTV, 냉장고, 안마기기, 농활, 지역축제로 인한 외부인 숙박시설(게스트하우스) 등으로 활용 가능한 현대식 경로당 또는 마을회관 등을 지원함
- 지역민 회의 및 외부 기관의 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소강당과 같은 공간을 포함한다면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됨

3. 입지선정

1) 재개발 및 신규 조성 검토

- 일반적으로 장사시설은 기존 공동묘지를 재개발하거나 신규 부지를 조성하는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함
- 기존 공동묘지 재개발과 신규 부지 조성은 토지 매입비, 주민 반대 여론, 수요 대응 능력, 보상 문제, 이장, 시설 활용 측면에서 차이가 있으며, 도시 및 산업시설의 확장성도 고려해야 하므로 사전에 충분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함
- 입지 선정 과정에서 기술적·과학적 측면만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절차적 원칙을 소홀히 하면 주민들의 불신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러한 불신으로 인해 주민들은 시설 입지에 따른 영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안전에 대한 비이성적인 요구를 하게 됨
- 이러한 요구가 충족되지 않을 경우, 주민들은 반대 입장을 고수하게 되며, 입지 선정 과정에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키면 절차의 민주성과 공정성뿐만 아니라 사업의 타당성과 형평성이 강화되어 사업 계획의 품질이 향상되는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표 4-37〉 장사시설 재개발 및 신규 조성 장단점 비교

구분	기존 공설묘지 재개발	신규부지 조성
장점	- 토지 매입비용 절감 - 기존 묘지의 이미지 개선 및 재개발에 따른 지역개발 발전 - 반대 여론이 상대적으로 낮음 - 기존 장사시설의 재활용에 따른 국토의 효율적 이용	- 공공부지 활용 시 토지 매입비 절감 - 대규모 종합장사시설 설치 가능 - 장기적인 수요에 대처 가능 - 인근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 - 중앙정부 방향 및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장사시설 조성
단점	- 기존부지의 크기 및 잔여 매장기수에 따른 제한적 개발 - 기존 시설 조성연도에 따라 위치적 제한 발생 - 추가적인 토지 보상 및 도로개설의 비용추가 - 사설 장사시설로 단순 지원에 한계 발생 - 중앙정부 장사시설 정책방향 및 지역 주민 의견 반영 어려움.	- 신규 장사시설 건립에 따른 지역주민간 갈등 발생 - 공공부지가 아닐 경우 토지 매입비 및 장사시설 건립에 많은 비용이 발생하며, 해당 지역 개발비용 등 추가 비용 발생 -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투자할 시설의 지원에 따른 형평성 문제 발생
종합	- 기존 묘지를 봉안시설이나 자연장시설로 교체하고, 공원화함으로써 지역사회 개발에 기여할 수 있음 - 기존 운영주체, 잔여매장기수에 따라 사업추진의 큰 차이가 발생	- 대규모 부지확보의 어려움과 지역사회 갈등 조정이 필요 - 장기적 관점에서 오랜 기간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건립 가능

2) 갈등해결을 위한 대화와 타협

- 자치단체의 장사시설 입지 갈등 사례를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이 지적된 갈등 요인은 '공론화 부족, 일방적 의사소통, 설득 과정의 빈곤, 공론화 부재와 일방적 추진, 대표성 부족, 행정 편의적 접근' 등으로, 이해관계자와의 협상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임
- 입지 갈등 해결에 성공한 사례에서는 지속적인 주민 대화, 개별 설득, 주민 의견 존중, 주민과의 인간적 유대감 형성, 화장시설 공사 전 주민협의체와 협정서 체결, 주민 명예감독 임명 등의 주민 참여 절차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함
- 지자체가 제안하고, 지역 전문가, 시민단체, 이해당사자들이 연계하여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최우선으로 꼽히며, 최근 논의되고 있는 거버넌스 체제 구축이 이러한 결과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요소로 분석됨

3) 갈등극복

(1) 갈등극복 방안

- 갈등 극복 방안으로 장묘시설 명칭개선, 지속적 홍보전략 수립, 지역주민 수혜방안 수립, 장묘시설 현대화·고급화 개발, 장묘시설 설치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책 마련, 집단민원 발생 시 대책방안 등을 제시함

〈표 4-38〉 갈등극복 방안

구분	세부내용
장묘시설 명칭개선	• 비선호 이미지 최대한 해소 및 친근감 유도 • 묘지공원 : 추모공원(서울시), 송조공원 등 • 봉안당 : 추모의집, 추억의 집 등 • 새로운 장묘시설 이름 공모
지속적 홍보전략 수립	• 신문광고, 매스컴 홍보 • 인터넷 홈페이지 홍보 • 여론조사/세미나/토론회 개최 • 사업설명회/공청회 개최 • 장사정책협의회 구성 및 각종 사회단체 등 협력체계 구축마련

구분	세부내용
지역주민 수해방안 수립	• 주민숙원사업 해결지원(도시기반시설 및 복지시설 등) • 주민지원사업 보조(소득증대/복리증진/육영사업 등) • 현지주민 고용을 통한 취업기회 제공(장사시설 근무) • 부대 수익사업 운영 시 주민수해 방안 등
장묘시설 현대화, 고급화 개발	• 현대적, 자연친화적 시설 설치 • 공원화 조성으로 주민휴식공간 제공(생활편의, 복지시설 인식)
장묘시설 설치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책 마련	• 반대 민원 해결을 위한 보상근거법 제정 지속 건의 •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도시기반시설로 의무적 설치 유도
집단민원 발생시 대책방안	• 홍보추진 및 전개 : 반상회보/시보 홍보 등 • 주민홍보 : 국내외선진장묘시설 견학 등 • 인센티브 제공에 대한 계속적 실현을 약속할 수 있는 조례 제정 • 인근지역 인프라시설에 대한 조속개발과 지원 • 지역주민 대상 사업설명회 개최 및 국내외선진장묘시설 견학

(2) 갈등 극복 해결방안 사례

① 기술적 접근 극복 사례

- 주변 환경과 주민 생활에 유해성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 환경공해방지시설 및 재해예방 시설을 설치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 결과를 인근 주민들이 투명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공고해야 함
- 화성시 '함백산메모리얼파크'의 경우, 대기오염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통해 신뢰를 구축하고, 대기 배출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개하여 투명하게 운영함

② 협상적 접근 극복 사례

- 입지 예정 지역 주민들과의 이견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 의견 조사 결과를 반영하고, 주민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사업을 추진해야 함
- 수원시 '연화장'의 경우, 반대 주민 대표들을 일본, 독일, 프랑스 등의 선진 화장장 시설을 직접 견학하도록 하여 설득함

③ 보상적 접근 극복 사례

- 주민과의 협의를 통해 지원편의시설 제공 등의 비경제적 보상과 경제적 보상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표 4-39〉 지원편의시설 제공 사례

구분	세부내용	비고
수원시	• 상수도 설치, 마을간 도로개설, 원천유원지 조성사업 등	
부산시	• 종합문화센터 건립, 오페수처리시설 설치, 도서관 건립, 공원묘지 공원화 사업, 도로확장 및 개설, 기타 숙원사업 등	
사천시	• 마을회관, 경로당 신축·개보수 지원 • 마을로부터 나무 등 차폐 가능하도록 계획	

〈표 4-40〉 경제적 보상 제공 사례

구분	세부내용	비고
청주시	• 월오동 개발에 따른 경제적 보상 및 수익성 사업 운영권 제공 • 주민숙원사업비 지원	
충주시	• 주민숙원사업비 지원	
홍성군	• 주민수혜사업비 조성 • 장사시설 내 식당, 장례식장, 봉안당 운영관리 등 관련 사업 운영권 제공	
천안시	• 주민숙원사업비 지원	

<표 4-41> 갈등 해결을 위한 인센티브 방안 예시

구분	세부내용	비고
생활환경 개선	• 진입로 확·포장 • 주택개량 • 가로등 설치, 어린이 놀이터 조성 등	
복지증진사업	• 노인회관, 마을회관 건립 • 공중목욕탕 건립 • 상·하수도 보급 • 도시가스 보급 • 도서관 등 문화시설 건립	
소득증대사업	• 부대석물, 매점, 식당, 꽃집 운영권 등 부여 • 지역주민 우선 채용 등	
애향심 고취	• 애국지사 추모비 건립 지원 사업 등	
육영사업	• 장학회 운영 지원 • 마을발전기금 조성지원(조례 제정)	
공원화 조성	• 산책·조깅코스 조성 • 다목적 생활체육운동공간 조성 • 자연학습장 조성 등	
기타	• 해당 지역주민 봉안당 안치료 감면(50%) 등	

제5절 효율적 장사시설 운영방안

1. 공설 장사시설 운영 방안

1) 운영주체 설정

- 양지공원을 비롯한 제주의 장사시설은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각 시설별 관리주체가 도, 행정시로 분리되어 있음
- 이로 인해 각 시설별 통계 수치나 운영 현황을 알기 위해서는 각 기관별로 정보를 취합해야 해야 하는 등 일원화된 관리가 어려운 상황임
- 향후 도 차원에서 공설묘지 및 공동묘지 정비와 같이 행정시에서 관리되는 시설들에 대한 관리를 일원화하여야 묘지정비, 화장시설을 비롯한 봉안시설, 자연장지 등의 수급 관리가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됨
- 장사시설을 관리하고 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음

〈표 4-42〉 운영대안의 설정

구 분	운영대안	비고
제주 장사시설 운영관리 주체	대안1 : 직영에 의한 운영	사업소 설치 검토
	대안2 : 지방공단에 의한 운영	시설관리공단 설립시 위탁 운영 검토
	대안3 : 재단법인에 의한 운영	
	대안4 : 민간위탁에 의한 운영	

- 그 중 현실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은 직영을 유지하되 각 기관에서 나누어 관리하지 않고 하나의 사업소를 설치하여 관리를 일원화 하는 방식과 다른 지자체와 같이 지역 시설관리공단을 통해 운영하는 방식 두가지로 볼 수 있음
 - 재단법인 및 민간위탁의 경우 장사시설 관리 및 장례 관련 업종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별도의 법인을 지자체 주도로 설립해야 하거나 그러한 민간 기관이 있어야 위탁이 가능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제주 상황에서는 실행하기 어려운 방안임
- 첫째로 사업소를 설치하여 직영으로 운영하는 방안과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자 함

- 전액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으로 설립되는 시설관리공단(지방공단)은 양지공원 등 장사시설을 운영하는 것이 목적사업으로 명시된 조례가 설치되어야 함
- 다만, 장사시설만을 관리하기 위해 독립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는 예는 찾을 수 없으며 다른 공공시설물에 대한 관리를 함께 수행하는데 이에 대한 조직 및 예산의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실제로 2014년, 2019년 2차례에 걸쳐 공단 설립 타당성용역이 이루어졌으나 무산되었고 금년도에 다시 타당성 검토가 추진되고 있음
 - 2019년 당시 장사시설은 공단이 맡을 경우 인력감축 효과는 있지만 향후 5년간 경상수지 평균비율이 50%에 미달해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받았음
 - 최근 ‘제주연구원’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 장사시설 사용료 원가분석 및 현실화 방안」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등 낮은 수준에 해당하는 제주 장사시설 사용료를 현실화하여야 이를 보완할 수 있음
- 따라서 단기간 내에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며 설립된다 하더라도 공단의 목적 사업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수익성을 갖추어야 하므로 당장 실현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그러므로 현 상황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할수 있는 방안은 지금과 같이 직영 운영을 유지하되 사업소 조직을 설치하여 제주의 공설장사시설 관리를 일원화하는 것임

■ 직영에 의한 운영 - 사업소 조직

- 장사시설을 직영으로 운영할 때 일반적으로 1개의 과단위로 운영하는 형태이나 현재 조직에서는 사업소의 형태의 운영방식이 적합할 것이며, 직영에 의한 운영은 현재 공무원에 의하여 운영되는 형태를 말함
- 그러므로 현재의 법과 기준에서는 직영으로 운영할 경우 특별한 법적개정이나 운영에 따른 제약 요인이 없음
- 직영에 의하여 운영될 경우 공공성 측면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직영에 의하여 운영이 되면 예산확보의 어려움은 있을 수 있겠으나 이익이 되지 않는

영역이나 비능률적인 분야까지도 운영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음

- 그렇지만 공무원 조직 특성상 순환보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지속성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이는 전문성이 결여될 수 있다는 문제로도 연결됨
- 다만 시설관리에는 직접적인 시설 관리와 운영 외에도 청소, 경비, 공원 전반 관리 등의 간접적인 업무도 포함되므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인력을 확보하는 것은 직영 운영에서 어려운 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세부적인 운영 내용에 대해서는 위탁 또는 대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임

〈표 4-43〉 제주 장사시설 운영관리 업무 범위 설정(안)

구분		관련업무	운영주체
장사시설 전반		행정, 시설계획	직영(사업소)
시설 관리	공설장례식장	장례식장, 장례차량 운영	직영(사업소), 민간위탁(장례 관련 법인 등)
		식당, 매점	민간위탁(지역주민협의체, 비영리단체)
	화장시설	행정, 화장장 가동	직영(사업소)
	봉안시설	봉안당, 자연장 접수 및 안치	직영(사업소)
	공원관리	공원관리, 잔디, 수목관리	민간 조경업체
	경비, 청소	경비, 청소 업무	경비, 청소 전문업체

■ 시설관리공단 위탁 운영

- 현재 제주에는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어 있지 않음
- 다수의 지자체에서 지역 시설관리공단을 통하여 장사시설의 운영을 위탁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주에도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될 경우 장사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운영 위탁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전문 인력 활용)** 화장시설의 경우 다른 시설에 비해 숙련자와 함께 기계, 환경 분야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필요함
 - 전문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경우 화장시설은 화장로 운영 회차 확대 및 시설관리에 있어 안정적인 운영으로 주민 편의를 증대시킬 수 있음

- 화장시설은 윤달이 있는 해에 개장유골에 대한 이용빈도가 매우 높아지므로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임
- 예를 들어, 부산시설공단은 공설 화장시설의 화장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최신 장비를 도입하고, 운영 인력을 전문적으로 교육하여 화장 절차를 최적화할 수 있음
- (관리의 투명성) 시설관리공단은 지방공기업으로서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운영되고 이에 따라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절차를 수행해야 함
 - 예를 들어 공설화장시설 등 장사시설을 운영하는 시설관리공단은 「클린아이 경영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운영 보고서를 공개하고, 향후 비전과 운영 계획 등을 공개함으로써 신뢰를 구축하고 있음
- (비용 절감) 시설관리공단에 장사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에 비해 효율성이 증대되면서 전반적인 운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
 - 각 부서가 분리되어 장사시설을 운영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시설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공단을 통해 대규모 운영을 하면서 경제적으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여, 시설 관리 비용을 최소화하고, 그 절감된 비용을 시설 개선과 서비스 향상에 재투자할 수 있음
- (주민편의 향상) 시설관리공단은 주로 지역 주민들을 서비스대상으로 하면서 주민 중심의 편의성을 확보하는 것에 전문적이므로 주말과 공휴일 운영시간 확대, 편의시설 조성 등 주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장사시설을 이용하게 할 수 있음
- (지역사회와의 소통 강화) 협오시설에 속하는 장사시설을 운영하면서 지역주민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시설운영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 이를 반영하여 개선할 수 있음
- (사회적 책임 강화) 장사시설이 가져야 할 사회적 책임이 강화되는 가운데 이를 위해 운영되는 여러 가지 교육·홍보 프로그램, 공영장례 지원 등의 서비스 강화에 유리함

2. 사설 장사시설 운영방안_장사재단법인 설립 허가 검토²¹⁾

1) 장사재단법인 설립 허가 기준

(1) 재단법인 설립 허가

- 장사재단법인은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에 해당함
-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장사재단법인이 설립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필요함
- 제4조(설립허가) ① 주무관청은 법인 설립허가 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그 설립을 허가할 수 있다.
 - 1.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
 - 2. 목적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 3.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이 아닐 것

(2)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구비서류

- 비영리법인인 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의 제출이 필요함
- 다음의 서류 중 8번. 재산목록 및 그 증빙서류는 재단법인 설립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관련한 내용임
- 재단법인의 재산은 크게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나누어지는데 이를 명확하게 구분해야 하고 금액은 감정평가액을 기재해야 함
 -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과 관련된 부동산 또는 동산 중에서 법인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된 재산, 기부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회계연도 세제잉여금으로 기본재산에 편입된 재산,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 등이 기본재산에 속하며,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은 운영재산(보통재산)으로 구분됨

21) 부록 I 사설 장사시설 관리방안 세부내용 참조

- 기본재산은 주로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부동산(대지, 건물, 임야 등)이나 재산 감소를 초래하지 않는 동산(현금, 임차보증금)으로 구성되며, 기본재산 목록은 정관 별지에 기재되어야 하므로, 기본재산에 변동이 있을 경우 주무관청의 정관변경 허가가 필요함

〈표 4-44〉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관련 제출서류 및 내용

제출서류	세부내용
1.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1부	
2. 설립취지서 1부	
3. 설립발기인 인적사항 1부	• 설립발기인의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및 약력 등 기재 • 설립발기인이 법인이면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 생년월일 · 주소와 정관을 기재
4. 임원 취임 예정자 명단 1부	• 임원 취임 예정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약력 기재
5. 임원취임승낙서 1부	• 취임하는 임원의 서명 · 날인이 있어야 함
6. 창립 총회 회의록 1부	• 회의록 내용상 별첨 서류 첨부 및 간인(발기인 전원) • 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제출
7. 정관 1부	
8. 재산목록 및 그 증빙서류 1부	• 재단법인의 경우,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 기재 • 부동산·예금·유가증권 등 재산에 관한 등기소·금융기관 등의 증명서
9. (재산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 재산출연승낙서(기부승낙서) 1부	• 재산출연증서를 공증 받아 제출
10. 사무실 확보 증명서 1부	• 임대차계약서 또는 건물사용승낙서, 건물소유권 입증 서류 등
11. 당해연도 사업계획서 1부	
12. 당해연도 수지예산서 1부	
13. 법인조직 및 상근임직원 정수표 1부	

2) 설립 시 적절한 재산 규모 검토

- 장사 재단법인이 정해진 규정 내에서 적법하게 운영되고 법인의 파산으로 장사시설 이용자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설립 과정에서 필요한 재산 규모에 대해 적절하게 검증되어 법인의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어야 함
- 제주의 지가, 건축비용 등을 감안하여 각 장사시설별로 필요한 최소한의 기본재산 규모를 검토하면 다음과 같음²²⁾

22) 아래 내용은 재단법인 설립이 필요한 장사시설 최소규모를 가정하여 산정해본 것으로 연구단계에서 필요 재산가액을 확정할 수는 없으며 설립 허가 과정에서 이러한 방식으로 검토해볼 수 있도록 제안하는 내용임

- 사설자연장지: 토지가액 포함 약 60억 원(최소 5만㎡의 면적 기준)
- 사설묘지: 토지가액 포함 약 101억 원(최소 10만㎡의 면적 기준)
- 사설봉안시설: 토지 및 건축공사비 약 30억 원(봉안공간 5천구 이상)
- 다만, 이는 사업부지에 따른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 재단설립 절차 등의 과정에서 그 상황에 맞추어 그 규모를 설정하고 검토해야 할 것임

3) 사설 장사시설의 장단점

(1) 장점

- (서비스 다양화) 사설 장사시설은 다양한 고객의 요구에 맞춘 맞춤형(종교특성 등) 서비스, 고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 (효율적 운영) 사설 기관은 공공기관에 비해 비교적 빠르게 의사 결정을 내리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빠르게 시설을 확장하거나 개선할 수 있음
- (지역사회 기여) 사설 장사시설이 새로이 생길 경우 지역 사회에 일자리를 제공하고, 관련 산업을 활성화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음

(2) 단점

- (이용료 부담) 사설 장사시설의 이용료는 공설 시설보다 훨씬 높은 편으로 일반 주민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으며 시설 입장에서조차 공설시설과의 가격경쟁력에서 뒤쳐서 규모에 비해 실제 이용률은 낮을 수 있음
- (사회적 반발) 지역 주민들이 장사시설 설치를 반대하는 경우가 많아, 공공성을 강조하는 공공시설에 비하여 사설 장사시설은 비록 비영리법인이라는 하지만 공공시설보다 더 큰 사회적 반발에 직면할 수 있음
- (이용자 피해 우려) 사설 장사시설에서는 운영 과정에서 비리나 부패 문제, 또는 경영난이 발생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시설 이용자의 피해로 연결될 수 있음

4) 검토결과

- 최근 장례 문화의 변화와 함께, 장사시설의 공급 문제는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음
- 특히, 제주의 경우 전문장례식장을 제외하고는 공설 장사시설이 충분히 공급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단법인을 설립·운영해야 하는 사설 장사시설을 추가로 공급할 필요는 없는 상황임
- 공설 장사시설은 아무래도 법적, 정책적으로 직접적인 제약을 받기 때문에 투명성과 신뢰성을 보장하여 주민들과의 신뢰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음
- 사설 장사시설이 고급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선택권을 높여주는 하지만 대신 높은 비용을 요구하므로 이제는 기본권의 하나처럼 인식되기 시작한 장사서비스는 경제적 약자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음
- 더군다나 공설 장사시설이 충분히 공급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설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은 국토의 비효율적 이용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환경 훼손 및 자원 낭비를 초래할 수 있음
- 사설 장사시설은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높은 비용, 사회적 반발, 운영 투명성 문제 등 단점도 존재함
- 또한 운영 안정성, 환경적 측면을 고려할 때, 대규모 사설 장사시설 설치의 지양해야 한다고 판단되며, 공설 장사시설을 통해 주민들의 장례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안이라 할 수 있음
- 종합해 볼 때, 현재로서는 대규모 장사시설 설치 및 재단법인 설립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은 아니나 장사시설의 공급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공공재원을 절감하면서도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민관 공동사업 형태로 추진된다면 가능하다고 판단됨
- 그렇지 않다면 현재 대규모 장사시설 설치를 위한 사항들이 공론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단법인 설립을 허가하기 위한 기준이나 주민 간 공감대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므로 앞서 살펴본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대규모 장사시설을 운영하는 재단 법인이 안정적으로 장사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역에 맞는 관련 기준을 정립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3. 사용료 관리

1) 장사시설 사용료 현실화

- 제주특별자치도에 조성된 장사시설의 사용료는 2002년 이후 별도의 인상 없이 동결되어 타지자체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며 물가상승에 따른 인건비·운영비 부담 증가로 도내 장사시설의 운영 적자는 증가하고 있음
- (관내주민 기준) 화장료 5만원(전국 평균 10만원), 봉안료 10만원(전국 평균 40만원), 자연장 10만원(전국 평균 40만원)
- '22년도 양지공원(화장시설, 봉안시설) 사업비 18.8억원, 수수료 수입 6.7억원으로 12억원의 적자가 발생

〈표 4-45〉 장사시설 사용료 비교 및 현실화율

구분	관내기준 사용료	전국 평균 비교	현실화율	비고
화장료	50,000원	100,000원	15%	
봉안시설	100,000원	400,000원	33%	
자연장지	100,000원	400,000원	44%	

- 타 지자체의 경우에는 관내 주민 사용료는 저렴한 대신 관외 주민 사용료를 높게 책정하여 저렴한 관내 주민 사용료 수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일부 보완하나 제주는 지리적 특성상 타지역민의 유입이 없기 때문에 이같은 효과가 발생하지 않아 저렴한 사용료로 인한 손실이 그대로 누적되고 있음
- 적게는 2배, 많게는 7~8배까지 사용료에 차등을 두고 있음(화장료가 차이가 큰 편임)
- 이로써 각 시설별 사용료 수입의 현실화율(원가 대비 수입 비율)은 매우 낮아서 화장시설은 15.2%, 봉안시설은 33%, 자연장지는 44.4% 수준임
- 이에 따라 제주연구원에서는 2023년 연구용역²³⁾을 통해 장사시설의 운영적자를 개선하기 위한 사용료 원가 분석 및 현실화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였음

23) 제주특별자치도 장사시설 사용료 원가 분석 및 현실화 방안(제주연구원, 23. 7.)

- 연구에서는 고령화에 따라 이용구수가 현행보다 50% 증가 시 화장장은 15억원, 자연장지는 2.3억원, 봉안당은 6억원 정도의 운영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함
 - 연구에서는 사용료 인상안으로 화장료 5→10만원, 봉안당 10→30만원, 자연장지 10→20만원(잔디형, 수목형)~30만원(정원형), 공설묘지는 100만원으로 제시함
 - 이는 장사시설의 공익성과 각 시설별 투입 비용에 따른 수익성 등을 감안하여 제시한 값으로 본 계획에서 이보다 좀더 높은 전국 평균 수준의 인상안을 제시하는 이유는 장사시설 전체적인 관점에서 일정 수준의 수익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임
 - 다만 공설묘지의 경우 사용료를 인상하는 것은 묘지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은 동의하나 이를 인상할 경우 묘지 수요가 개인 묘지 및 불법 묘지 형태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번 계획의 인상계획안에서는 제외함
- 위의 내용을 검토하여 이번 계획에서 제시하는 장사시설 사용료의 인상(안)은 다음과 같이 전국 평균 수준으로의 인상을 제안하며 생활물가 상승에 따른 도민 부담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제안함
- 아래의 인상안대로 인상할 경우 화장료는 여전히 손실이 발생하나 봉안당과 자연장지에서는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로 전환될 수 있음

〈표 4-46〉 장사시설 사용료 인상(안)

구분	관내		관외	
	현재	인상(안)	현재	인상(안)
화장료	50,000원	100,000원	120,000	200,000
봉안시설	100,000원	400,000원	200,000	800,000
자연장지	100,000원	400,000원	200,000	800,000

2) 사용료 중간 반환 기준 조정

- 현재 봉안시설 등에서 유골 반환시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별표3] 사용료 등 반환기준에 따라 잔여 사용료를 반환하고 있음

<표 4-47> 사용료 반환기준(현재) (단위: 천원/위)

사용기간	양지공원 봉안당		충혼각 공설 봉안당		제주시 우도면 봉안당		서귀포 추모공원		성산읍 봉안당		대정읍 봉안당		표선면 봉안당		비고
	도내	도외	도내	도외	도내	도외	도내	도외	도내	도외	도내	도외	도내	도외	
기납부액	100	200	100	200	100	200	50	100	20	50	20	50	20	50	
1일 이상 1년 미만	93	186	93	186	93	186	47	93	19	47	19	47	19	47	
1년 이상 2년 미만	87	174	87	174	87	174	43	87	17	43	17	43	17	43	
2년 이상 3년 미만	80	160	80	160	80	160	40	80	16	40	16	40	16	40	
3년 이상 4년 미만	73	146	73	146	73	146	36	73	15	36	15	36	15	36	
4년 이상 5년 미만	67	134	67	134	67	134	33	67	13	33	13	33	13	33	
5년 이상 6년 미만	60	120	60	120	60	120	30	60	12	30	12	30	12	30	
6년 이상 7년 미만	53	106	53	106	53	106	27	53	11	27	11	27	11	27	
7년 이상 8년 미만	47	94	47	94	47	94	23	47	9	23	9	23	9	23	
8년 이상 9년 미만	40	80	40	80	40	80	20	40	8	20	8	20	8	20	
9년 이상 10년 미만	33	66	33	66	33	66	17	33	7	17	7	17	7	17	
10년 이상 11년 미만	27	54	27	54	27	54	13	27	5	13	5	13	5	13	
11년 이상 12년 미만	20	40	20	40	20	40	10	20	4	10	4	10	4	10	
12년 이상 13년 미만	13	26	13	26	13	26	7	13	3	7	3	7	3	7	
13년 이상 14년 미만	7	14	7	14	7	14	3	7	1	3	1	3	1	3	
14년 이상	미지급														

비고) 사용기간 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추가 징수하지 아니한다.

- 다만 위 내용이 천원단위까지 세분화되어 반환과정에 어려움이 있으며²⁴⁾ 초기 설치비용이 많은 특성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연할한 금액을 반환해주는 것으로 조례가 제정되어 있음

24) 2024. 9. 4.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공설자연장지의 유골을 반환할수 있게 됨에 따라 봉안당에 국한되어 있던 반환 관련 규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또한, 장사시설 현황에 변동이 있으면 조례 내용을 계속 개정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음
- 타 지자체의 경우 주로 이용 경과 연도별로 반환 비율을 설정하여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최대 반환금액이 50~60% 정도로 제한되어 있음
- 반환가능한 기간은 제주 현재 기준처럼 매년 상환 비율을 달리하는 경우, 2~3년 단위로 구분한 경우, 일정기간(예를 들면 5년, 성남시)이 경과하면 반환하지 않는 사례도 있었음
- 이를 반영하여 장사시설 사용료 중간 반환 금액은 최대 60%로 설정하고 10년 이후에는 반환하지 않는 기준을 제안함

<표 4-48> 사용료 반환기준(안)

(단위: %)

구분	반환금액	비고
1년 미만	60%	천원미만 절사
1년 이상 3년 미만	50%	
3년 이상 5년 미만	40%	
5년 이상 7년 미만	30%	
7년 이상 9년 미만	20%	
9년 이상 10년 이하	10%	
11년 이상	미지급	

제6절 공설·공동묘지·무연묘 등 조사와 처리 및 개발방안

1. 분묘 일제조사²⁵⁾

1) 법적 근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묘지의 일제조사)에서는 수급계획 또는 제28조에 따른 무연분묘의 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일정기한 기간 및 구역을 정하여 분묘에 대한 일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

<표 4-49> 무연분묘 처리에 관한 법률

「장사법」 제11조 (묘지의 일제 조사)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묘지 등 수급계획의 수립 또는 제28조에 따른 무연분묘(無緣墳墓)의 정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일정한 기간 및 구역을 정하여 분묘에 대한 일제 조사를 할 수 있다.
「장사법」 제28조 (무연분묘의 처리)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1조에 따른 일제 조사 결과 연고자가 없는 분묘에 매장된 시신 또는 유골을 화장하여 일정 기간 봉안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뜻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봉안한 유골의 연고자가 확인을 요구하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봉안에 관하여는 제12조제3항을 준용한다.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2) 조사 대상 및 필요성

- 조사대상 범위: 제주특별자치도 관내 공설묘지 및 사설묘지에 대한 일제 조사
- 제주에는 역사적으로 산담, 동자석 등 독특한 무덤양식을 가지고 있으며 생활터전 주변에 무덤이 위치한 사례가 많아 주로 산지에 편중된 일반적인 내륙지역의 무덤 양식과는 설치 모양과 위치 등의 행태가 달라 그 수가 뚜렷이 파악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전반적인 장사 정책 수립(화장량, 봉안 및 자연장지 시설 수요 예측, 무연분묘 파악 등)을 위해서는 제주 내 전체 묘지에 대한 일제 조사가 필요한 상황임

25) 2024_장사업무안내 참고

3) 조사 방법

(1) 조사 절차

- 분묘의 실태조사는 사전 자료 준비 이후 현장 실태조사 현장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통한 연고자 정보 입력 순으로 진행

〈표 4-50〉 분묘 실태조사 추진 절차

절차	주요 내용
자료 준비	항공사진, 지적도, GPS장비 등
▼	
항공사진을 통한 묘지 분석	묘지 위치, 취득정보 입력
▼	
연고자 조사	사망, 매장 등 신고서
▼	
현지 분묘 위치측정	사진촬영, 안내판, 높이 등
▼	
조사 자료 정리 및 입력	조사표, 사진파일, 시스템 입력
▼	
연고자 정보입력	묘지관리 시스템
▼	
결과보고(일·주·월)	일·주·월 결과보고

(2) 현장 조사

- 분묘 위치측정
 - GPS 측정 장비를 사용하여 분묘의 위치를 측정
 - 분묘(봉분, 평분)의 앞부분을 측정하며, 상석이 있을 경우 분묘와 상석의 중간 부분 측정
- 분묘의 높이, 면적, 시설물의 측정 및 조사
 - 법령 재·개정에 따라 과거 조성된 묘지 및 시설물은 현행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 본 조사는 개별 묘지와 분묘의 실태 파악을 위한 통계분석 목적이며, 행정처분 목적이 아님

- 면적 조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분묘 등의 점유 면적)
 - 분묘의 점유 면적은 분묘와 시설물의 단면적을 가로와 세로로 계산
 - 간이 측정 방식으로 줄자를 이용해 면적을 산출
 - 경사면이 있을 경우 경사면 끝에서부터 계산하며, 경사면 자체는 포함하지 않음
- 시설물 조사
 - 시설물 설치 기준에 따라 분묘당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 종류와 크기 조사
 - 비석은 1개, 높이는 2m 이내, 표면적은 3㎡ 이하로 설치
 - 상석은 1개, 석물은 1개 또는 1쌍 설치 가능
 - 비석, 상석 등의 시설물 종류와 수량을 기록하고, 비석의 높이는 줄자로 측정
- 분묘 형태 조사
 - 봉분: 높이 1m 이하의 형태
 - 평분: 납작하며 평평한 형태로 높이 50cm 이하
 - 봉안묘: 봉안시설로 된 분묘, 높이 70cm 이하
- 현장 사진
 - 원경: 묘지 주변이 잘 보이는 10~15m 전방에서 촬영
 - 근경: 안내판(일련번호)이 잘 보이도록 3~5m 전방에서 촬영
 - 크기는 1024×768, 가로로 촬영
- 일련번호 표지판 설치
 - 분묘 좌측에 설치하여 묘지 관리 및 사진 촬영 기준으로 사용
- 안내판 설치
 - 연고자가 파악되지 않은 분묘에 설치
 - 분묘 정면 기준 좌측 1m 이내 적정 위치에 설치
 - 사진 촬영 시 분묘 일련번호가 보이도록 번호수정용 표지판 활용
 - 공설묘지나 법인묘지처럼 집단화된 묘지의 경우 주요 위치에 부분적으로 설치

(3) 연고자 조사

- 각종 행정신고서와 항공사진 자료를 통해 매장 정보 수집
- 항공사진 묘지 판독 자료의 지번 정보를 이용하여 연고자 추적 조사
 - 소관청(지적과)에서 관리하는 토지대장(소유자, 주소) 등 일필지 사항 조회
 - 과세자료 등 세무과 협조
 - 연락처가 변경되었으면 주민등록 전·출입 신고자료
- 토지대장 및 과세자료, 주민등록 전·출입 신고자료를 활용하여 연고자 추적
- 인접 지역 주민 탐문조사 및 이·통장 협조를 통해 연고자 정보 파악
- 미확인 분묘의 연고자가 인근 지역주민으로 파악되면 되도록 동행을 요청하여 분묘의 위치 확인
- 집단묘지의 경우 설치자나 관리자를 통해 정보 입수
- 조사 기간 동안 파악되지 않은 분묘는 지속적으로 추적 조사 진행

2. 분묘의 설치 기간에 따른 관리 방안

1) 분묘의 설치기간

(1) 적용대상 분묘

- 분묘 설치기간의 제한은 2001년 1월 13일 이후 설치된 분묘에만 적용됨
- 2001년 1월 13일 이전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새로운 분묘를 설치하거나 합장하는 경우에는 분묘 설치기간의 제한이 있음
- 국가가 설치·운영하는 장사시설(자연장지 제외)은 「장사법」의 적용을 받지 않음

(2) 분묘의 설치기간의 연장 신청주기

- 공설묘지 및 사설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기본 설치기간은 30년으로 함
- 합장분묘인 경우에는 합장된 날을 기준으로 설치기간을 산정함

(3) 분묘의 설치기간의 단축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 묘지 수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조례에 따라 5년 이상 30년 미만의 기간 안에서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
- 설치기간은 단축할 수 있으나, 연장 신청 횟수는 단축할 수 없도록 규정함

(4) 위반 시 벌칙 등(법 제40조, 제41조, 제43조)

-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지 않거나 화장 또는 봉안하지 않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
- 대리인이 위반 행위를 한 경우, 행위자뿐만 아니라 개인이나 법인에 대해서도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
-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에 매장된 유골을 화장 또는 봉안하지 않은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됨

2) 분묘의 설치기간 연장

- 2001. 1. 13일 이후 공설묘지에 설치된 날부터 30년이 경과한 분묘의 연고자는 30년 1회에 한정하여 설치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음

〈표 4-51〉 분묘의 설치기간 연장신청 방법 및 절차

구분		내용
1	연장신청	• 설치기간이 지난 분묘의 연고자가 분묘의 설치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분묘의 설치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4개월 이내에 묘지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을 첨부하여 분묘 설치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
2	연장증명서의 교부	•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신청을 받은 자는 분묘 설치기간 연장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함.
3	연장내용 보고	• 법인묘지의 설치·관리자가 분묘 설치기간 연장증명서를 내어준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이를 시장 등에게 통보
4	묘적부 및 관리대장 기재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분묘 설치기간 연장증명서를 교부한 때 묘적부 및 관리대장을 작성·보관

3)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 등의 처리

(1) 적용 대상 분묘

- 2001년 1월 13일 이후에 설치된 분묘에 대해서만 적용됨
- 2001년 1월 13일 이전에 설치된 분묘는 분묘설치자 또는 연고자의 자유의사로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당사자 간의 특약이 있는 경우 그것에 의함

(2) 연고자가 개장하고자 하는 경우

- 관할 관청에 비치된 신고서에 기존 분묘의 사진을 첨부하여 신고사항을 작성하고 신고증명서를 교부받음

(3)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 설치자가 개장하고자 하는 경우

① 묘지의 연고자를 알고 있는 경우 : 서면통보

- 개장 예정일로부터 3개월 전에 ① 묘지 또는 분묘의 위치 및 장소, ② 개장 사유, 개장 후 안치 장소 및 기간, ③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 설치자의 성명·주소 및 연락 방법, ④ 그 외 개장에 필요한 사항을 문서로 작성하여 해당 분묘의 연고자에게 통보해야 함
- 개장신고서에 기존 분묘의 사진과 통보문을 첨부하여 개장신고를 하고 개장을 진행함
 - 위반 시 벌칙(법 제42조): 통보 없이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한 자에게는 1차 위반 시 200만 원, 2차 위반 시 25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 분묘의 개장 관련 사항(보상, 기한, 비용 등)에 대해 설치자 또는 연고자와 협의가 완료된 경우, 설치자 또는 연고자가 기존 분묘의 사진과 통보문을 첨부하여 개장 신고 후 개장을 진행함
 - 해당 분묘의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여 봉안함(시행령 제24조)

② 묘지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 공고

- 개장 예정일로부터 3개월 전에 ① 묘지 또는 분묘의 위치 및 장소, ② 개장 사유, 개장 후 안치 장소 및 기간, ③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 설치자의 성명·주소 및 연락 방법, ④ 그 외 개장에 필요한 사항을 2회 이상 공고함. 두 번째 공고는 첫 번째 공고일부터 40일이 지난 후에 시행함
- 개장공고는 개장 예정일로부터 최소 3개월 전에 2회 이상 공고해야 하며, 두 번째 공고는 첫 번째 공고 이후 40일이 지난 다음 공고해야 함
- 개장신고서에 공고문을 첨부하여 개장신고 후 개장을 진행함
- 위반 시 벌칙(법 제42조): 공고 없이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한 자에게는 1차 위반 시 200만 원, 2차 위반 시 25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여 봉안함(시행령 제24조)

4) 불법묘지 대책 방안

- 불법묘지 감소를 위한 방안은 크게 두 가지로, 지속적이고 다양한 홍보를 통해 도민의 의식 변화를 유도하는 방안과, 불법묘지에 대한 개장 장려금 및 화장 장려금 지원 등의 인센티브 제공, 그리고 행정처분 및 지도·단속을 병행하여 불법묘지 감소를 유도하는 것임
- 불법묘지 대책 방안은 다음과 같음
 - 불법묘지에 대한 개장 장려금을 지원함
 -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통해 주민들의 의식 변화를 유도함
 - 마을 이장 및 장사 담당 공무원의 장례식장 방문을 통한 묘지설치 사전상담제를 운영함
 - 공설 봉안당 안치 및 자연장을 유도하기 위한 홍보를 강화함
 - 묘지설치 관련 장사법 홍보를 통해 적법한 묘지 설치 및 관리를 유도함
 - 기존 불법묘지에 대해서는 계도와 홍보를 병행하여 자진 철거를 유도함
 - 불법묘지에 대한 주민들의 신고 의무 강화와 행정처분, 감시 실시가 필요함
 -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농지 및 산림부서 등과 연계한 행정처분이 필요함
 - 사설묘지의 적법 여부를 사전 확인하는 제도를 실시함

3. 무연분묘 처리

〈표 4-52〉 무연분묘 처리절차

단계	구분	내용
1단계	현장답사	지장물 조사, 사진 촬영, 기수 확인, 분묘 표식, 분묘배치도, 제안서
2단계	개정허가신청 사전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담당자 사전방문 및 개요설명, 개정허가사항 협의, 자료 보고, 지시사항 체크, 공고안, 분묘사진(2분판)
3단계	분묘 개장공고	- 중앙지/지방지 2회 - 공고기간 내 연고자를 찾기 위한 노력 - 해당 지번 등기부상의 수요자가 다른 경우 각각 공고
4단계	개장허가신청서/개장 허가 필증	- 개장 허가신청서 제출 - 개장 허가필증 교부
5단계	분묘 개장	- 개장작업, 화장장 예약, 화장, 봉안 안치 5년 - 완료 보고서 제출

1) 주요 절차

(1) 신청 및 접수

- 신고 기간: 2개월간
- 접수처: 분묘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 구비서류
 - 무연분묘 개장허가신청서
 - 최근 분묘사진(근경 1, 원경 1)
 - 분묘위치도(지적도에 분묘위치 표시)
 -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서
 - 등기부등본(을구포함) 또는 토지대장(접수담당이 “공부확인필”로 생략 가능)
 - 위임장(관리자 등이 위임을 받고 신청할 경우)
 - 전 소유자 인우보증서(5년 이내 소유변동시)

○ 업무처리 절차

- 무연고분묘 개장허가 신청(민원인) ⇨ 현지확인 후 공고대상 분묘확정(읍면동·시) ⇨ 신문공고(시) ⇨ 관리실태 최종확인(읍면동) ⇨ 개장대상 분묘확정(시) ⇨ 개장허가증 교부(읍면동) ⇨ 분묘개장(개장 신청인) ⇨ 분묘개장 등 정비사항 기록유지관리(읍면동·시)

(2) 현지 확인 조사(1차)

○ 조사기간: 1개월간

○ 조사자: 읍·면·동 담당자

○ 확인사항

- 공부 확인: 신청대상 분묘 토지대장 등재여부 및 토지소유자 확인
- 현장 확인: 붙임 무연고분묘 판단기준을 참조하여 분묘의 관리상태 및 훼손정도, 토지 전 소유주 등 지역주민의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하여 무연고분묘 여부를 확인

(3) 현지 확인 조사(2차)

○ 조사기간: 20일 간

○ 조사대상: 1차 읍면동 조사결과 재확인이 필요한 분묘에 대하여 시와 해당 읍·면·동이 합동조사 실시

- 1차 조사 결과 무연분묘임이 확인한 분묘는 2차 조사 생략 가능

○ 조사자: 시 및 읍·면·동 합동 조사(별도 일정 계획에 의거 실시)

○ 확인사항: 붙임 무연고분묘 판단기준을 참조하여 무연고분묘 여부 확인, 개장공고 대상 분묘 결정

(4) 공고대상분묘 확정 및 개장 공고

- 기간: 3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2회
- 공고방법
 - 일간신문 공고 : 중앙지 하나 이상 포함 둘 이상의 일간신문
 - 시청 홈페이지 및 읍면동 마을회관 게시판에 공고내용 게시

(5) 개장 대상 분묘에 대한 안내판 설치(신청인)

- 기간: 분묘개장공고 기간 중
- 위치: 해당 무연고분묘에 설치
- 설치 의무자: 무연고분묘 개장 신청자

(6) 개장공고 분묘 관리 여부 확인

- 기간: 개장공고 기간 말 20일간
- 확인자: 읍·면·동 담당자
- 확인사항: 1·2차 현장확인 조사 이후에 벌초 등 분묘가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개장 안내문 설치 여부 확인)

(7) 무연분묘 개장 확정

- 개장공고 기간 중 이의 신청이 없고 관리가 되지 않는 분묘 개장확정통보 (시 ⇒ 읍·면·동), 개장허가증 교부(읍·면·동⇒ 신청자)

(8) 개장 및 정비

- 개장허가: 시에서 개장허가증 교부 받은 후 개장 (토지소유자)
- 유골처리: 양지공원에서 화장 후 공설봉안당에 10년간 안치
- 개장 등 정비방법
 - 개장시기 결정, 개장허가 이행 등은 개장신청자가 결정하여 이행하며 공고비용 외 개장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분묘개장 신청자가 부담·처리
 - 분묘개장 후 종전의 분묘지는 매몰하여 정리

2) 소요비용

- 국토교통부에서 2024년 고시한 무연분묘의 이전에 따른 보상액은 단장 1기당 총 1,508,000원으로 여기에는 분묘이전비 1,160,090원, 잡비 348,000원 등이 포함된 금액임

〈표 4-53〉 무연분묘 보상금 산정금액

(단위: 원)

구 분		합계	분묘이전비	잡 비	비고
무연분묘	단장	1,508,000	1,160,090	348,000	
	합장	2,132,000	1,640,130	492,000	
	아장	759,000	584,000	175,000	

4. 공설묘지 개발방안

1) 배경

- 현재 장사방법에 있어서 화장률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매장률은 떨어지고 있는 상황임
- 제주에서도 마찬가지로 공설묘지가 지역별로 조성되어 있으나 그 이용률이 현저히 떨어져 있는 상황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봉안 및 자연장을 장려할 의무가 있음(장사법 제4조 제1항)
- 그러므로 이용률 감소로 관리가 어려워지고 있는 공설묘지를 정비하여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봉안·자연장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공설묘지 재개발 방안은 현재 설치된 공설묘지 부지를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토지매입 비용의 절감, 국토의 효율적 이용, 주민과의 갈등 최소화, 기존 시설의 환경 정비 등을 도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그럼에도 대체로 기존 묘지의 정비를 위하여 신문 광고, 분묘일제신고조사 실시, 유·무연분묘 처리 및 보상 등 일련의 행정절차가 필요하여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될 뿐 아니라, 분묘 연고자나 인근 주민의 반대로 자칫 계획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과의 민관 협의, 공감대 조성 등이 필요함

2) 개발방향

- 기존의 묘지 부지를 활용하여 재개발하는 것을 기조로 하되 일반적으로 제시되는 묘지 재개발 방향은 다음과 같음
 - 자연장지 조성: 기존 묘지를 자연장지로 전환하여 수목형, 잔디형, 화초형 등 다양한 형태의 안치공간을 확보하는 방법임
 - 봉안시설 확충: 봉안당, 봉안탑 등 봉안시설을 추가하여 안치공간 확보하는 방법임
 - 공원화 및 친환경 설계: 묘지를 공원화하여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임

- 현재 제주에는 14개소의 공설묘지가 설치되어 있으며 그밖에도 공동묘지라고 불리는 마을묘지, 무연고묘지 등이 다수 존재하고 있음
- 최근 봉안시설 이용에서 자연장지 이용으로 점차 전환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위의 세가지 방법 중 별도의 건축물 또는 구조물이 추가되는 봉안시설 확충 방법은 제외하고 기존 부지를 자연장지로 재조성하는 방안과 공원형으로 재개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38조(장사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
① 화장시설에는 일반의 사용에 제공되는 봉안시설, 자연장지 및 장례식장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공동묘지에는 일반의 사용에 제공하는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및 장례식장을 설치할 수 있다.

3) 개발 방향 설정 기준 마련

- 공설묘지의 재개발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들을 검토하여 그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그밖에도 주민들의 호응과 참여도도 검토가 필요하나 사업 시행과정에서 반영되어야 할 부분으로 본 검토내용에서는 제외함
- 매장률(공간 활용률): 부지 내 매장을 위한 잔여 공간이 어느정도 남아 있는지에 따라 개발 방향 설정
 - 매장률이 높은 경우 이를 개발하기는 어려워 공간 정비 및 관리하는 것이 적절하나 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무연고묘지의 경우에는 절차에 따라 개장하여 공원화 및 자연장지 등의 형태로 전환하는 것이 적절함
- 그밖에 보완적으로 검토할 사항으로는 이용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지 여부와 다른 시설이나 자원과 활용할수 있는 연계성, 인근지역 주민들의 동의 등 다양한 검토가 필요함
 - 제주의 공설묘지는 주로 중산간지대에 설치되어 있어 일반인들의 접근성이 높지는 않은 편으로 이런 경우에는 잔여 공간을 자연장지로 전환하는 것이 적절하며 접근성이 좋은 곳에 대해서는 공원화하여 일반 주민들의 휴식공간을 마련함으로써 토지의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

<표 4-54> 매장률에 따른 공설묘지 재개발 방향

구분	← 매장률 높음 - 매장률 낮음 →			
개발방법	공간 정비 및 관리	잔여공간 자연장지 조성	공원화	재개발
대상지	제주: 서부, 어승생/ 구좌 서귀포: 대정, 상효 / 표선	애월, 색달 / 우도, 남원	애향묘지, 성산	조천, 안덕

4) 입지검토

- 제주 장사시설의 위치 특성을 고려하여 공설묘지를 재개발하기 적절한 입지를 검토해보고자 함
- 현재 제주자치도의 공설묘지는 다음과 같이 위치해 있음



<그림 4-11> 제주 공설묘지 위치도

- 현재 설치된 봉안시설과 자연장지 등의 위치를 함께 검토하여 그 지역에 공설묘지를 자연장지로 전환하는 등의 장사시설 재개발 및 공급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예상하고자 함
- 제주자치도의 봉안시설과 자연장지는 다음과 같이 위치해 있음
 - 지역별 분포를 볼 때 제주시내권에는 양지공원의 봉안당, 서귀포시내권에는 서귀포추모공원이 위치해 있고 제주 동부권에는 성산읍 봉안당이 설치되어 있음



<그림 4-12> 제주 공설봉안당 및 공설자연장지 위치도

- 서부권에서 접근할 수 있는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는 한정적인 상황임
 - 대정읍 봉안당의 경우 규모가 작고 이미 만장되어 실질적인 활용도는 전무한 상황임
- 지리적 측면으로 볼 때 제주 서부권에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의 설치와 같은 화장 후 유골의 안치를 위한 공간의 공급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그밖의 지역 공설묘지는 이용률과 도로 접근성 등을 개략적으로 검토하여 개발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안함

〈표 4-55〉 공설묘지별 재개발 방향(안)

구분		매장지 이용률	개발방향	비고
제주시	어승생공설	84.6%	공간 정비 및 관리	무연고분묘 개장 검토
	서부 공설	84.1%	공간 정비 및 관리	무연고분묘 개장 검토
	애향묘지	3.1%	공원화	
	애월읍 공설	6.0%	자연장 공간 조성	
	구좌읍 공설	25.4%	공간 정비 및 관리	
	조천읍 공설	4.2%	자연장 공간 조성	
	우도면 공설	34.2%	공간 정비 및 관리	
서귀포시	상효동 공설	81.0%	공간 정비 및 관리	무연고분묘 개장 검토
	색달동 공설	5.4%	자연장 공간 조성	
	대정읍 공설	89.7%	공간 정비 및 관리	무연고분묘 개장 검토
	남원읍 공설	13.7%	자연장 공간 조성	
	성산읍 공설	17.8%	자연장 공간 조성	
	안덕면 공설	3.6%	공원화	
	표선면 공설	57.1%	공간 정비 및 관리	

- 위에 언급된 공설묘지 외에 마을공동묘지 등에는 다수의 무연고묘가 존재하고 관리가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개장하여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인천광역시에 소속된 도서지역인 강화군, 옹진군 등의 경우 다수의 마을공동묘지를 자연장지로 전환하는 사업이 이루어짐

5) 개발방안(안)

(1) 공설묘지 잔여공간을 자연장 공간으로 조성

○ 대상 시설: 매장률 20% 이하 시설 중 5개소

- 애월읍, 조천읍, 색달동, 성산읍, 남원읍
- 매장 이용률이 낮아 잔여부지는 충분하나 접근성이 낮아 일반인이 오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공설묘지를 대상으로 함

○ 개발 내용

- 자연장지 전환 시 잔디장 기준으로 묘지에 비해 같은 공간임에도 수급률이 월등히 증가하게 되므로 추가 안장 공간이 확보되는 효과가 있음
- 현재 있는 형태를 유지하면서 남은 잔여 공간을 자연장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법임

〈표 4-56〉 경기도 시흥시 정왕공설공원묘지 내 ‘자연장지’ 개장



- ‘94년 설치된 정왕공설묘지(매장가능2,000기)는 2011년말 만장되었고 묘역 확대도 더이상 어려운 상황이었음
- 자연장 조성계획을 2011년 초부터 계획하여 국비 70%(185,500천원), 도비 15%(39,750천원)를 지원받은 총 사업비 265,000천원을 투입
- 무연고묘역을 정리한 후 전체묘지의 5.5%인 2,900㎡에 유골 2,015기 안치가능시설을 조성함

(2) 공원화

- 대상 시설: 매장률 20% 이하 시설 중 2개소
 - 애향묘지, 안덕면
- 공원화하는 방법에는 기존 시설유형을 유지하면서 자연장지 공원으로 활용하는 방법과 완전히 다른 용도로 지역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있음
 - 매장 이용률이 낮거나 무연고묘지가 조성되어 개장이 필요한 경우이며 어느정도 접근성이 있어 공원화 하는 것을 검토함
- 특히 대정읍 공설묘지의 경우 대정읍 주민 등 관계자들의 관심이 높으며 이를 위해 워킹그룹이 조직되어 운영되는 등 공설묘지 개발을 위한 동력이 많은 편임

〈표 4-57〉 강화군 해누리 공원(장사시설) 조성



(3) 공간정비 및 관리

- 대상 시설: 매장률 80% 이상 시설(중·단기), 매장률 21~80%(장기)
 - (중·단기) 어승생, 서부, 상호동, 대정읍 / (장기) 구좌읍, 우도면, 표선면
 - 매장 이용률이 높아 잔여부지가 많지 않은 공설묘지로 현재 분묘에 대한 회수 및 보상이 어렵기 때문에 기존의 공간을 정비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일반적으로 묘지 정비를 위해서는 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무연고묘지에 대한 조사 및 정비가 필요함
 - 장기적으로 무연분묘가 발생하고 분묘 설치기간의 기본기간(30년)이 종료되는 시점에 분묘의 반환을 추진하면서 대대적인 정비를 추진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표 4-58〉 가장동 공설묘지 분묘 일제조사 사례



경기도 오산시에서 도시계획의 효율적 추진 및 공설묘지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해 가장동 산 72-2번지 일대 가장동 공설묘지 분묘를 일제 조사하는 사례임
조사 후에는 분묘 정보를 현행화하고 표시목 제작하여 설치함

자료) 오산시민신문(<https://m.osannews.net/26762>)

■ 대정읍 공설묘지

- 매장현황: 매장가능 1,665기 중 1,494기가 매장되고 향후 매장가능기수는 171기로 현재 90% 가량 활용되고 있음
- 무연고 묘역은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고 자체 조사 결과 상 무연분묘 설치는 없는 것으로 파악됨
- 그 밖에 인접한 부지에 7개마을에서 운영하는 마을 공동묘지, 무연고 묘역, 사설 묘지 등이 혼재한 상태로 위치한 것으로 파악됨
- 모슬봉 자락에 위치하고 있어 탁 트인 시야와 더불어 경관이 우수한 편임

○ 검토 결과

- 최근 장사시설 설치의 트렌드인 종합장사시설, 주민 친화형 휴식 공간(공원형)이라는 유형을 감안한다면 주변 경관이 좋거나 접근성이 좋을 때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됨
- 주거지역과는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주민들의 불만은 적을 것으로 예상됨

〈그림 4-13〉 대정읍 공설묘지 전경



- 그러나 향후 공원로서의 이용 가능성을 고려해본다면 대정읍 공설묘지의 접근성이 좋고 무엇보다 산방산, 송악산 등이 한눈에 보이는 절경과 함께 지금도 트래킹코스가 있을만큼 사람들이 찾을만한 공간으로 볼 수 있어 좀더 적합할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대정읍공설묘지는 만장에 가까운 상태로 묘지의 회수나 보상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무연분묘가 다수 설치되어 있는 모슬봉 주변의 마을 공동묘지와 함께 공원화를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며 아래 부지는 도유지로서 개발이 용이할 것으로 예상됨

〈표 4-59〉 모슬봉에 위치한 공동묘지 현황

구분	주소지	지목	소유자	면적(㎡)	비고
상모리 공동묘지	상모리 3538-1	묘지	도유지	24,770	
칠리공동묘지	보성리 1935	임야	도유지	5,217	
읍5리 공동묘지	동일리 2081-1	임야	도유지	21,269	

제7절 장례문화 개선 및 발전 방안

1. 장례문화 인식 개선 및 홍보

1) 장사문화 홍보 및 교육 확대

- 장사문화에 대한 인식을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죽음과 장사시설에 대한 인식을 친숙하게 만들기 위한 홍보가 필요함
- 우선 홍보 대상을 확대하여 유치원생부터 다양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아동을 대상으로 사생대회, 백일장 등의 프로그램 진행과 관내 장사시설 견학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이해하도록 하여 친근한 이미지를 부여함
- 또한 성인들을 대상으로 추모공원 사진 및 웹툰 등 공모전을 진행하고, 매·화장 신고 절차, 장례 방법의 다양성, 자연장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 그 외에도 죽음과 장례에 있어 사회공헌자 예우, 대상별·시기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홍보, 장사시설에 대한 부정적 인식 전환 및 국민 공감형 홍보 콘텐츠 제작과 배포가 필요함
 - 대중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명인사(정계, 학계, 경제계, 언론 등 사회 지도층)의 모범적인 자연장(산분장 등)과 온라인 추모관 방식을 홍보하는 방안을 추진함

2) 기념일·기념주간 지정 및 시민 관심 제고

- 장사시설 인식개선, 장례문화에 대한 국민 및 지역민 관심 제고를 위해 기념일·기념주간 행사 개최('24~)
 - 폴란드 '망자의 날'(11. 1.), 멕시코 '망자의 날(11. 1.~2.)' 과 같이 고인에 대한 애도와 추모를 위한 (가칭)장례주간(장례의 날) 지정
 - '건강한 죽음, 미리 준비하는 죽음' 장례체험, 장례문화 전시, 장례지도사 직업소개, 성평등 장례문화 등 건전한 장례문화 확산
- 사전장례의향서 제도 도입에 맞춰 가족·친지 등과 생전에 장례방식 등을 공유하는 사회문화적 분위기 확산('24~)
 - 사전장례의향서 작성, 친자연적 장례(자연장, 산분장)·존엄한 장례 실천 등을 위한 '이별준비' 캠페인 등 홍보 및 참여 확대

3) 장례지도사 활용방안

- 장례지도사란 유족의 요청에 따라 장례절차를 주관하며, 장례 상담, 시신 관리, 의례 지도 및 빈소 설치 등 장례의식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인력을 의미함
- 장례 관련 종사자는 앞으로 종합장사시설과 장례서비스 업체의 증가에 따라 수요가 늘어날 것이며, 장례지도사의 역할도 장례 상담, 시신 관리 등 고유 영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장례지도사의 업무는 크게 장례 상담, 시신 관리, 의례 지도, 장례 행정 관리로 나뉨
 - 장례 상담은 고인의 사망 후 전체 일정과 장례 내용을 안내하며, 사망 접수, 장례 일정 확인, 장례 절차 및 방법 안내, 용품 상담을 포함함
 - 시신 관리는 시신의 위생적 처리를 포함하여 안치실 관리, 염습 및 입관, 발인과 운구 등 시신 관련 업무를 담당함
 - 의례 지도는 빈소 설치, 문상객 조문 예절 안내, 종교별 장례 예식을 지도하는 업무임
 - 장례 행정 관리는 장례와 관련된 행정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도록 하며, 사고사 및 무연고 사망자 관리, 장례 후 의례 안내 등이 포함됨
 - 장례 절차 전반에 걸쳐 장례 컨설팅과 가족 구성원의 갈등 조정 역할도 수행함
- 최근 다양화, 전문화, 차별화되는 장례서비스에 대한 욕구 증가와 함께 법적·제도적 장치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사전 장례서비스' 및 장례 이후 사후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임
- 사망 관련 행정처리, 의례 지도, 슬픔 상담, 개장 및 이장 서비스 등 사후 관리 서비스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장례지도사의 업무영역도 넓어지고 있음
- 집단 사망자 발생 시 재난 수습 및 검시 요원 등 관련 보건서비스 활동까지 장례지도사의 활동영역이 확대될 것임
- 장례서비스에 대한 전문화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장례지도사의 역할도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따라, 제주 지역 대학 기관과 협약을 맺어 장례(문화)지도학과를 도입하거나 평생교육을 통해 전문적인 장례 교육을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이를 통해 제주 내 장례식장 및 장사시설에 우선적으로 취업할 기회를 제공하여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음
- 또한 제주 고유의 장사 문화와 역사를 보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2. 미리 준비하는 장례 확산 기반 마련

1) 웰다잉 확대와 함께 정부의 사전장례결정제도 도입 정책 대응

-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준비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한 사전 장례결정제도 도입이 필요하며, 이는 유족과 고인이 희망하는 존엄한 장례와 생애 말기 자기결정권 강화를 목표로 함. 스스로 장사 방식(매장, 화장), 빈소 유무, 부고 범위, 장례 규모, 장례 장소 및 안치 방식을 결정하는 제도로, 이를 위한 국민 공감대 확산이 필요함
- 웰빙(Well-Being)에서 생애 말기 돌봄, 사전연명의료결정제도를 통한 장사방식에 대한 자기결정권 강화와 존엄한 죽음을 위한 웰다잉(Well-Dying) 문화가 확산되고 있으며, 이는 익숙한 환경에서 존엄과 존경을 유지한 채 가족·친구와 함께 고통 없이 죽음을 맞이하는 것으로 사회 인식과 정책 범위가 확대되는 추세임
- 정부는 2024년부터 (가칭) 사전장례의향서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므로 이에 대한 대응 준비가 필요함

2) 사전 장례의향서 작성

- 국가에서는 웰다잉(Well-Dying) 문화 확산에 따라 사전에 자신의 장례 의향을 결정할 수 있는 ‘사전장례의향서’ 작성 제도를 도입할 계획임(법 개정 사항, 2024년 예정)
- 사전장례의향서 작성 제도는 생애 말기 자기결정권 강화를 위해 스스로 장사 방식(매장, 화장), 빈소 유무, 부고 범위, 장례 규모, 장례 장소 및 안치 방식을 결정하게 하는 제도임

- 일회성 장례식이 아닌, 유대관계를 바탕으로 상시적·지속적 추모와 회고가 가능한 존엄한 장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목표로 함
- '셀프장례', 회고록 작성, 하늘로 보내는 편지 쓰기 캠페인 등의 형태로 추진될 수 있음



〈그림 4-14〉 웰다잉 프로그램 안내자료 사례

- 노인복지사업 추진기관(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노인일자리 관련 기관 등) 및 지자체와 경로당 등과 연계하여 장례정책 홍보 및 전달 체계를 강화함. 복지부 정책을 활용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음

3) 사후(死後) 복지 도입

- 1인 가구와 고독사 증가에 대응하여, 무연고자 장례를 피하고 자신이 살던 지역에서 존엄한 죽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선도 사업을 국가에서 추진 중임
- 지자체에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 사후 장례, 주변 정리, 사망신고 등 사후 복지를 지원하는 방식임
- 일본의 '엔딩 서포트(Ending Support) 사업' 사례: 자녀가 없는 65세 이상 지역민이 일정 예탁금을 내면, 지자체가 사후 복지를 지원하는 방식임

3. 공공 중심 장사서비스 질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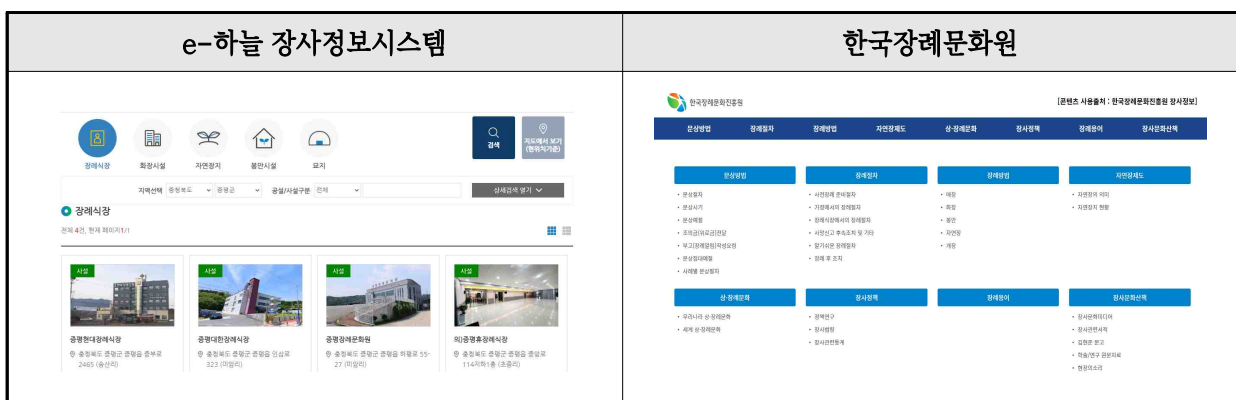
1) 장사시설에 대한 정보 제공 강화

(1) 장사시설 이용방법 및 인식을 위한 정보 확대

-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유튜브 등 IT기술 기반 미디어 플랫폼 이용이 생활 속에 자리잡고 있는 가운데 쉽게 장사정보를 접할 수 있는 미디어 홍보 방안 검토
 - 군청 및 보건소 등 홈페이지에 바로가기 링크 등을 개설
 - 거부감 적고 접근성이 높은 SNS 미디어 채널을 통한 온라인 홍보 병행

(2) 장사정보시스템 『e-하늘 장사정보』 및 온라인정보 이용 활성화

-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은 화장시설 이용가능 여부 실시간 제공, 자연장지 이용가격, 장사시설 접근 수단·운영형태·시설현황 등을 인터넷 및 모바일을 통해 제공 중임
- 그러나 이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알지 못해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민에게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편리하게 장사시설을 이용하고 합리적인 선택지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유도함
- 한국장례문화원에서는 장사문화, 절차 및 방법, 온라인 교육, 이별준비, 자연장 제도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주민에게 장사방법 및 교육, 제도에 대한 인식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함



<그림 4-15>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홈페이지 / 한국장례문화원 홈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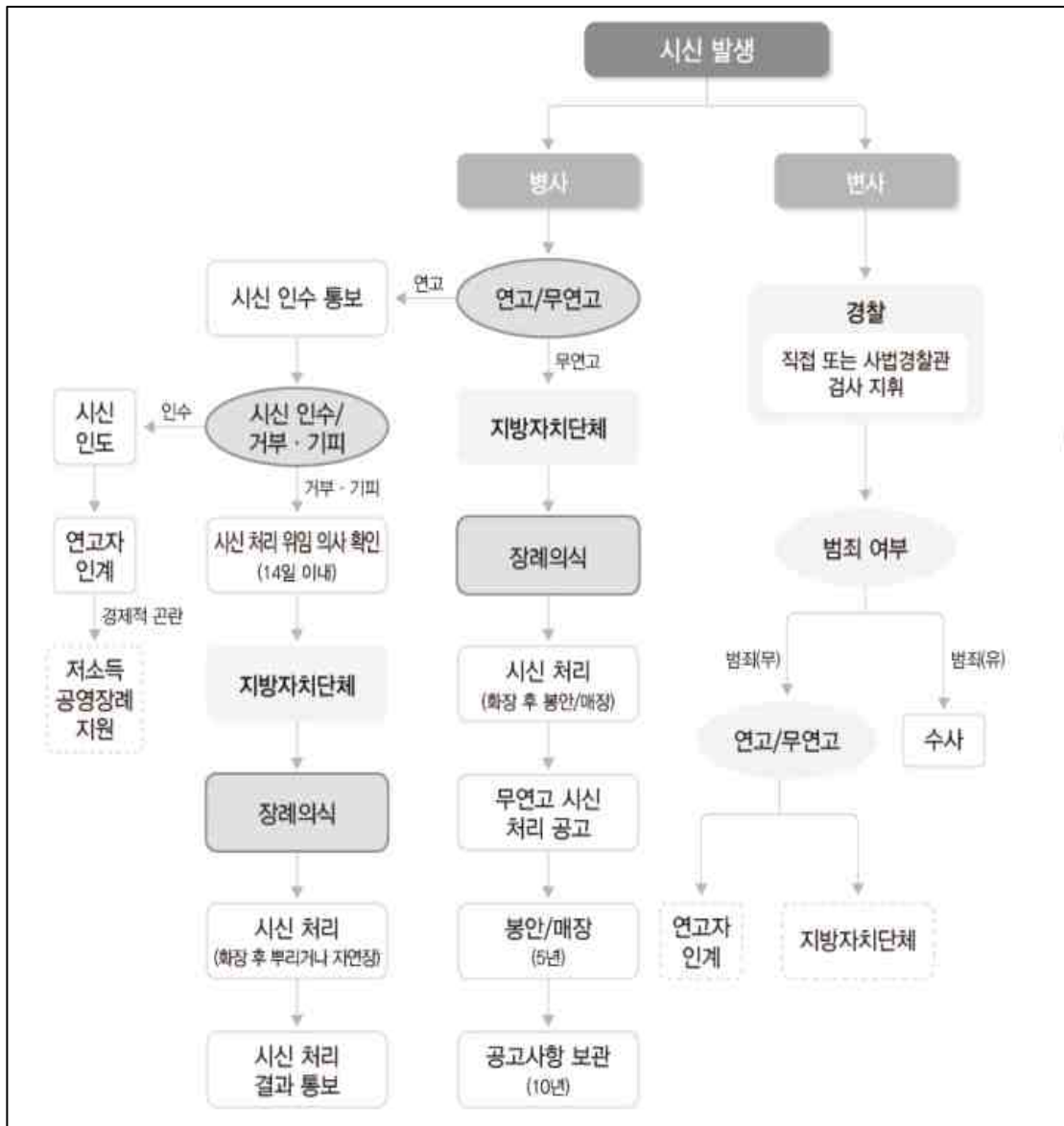
2) 재난 상황 대비 장사시설 확충

- (비상 화장시설 건립) 재난 상황에 대비하여 비상 화장시설을 확충하고, 위기 단계별로 운영 인력을 투입하여 운영을 확대함. 또한, 화장로의 비상 유지·보수 체계를 운영하여 광역 단위 지자체 또는 권역별 대응 체계를 마련할 계획임(2024년~)
- (비상 안치공간 확보) 화장 또는 매장 수요 대응이 어려운 경우 시신을 임시로 안치할 수 있는 실내 저온 안치실을 확보할 계획임(2024년~)
 - 기존 창고나 회의실 등 유휴공간에 단열 시공 후 냉장 컴프레서 및 선반을 설치하여 재난 등으로 사망자가 급증할 경우 시신 안치실로 전환하여 사용할 예정임

3) 무연고 사망자 장례서비스 지원(공영장례 지원 기본계획 수립)

(1) 추진방향

- 무연고 사망자가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간소하면서도 품위 있는 장례의식을 진행하고, 필요한 자원과 인력을 확보함
- 지자체별로 공설장사시설 유무와 관내 장사시설 현황이 다르기 때문에 각 지자체 여건에 맞는 장례서비스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며, 필요한 경우 조례로 이를 정함
-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서비스 지원을 위해 민관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되, 기존 사회복지협의체를 활용할 수 있으며, 장례서비스의 역할별로 필요한 인력 풀을 구성함
- 연고자가 인수를 거부하거나 포기한 시신의 봉안 절차를 생략하여 절감된 예산을 장례서비스 지원에 활용하고, 기존 노인자원봉사 사업 등과 연계 가능한 사업을 발굴해 추진함



〈그림 4-16〉 사망자 발생 시 업무처리 흐름도(2024 장사업무안내)

(2) 대상 및 추진 방식

○ 지원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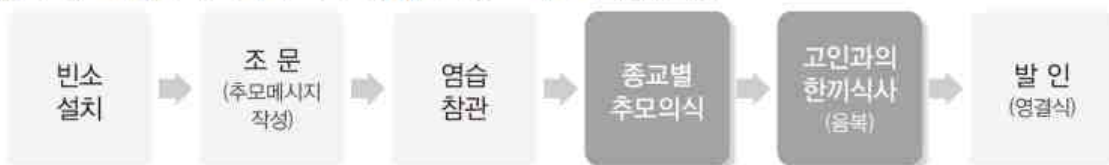
- 무연고 시신 및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포기한 시신

○ 추진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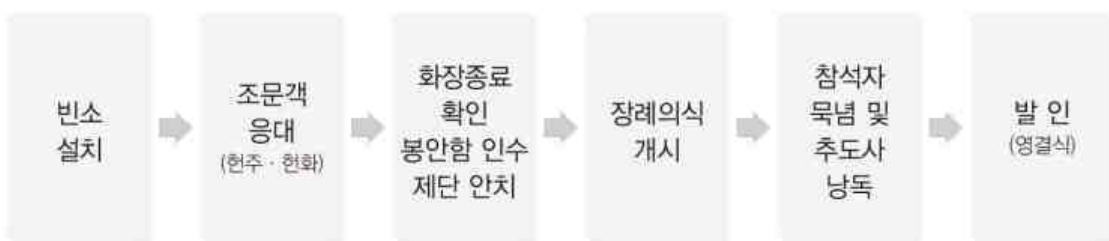
- 용역업체 및 장례식장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것이 적합하며, 향후 공설장사시설 운영이 안정화되면 직접 수행하는 방식을 고려함

○ 지원방안

- 장례식장 빈소 또는 제례실을 마련하고, 양지공원을 중심으로 일정 공간을 확보하여 운영함
- 장례의식에 필요한 인적 자원(추모의식 주관자, 상주, 행사 인력 등)은 역할별로 확보하고, 관내 종교기관, 복지기관, 자원봉사자 및 주민자치협의회의와 연계하여 당번제 방식으로 운영함
- 근조바구니, 위패, 제사상, 병풍, 향·초·국화 등 장례의식에 필요한 물적 자원에 대한 비용을 적정하게 산정하고, 기부 및 민간 자원과 연계함
- 장례 일수와 장례 진행 세부 절차 등을 유형화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원함

[참고 1] 서울형 추모서비스 “그리다” 모형 : 저소득 장례지원

- ① 빈소설치 : 입관 30분 전 유족들 도착하여 위패와 근조바구니를 이용해 영좌 설치(유교 = 제사상, 기독교·천주교 = 성경책, 고상 등)
- ② 조문 및 추모메시지 작성 : 영좌 설치 후 조문객 조문 및 추모메시지 작성
- ③ 염습참관 : 유족 염습 및 입관식 참관
- ④ 추모의식 : 고인 및 유족의 종교의식 또는 추모의식 진행
- ⑤ 식 사 : 고인을 추모하며 고인이 좋아하던 음식으로 식사
- ⑥ 발 인 : 영결식 등 마무리

[참고 2] 서울시 무연고자 장례의식 모형

※ 고인의 종교가 확인되는 경우 각 종교별 장례방식에 따른 진행

<그림 4-17> 서울시 저소득층, 무연고자 장례 지원 사업 예시

자료) 2022 장사업무안내

4) 사회적 취약계층 장례 복지 확대(공영장례 지원 기본계획 수립)

- (장례복지 사각지대) 1인 가구 증가와 전통적 가족 해체, 경제적·사회적 갈등으로 인해 고독사와 무연고 사망자가 최근 10년간 전국적으로 1,025명에서 3,603명으로 3.5배 이상 증가함
- 2021년 장사법 개정으로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국가나 지자체의 장례비용 지원 근거가 마련되었지만, 지역별로 여전히 장례복지 사각지대가 존재함
- (장례복지 제공 기반 마련) 공영장례 추진 기반 마련을 위해 공설 장례식장의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장례주관자 범위 확대) 고인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여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자’의 범위가 장사법 개정에 따라 확대되었으며, 지역의 민간 자원, 공동모금, 자원봉사 및 종교단체의 참여 확대를 통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함
-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사망자에 대한 장례 지원 범위를 기초생활수급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노인, 미성년자로 확대하는 방안도 필요함

4. 분묘의 설치기간 준수를 위한 사전준비 철저

1) 사전 준비

- 2001년 도입된 분묘 설치기간 제한 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지자체별로 세부 추진 방안 마련 및 사전 준비가 필요함
- ○ 2031년부터 분묘 설치기간 연장이 시작될 예정이므로, 주민 홍보와 묘적부 정비, 개장 유골 화장 수요 분산 등을 통해 예상되는 불편을 최소화해야 함
- ○ 주민 조사 결과, 분묘 설치기간 제한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14.6%에 불과하여 관련 내용에 대한 홍보가 필요함
- ○ 지자체는 분묘 설치기간 연장 시행 전에 미신고·미허가 불법묘지의 합법화 방안을 마련하여 형평성 있는 분묘 관리를 추진해야 함
 - 한시적 신고 의무 기간 부여, 미신고 특별 양성화 기간 운영, 자연장지 전환 시 지원 방안 도입 검토

2) 분묘관리 강화

- 지자체는 분묘 설치기간 연장 시행 전에 미신고·미허가 불법묘지의 합법화 방안을 마련하여, 분묘 간 형평성 있는 관리를 추진해야 함
 - 한시적 신고(허가) 의무 기간을 부여하고, 단순 미신고에 대한 특별 양성화 기간을 운영하며, 자연장지로의 전환 시 지원 방안 등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함

제8절 연차별 추진계획

1. 제주 장사시설 수급계획 주요 사업

1) 화장시설 확충 및 종합장사시설 조성

- 현재 화장로 8기로 양지공원에서 화장시설이 운영중임
- 3차 계획기간 (24~28)동안 양지공원의 종합장사시설화를 검토하고 함께 서귀포지역에 다른 종합장사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함께 검토함
 - 양지공원 확장 또는 서귀포지역 신설을 위한 기반 마련(타당성, 공론화 등)
- 4차 계획기간 이후(29~40)에는 검토결과에 따른 종합장사시설을 설치하고 운영

2) 봉안시설

- 현재 공설봉안당은 총 안치공간 7만4천위 중 4만8천위 가량 안치되어 64% 가량의 안치율을 보이고 있음
- 수급의 여유가 있어 3차 계획기간 (24~28)동안은 공설봉안당의 신규 설치는 지양
 - 현 추세이면 28년까지 공설 봉안당 안치율 82% 예측
- 4차 계획기간 이후 (29~40)에는 ‘32년까지 공설봉안당 안치율이 98% 정도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되므로 공설봉안당 신규 설치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제2공항개발 등 무연고 안치량 증가 전망
 - 종합장사시설화 사업과 연계하여 신설하되 자연장 활성화로 늘어나고 있는 기존 봉안된 유골의 반환공간을 정비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음

3) 자연장지

- 공설자연장지 4개소 중 최근 조성된 용강별숲공원을 중심으로 전체 6만여기 중 절반정도의 공간이 남아 있음
- 현재 조성된 공설자연장지의 81%는 잔디형 자연장지로 주민들의 선호도 조사에서 수목형이 높았던 것과는 차이가 있는 상황이므로 이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음
 - 장법 다양화(수목형, 수목장립, 정원형 등)
- 3차 계획기간 (24~28)동안에는 서귀포추모공원에 1만기의 공간이 조성될 예정임
- 4차 계획기간 이후 (29~40)에는 용강별숲공원 자연장지 부지의 미사용 잔여공간에 자연장지를 추가 설치하는 방향으로 공간을 확보할 수 있음
 - 공간 비중에 따라 약 4만기 가량 설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4) 공설묘지

- 현재 공설묘지의 매장률은 굉장히 저조한 상황으로 추가적인 공설묘지의 조성은 불필요함
- 기존 공설묘지 14개소 중 매장률에 따라 이를 정비하거나 활용하는 계획을 수립함
- 3차 계획기간 (24~28)동안에 우선 분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실질적인 사용과 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무연분묘를 분류하여 묘지를 정비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 활용해야 함
- 기간별, 개발방법에 따른 공설묘지 개선 시기는 다음과 같음

〈표 4-60〉 공설묘지 개선 방안

구분	개발방법	3차 계획기간	4차 계획기간 이후	비고
매장률(下. 20% 이하)	자연장지 전환	애월	구좌, 조천, 남원, 성산, 색달	
	공원화		애향, 안덕	
매장률(上. 80% 이상)	공간정비 및 관리	서부, 대정	어승생, 상호	

5) 장례식장

- 현재 부족한 전문장례식장의 확충을 위해, 특히 전문장례식장이 1곳밖에 없는 서귀포 지역을 중심으로 전문장례식장 유치 및 공설장례식장 설치가 필요함
- 서귀포지역 전문장례식장 확충
 - 동부공설장례식장 1곳 신설
 - 서귀포시 시내 전문장례식장 유치 및 확충

장사시설 수급계획 로드맵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인구(천명)	674	675	676	677	678	679	680	680	680	680	680	679	679	679	678	677	676	675
화장률(%)	83.7	84.6	86.8	88.4	89.9	90.8	91.2	91.5	91.9	92.2	92.6	93.3	93.3	93.3	93.3	94.3	94.3	95.0
화장시설 및 종합장사시설					◆양지공원 확장 또는 서귀포 종합장사시설 조성 검토			◆화장로 증설										자연장지 확대 검토 ◆
봉안시설		◆2추모의집 만장						◆3추모의집 만장										◆서귀포공원 만장
		↳1추모의집 만장				◆봉안시설 추가 검토(4차 계획 기간에 분석 필요)					◆공설봉안당 설치(필요시)							
자연장지	◆		◆서귀포공원 만장				◆용강별숲공원 만장				◆		◆성산읍 만장					
	↳어승생 만장			◆서귀포 추가(1만기)			↳용강별숲공원 추가(각 2만기)↳			◆	↳서귀포공원 만장							
공설묘지					◆자연장지 전환(애월, 색달)			◆자연장지 전환(성산)								◆자연장지 전환(조천, 남원)		
				◆공간정비(서부, 대정)				◆공간정비(어승생, 상호)										
			◆분묘 실태조사					◆공원화(애향묘지)			◆		◆분묘 실태조사					
											↳공원화(안덕)							
기타사업 및 제안사항				◆동부공설장례식장 설치														
				◆장사시설관리사업소 설치														
					◆(계속) 장사문화 인식개선 및 홍보프로그램 운영													

〈그림 4-18〉 제3차 제주 장사시설 수급계획 로드맵

2. 연차별 사업비

○ 2040년까지 장사시설 수급계획에 따른 총 사업비는 79,167백만원으로 추정함

- 24~28년: 11,659백만원, 29~40년: 67,508백만원

<표 4-61> 제3차 장사시설 수급계획 연차별 사업비

(단위: 백만원)

구분			'24	'25	'26	'27	'28	'29년 이후
계		'24~'28 계 : 11,659	110	1,675	3,145	3,685	3,044	(1안) 43,508 (2안) 67,508
화장로 확충	(1안) 양지공원 종합화	화장로 2기						21,000
	(2안) 서귀포시 종합설치	화장로 4기						45,000
봉안시설	공설봉안당 설치	2만기						5,000
공설묘지 개선	무연분묘 정리	매장물 上 4개소 (서부, 대정, 어승생, 상호)			509 (서부)	478 (대정)		- 어승생: 1,019 - 상호: 1,229
	자연장지 활용	매장물 下 5개소 (애월, 조천, 색달, 성산, 남원)				1,148(애월) 3,308(색달)		- 조천: 988 - 성산: 352 - 남원: 926
	공원화, 재개발	매장물 下 2개소 (애향, 안덕)						- 애향: 2,940 - 안덕: 690
	분묘실태조사	10년간 1회			100			100(2036년)
자연장지	공간 확충(장법 다양화)			1,790(서귀포)				7,000(용강별숲) - (산립조합)
장례식장	장례편의시설 → 공설장례식장	성산읍 장례편의시설		3,650				
기타사업	공영장례지원		110	110	121	121	134	연평균 168.7 (총 2,024)
	인식전환홍보 (계속)			20	20	20	20	매년 20 (총 240)

제3차 제주특별자치도 장사시설 중·장기 수급계획



제5장 공영장례 지원 기본계획(2024~2028)



제5장 공영장례 지원 기본계획(2024~2028)

❖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장례비 지원을 통해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유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도모하여 장례의식을 원활하게 지원하고자 공영장례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함

1. 공영장례 정의

- 지원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가 장례용품을 포함한 장례 절차 전반을 지원하는 것임
- 가족해체·경제적 빈곤 등으로 가족 및 사회적 관계가 취약해지면서 사회적 고립 속에서 외롭게 죽음을 맞이하는 무연고사망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
- 이에 무연고사망자에 대한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존엄성을 지킬 수 있도록 공영장례 제도의 도입이 요구되고 있고 정책적으로 지원되고 있음
- 가정해체·붕괴, 경제적 이유 등으로 시신인수가 기피·거부되어 장례를 치루지 못하는 경우 공영장례를 통해 고인(故人)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는 것임

2. 공영장례 지원 대상자 추계

1) 지원 대상자

- 사망 당시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어야 함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1항의 무연고 사망자
 - 무연고 시신이란 ① 연고자가 없는 시신 ②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 ③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등의 시신을 말함
 -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이란 사망자의 신원이 확보되지 않아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등의 시신을 말함

-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란 사망자의 연고자가 있음에도 연고자가 사회적·경제적·신체적 능력 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하지 않는 경우 등을 말함
- 「장사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란 배우자, 자녀, 부모, 자녀 외의 직계비속, 부모 외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치료·보호 또는 관리 행정기관 또는 치료·보호기관의 장, 시신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를 말함
- 「제주특별자치도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고독사를 맞이한 사람
- 연고자가 있더라도 연고자가 사회적, 신체적 또는 경제적 능력 부족 등으로 장례의식을 할 수 없는 사망자
 - 「민법」에 의한 미성년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그 밖에 도지사가 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대상자 추계

(1) 지원실적

① 2021년: 24,800천원 (800천원 × 31구)

○ 제 주 시: 16,800천원 (21구)

- 무연고 사망자 5구, 기초생활수급자 무연고 사망자 16구

○ 서귀포시: 8,000천원 (10구)

- 무연고 사망자 2구, 기초생활수급자 무연고 사망자 8구

② 2022년: 77,600천원 (800천원 × 96구)

○ 제주시: 60,800천원 (75구)

- 무연고 사망자 15구, 기초생활수급자 무연고 사망자 59구, 사망자 및 가족 모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1구(1,600천원)

○ 서귀포시: 16,800천원 (21구)

- 무연고 사망자 4구, 기초생활수급자 무연고 사망자 17구

③ 2023년: 75,469천원 (≒800천원 × 95구)

○ 제주시: 59,200천원 (74구)

- 무연고 사망자 12구, 기초생활수급자 무연고 사망자 62구,

○ 서귀포시: 16,269천원 (21구)

- 무연고 사망자 4구, 기초생활수급자 무연고 사망자 17구

〈표 5-1〉 공영장례 지원 현황

구분	지원수	1구당 금액	총 지원금액	비고
2021년	31구	800천원	24,800천원	
2022년	96구	800천원	77,600천원	
2023년	95구	800천원	75,469천원	

(2) 대상자 및 소요 예산

○ 2년에 약 10%씩²⁶⁾ 지원 대상 확대, 2024년 예산은 금년도 각 행정시 예산 합계액 적용

〈표 5-2〉 공영장례 지원 연차별 계획(안)

구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대상자수(명)	100	100	110	110	120
예산(백만원)	110	110	121	121	134

26) 제주 1인가구 비율 매년 증가: 2020년 81,855가구 → 2021년 88,683가구(8.3% 증가) → 2022년 92,172가구(3.9% 증가)

3. 공영장례의 추진계획

1) 추진목표

- 국가에서는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의 표준모델을 정립하여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고, 민간기관, 종교단체, 자원봉사단체 등과 연계하여 공동체 참여를 확대하고자 함

2) 무연고 시신의 처리 기본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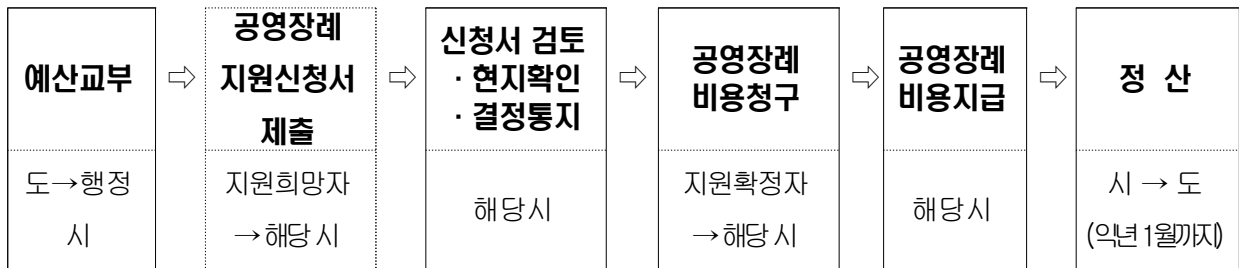
-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는 기존 무연고 시신 처리 절차에 따름
-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에는 시신을 화장하여, 장사시설 내 화장한 유골을 뿌리거나 자연장해야 하며, 지자체 조례에서 정한 방법이 있을 경우 그에 따름
 - 다만, 연고자가 장례를 치를 의사가 있으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시신 인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에는 연고자가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음
- 장사법 개정(2021년 12월)에 따라 시장 등은 무연고 시신 처리 시 최소한의 존엄이 보장되도록 장례서비스(추모의식)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함

3) 처리절차

- 시장 등은 의료기관의 장 또는 경찰서장 등으로부터 인수받은 무연고 시신에 대해 사망자 신원을 확인하고, 연고자 탐문 및 조사를 통해 연고자 존재 여부를 재확인함
- 연고자가 확인되면 시장 등은 지체 없이 그 연고자에게 시신을 인도함
- 사망자가 국가유공자인지 여부를 지방보훈청에 문의하여 확인하고, 국가유공자인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장사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관할 지방보훈청에 문서로 통보함
- 무연고 시신 처리방법(장사법 제12조)
 - 매장하거나 화장 후 봉안함(시행령 제9조). 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은 5년이며, 그 기간이

- 끝난 경우 집단 매장 또는 자연장해야 함. 화장하지 않고 매장한 경우에는 화장해야 함
- 처리한 시신에 대해 시장 등은 지체 없이 공고하고, 그 공고 사항을 10년 이상 보존해야 함
 - 공고는 중앙 일간신문 및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하며, 공고 내용은 사망자의 등록기준지, 주소, 성명, 성별, 연령, 사망일, 사망원인, 시신의 특징 등이 포함됨

4) 추진계획



〈그림 5-1〉 공영장례 지원 흐름도

(1) 지원내용

- 지원금액: 160만원 범위 금액(조례 제7조에 의거,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장제급여(80만원)의 200% 범위 내에서 지원
 - 다른 법령·조례에 따라 지원받는 금액이 공영장례 지원금액 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음
- 지원내용: 장례용품 등 장례에 필요한 비용
 - 장례업체와 연계된 인력 및 장소, 수의·관·염사 등 장례 필요물품
 - 제물, 장의차, 화장 및 봉안비용 등
- 장례절차는 화장과 함께 진행하되(빈소 사용 3시간 가량) 연고자가 있는 경우 최대 24시간 사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

(2) 지원신청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
 - 검시·수사 등이 종결된 후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30일 이내 신청 가능
- 제출서류
 -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장애인 및 수급자 증명하는 자료
- 신청장소: 시 노인복지과·노인장애인과, 사망자 주소지 행정시 장묘업무 담당부서

(3) 비용청구

- 지원 결정일부터 30일 이내 비용청구서 제출
- 제출서류
 - 공영장례 비용 청구서, 지급계좌 통장 사본, 장례비용 견적서
 - 세급계산서(또는 영수증), 장례수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 화장증명서, 봉안당 안치 증명서 등 안치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공영장례 지원 절차

- (연고자) 공영장례 지원 신청 → (시 노인복지과, 읍면동) 신청서 접수
 - (시 노인복지과) 7일 이내 지원 여부 결정 및 신청인에게 통지
 - (연고자) 지원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비용 청구
 - (시 노인복지과·노인장애인과) 공영장례 비용 지급
- 무연고 사망자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행정시 노인복지(노인장애인)과에서 지원

(5) 기타 운영방안

- 공영장례 전용 빈소를 양지공원 내에 마련하여 장례 절차를 수행함
 - 서울시의 경우 서울 승화원 내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전용 빈소인 ‘그리다’ 마련

- 민간 장례식장과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필요시 빈소를 제공하고 장례 절차 전반(입관과 봉안, 추모의식 등)을 지원함
 - 용인시, 부산서구 등에서 지역의 민간장례식장과 협약을 맺고 공영장례를 진행함
- 조문단 교육을 통하여 다양한 주민들이 공영장례의 조문객이 될 수 있도록 함
 - 부산시의 경우 ‘부산반빈곤센터’에서 주1회씩 4회에 걸쳐 장례의식이 가지는 의미와 공영장례에 대하여 안내하고 참여자 스스로 조문단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해줌

〈그림 5-2〉 전용 빈소 조성 및 조문단 교육 사례



4. 지원방안

1) 공영장례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등

(1) 관내 장례식장과의 협조체계 구축

- 관내 장례식장에서 장례의식 및 시신처리(안치, 입관)
- 장례식장에 해당 장례에 사용된 물품은 실제 비용을 실비로 현금 지급

(2) 종교단체와의 협의체 구성

- 관내 종교단체(기독교, 불교, 천주교, 유교 등)
- 종교 의식을 시행한 종교단체에 인건비를 지급
- 고인의 종교가 있을 경우 해당 종교단체에서 추도식 지원하고, 없거나 알 수 없을 경우 분기별 순번으로 조정

〈표 5-3〉 분기별 순번(예시)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기독교	천주교	유교	불교

- 절차: 빈소설치 → 입관식 → 종교예식 → 발인 → 화장 → 봉안
- 예식 참여 인원, 예식시간, 추도사, 사용물품 등 형식이 종교별로 상이하므로 4개 종교단체는 자율적으로 인건비 내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3) 공영장례지원 상담센터 운영

- 관내 종교단체, 사회복지시설 등과의 업무협약 실시, 상담센터 운영
- 상담센터를 통해 공영장례 지원 방법, 일반적인 장례 문의 지원
 - 서울시의 경우 입찰을 통해 상조업체와 계약하여 2019년부터 서울시 공영장례지원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2) 무연고 사망자 현황 조사

-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통계 자체가 없는 실정임
- 무연고 사망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통계에 기반해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예산을 편성해 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음
- 무연고 사망자의 최소한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공영장례 절차 마련
 - 연고자가 없고 공영장례가 지원되지 않는 경우 장례절차나 의식 없이 시신에 대한 ‘처리’만 하는 무빈소 직장(直葬)이 이루어짐
- 정확한 무연고 사망자 현황을 조사토록 하여 향후 정책에 반영
- 현황을 파악하여, 미래 수요를 예측하고 이에 대한 예산 확보 용이

3) 지자체장이 상주가 되는 공영장례 지원

- 현재 군산시는 지방자치단체 장이 상주가 되어 공영장례를 진행
 - 2022년 3월부터 무연고 기초수급자 공영장례 진행
 - 공영장례 지원 조례를 제정, ‘The-K예다함상조’와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 서비스 협약 체결
 - 군산시장이 자리를 비운 동안에는 지역 국회의원, 상공회의소 회장 등이 자리를 대신하는 등 마지막 고인에 대한 예우를 지키고 있는 상황임

〈그림 5-3〉 지자체장이 상주가 되는 공영장례 지원



제3차 제주특별자치도 장사시설 중·장기 수급계획



부 록

I	사설 장사시설 관리방안 세부내용
II	주민의식 조사 결과 세부내용

부록 I 사설 장사시설 관리방안

제1절 사설 장사시설 조성 등

1. 사설 묘지

1) 설치기준(법 제14조 및 제26조, 시행령 별표 2)

(1) 사설묘지의 종류

- 개인묘지,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법인묘지

(2) 공통 설치기준

- 분묘의 형태는 봉분, 평분 또는 평장(平葬)으로 하되, 봉분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m, 평분의 높이는 50cm 이하여야 함
- 묘지는 지형·배수·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함
- 묘지는 다음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함. 다만, 토지나 지형의 상황으로 보아 다음 시설의 기능이나 이용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시장등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도로법」 제2조제1호의 도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의 철도의 선로, 「하천법」 제2조제2호의 하천구역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300m 이상 떨어진 곳
 -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m 이상 떨어진 곳
 -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란 토지의 상황 즉, 지형의 형태에 의한 능고·차폐시설 등으로 묘지예정지가 인가밀집지역 등으로부터 가시권 밖에 위치하게 되는 경우 등임
 -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은 한 마을 전체의 호수를 기준으로 하되 ‘동, 리’ 등 행정 구역 단위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그 지역의 지형적 상황이나 생활의 유지관계, 취락의 형성 등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단, 20호는 일종의 기준이고 단순히 수치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항은 아님)

- 이를 위반할 경우 법 제31조, 제40조, 제41조, 제43조 등에 따른 벌칙이 있음

(3) 법인묘지²⁷⁾

① 법인묘지의 면적 등

- 면적 : 10만㎡ 이상
- 법인묘지 내 분묘 1기당 점유면적
 - 분묘 1기당 점유면적 : 10㎡ 이하
 - 합장의 경우 점유면적 : 15㎡ 이하 · 비석, 상석 등 시설물 포함
- 시설물 설치기준
 - 비석 1개(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m 이하, 그 표면적은 3㎡ 이하)
 - 상석 1개
 - 그 밖의 석물(인물상 제외)은 1개 또는 1쌍(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m 이하)
 이러한 시설물은 묘지 외의 구역에 설치할 수 없음

② 법인묘지의 설치기준

- 법인묘지의 면적은 10만㎡ 이상으로 함
- 법인묘지에는 폭 5m 이상의 도로와 그 도로로부터 각 분묘로 통하는 충분한 진출입로를 설치하고, 주차장을 마련하여야 함
- 묘지구역의 계곡이나 30도 이상의 급경사지역 및 배수로의 하단 부분에는 토사의 유출 및 유출 속도를 줄일 수 있는 침사지 또는 물 저장고를 설치하여야 함
- 법인묘지의 허가 면적 중 주차장·관리시설 등 부대시설을 제외한 면적의 100분의 20 이상을 녹지공간으로 확보하여야 함. 다만, 잔디로 조성된 평분인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상을 녹지공간으로 확보하여야 함

27) 사설묘지에는 개인묘지,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등도 있으나 본 장은 재단법인 설립을 검토하기 위한 내용으로 이와 관련된 법인묘지에 대한 내용을 검토함

법인묘지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이 불특정 다수인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를 말함

2) 법인 묘지의 관리

(1) 법인묘지 설치(변경)허가 (시행규칙 제6조)

- 묘지를 설치하기 전에 관할 시장 등에게 설치허가를 신청하여야 함
- 법인묘지의 면적, 설치·관리인 등에 관한 사항과 위의 법령에 따른 서류를 포함하여야 함
- 이를 위반할 경우 법 제31조, 제39조, 제41조, 제43조 등에 따라 벌금, 이행강제금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음

(2) 묘지·분묘에 관한 상황의 기록·보관 의무 (법 제14조)

- 법인묘지의 설치·관리인은 매장을 한 경우에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의 시신(죽은 태아·개장유골) 매장 증명서를 신고인 또는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15호서식의 매장 관리대장을 기록·보관하여야 함

(3) 법인묘지에 대한 검사 및 보고 (법 제37조)

- 시장등은 장사시설의 안전관리·보건위생·운영실태를 점검하거나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의 이행 또는 위반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인묘지에 출입하여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법인묘지의 설치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음
- 법인묘지의 설치자 또는 관리인은 연도별 매장의 상황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관할 시장등에게 보고하여야 함

(4) 법인묘지의 사용료·관리비의 신고 및 가격표의 게시·등록 (법 제24조)

- 사용료·관리비의 신고: 법인묘지를 설치·관리하는 자는 사용료 및 관리비를 정하면 그 항목별 비용의 산출 근거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해야 하고,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동일함
- 가격표의 게시·등록: 법인묘지를 설치·관리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모두 표시한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가격표를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하고,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함

- 금품수수 및 구매 또는 사용 강요 금지: 사용료·관리비 및 시설물·장례용품의 가격 외의 금품수수를 하면 안되고 시설물 또는 장례용품의 구매 또는 사용 강요가 금지됨
- 거래명세서의 발급: 법인묘지를 설치·관리하는 자는 해당 묘지 이용자에게 시설의 사용료·관리비, 시설물 및 장례용품에 대한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여야 함

(5) 법인묘지의 관리금 적립(법 제25조, 시행규칙 제16조)

- 재해에 대비하여 법인묘지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개·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적립해야 함
 - 설치·관리인은 사용료 및 관리비 연간 총수입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적립해야 하며 법인묘지의 재산세 과세표준액(종교단체는 재산세 과세표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를 때까지 적립하여야 함
- 관리금의 적립시기·절차 및 방법
 - 법인묘지 설치·관리인은 매 회계연도 결산이 끝나는 즉시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의 관리금 적립 금액과 사용 내역을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함
- 관리금은 해당 장사시설의 보존과 관리 등 재해 예방과 보수를 위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음

(6) 법인묘지의 사망자정보 등록 (법 제33조의3)

- 법인묘지의 설치·관리인은 매장을 한 경우에 사망자정보를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며 사망자정보를 등록할 때 유족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함

2. 사설 봉안시설

1) 설치기준(시행령 제18조 별표 3)

(1) 사설봉안당

- 유골을 위생적으로 안치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그 봉안당 실내에 유골을 안치하여야 함
- 방충·방습·환기 등 보건위생상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함
- 가족 또는 종중·문중 봉안당은 연면적 100㎡ 이하, 종교단체²⁸⁾는 5천구 이하로만 조성하여야 하며 그 이상으로 조성할 경우에는 반드시 재단법인을 설립하여야 함
 - 재단법인이 봉안당을 설치할 때에는 폭 5m 이상의 진입로와 주차장을 마련하여야 하며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 그 밖의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2) 사설봉안묘

- 사원·묘지·화장시설이나 그 밖에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에 설치 지형·배수·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
- 유골을 위생적으로 안치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되, 개폐가 가능하여야 함
- 봉안묘의 높이는 70cm, 봉안묘의 1기당 면적은 2㎡ 이하로 함(법 제18조)
- 봉안묘 1기당 시설물의 설치기준(시행령 제23조)
 - 시설물은 봉안묘지 외의 구역에 설치하여서는 안 됨

28) 장사시설 설치·운영 주체로서의 종교단체의 의미

※ 봉안시설뿐만 아니라 자연장지·수목장림에도 동일하게 적용

- 문화체육관광부 등 주무관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아 설립된 종교법인·단체
-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전통사찰
-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종교단체는 물적 요소인 성당·교회·불당 등의 종교재산이 있고, 인적 요소인 목사·주지 등과 상당수의 신도가 존재하며, 단체로서의 규약을 가지고 종교적 활동을 하여야 함

- 봉안묘 1기당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
 - * 비석 1개(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m 이하, 그 표면적은 3㎡ 이하)
 - * 상석 1개
 - * 그 밖의 석물(인물상 제외)은 1개 또는 1쌍(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m 이하)
- 개인 또는 가족 봉안묘는 1개소로 제한하며 개인의 경우 10㎡ 이하, 가족의 경우 30㎡ 이하여야 함
- 종중·문중 봉안묘 역시 1개소로 제한하며 면적은 100㎡ 이하여야 함
- 종교단체 봉안묘 역시 1개소로 제한하며 면적은 500㎡ 이하여야 하며 그중 100분의 20 이상은 녹지공간으로 확보하여야 하는 등 제한 사항이 있음
- 그 이상일 경우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봉안묘를 설치하여야 하며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 그 밖의 필요한 시설물과 폭 5미터 이상의 진입로 및 주차장을 마련하여야 함

2) 사설봉안시설의 관리

(1) 시설에 대한 검사 및 보고(법 제37조)

- 검사 및 보고: 장사시설의 안전관리·보건위생·운영실태 점검, 법적 사항의 이행 또는 위반 여부의 확인
- 봉안 상황 보고: 연도별 봉안 상황 보고(다음해 1월 31일까지)
- 위반시 벌칙 등 발생(법 제42조): 과태료 부과

(2) 사용료·관리비 신고(법 제24조)

- 신고내용: 사용료 및 관리비의 항목별 비용 산출근거를 첨부하여 신고
- 위반 시 벌칙 등 발생(법 제31조, 제40조, 제41조): 업무정지 또는 벌금 및 징역

(3) 관리금 적립(법 제25조, 시행규칙 제16조)

- 재해에 대비하여 봉안시설의 유지·관리 및 개·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적립하는 것임
- 적립 대상
 -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사설봉안시설
 - 종교단체가 설치·운영하는 500구 이상의 유골을 안치할 수 있는 사설봉안시설
 - 그 밖에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사설봉안시설
- 관리금 적립내용
 - 사설봉안시설의 설치·관리인은 사용료 및 관리비 연간 총수입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적립
 - 사설봉안시설의 재산세 과세표준액(종교단체는 재산세 과세표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를 때까지 적립하여야 함
 - 다만, 적립하여야 할 금액을 한꺼번에 적립하거나 해당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제외
- 관리금의 적립시기·절차 및 방법
 - 사설봉안시설의 설치·관리인은 매 회계연도 결산이 끝나는 즉시 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의 관리금 적립금액과 사용 내역을 시장등에게 제출
 - 사설봉안시설의 설치·관리인은 별지 제22호서식의 관리금 적립 및 사용 대장을 작성
 - 사설봉안시설의 설치·관리인은 시장등과 협의하여 정한 금융기관에 관리금을 적립한 사실 또는 관리금을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관할 시장 등에게 제출
 - 보험계약 기간이 끝난 후 보험계약을 다시 체결한 경우에도 같음

○ 관리금의 용도

- 관리금은 해당 장사시설의 보존과 관리 등 재해 예방과 개·보수를 위한 용도로만 사용

○ 위반 시 벌칙 등 (법 제31조, 제40조, 제41조)

- 관리금을 적립하지 않거나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15일, 2차 위반 시 업무정지 1개월, 3차 위반 시 업무정지 3개월, 4차 위반 시 업무정지 6개월
-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대리인 등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 당해 행위자(대리인 등)뿐만 아니라 그 개인(법인)에 대하여도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사설 자연장지

1) 설치기준(법 제16조)

(1) 사설 자연장지의 종류

○ 개인·가족자연장지(수목장립)

- 면적이 100㎡ 미만인 것으로서 1구의 유골을 자연장하거나 「민법」에 따라 친족 관계였던 자의 유골을 같은 구역 안에 자연장할 수 있는 구역

○ 종중·문중자연장지(수목장립)

- 종중이나 문중 구성원의 유골을 같은 구역 안에 자연장할 수 있는 구역

○ 종교단체자연장지(수목장립)

- 종교단체가 신도 및 그 가족관계에 있었던 자의 유골을 같은 구역 안에 자연장할 수 있는 구역

○ 법인자연장지(수목장립)

- 법인이 불특정 다수인의 유골을 같은 구역 안에 자연장할 수 있는 구역

(2) 사설 자연장지 조성 기준(시행령 별표 4, 5)

〈표 부록-1〉 사설 자연장지 조성기준(시행령 별표 4, 5)

구 분		개인	가족	종중·문중	종교단체	공공법인·재단법인
조성 지역	개소수	1개소에 한함				-
	면적	30㎡ 미만	100㎡ 미만	2,000㎡ 이하	40,000㎡ 이하	50,000㎡ 이상
	고려사항	지형·배수·토양			지형·배수·토양·경사도	
	조성장소	붕괴·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				
표지	규격	개별 또는 공동으로 하되 개별표지는 250㎡ 이하, (2024.1분기중시행예정) 공동표지는 안치 및 예정구수를 고려한 크기				
	설치방법	주위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설치				
이용대상		구성원			신도 및 그 가족관계에 있었던 자	불특정 다수인
급경사지의 자연장 금지		- 종교단체 및 법인 자연장지에는 급경사지에 유골을 묻어서는 안되나, 기존의 묘지에 자연장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급경사지에 대한 구체적 기준은 「급경사지 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의 기준을 참조하고, 기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자연재해 대책법」 등 관련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경사도 기준을 준용하여 재해시 토사 유출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적정규모 내에서 판단)				
편의시설		- 종교단체 자연장지에는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공동분향단, 그 밖의 필요한 시설, 진입로(폭5미터이상), 주차장을 마련하여야 함 - 다만, 해당시설이 갖추어진 기존의 사원 경내에 자연장지를 조성하는 경우 또는 2천제곱미터 이하의 자연장지를 조성하는 경우 해당시설을 따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 - 법인자연장지에는 보행로, 안내표지판,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공동 분향단, 진입로(폭5미터이상), 주차장,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 보행로 및 안내표지판은 자연장지 안에 설치하여야 함 - 다만, 해당시설이 갖추어진 구역 또는 지역 등(기존의 사원 경내, 기존의 장사시설 안의 일정구역, 기존의 장사시설에 연접한 지역)에 자연장지를 조성하는 경우 해당시설을 따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재해방지시설		법인자연장지에는 자연장지 구역의 계곡이나 30도 이상의 급경사지역 및 배수로의 하단 부분에는 토사의 유출 및 유출 속도를 줄일 수 있는 침사지 또는 물 저장고를 설치(침사지 또는 물 저장고는 소방방재청의 ‘우수유출저감 시설의 종류, 구조설치 및 유지관리기준’을 준용함)				

2) 사설자연장지의 관리

(1) 시설에 대한 검사 및 보고(법 제37조)

- 검사 및 보고: 장사시설의 안전관리·보건위생·운영실태 점검, 법적 사항의 이행 또는 위반 여부의 확인
- 자연장 상황 보고: 연도별 자연장 상황 보고(다음해 1월 31일까지)
- 위반시 벌칙 등 발생(법 제42조): 과태료 부과

(2) 사용료·관리비 신고(법 제24조)

- 신고내용: 사용료 및 관리비의 항목별 비용 산출근거를 첨부하여 신고
- 위반 시 벌칙 등 발생(법 제31조, 제40조, 제41조): 업무정지 또는 벌금 및 징역

(3) 관리금 적립(법 제25조, 시행규칙 제16조)

- 재해에 대비하여 자연장지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개·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적립하는 것임
- 적립 대상: 사설자연장지
- 관리금 적립내용
 - 사설자연장지의 설치·관리인은 사용료 및 관리비 연간 총수입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적립
 - 사설자연장지의 재산세 과세표준액(종교단체는 재산세 과세표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를 때까지 적립하여야 함
 - 다만, 적립하여야 할 금액을 한꺼번에 적립하거나 해당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제외

○ 관리금의 적립시기·절차 및 방법

- 사설자연장지의 설치·관리인은 매 회계연도 결산이 끝나는 즉시 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의 관리금 적립금액과 사용 내역을 시장 등에게 제출
- 사설방안시설의 설치·관리인은 별지 제22호서식의 관리금 적립 및 사용 대장을 작성
- 사설방안시설의 설치·관리인은 시장등과 협의하여 정한 금융기관에 관리금을 적립한 사실 또는 관리금을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관할 시장 등에게 제출
- 보험계약 기간이 끝난 후 보험계약을 다시 체결한 경우에도 같음

○ 관리금의 용도

- 관리금은 해당 장사시설의 보존과 관리 등 재해 예방과 개·보수를 위한 용도로만 사용

○ 위반 시 벌칙 등 (법 제31조, 제40조, 제41조)

- 관리금을 적립하지 않거나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15일, 2차 위반 시 업무정지 1개월, 3차 위반 시 업무정지 3개월, 4차 위반 시 업무정지 6개월
-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대리인 등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 당해 행위자(대리인 등)뿐만 아니라 그 개인(법인)에 대하여도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절 재단법인 설립 검토

1. 장사재단법인 설립 절차

1) 설립 준비

- 설립 취지 및 목적 수립
 - 장사재단법인의 설립 목적을 명확히 정의해야 함
 - 주로 장례 서비스, 화장, 봉안, 자연장 등의 설치와 운영 등에 해당하며 공익적 목적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음
- 출연 재산 확보
 - 재단법인은 일정한 재산을 기초로 설립되는 법인이기에 장사재단법인 역시 출연 재산을 마련해야 함
 - 출연 재산은 현금, 부동산, 유가 증권 등 다양한 형태가 될 수 있으며 장사시설 특성 상 관련된 부동산이 포함되어야 할 것임

2) 법적 절차²⁹⁾

(1) 정관 작성

- 장사재단법인의 운영을 규정할 정관을 작성해야 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1. 목적 - 2. 명칭 - 3. 사무소 - 4. 설립허가의 연월일 - 5. 존립시기나 해산이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 6. 자산의 총액 - 7.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 8. 이사의 성명, 주소 - 9.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
--	--

29) 민법 제43조 등: 재단법인의 설립과 관련된 일반 규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장사 관련 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법적 규정

(2) 이사 및 감사 선임

- 재단을 운영할 이사와 감사를 선임해야 하며 이사는 최소 5인 이상, 감사는 2인 이상이어야 하되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그 수를 증감할 수 있음

(3) 설립 인가 신청

- 관할 행정 기관에 설립 인가를 신청해야 하며 이때 제출 서류로는 정관, 출연 재산 목록, 이사 및 감사 명단 등이 포함됨

(4) 설립 등기

- 설립 인가를 받은 후, 등기소에 설립 등기를 신청하며 등기를 통해 법인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획득하게 됨

3) 세무 신고 및 등록

- 세무 관리를 위한 고유번호증 발급

4) 운영 및 관리

- 사업 계획 수립 및 실행: 설립 후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
- 회계 관리: 투명한 회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기적인 회계 감사를 실시
- 이사회 개최: 정기적으로 이사회를 개최하여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주요 안건을 논의
- 연간 보고서 제출: 매년 결산 보고서와 사업 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와 관계 당국에 제출

2. 재단법인 설립 허가 기준

1) 재단법인 설립 허가

- 장사재단법인은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에 해당함
-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장사재단법인이 설립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필요함
- 제4조(설립허가) ① 주무관청은 법인 설립허가 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그 설립을 허가할 수 있다.
 - 1.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
 - 2. 목적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 3.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이 아닐 것

2)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구비서류

- 비영리법인인 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의 제출이 필요함
- 다음의 서류 중 8번. 재산목록 및 그 증빙서류는 재단법인 설립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관련한 내용임
- 재단법인의 재산은 크게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나누어지는데 이를 명확하게 구분해야 하고 금액은 감정평가액을 기재해야 함
 -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법인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회계연도 세계잉여금으로 기본재산에 편입된 재산,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 등이 속하며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은 운영재산(보통재산)이 됨
 - 기본재산은 주로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부동산(대지, 건물, 임야 등)이나 재산 감소가 초래되지 않는 동산(현금, 임차보증금)으로 구성되며 기본재산 목록이 정관 별지 기재사항이므로 기본재산의 변동이 있는 경우 주무관청의 정관변경 허가가 필요함

〈표 부록-2〉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관련 제출서류 및 내용

제출서류	세부내용
1.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1부	
2. 설립취지서 1부	
3. 설립발기인 인적사항 1부	• 설립발기인의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및 약력 등 기재 • 설립발기인이 법인이면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
생년월일 · 주소와 정관을 기재	
4. 임원 취임 예정자 명단 1부	• 임원 취임 예정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약력 기재
5. 임원취임승낙서 1부	• 취임하는 임원의 서명 · 날인이 있어야 함
6. 창립 총회 회의록 1부	• 회의록 내용상 별첨 서류 첨부 및 간인(발기인 전원) • 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제출
7. 정관 1부	
8. 재산목록 및 그 증빙서류 1부	• 재단법인의 경우,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 기재 • 부동산·예금·유가증권 등 재산에 관한 등기소·금융기관 등의 증명서
9. (재산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 재산출연승낙서(기부승낙서) 1부	• 재산출연증서를 공증 받아 제출
10. 사무실 확보 증명서 1부	• 임대차계약서 또는 건물사용승낙서, 건물소유권 입증 서류 등
11. 당해연도 사업계획서 1부	
12. 당해연도 수지예산서 1부	
13. 법인조직 및 상근임직원 정수표 1부	

3. 설립 시 적절한 재산 규모 검토

1) 기본사항

- 장사 재단법인이 정해진 규정 내에서 적법하게 운영된다면 법인의 파산으로 장사시설 이용자가 피해를 받을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됨
- 이를 위해서는 설립 과정에서 필요한 재산 규모에 대해 적절하게 검증되어 법인의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어야 함
-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보통)재산으로 구분되며, 재단법인의 경우 출연된 재산으로 목적사업 달성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함

- 주무관청은 법인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재산목록, 재산출연내역 등 관련 제반 서류를 바탕으로 재정적 기초 확립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신청서류만을 빠짐없이 제출하였다고 해서 허가되는 것은 아니고 형식적 요건뿐 아니라 제출서류를 통해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가능하고, 법인이 목적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는지를 입증해야 함
- 또한 허가 여부는 허가요건과 제반사항을 고려한 주무관청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6. 9. 10. 선고 95누18437 판결 등)가 있으므로 보건복지부의 위임을 받은 제주특별자치도는 장사법인 설립 허가 요청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사업의 규모나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어 규정하기는 어려우나 장사시설 특성상 큰 규모의 부동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장사재단법인을 설립할 때에는 주로 20~30억원 이상의 기본재산이 출연되는 것으로 볼 수 있었음
 - 경기도의 경우 토지를 기본재산으로 하며 장사 관련시설 준공까지 필요한 공사비 등에 대한 자금을 확보해야 함
 - 또한 출연하는 기본재산에는 부채나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야 함

〈표 부록-3〉 법인의 재정적 기초 판단 시 고려할 사항

- 주무관청(도 허가부서)은 설립허가 시 법인이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 목적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재정적 기초를 확립하였는지 검토하여야 함(법인규칙 제4조)
- 과실금(재단)을 연간 사업계획 및 예산 총규모와 대비하여 판단함-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등은 계속 지원 여부가 불투명하므로 제외하고 검토(단,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법인이거나 법령·조례 등에 근거하여 계속지원이 확정된 법인은 보조금을 재원으로 포함하여 검토 가능)
- 기본재산 기준은 법인의 설립목적, 목적사업 규모 및 내용 등에 따라 도 허가부서에서 재량으로 판단·적용
- 재단법인은 특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으로 구성되므로 법인 설립행위에 재산 출연이 필수적임
- 재단법인 설립에 요구되는 재산 정도는 법인의 설립 목적, 사업 범위, 사업의 종류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함
- 재산출연 절차상 문제는 없는지, 즉시 법인으로 재산 이전이 가능한지, 출연재산으로부터의 과실금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함
 - ※ 과실금 등은 법인 신청연도 당시 사업 예산액 그 이상 확보되어야함

자료) 경기도 비영리법인 업무편람(2023)

2) 기본재산 규모 검토(안)³⁰⁾

(1) 사설자연장지: 토지가액 포함 약 60억 원

- 장사법 시행령 별표4에 따르면 재단법인이 자연장지를 조성할 때에는 최소 5만㎡의 면적을 확보해야 함
- 2024년 제주 표준지 공시지가에 따르면 임야의 공시지가는 평균 33,674원/㎡이고 실거래가는 최소 3배 정도인 101,022원/㎡로 추정함
- 5만㎡를 기준으로 위의 추정 실거래가를 적용하면 약 5,051백만원으로 도출되어 외부 공원 조성, 휴게시설 조성 등을 포함하고 사업초기 운영비 등을 감안하면 부동산 포함 약 60억원 가량의 기본재산이 마련되어야 안정적인 사업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이는 사업부지에 따른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 재단설립 절차 등의 과정에서 그 상황에 맞추어 그 규모를 설정하고 검토해야 할 것임

(2) 사설묘지: 토지가액 포함 약 101억 원

- 장사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르면 재단법인이 자연장지를 조성할 때에는 최소 10만㎡의 면적을 확보해야 함
- 2024년 제주 표준지 공시지가에 따르면 임야의 공시지가는 평균 33,674원/㎡이고 실거래가는 최소 3배 정도인 101,022원/㎡로 추정함
- 10만㎡를 기준으로 위의 추정 실거래가를 적용하면 약 10,102백만원으로 도출되어 사업초기 운영비 등을 제외하더라도 부동산가액만으로 약 101억원 이상의 기본재산이 마련되어야 안정적인 사업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이는 사업부지에 따른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 재단설립 절차 등의 과정에서 그 상황에 맞추어 그 규모를 설정하고 검토해야 할 것임

30) 아래 내용은 재단법인 설립이 필요한 장사시설 최소규모를 가정하여 산정해본 것으로 연구단계에서 필요 재산가액을 확정할 수는 없으며 설립 허가 과정에서 이러한 방식으로 검토해볼 수 있도록 제안하는 내용임

(3) 사설방안시설: 토지 및 건축공사비 약 30억 원

- 장사법 시행령 별표3에 따르면 재단법인이 방안시설을 조성할 때에는 방안공간 5천구 이상일 때 법인을 설립해야 함
 - 양지공원의 사례를 보면 5천구 방안을 위해서는 연면적 500㎡ 가량의 공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2층 규모로 가정할 경우 건축면적은 25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소 20%의 건폐율을 적용한다면 토지는 1,250㎡ 가량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2024년 제주 표준지 공시지가에 따르면 임야의 공시지가는 평균 33,674원/㎡이고 실거래가는 최소 3배 정도인 101,022원/㎡로 추정함
- 1,250㎡를 기준으로 위의 추정 실거래가를 적용한 토지가액과 건물의 예상공사비³¹⁾를 적용하면 약 2,042백만원으로 도출됨
- 이는 단순 건축공사비만 반영한 것으로 운영을 위한 인테리어, 외부 공원 조성, 휴게시설 조성 등을 포함하고 사업초기 운영비 등을 감안하면 부동산 포함 약 30억원 가량의 기본재산이 마련되어야 안정적인 사업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이는 사업부지에 따른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 재단설립 절차 등의 과정에서 그 상황에 맞추어 그 규모를 설정하고 검토해야 할 것임

〈표 부록-4〉 방안시설 운영 재단법인 설립 시 소요 기본재산 검토

방안시설	면적	단가	비용
토지	1,250㎡	101,022원/㎡	126,277,500
건물	500㎡	3,830,876원/㎡	1,915,438,000
계			2,041,715,500

31) 공사비 정보광장(조달청) ‘국립영천호국원 제3방안당 건립공사’ ㎡당 공사비 적용

제3절 사설 장사시설 재단법인 설립 검토

1. 사설 장사시설의 장단점

1) 장점

(1) 서비스 다양화

- 맞춤형 서비스 제공: 사설 장사시설은 다양한 고객의 요구에 맞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특정 종교나 문화적 배경에 맞춘 봉안공간, 장례예식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함
- 고급 서비스: 사설 장사시설은 비용의 제한을 덜 받고 고급스러운 시설과 추가적인 편의시설을 제공하여 고객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음

(2) 효율적인 운영

- 민첩성: 사설 기관은 공공기관에 비해 비교적 빠르게 의사 결정을 내리고, 필요한 경우 빠르게 시설을 확장하거나 개선할 수 있음
- 경쟁력: 경쟁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지속적으로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고 비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함

(3) 지역 경제 기여

- 일자리 창출: 사설 장사시설이 새로이 생길 경우 지역 사회에 일자리를 제공하고, 관련 산업을 활성화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음

2) 단점

(1) 비용 부담

- 사설 장사시설의 이용 비용은 공설 시설보다 훨씬 높은 편으로 일반 주민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으며 시설 입장에서조차 공설시설과의 가격경쟁력에서 뒤처져 규모에 비해 실제 이용률은 낮을 수 있음
- 예를 들어, 제주 공설 봉안시설의 사용료는 10만원(도외 20만원)인 반면, 사설 시설은 그보다 10배 이상 비싼 편임

(2) 사회적 반발

- 지역 주민들이 장사시설 설치를 반대하는 경우가 많아, 공공성을 강조하는 공공시설에 비하여 사설 장사시설은 비록 비영리법인이라는 하지만 공공 시설보다 더 큰 사회적 반발에 직면할 수 있음
- 울산하늘공원 조성사례에서도 주민들과 어느정도 합의가 이루어졌음에도 시설과의 거리에 따라 또 다른 주민들의 반대와 요구사항이 발생한 적이 있음

(3) 투명성 문제

- 사설 장사시설에서는 운영 과정에서 비리나 부패 문제, 또는 경영난이 발생할 수 있음
- 재단 설립 과정에서 기본재산에 대한 검증을 거치기는 하나 계획한 장사시설 분량이 이루어지지 않아 장기적으로 운영상의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기본재산까지 잠식하게 되고 이는 기존 이용자의 피해로 연결될 수 있음

3) 장단점 요약

- 사설 장사시설은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높은 비용, 사회적 반발, 운영 투명성 문제 등 단점도 존재함
- 장점과 단점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대규모 장사시설을 운영하는 재단 법인의 설립을 안정적으로 장기간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이 반드시 준비되어야 함

2. 검토결과

1) 공설 장사시설 공급 충분

- 현재 제주의 공설 장사시설은 본 계획기간동안 충분히 공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특히 공설묘지의 경우 이용률이 매우 낮아졌으며 자연장지의 공급이 늘어나면서 봉안시설과 자연장지 안치율이 증가하였음
- 공설 장사시설은 아무래도 법적, 정책적으로 직접적인 제약을 받기 때문에 모든 주민들에게 동등하게 제공되며,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어 사회적 형평성을 보장함
- 또한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장사시설은 환경 보호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여 지속 가능한 친환경적인 운영이 이루어짐
 - 경북의 한 사설공원묘원은 40년간 운영하면서 확장을 거듭함에도 사업 첫해부터 산지 불법 무단훼손을 자행하기 시작해 2022년 형사처분을 받기까지 무단훼손,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등 갖가지 법령을 위반해온 것으로 드러난 사례가 있음
- 공공기관의 운영은 투명성과 신뢰성을 보장하여 주민들과의 신뢰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음

2) 재단법인 설립의 필요성 부족

- 사설 장사시설의 주요 장점은 서비스 다양화와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지만 공설 장사시설이 충분히 공급되고 관리된다면 이러한 필요성이 줄어들 수 있음
- 사설 장사시설은 고급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선택권을 높여주기는 하지만 대신 높은 비용을 요구하므로 이제는 기본권의 하나처럼 인식되기 시작한 장사서비스는 경제적 약자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음
- 사설 장사시설의 설치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음
- 더군다나 공설 장사시설이 충분히 공급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설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은 국토의 비효율적 이용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환경 훼손 및 자원 낭비를 초래할 수 있음

- 2001년 이후에 설치된 묘지는 일정 기한이 지나면 개장하여야 하며 자연장지의 경우에도 사용기한이 지나면 유골이 반환되지 않고 자연적으로 처리되므로 해당 공간을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되므로 무분별하게 토지를 묘지 등으로 조성하는 것은 지양해야 함
- 제주도는 천혜의 자연 환경을 보존해야 하는 중요한 지역으로, 대규모 장사시설 설치는 환경 훼손을 초래할 수 있음
- 화산섬의 특성상 섬의 중심부가 높아지는 형태로 중산간지대 등에 원형의 산림이 아닌 대규모 장사시설이 설치된다면 경관을 해치고 산림 훼손, 수질 오염 등의 환경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3) 결론

- 공설 장사시설이 충분히 공급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장사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해야 하는 사설 장사시설을 추가로 공급할 필요가 없는 상황임
- 사설 장사시설의 경우 변화하는 장례문화를 반영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비용적인 측면에서 소극적일 수 밖에 없으며 전반적으로 사용료 수준이 매우 높기 때문에 주민들간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으며 부담이 될 수 있음
- 운영 안정성 측면에서도 형식적으로 비영리법인이기는 하나 경제적 논리를 따를 수 밖에 없는 민간 기관이기에 공공성의 역할을 하거나 운영의 신뢰성(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담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운영 안정성, 환경적 측면을 고려할 때, 대규모 장사시설 설치의 지양해야 한다고 판단되며, 공설 장사시설을 통해 주민들의 장례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안이라 할 수 있음
- 종합해 볼 때, 현재로서는 대규모 장사시설 설치 및 재단법인 설립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은 아니나 장사시설의 공급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공공재원을 절감하면서도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민관 공동사업 형태로 추진된다면 가능하다고 판단됨
- 그렇지 않다면 현재 대규모 장사시설 설치를 위한 사항들이 공론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단법인 설립을 허가하기 위한 기준이나 주민 간 공감대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므로 앞서 살펴본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대규모 장사시설을 운영하는 재단 법인이 안정적으로 장사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역에 맞는 관련 기준을 정립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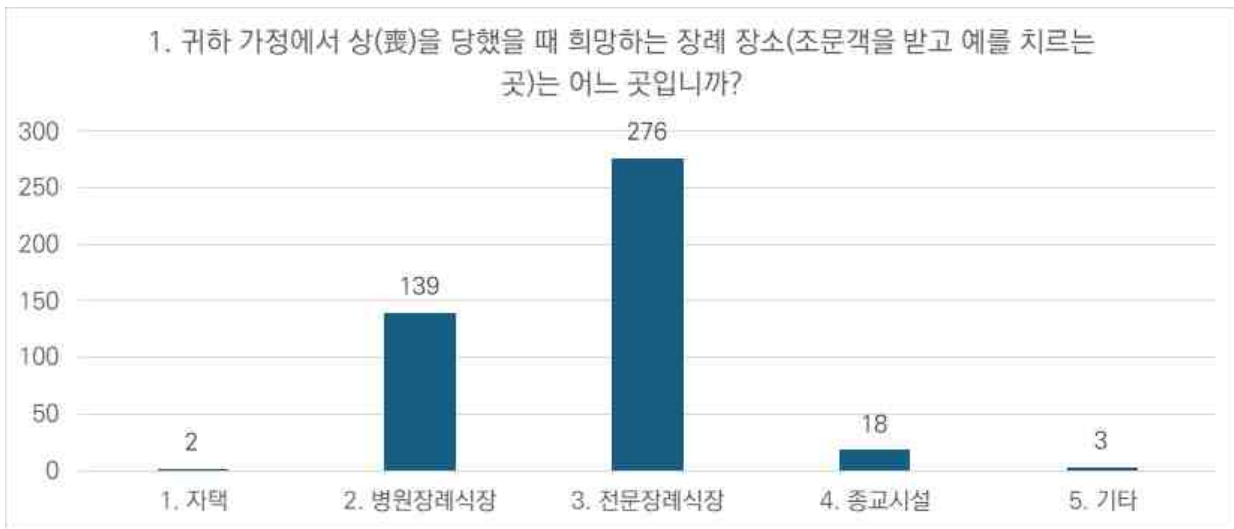
부록 II 주민의식 조사 결과 세부내용

1. 장사방법에 관한 인식

■ 장례 장소 선호도 조사 결과

- 장례 장소 선호도 조사 결과 전문장례식장이 276명(63.01%), 병원장례식장 139명(31.74%)이 응답함
- 이를 볼 때 최근의 장례는 대부분 전문장례식장이나 병원장례식장 등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추정됨

(단위: 명, %)		1. 귀하 가정에서 상(喪)을 당했을 때 희망하는 장례 장소(조문객을 받고 예를 치르는 곳)는 어느 곳입니까?					
		자택	병원장례식장	전문장례식장	종교시설	기타	계
전체		2	139	276	18	3	438
		0.5%	31.7%	63.0%	4.1%	0.7%	100.0%
성별	남성	1	86	149	6	1	243
	여성	1	53	127	12	2	195
연령	20대~30대	0	36	65	5	0	106
	40대	0	22	56	5	1	84
	50대	1	27	72	3	1	104
	60대	0	32	59	2	1	94
	70대 이상	1	22	24	3	0	50
거주 기간	10년 이하	1	39	67	8	0	115
	11~20년	0	18	51	0	1	70
	21~30년	0	23	36	4	1	64
	31~40년	0	12	22	1	0	35
	40년 이상	1	44	99	4	1	149
	무응답	0	3	1	1	0	5
종교	없음	2	56	117	0	2	177
	불교	0	28	60	2	0	90
	천주교	0	9	32	5	0	46
	개신교	0	41	61	11	1	114
	무응답	0	5	6	0	0	11
거주 지역	제주시	1	94	242	8	0	345
	서귀포시	1	45	34	10	3	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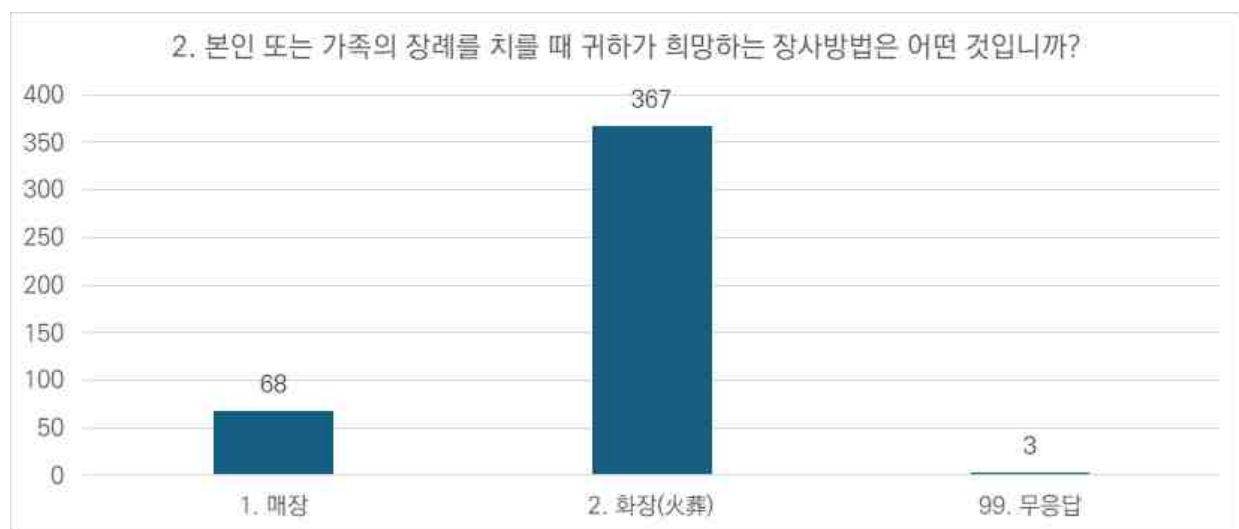


■ 장사방법 선호도 조사 결과

○ 장례 방법 선호도 조사 결과 매장이 68명(15.53%), 화장이 367명(83.79%)으로 나타남

○ 이를 볼 때 최근 장례 선호도는 대부분 화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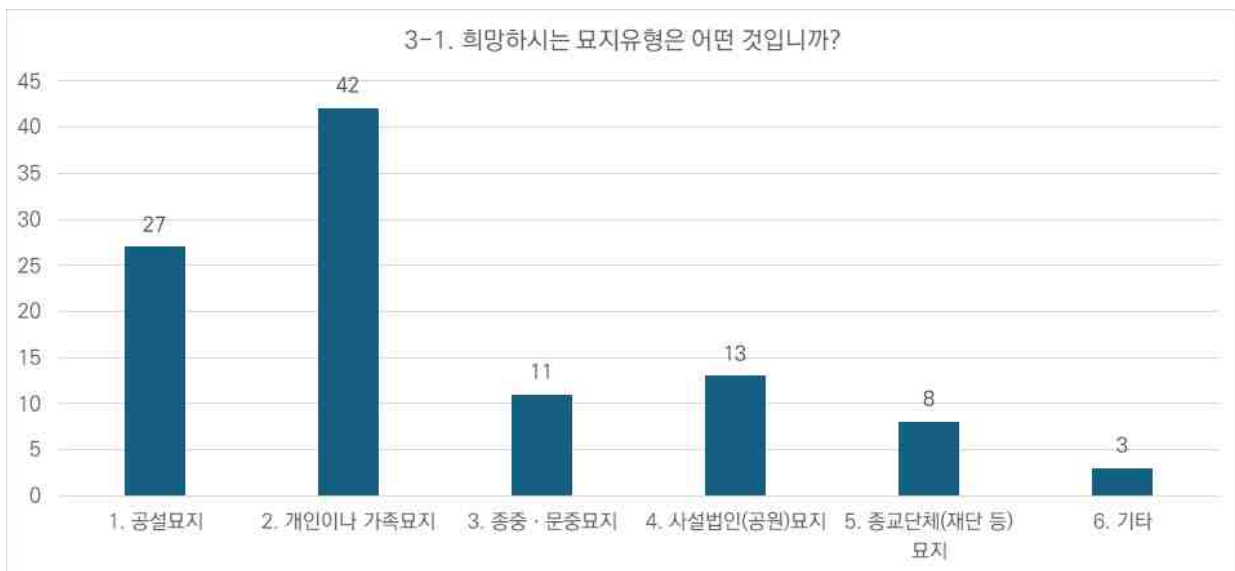
(단위: 명, %)		2. 본인 또는 가족의 장례를 치를 때 귀하가 희망하는 장사방법은 어떤 것입니까?			
		매장	화장(火葬)	무응답	계
전체		68	367	3	438
		15.5%	83.8%	0.7%	100.0%
		15.6%	84.4%	435	
성별	남성	37	206	0	243
	여성	31	161	3	195
연령	20대~30대	18	87	1	106
	40대	14	69	1	84
	50대	17	87	0	104
	60대	10	83	1	94
	70대 이상	9	41	0	50
거주 기간	10년 이하	17	97	1	115
	11~20년	12	58	0	70
	21~30년	10	53	1	64
	31~40년	6	29	0	35
	40년 이상	22	126	1	149
	무응답	1	4	0	5
종교	없음	25	152	0	177
	불교	15	73	2	90
	천주교	7	39	0	46
	개신교	18	95	1	114
	무응답	3	8	0	11
거주 지역	제주시	47	297	1	345
	서귀포시	21	70	2	93



■ 묘지 유형 희망도 조사 결과

- 묘지 유형 희망도는 공설 묘지가 27명(6.16%)으로 높게 나타남
- 이를 볼 때 개인이나 가족묘지가 갖춰진 경우에는 이를 선호하지만 아닌 경우에는 공설묘지를 선호하는 비율이 높은 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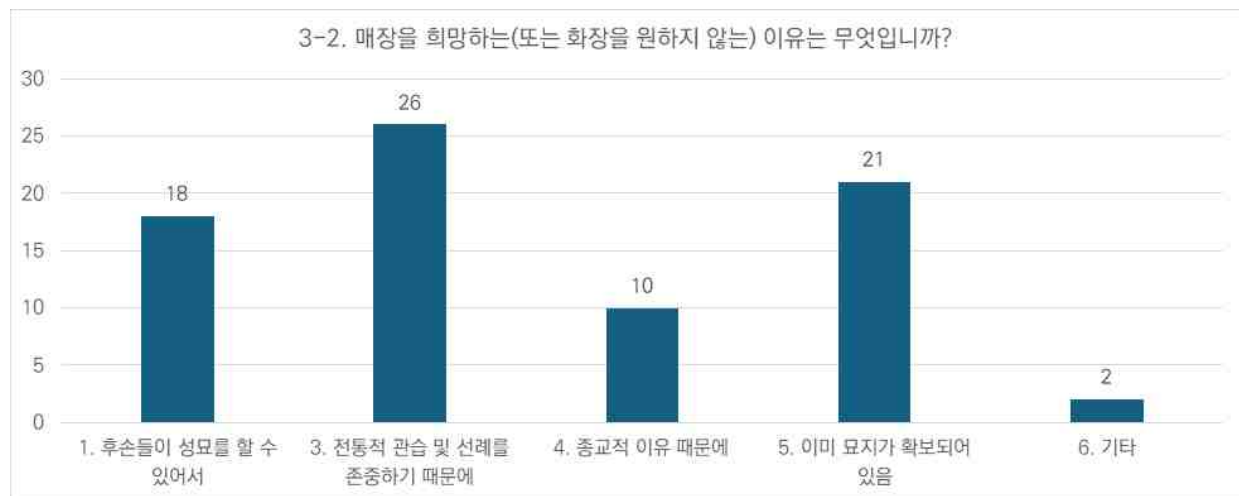
(단위: 명, %)		3-1. 희망하시는 묘지유형은 어떤 것입니까?						
		공설묘지	개인이나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사설법인(공원)묘지	종교단체(재단 등) 묘지	기타	무응답
전체		27	42	11	13	8	3	334
		6.2%	9.6%	2.5%	3.0%	1.8%	0.7%	76.3%
		26.0%	40.4%	10.6%	12.5%	7.7%	2.9%	-
성별	남성	9	23	7	7	4	1	192
	여성	18	19	4	6	4	2	142
연령	20대~30대	8	13	0	6	2	1	76
	40대	2	9	1	4	1	0	67
	50대	4	8	4	2	3	1	82
	60대	8	7	2	1	0	1	75
	70대 이상	5	5	4	0	2	0	34
거주기간	10년 이하	9	7	1	5	3	1	89
	11~20년	1	11	0	2	2	0	54
	21~30년	3	5	1	1	1	1	52
	31~40년	2	2	1	2	0	0	28
	40년 이상	12	16	8	3	2	1	107
	무응답	0	1	0	0	0	0	4
종교	없음	15	17	5	6	1	1	132
	불교	4	12	4	1	0	0	69
	천주교	0	3	2	2	1	1	37
	개신교	8	10	0	1	6	1	88
	무응답	0	0	0	3	0	0	8
거주지역	제주시	21	31	11	12	3	2	265
	서귀포시	6	11	0	1	5	1	69



■ 매장 희망도 조사결과

- 매장 희망도는 ‘전통적 관습 및 선례를 존중하기 때문에’가 다소 높게 나타남
- 이를 볼 때 전통과 선례를 중요시 여기고, 성묘 행사를 소중히 여김을 알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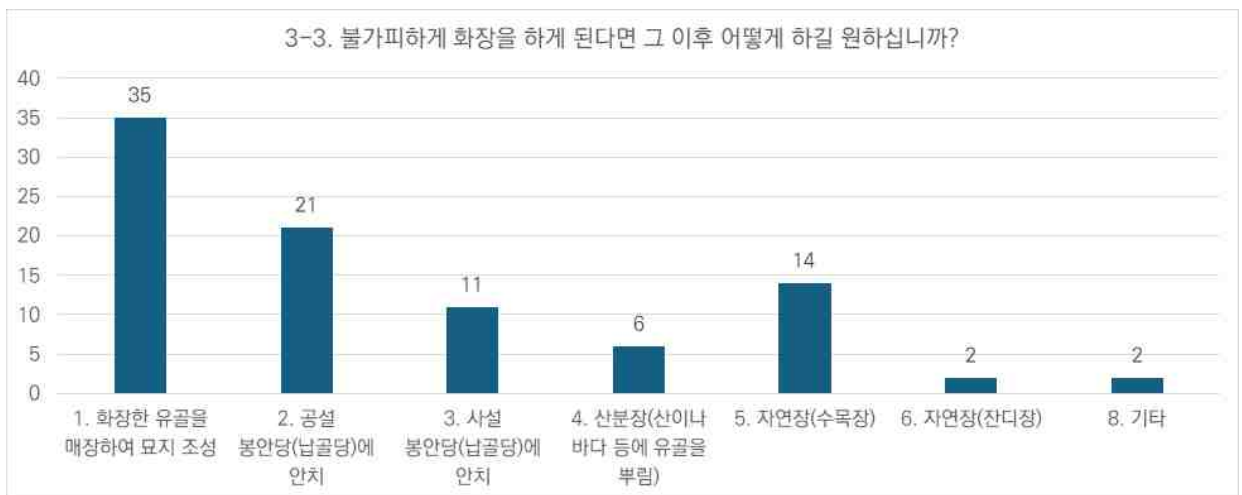
		3-2. 매장을 희망하는(또는 화장을 원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후손들이 성묘를 할 수 있어서	전통적 관습 및 선례를 존중하기 때문에	종교적 이유 때문에	이미 묘지가 확보되어 있음	기타	무응답	계
전체		18	26	10	21	2	361	438
		4.1%	5.9%	2.3%	4.8%	0.5%	82.4%	100.0%
		23.4%	33.8%	13.0%	27.3%	2.6%	-	100.0%
성별	남성	12	16	4	11	1	199	243
	여성	6	10	6	10	1	162	195
연령	20대~30대	3	6	4	6	1	86	106
	40대	2	4	1	6	0	71	84
	50대	5	6	5	2	0	86	104
	60대	4	5	0	3	1	81	94
	70대 이상	4	5	0	4	0	37	50
거주 기간	10년 이하	4	4	7	3	0	97	115
	11~20년	4	3	1	7	0	55	70
	21~30년	1	5	2	1	1	54	64
	31~40년	1	3	0	1	0	30	35
	40년 이상	7	11	0	9	1	121	149
	무응답	1	0	0	0	0	4	5
종교	없음	6	15	0	8	0	148	177
	불교	6	5	0	7	1	71	90
	천주교	2	1	1	2	1	39	46
	개신교	4	3	9	4	0	94	114
	무응답	0	2	0	0	0	9	11
거주 지역	제주시	14	22	1	16	2	290	345
	서귀포시	4	4	9	5	0	71	93



■ 화장 사후관리 희망도 조사결과

- 화장 사후관리 희망도 조사 결과 ‘화장한 유골을 매장하여 묘지 조성’이 35명(7.99%)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이를 통해 시신을 직접 매장하진 않으나, 화장한 유골을 매장하여 묘지를 조성하는 문화가 아직 유효하다고 볼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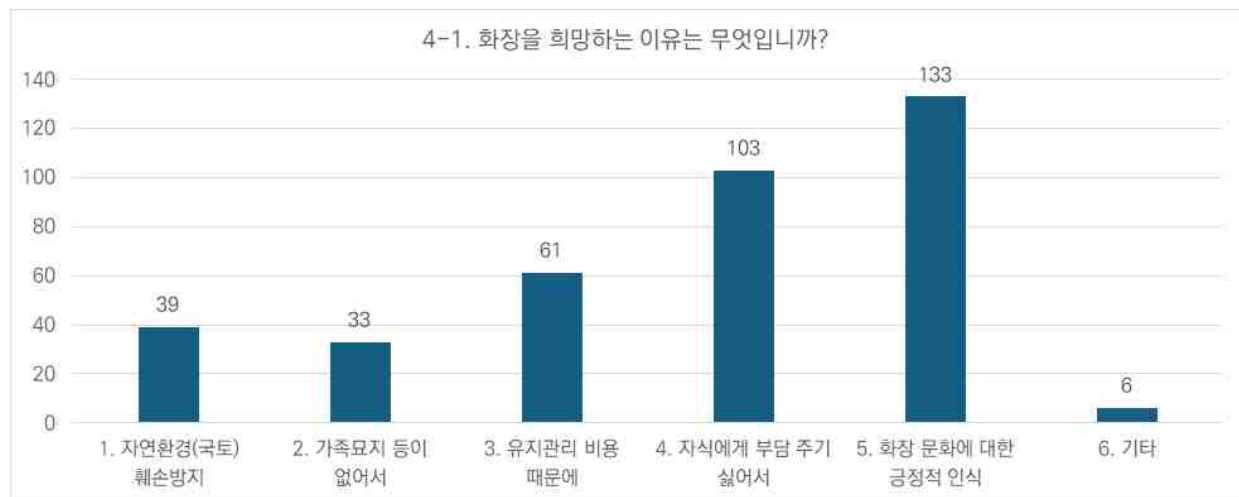
		3-3. 불가피하게 화장을 하게 된다면 그 이후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화장한 유골을 매장하여 묘지 조성	공설 봉안당 (납골당)에 안치	사설 봉안당 (납골당)에 안치	산분장(산이나 바다 등에 유골을 뿌림)	자연장 (수목 장)	자연장 (잔디 장)	기타	무응답	계
전체		35 8.0%	21 4.8%	11 2.5%	6 1.4%	14 3.2%	2 0.5%	2 0.5%	347 79.2%	438 100.0%
성별	남성	24	13	5	1	1	1	2	196	243
	여성	11	8	6	5	13	1	0	151	195
연령	20대~30대	7	4	3	1	4	1	1	85	106
	40대	2	4	5	1	2	1	0	69	84
	50대	9	6	2	2	4	0	1	80	104
	60대	8	3	1	2	1	0	0	79	94
	70대 이상	9	4	0	0	3	0	0	34	50
거주 기간	10년 이하	4	4	1	3	5	1	1	96	115
	11~20년	6	3	3	0	2	1	0	55	70
	21~30년	2	3	2	0	2	0	1	54	64
	31~40년	5	1	1	0	0	0	0	28	35
	40년 이상	17	9	4	3	5	0	0	111	149
	무응답	1	1	0	0	0	0	0	3	5
종교	없음	14	6	7	3	5	1	0	141	177
	불교	15	6	1	0	0	0	0	68	90
	천주교	0	4	1	1	2	0	1	37	46
	개신교	5	5	1	1	7	1	1	93	114
	무응답	1	0	1	1	0	0	0	8	11
거주 지역	제주시	30	17	7	4	7	1	0	279	345
	서귀포시	5	4	4	2	7	1	2	68	93



■ 화장을 희망하는 이유 조사결과

- 화장을 희망하는 이유는 ‘화장 문화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133명(30.37%)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자식에게 부담 주기 싫어서’가 103명(23.52%)으로 그 다음을 기록함
- 이를 볼 때 최근의 화장 문화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올라갔음을 알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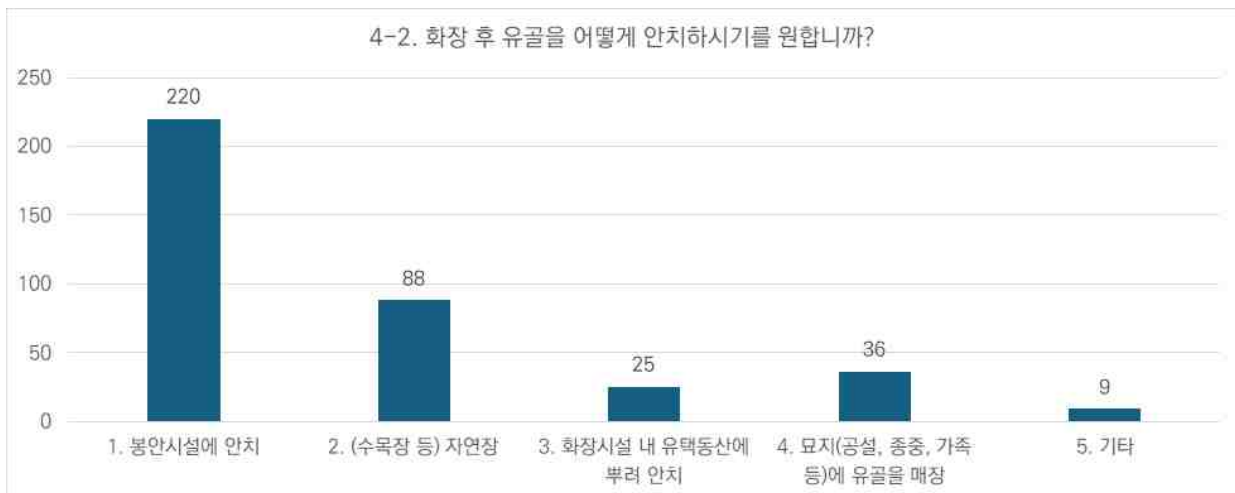
		4-1. 화장을 희망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연환경 (국토) 훼손방지	가족묘지 등이 없어서	유지관리 비용 때문에	자식에게 부담 주기 싫어서	화장문화에 대한 긍정적 인식	기타	무응답
전체		39	33	61	103	133	6	63
		8.9%	7.5%	13.9%	23.5%	30.4%	1.4%	14.4%
		10.4%	8.8%	16.3%	27.5%	35.5%	1.6%	-
성별	남성	23	22	36	56	70	1	35
	여성	16	11	25	47	63	5	28
연령	20대~30대	14	11	31	11	21	2	16
	40대	8	5	14	15	28	1	13
	50대	6	8	6	33	36	1	14
	60대	6	6	6	31	34	1	10
	70대 이상	5	3	4	13	14	1	10
거주 기간	10년 이하	18	8	24	17	30	3	15
	11~20년	5	5	5	13	30	1	11
	21~30년	4	6	16	15	14	0	9
	31~40년	1	3	7	5	13	0	6
	40년 이상	10	11	9	52	44	2	21
	무응답	1	0	0	1	2	0	1
종교	없음	11	18	26	41	57	2	22
	불교	9	2	9	29	23	1	17
	천주교	3	1	7	13	16	0	6
	개신교	16	8	18	19	35	3	15
	무응답	0	4	1	1	2	0	3
거주 지역	제주시	27	32	54	78	107	1	46
	서귀포시	12	1	7	25	26	5	17



■ 화장 후 유골을 어떻게 안치할 지에 대한 조사 결과

- 화장 후 유골을 어떻게 안치할 지에 대한 조사 결과 ‘봉안시설에 안치’가 220명(50.23%)으로 가장 높고 자연장이 88명(20.09%)으로 두 번째임
- 이를 통해 전통적으로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것 외에도 자연장에 대한 선호도가 다소 높음을 알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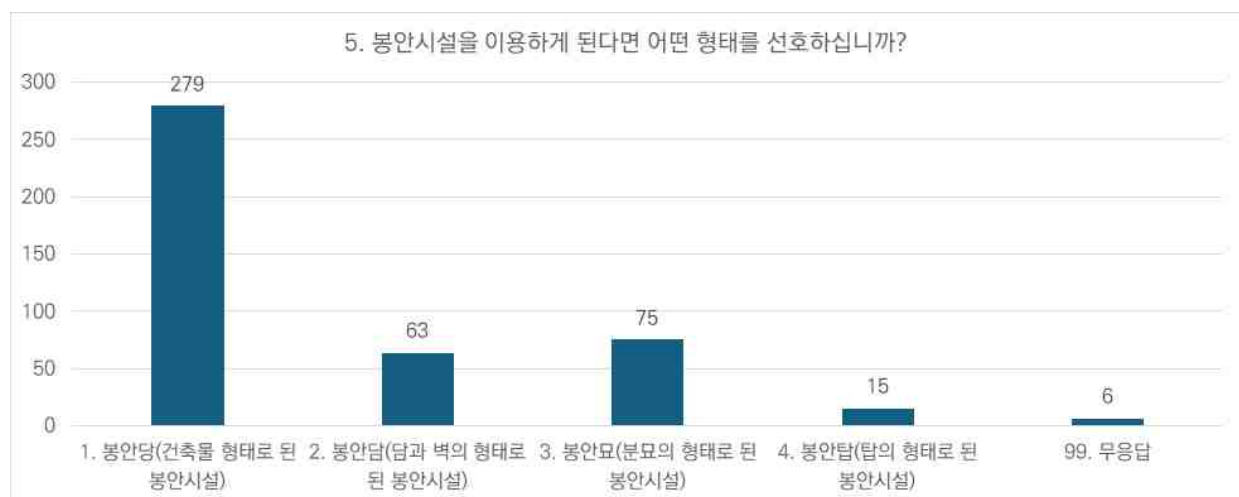
		4-2. 화장 후 유골을 어떻게 안치하시기를 원합니까?						
		봉안시설 에 안치	(수목장 등) 자연장	화장시설 내 유골 동산에 뿌려 안치	묘지(공설, 종중, 가족 등)에 유골을 매장	기타	무응답	계
전체		220	88	25	36	9	60	438
		50.2%	20.1%	5.7%	8.2%	2.1%	13.7%	100.0%
		58.2%	23.3%	6.6%	9.5%	2.4%	-	100.0%
성별	남성	124	42	14	25	2	36	243
	여성	96	46	11	11	7	24	195
연령	20대~30대	57	16	6	9	3	15	106
	40대	42	17	5	6	2	12	84
	50대	53	23	3	9	2	14	104
	60대	51	23	6	4	0	10	94
	70대 이상	17	9	5	8	2	9	50
		17	9	5	8	2	9	50
거주 기간	10년 이하	58	29	8	3	5	12	115
	11~20년	35	8	7	8	0	12	70
	21~30년	37	10	4	4	1	8	64
	31~40년	17	7	1	4	0	6	35
	40년 이상	71	32	5	17	3	21	149
	무응답	2	2	0	0	0	1	5
종교	없음	92	31	11	21	2	20	177
	불교	42	24	5	3	1	15	90
	천주교	26	10	1	2	1	6	46
	개신교	56	21	6	10	5	16	114
	무응답	4	2	2	0	0	3	11
		4	2	2	0	0	3	11
거주 지역	제주시	194	59	21	23	3	45	345
	서귀포시	26	29	4	13	6	15	93



■ 봉안시설 선호도 조사 결과

- 봉안시설 선호도 조사 결과 봉안당이 279명(63.7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이를 통해 아직 건축물 형태로 이루어진 봉안시설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음을 알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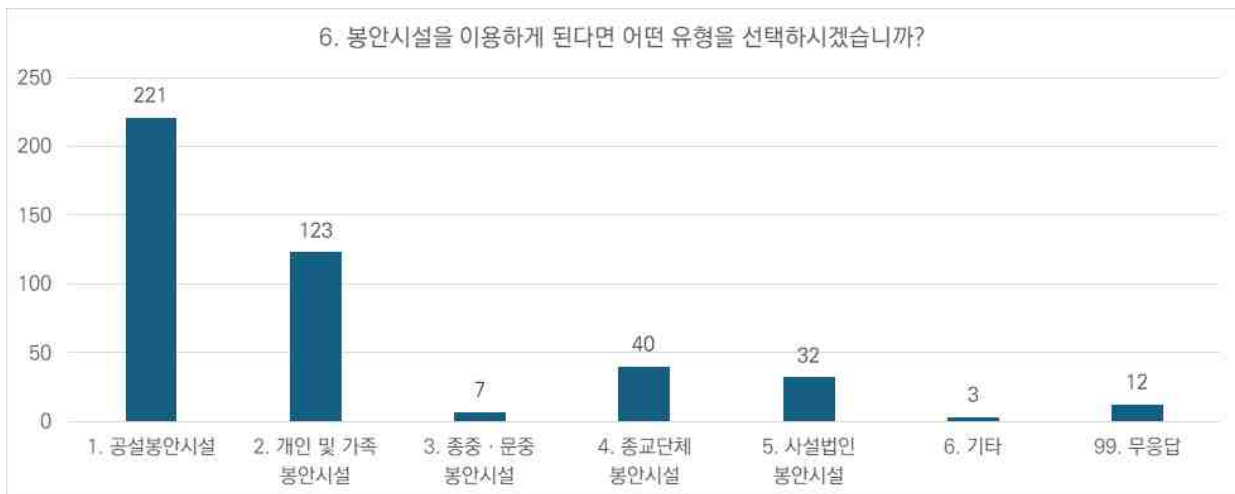
		5. 봉안시설을 이용하게 된다면 어떤 형태를 선호하십니까?					
		봉안당(건축물 형태로 된 봉안시설)	봉안담(담과 벽의 형태로 된 봉안시설)	봉안묘(분묘의 형태로 된 봉안시설)	봉안탑(탑의 형태로 된 봉안시설)	무응답	계
전체		279	63	75	15	6	438
		63.7%	14.4%	17.1%	3.4%	1.4%	100.0%
		64.6%	14.6%	17.4%	3.5%	-	100.0%
성별	남성	150	37	50	5	1	243
	여성	129	26	25	10	5	195
연령	20대~30대	68	16	16	5	1	106
	40대	54	4	22	2	2	84
	50대	64	22	11	4	3	104
	60대	60	16	16	2	0	94
	70대 이상	33	5	10	2	0	50
	10년 이하	81	12	16	5	1	115
거주 기간	11~20년	48	9	12	1	0	70
	21~30년	36	12	15	1	0	64
	31~40년	17	5	13	0	0	35
	40년 이상	95	23	18	8	5	149
	무응답	2	2	1	0	0	5
종교	없음	116	27	27	6	1	177
	불교	51	16	17	4	2	90
	천주교	25	6	10	4	1	46
	개신교	81	12	18	1	2	114
	무응답	6	2	3	0	0	11
거주 지역	제주시	221	53	58	9	4	345
	서귀포시	58	10	17	6	2	93



■ 보안시설 유형 선호도 조사 결과

- 보안시설 유형 선호도 조사 결과 공설보안시설이 221명(50.46%), 개인 및 가족 보안시설이 123명(28.08%)으로 높게 나타남
- 이를 통해 개인 및 가족 보안시설이 없는 경우 대부분 공설보안시설을 선호한다고 추정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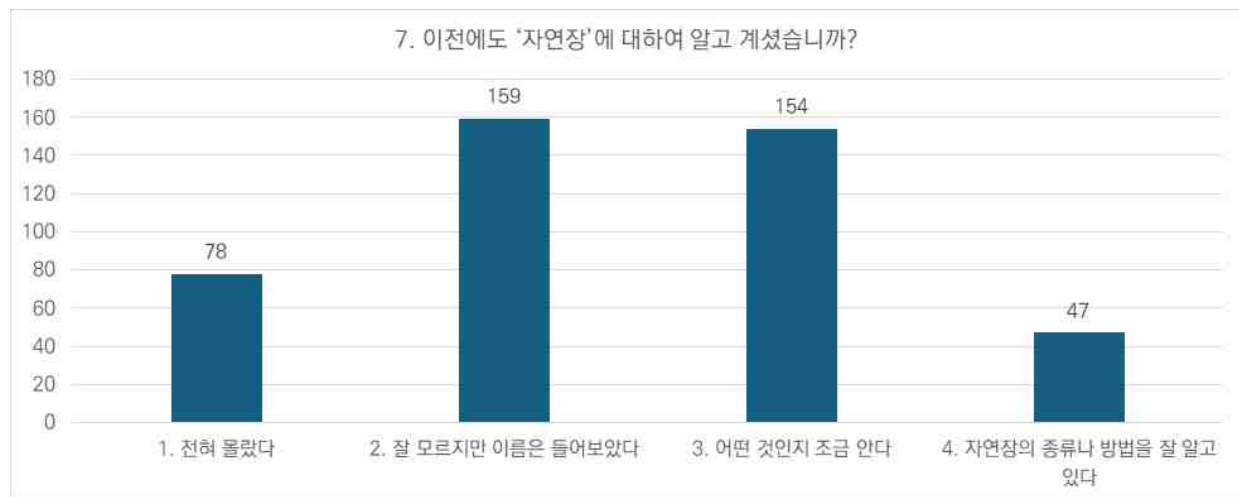
		6. 보안시설을 이용하게 된다면 어떤 유형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공설 보안시설	개인및가족 보안시설	종중·문중 보안시설	종교단체 보안시설	사설법인 보안시설	기타	무응답
전체		221 50.5%	123 28.1%	7 1.6%	40 9.1%	32 7.3%	3 0.7%	12 2.7%
성별	남성	125	73	4	15	17	3	6
	여성	96	50	3	25	15	0	6
연령	20대~30대	59	19	0	8	12	2	6
	40대	38	24	0	9	9	1	3
	50대	44	38	3	11	6	0	2
	60대	50	28	3	8	4	0	1
	70대 이상	30	14	1	4	1	0	0
	무응답	0	0	0	0	0	0	0
거주 기간	10년 이하	74	9	0	14	14	1	3
	11~20년	32	32	0	4	2	0	0
	21~30년	28	18	1	9	4	1	3
	31~40년	14	11	0	2	5	0	3
	40년 이상	71	52	5	10	7	1	3
	무응답	2	1	1	1	0	0	0
종교	없음	95	58	1	2	14	2	5
	불교	46	27	6	5	5	0	1
	천주교	21	13	0	9	2	0	1
	개신교	55	24	0	24	8	1	2
	무응답	4	1	0	0	3	0	3
거주 지역	제주시	183	103	4	18	24	2	11
	서귀포시	38	20	3	22	8	1	1



■ 자연장 인지도 조사 결과

- 자연장 인지도 조사 결과 ‘잘 모르지만 이름은 들어보았다’가 159명(36.30%), ‘어떤 것인지 조금 안다’가 154명(35.16%)으로 비슷한 수치를 보임
- 이를 통해 자연장에 대한 인지도가 아직 부족하며, 자연장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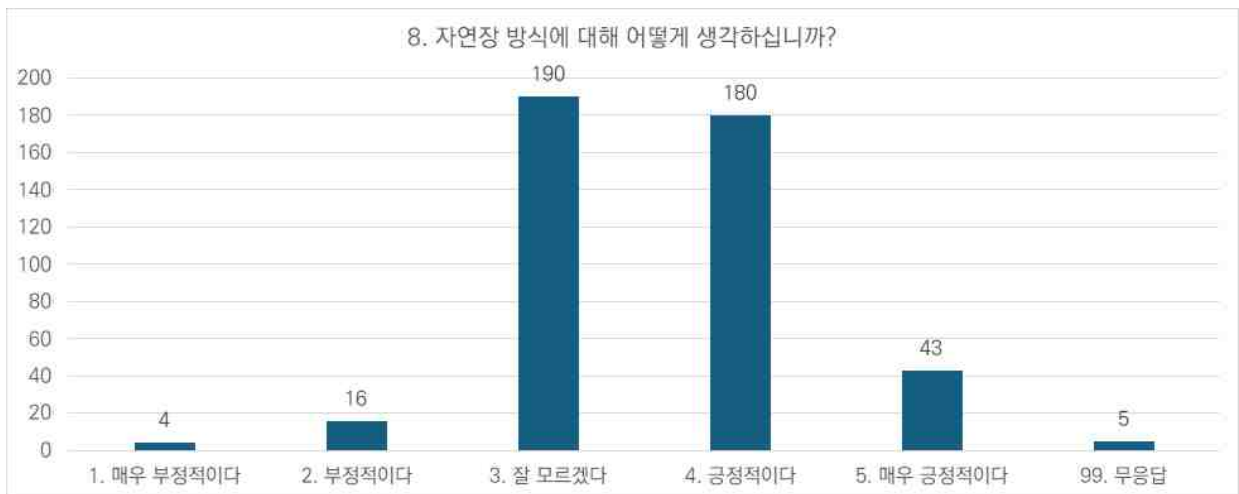
		7. 이전에도 ‘자연장’에 대하여 알고 계셨습니까?				
		전혀 몰랐다	잘 모르지만 이름은 들어보았다	어떤 것인지 조금 안다	자연장의 종류나 방법을 잘 알고 있다	계
전체		78 17.8%	159 36.3%	154 35.2%	47 10.7%	438 100.0%
성별	남성	46	91	76	30	243
	여성	32	68	78	17	195
연령	20대~30대	35	40	25	6	106
	40대	22	25	29	8	84
	50대	6	42	47	9	104
	60대	7	38	38	11	94
	70대 이상	8	14	15	13	50
거주 기간	10년 이하	22	47	34	12	115
	11~20년	16	28	22	4	70
	21~30년	17	24	18	5	64
	31~40년	10	10	11	4	35
	40년 이상	13	50	68	18	149
	무응답	0	0	1	4	5
종교	없음	41	64	55	17	177
	불교	5	35	36	14	90
	천주교	7	10	25	4	46
	개신교	22	43	37	12	114
	무응답	3	7	1	0	11
거주 지역	제주시	63	129	120	33	345
	서귀포시	15	30	34	14	93



■ 자연장 긍정률 조사 결과

- 자연장 긍정률 조사 결과 ‘긍정적이다’가 180명(41.10%), ‘매우 긍정적이다’가 43명(9.82%)으로 긍정률이 부정률보다 더 높게 나타남
- 이를 통해 자연장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충분하다면 장례문화의 한 부분으로 자연장이 자리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을 보임

		8. 자연장 방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부정적이다	부정적이다	잘 모르겠다	긍정적이다	매우 긍정적이다	계
전체		4	16	190	180	43	438
		0.9%	3.7%	43.4%	41.1%	9.8%	100.0%
		0.9%	3.7%	43.9%	41.6%	9.9%	100.0%
성별	남성	4	9	109	94	26	243
	여성	0	7	81	86	17	195
연령	20대~30대	0	4	70	24	7	106
	40대	0	3	40	34	6	84
	50대	1	3	28	61	10	104
	60대	0	3	37	41	12	94
	70대 이상	3	3	15	20	8	50
거주 기간	10년 이하	1	7	53	42	11	115
	11~20년	0	4	32	29	4	70
	21~30년	0	1	34	22	6	64
	31~40년	1	1	16	14	3	35
	40년 이상	2	3	55	70	17	149
	무응답	0	0	0	3	2	5
종교	없음	1	5	89	68	12	177
	불교	2	4	27	43	12	90
	천주교	0	0	16	23	6	46
	개신교	1	6	51	43	13	114
	무응답	0	1	7	3	0	11
거주 지역	제주시	3	10	162	133	33	345
	서귀포시	1	6	28	47	10	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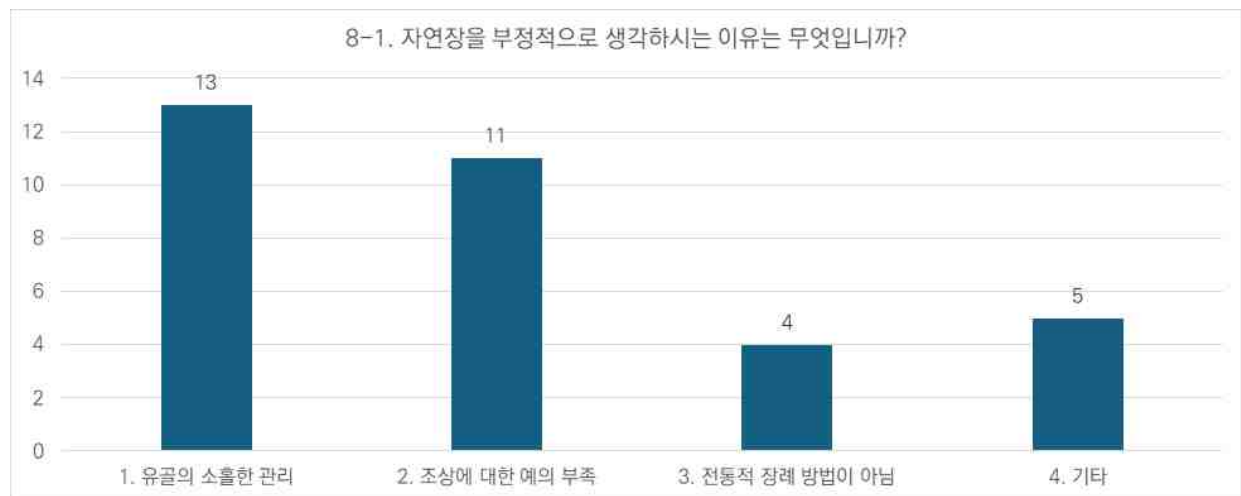


■ 자연장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 조사 결과

○ 자연장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 조사 결과 ‘유골의 소홀한 관리’와 ‘조상에 대한 예의 부족’이 각 13명(2.97%)와 11명(2.51%)으로 나타남

○ 이를 통해 유골 관리에 대한 불신과 신체 훼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드러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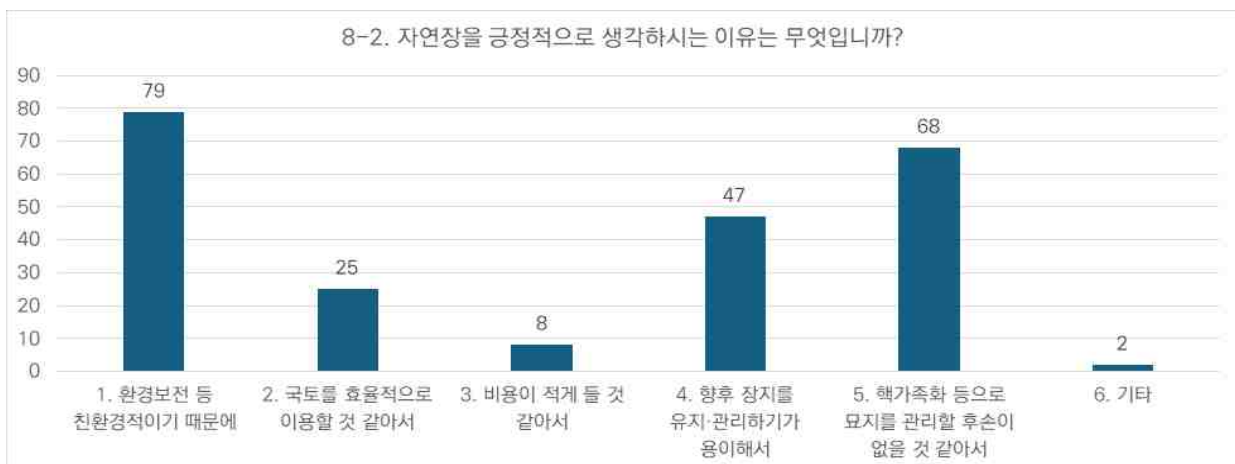
		8-1. 자연장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유골의 소홀한 관리	조상에 대한 예의 부족	전통적 장례 방법이 아님	기타	무응답	계
전체		13	11	4	5	405	438
		3.0%	2.5%	0.9%	1.1%	92.5%	100.0%
		39.4%	33.3%	12.1%	15.2%	-	100.0%
성별	남성	7	7	2	3	224	243
	여성	6	4	2	2	181	195
연령	20대~30대	3	3	1	1	98	106
	40대	1	1	0	1	81	84
	50대	3	0	2	2	97	104
	60대	3	3	0	1	87	94
	70대 이상	3	4	1	0	42	50
거주 기간	10년 이하	4	2	2	3	104	115
	11~20년	3	0	0	1	66	70
	21~30년	2	4	0	0	58	64
	31~40년	2	0	0	0	33	35
	40년 이상	2	5	2	1	139	149
	무응답	0	0	0	0	5	5
종교	없음	3	5	1	0	168	177
	불교	5	4	1	1	79	90
	천주교	2	0	0	0	44	46
	개신교	3	1	2	4	104	114
	무응답	0	1	0	0	10	11
거주 지역	제주시	9	9	3	1	323	345
	서귀포시	4	2	1	4	82	93



■ 자연장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 조사 결과

- 자연장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 조사 결과 ‘환경보존 등 친환경적이기 때문에’가 79명(18.04%)으로 가장 높고 ‘해가죽화 등으로 묘지를 관리할 후손이 없을 것 같아서’가 68명(15.53%)으로 그 다음으로 나타남
- 이를 통해 최근 환경에 대한 인식 변화와 저출생으로 사후 묘지를 관리를 할 후손이 없음에 대한 걱정 등의 인식이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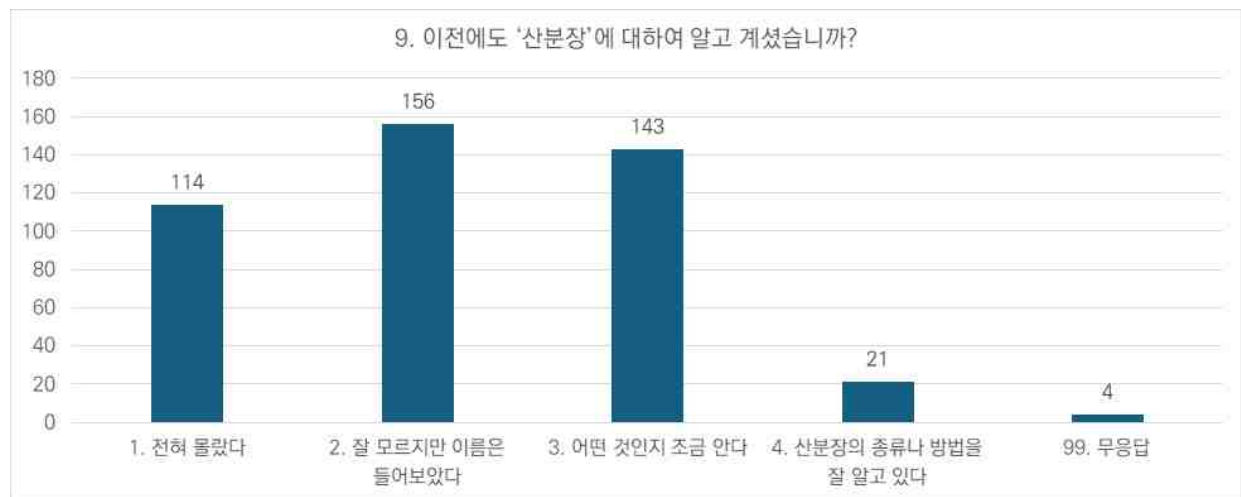
		8-2. 자연장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환경보존 등 친환경적이기 때문에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것 같아서	비용이 적게 들 것 같아서	향후 장지를 유지·관리 하기가 용이해서	해가죽화 등으로 묘지를 관리할 후손이 없을 것 같아서	기타	무응답	계
전체		79	25	8	47	68	2	209	438
		18.0%	5.7%	1.8%	10.7%	15.5%	0.5%	47.7%	100.0%
		34.5%	10.9%	3.5%	20.5%	29.7%	0.9%	-	100.0%
성별	남성	47	11	6	18	40	0	121	243
	여성	32	14	2	29	28	2	88	195
연령	20대~30대	8	4	4	9	9	1	71	106
	40대	17	2	0	13	6	1	45	84
	50대	22	13	2	11	24	0	32	104
	60대	23	2	1	9	20	0	39	94
	70대 이상	9	4	1	5	9	0	22	50
거주 기간	10년 이하	22	7	1	10	12	1	62	115
	11~20년	9	3	4	7	11	1	35	70
	21~30년	7	3	1	11	8	0	34	64
	31~40년	6	1	0	7	3	0	18	35
	40년 이상	35	11	2	11	31	0	59	149
	무응답	0	0	0	1	3	0	1	5
종교	없음	28	9	3	18	28	0	91	177
	불교	20	6	1	10	15	1	37	90
	천주교	12	1	0	5	13	0	15	46
	개신교	17	9	4	13	12	1	58	114
	무응답	2	0	0	1	0	0	8	11
거주 지역	제주시	56	18	8	35	56	0	172	345
	서귀포시	23	7	0	12	12	2	37	93



■ 산분장 인지 여부 조사 결과

- 산분장 인지 여부 조사결과 부정 응답률이 270명(61.65%)로 과반 이상으로 나타남
- 이를 통해 아직 산분장에 대한 교육 및 홍보가 부족함을 알 수 있음

		9. 이전에도 '산분장'에 대하여 알고 계셨습니까?					
		전혀 몰랐다	잘 모르지만 이름은 들어보았다	어떤 것인지 조금 안다	산분장의 종류나 방법을 잘 알고 있다	무응답	계
전체		114	156	143	21	4	438
		26.0%	35.6%	32.6%	4.8%	0.9%	100.0%
		26.3%	35.9%	32.9%	4.8%	-	100.0%
성별	남성	68	93	67	14	1	243
	여성	46	63	76	7	3	195
연령	20대~30대	39	38	26	3	0	106
	40대	19	27	36	2	0	84
	50대	17	41	41	4	1	104
	60대	30	35	24	4	1	94
	70대 이상	9	15	16	8	2	50
거주 기간	10년 이하	35	47	30	3	0	115
	11~20년	17	22	30	1	0	70
	21~30년	20	25	18	1	0	64
	31~40년	7	14	12	2	0	35
	40년 이상	34	47	52	12	4	149
	무응답	1	1	1	2	0	5
종교	없음	53	65	53	4	2	177
	불교	17	30	32	10	1	90
	천주교	9	15	20	1	1	46
	개신교	32	39	37	6	0	114
	무응답	3	7	1	0	0	11
거주 지역	제주시	91	133	102	17	2	345
	서귀포시	23	23	41	4	2	93



■ 산분장 긍정률 조사 결과

- 산분장 긍정률 조사 결과 긍정적이다가 108명(24.66%)으로 높게 나타남
- 이를 통해 산분장에 대한 교육 및 홍보가 강화된다면 산분장에 대한 긍정률이 높아짐으로써 장례 문화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가능성을 보여줌

		10. 산분장 방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부정적이다	부정적이다	잘 모르겠다	긍정적이다	매우 긍정적이다	무응답	계
전체		11	64	228	108	23	4	438
		2.5%	14.6%	52.1%	24.7%	5.3%	0.9%	100.0%
		2.5%	14.7%	52.5%	24.9%	5.3%	-	100.0%
성별	남성	11	30	132	55	14	1	243
	여성	0	34	96	53	9	3	195
연령	20대~30대	1	10	69	20	5	1	106
	40대	0	10	48	20	6	0	84
	50대	3	15	48	32	6	0	104
	60대	5	17	46	22	2	2	94
	70대 이상	2	12	17	14	4	1	50
거주 기간	10년 이하	3	15	64	26	7	0	115
	11~20년	0	9	39	18	4	0	70
	21~30년	2	9	34	15	3	1	64
	31~40년	0	4	21	8	2	0	35
	40년 이상	6	27	70	36	7	3	149
	무응답	0	0	0	5	0	0	5
종교	없음	3	20	108	35	7	4	177
	불교	3	17	37	29	4	0	90
	천주교	1	6	21	15	3	0	46
	개신교	4	20	55	26	9	0	114
	무응답	0	1	7	3	0	0	11
거주 지역	제주시	7	48	201	74	12	3	345
	서귀포시	4	16	27	34	11	1	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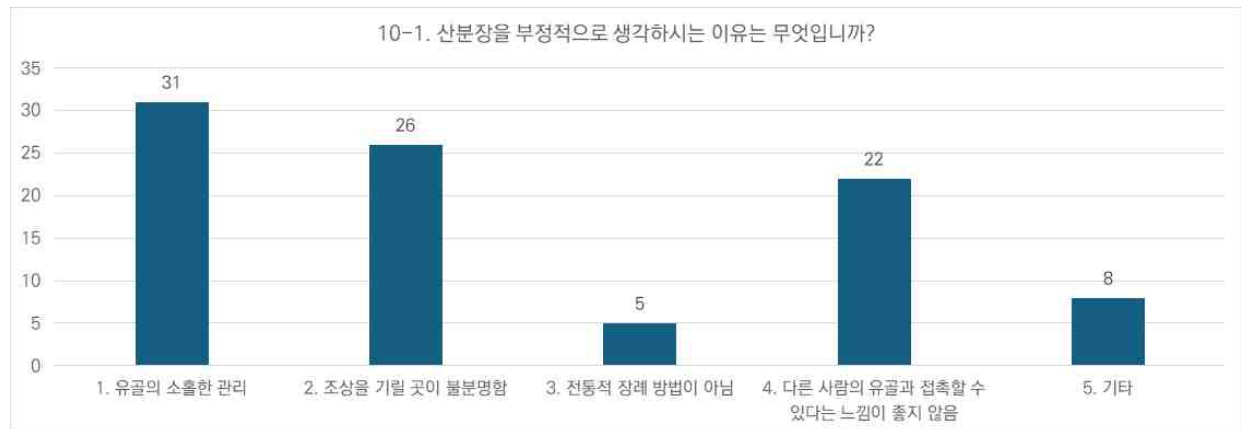


■ 산분장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 조사 결과

○ 산분장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 조사 결과 ‘유골의 소홀한 관리’가 31명(7.08%), ‘조상을 기릴 곳이 불분명함’이 26명(5.94%)으로 나타남

○ 이를 통해 유골의 관리에 대한 불신이 높고, 조상을 기릴 장소가 필요함을 알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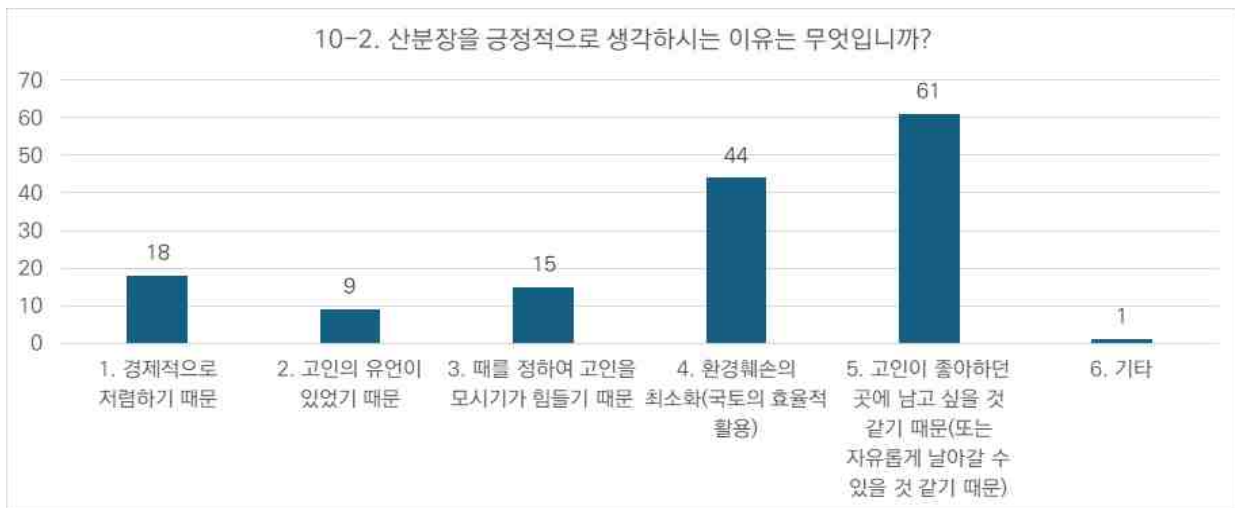
		10-1. 산분장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유골의 소홀한 관리	조상을 기릴 곳이 불분명함	전통적 장례 방법이 아님	다른 사람의 유골과 접촉할 수 있다는 느낌이 좋지 않음	기타	무응답	계
전체		31 7.1%	26 5.9%	5 1.1%	22 5.0%	8 1.8%	346 79.0%	438 100.0%
성별	남성	19	15	3	9	4	193	243
	여성	12	11	2	13	4	153	195
연령	20대~30대	6	4	2	1	1	92	106
	40대	5	3	0	1	0	75	84
	50대	7	6	1	7	3	80	104
	60대	5	9	0	10	2	68	94
	70대 이상	8	4	2	3	2	31	50
거주 기간	10년 이하	10	6	1	1	5	92	115
	11~20년	3	3	0	2	1	61	70
	21~30년	3	3	1	5	0	52	64
	31~40년	1	2	0	1	0	31	35
	40년 이상	14	12	3	13	2	105	149
	무응답	0	0	0	0	0	5	5
종교	없음	9	11	2	8	2	145	177
	불교	9	7	2	4	1	67	90
	천주교	0	5	0	2	0	39	46
	개신교	12	3	1	8	5	85	114
	무응답	1	0	0	0	0	10	11
거주 지역	제주시	21	22	5	17	2	278	345
	서귀포시	10	4	0	5	6	68	93



■ 산분장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 조사 결과

- 산분장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 조사 결과 ‘고인이 좋아하던 곳에 남고 싶을 것 같기 때문’이 61명(13.93%), ‘환경훼손의 최소화’가 44명(10.05%)으로 나타남
- 이를 통해 장례 문화의 변화 가능성을 볼 수 있으며, 환경훼손에 대한 경각심 또한 점점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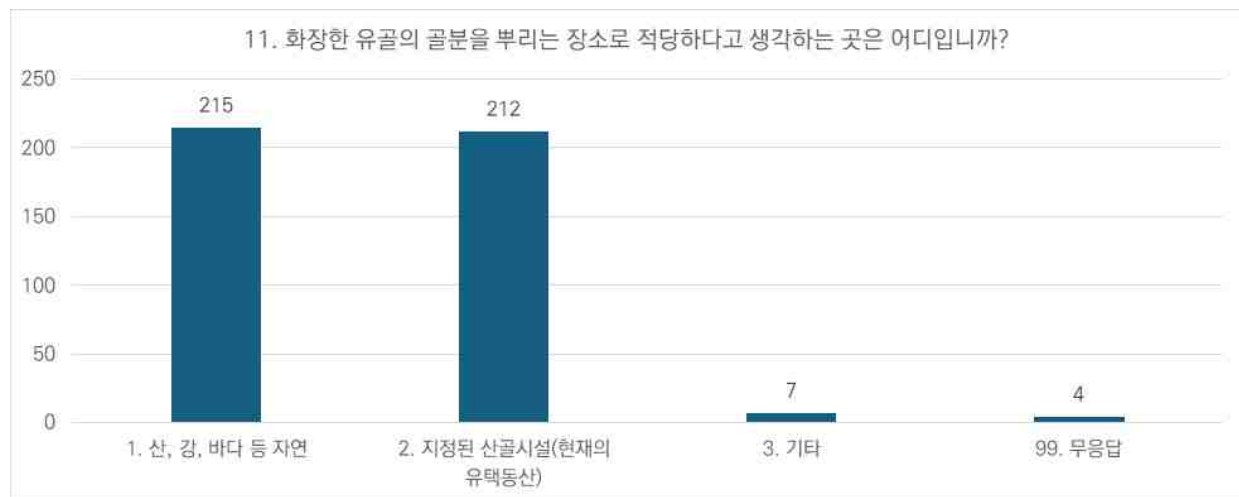
		10-2. 산분장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경제적으로 저렴하기 때문	고인의 유언이 있었기 때문	때를 정하여 고인을 모시기가 힘들기 때문	환경훼손의 최소화(국 토의 효율적 활용)	고인이 좋아하던 곳이기 때문	기타	무응답	계
전체		18	9	15	44	61	1	290	438
		4.1%	2.1%	3.4%	10.0%	13.9%	0.2%	66.2%	100.0%
		12.2%	6.1%	10.1%	29.7%	41.2%	0.7%	-	100.0%
성별	남성	14	3	12	19	29	0	166	243
	여성	4	6	3	25	32	1	124	195
연령	20대~30대	4	2	3	7	12	0	78	106
	40대	1	3	3	7	11	0	59	84
	50대	7	1	4	13	21	0	58	104
	60대	4	1	2	9	13	0	65	94
	70대 이상	2	2	3	8	4	1	30	50
거주 기간	10년 이하	4	2	4	16	10	0	79	115
	11~20년	2	1	4	3	13	0	47	70
	21~30년	5	1	2	4	9	0	43	64
	31~40년	1	1	1	4	3	0	25	35
	40년 이상	6	3	4	16	23	1	96	149
	무응답	0	1	0	1	3	0	0	5
종교	없음	8	1	7	11	24	0	126	177
	불교	4	3	4	9	16	0	54	90
	천주교	1	2	1	6	8	1	27	46
	개신교	5	3	3	17	11	0	75	114
	무응답	0	0	0	1	2	0	8	11
거주 지역	제주시	14	5	13	23	41	0	249	345
	서귀포시	4	4	2	21	20	1	41	



■ 골분을 뿌리기에 적당한 장소 조사 결과

- 골분을 뿌리기에 적당한 장소 조사 결과 ‘산, 강, 바다 등 자연’이 215명(49.09%)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지정된 산골시설’이 212명(48.40%)으로 그 다음으로 나타남
- 이를 통해 골분을 뿌리기에 자연 또는 지정된 시설을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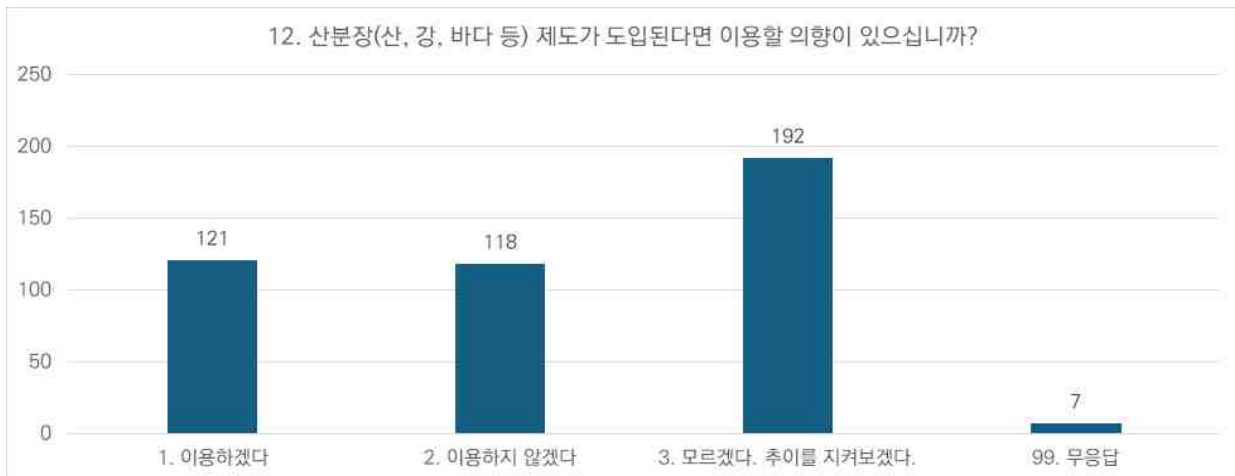
		11.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뿌리는 장소로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산, 강, 바다 등 자연	지정된 산골시설(현재의 유택동산)	기타	무응답	계
전체		215	212	7	4	438
		49.1%	48.4%	1.6%	0.9%	100.0%
		49.5%	48.8%	1.6%	-	100.0%
성별	남성	121	119	3	0	243
	여성	94	93	4	4	195
연령	20대~30대	62	39	4	1	106
	40대	45	38	0	1	84
	50대	45	56	3	0	104
	60대	36	56	0	2	94
	70대 이상	27	23	0	0	50
거주 기간	10년 이하	56	55	4	0	115
	11~20년	35	34	1	0	70
	21~30년	28	33	1	2	64
	31~40년	22	12	0	1	35
	40년 이상	69	78	1	1	149
	무응답	5	0	0	0	5
종교	없음	88	86	2	1	177
	불교	46	41	1	2	90
	천주교	27	19	0	0	46
	개신교	48	61	4	1	114
	무응답	6	5	0	0	11
거주 지역	제주시	161	179	3	2	345
	서귀포시	54	33	4	2	93



■ 산분장 이용 의향 조사 결과

- 산분장 이용 의향 조사 결과 ‘이용하겠다’가 121명(27.63%)으로 ‘이용하지 않겠다’보다 소폭 높게 나타남
- 이를 통해 교육과 홍보를 통해 산분장이 새로운 장례 문화로 자리잡을 수 있는 가능성을 띠는다고 할 수 있음

		12. 산분장(산, 강, 바다 등) 제도가 도입된다면 이용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이용하겠다	이용하지 않겠다	추이를 지켜보겠다.	무응답	계
전체		121	118	192	7	438
		27.6%	26.9%	43.8%	1.6%	100.0%
		28.1%	27.4%	44.5%	-	100.0%
성별	남성	62	79	99	3	243
	여성	59	39	93	4	195
연령	20대~30대	27	17	59	3	106
	40대	21	18	45	0	84
	50대	31	26	47	0	104
	60대	24	35	31	4	94
	70대 이상	18	22	10	0	50
거주 기간	10년 이하	33	31	50	1	115
	11~20년	13	21	36	0	70
	21~30년	14	16	31	3	64
	31~40년	6	11	18	0	35
	40년 이상	50	39	57	3	149
	무응답	5	0	0	0	5
종교	없음	47	49	76	5	177
	불교	30	25	34	1	90
	천주교	11	5	30	0	46
	개신교	31	37	45	1	114
	무응답	2	2	7	0	11
거주 지역	제주시	80	101	157	7	345
	서귀포시	41	17	35	0	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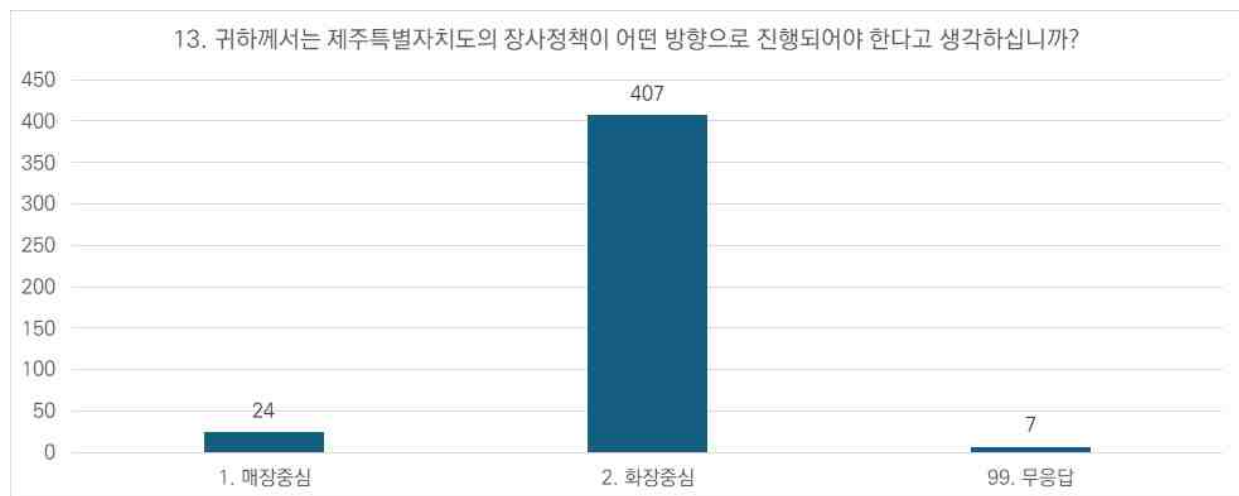


2. 제주특별자치도 장사정책에 관한 의견

■ 제주도 장사정책 방향성 조사 결과

- 제주도 장사정책 방향성 조사 결과 ‘화장중심’이 407명(92.92%)으로 나타남
- 이를 통해 주민들은 제주도의 장사정책 방향성이 화장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확고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13. 귀하께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장사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장중심	화장중심	무응답	계
전체		24	407	7	438
		5.5%	92.9%	1.6%	100.0%
성별	남성	16	226	1	243
	여성	8	181	6	195
연령	20대~30대	8	95	3	106
	40대	2	82	0	84
	50대	7	94	3	104
	60대	3	91	0	94
	70대 이상	4	45	1	50
거주 기간	10년 이하	5	108	2	115
	11~20년	3	63	4	70
	21~30년	5	59	0	64
	31~40년	2	32	1	35
	40년 이상	8	141	0	149
	무응답	1	4	0	5
종교	없음	7	168	2	177
	불교	6	81	3	90
	천주교	3	43	0	46
	개신교	8	104	2	114
	무응답	0	11	0	11
거주 지역	제주시	15	324	6	345
	서귀포시	9	83	1	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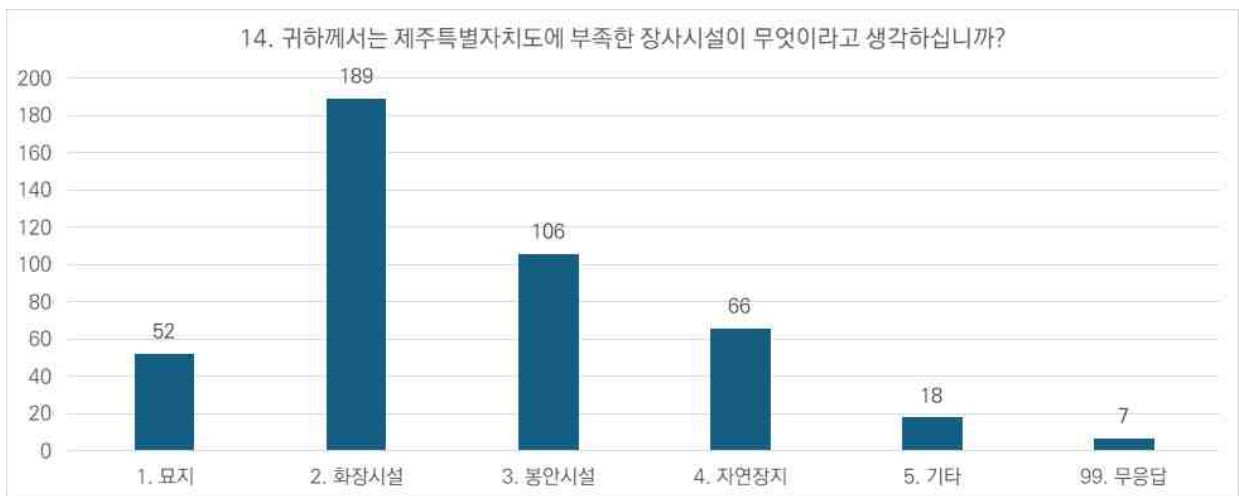


■ 제주도 내 부족한 장사시설 현황 조사 결과

○ 제주도 내 부족한 장사시설 현황 조사 결과 화장시설이 189명(43.15%)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봉안시설이 106명(24.20%)으로 그 다음을 기록함

○ 이를 통해 화장시설과 봉안시설의 보충이 가장 중요함을 알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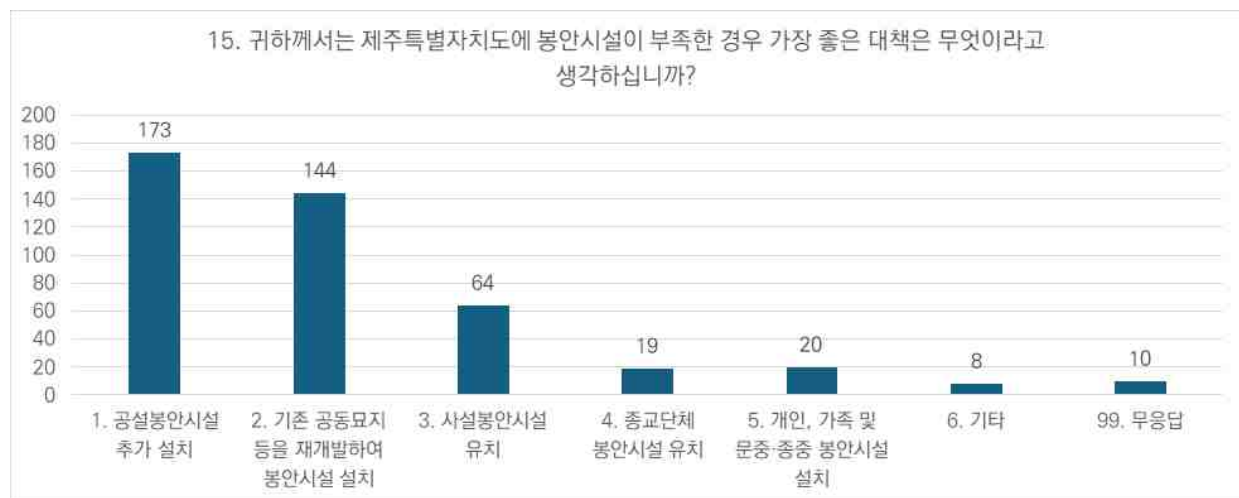
		14. 귀하께서는 제주특별자치도에 부족한 장사시설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묘지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기타	무응답	계
전체		52	189	106	66	18	7	438
		11.9%	43.2%	24.2%	15.1%	4.1%	1.6%	100.0%
성별	남성	36	107	60	32	7	1	243
	여성	16	82	46	34	11	6	195
연령	20대~30대	7	34	38	16	10	1	106
	40대	9	32	19	14	5	5	84
	50대	14	50	21	18	1	0	104
	60대	10	54	16	13	0	1	94
	70대 이상	12	19	12	5	2	0	50
거주 기간	10년 이하	7	40	36	19	11	2	115
	11~20년	7	32	18	7	5	1	70
	21~30년	5	29	17	12	1	0	64
	31~40년	6	12	11	3	0	3	35
	40년 이상	25	74	24	24	1	1	149
	무응답	2	2	0	1	0	0	5
종교	없음	18	82	40	31	4	2	177
	불교	13	43	23	7	3	1	90
	천주교	8	19	11	6	1	1	46
	개신교	13	40	29	19	10	3	114
	무응답	0	5	3	3	0	0	11
거주 지역	제주시	38	154	87	51	9	6	345
	서귀포시	14	35	19	15	9	1	93



■ 제주도의 부족한 보안시설 대책 선호도 조사 결과

- 제주도의 부족한 보안시설 대책 선호도 조사 결과 ‘공설보안시설 추가설치’가 173명(39.5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기존 공동묘지 등을 재개발하여 보안시설 설치’가 144명(32.88%)으로 그 다음을 이음
- 이를 통해 정부에서의 직접적 도움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을 추정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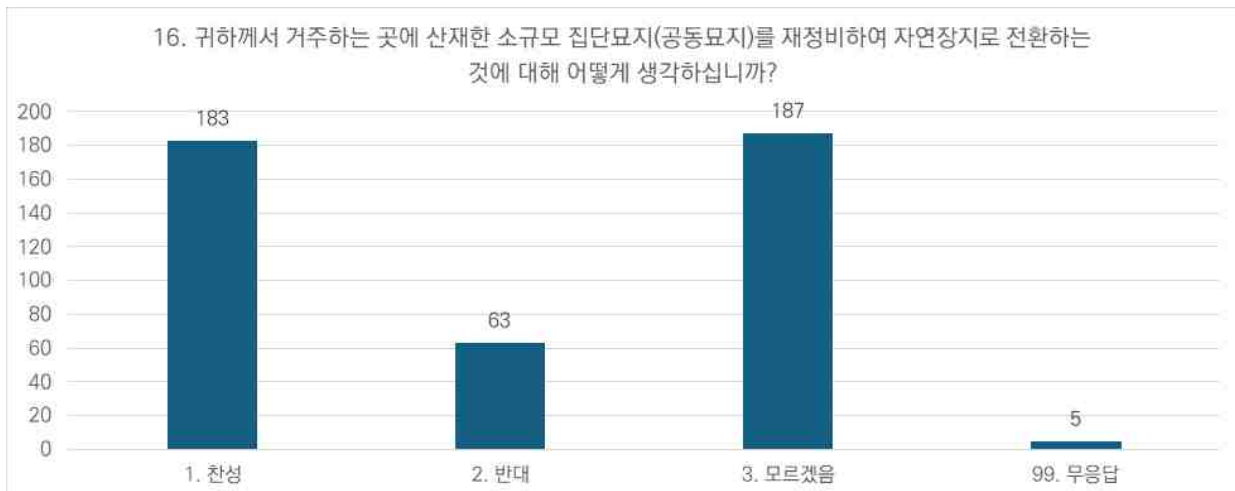
		15. 귀하께서는 제주특별자치도에 보안시설이 부족한 경우 가장 좋은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공설보안시설 추가설치	기존 공동묘지 등을 재개발하여 보안시설 설치	사설보안시설 유치	종교단체 보안시설 유치	개인 가족 및 문중·종중 보안시설 설치	기타	무응답
전체		173	144	64	19	20	8	10
		39.5%	32.9%	14.6%	4.3%	4.6%	1.8%	2.3%
		40.4%	33.6%	15.0%	4.4%	4.7%	1.9%	-
성별	남성	88	82	43	10	13	4	3
	여성	85	62	21	9	7	4	7
연령	20대~30대	49	26	23	6	0	1	1
	40대	39	27	10	3	4	1	0
	50대	36	42	13	4	3	2	4
	60대	32	30	15	5	5	3	4
	70대 이상	17	19	3	1	8	1	1
거주기간	10년 이하	47	33	21	5	2	4	3
	11~20년	33	23	6	4	2	0	2
	21~30년	27	20	12	3	1	0	1
	31~40년	12	11	9	2	1	0	0
	40년 이상	51	56	16	5	14	4	3
종교	무응답	3	1	0	0	0	0	1
	없음	79	56	28	4	6	1	3
	불교	29	32	9	3	9	4	4
	천주교	15	18	8	4	1	0	0
	개신교	47	34	15	8	4	3	3
거주지역	제주시	131	113	61	12	17	3	8
	서귀포시	42	31	3	7	3	5	2



■ 거주지역 인근 집단묘지를 자연장지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찬반 조사 결과

- 거주지역 인근에 산재한 집단묘지를 재정비하여 자연장지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14.38%)보다는 찬성이 41.78%로 높기는 하나 잘 모르겠다는 응답 역시 42.69%에 달하고 있어 이에 대한 안내나 홍보 등을 통해 주민들의 관심과 호응을 이끌어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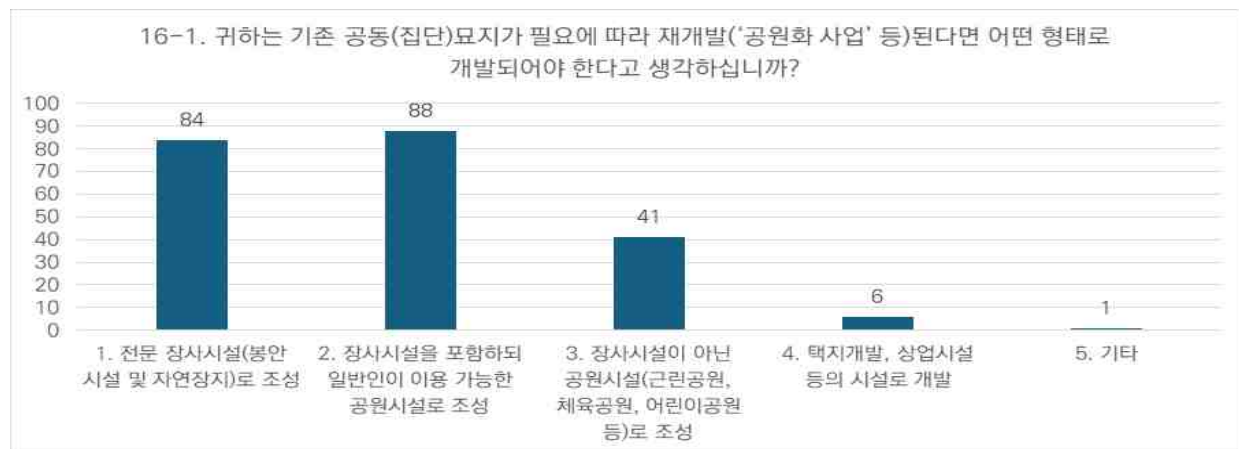
		16. 귀하께서 거주하는 곳에 산재한 소규모 집단묘지(공동묘지)를 재정비하여 자연장지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성	반대	모르겠음	무응답	계
전체		183	63	187	5	438
		41.8%	14.4%	42.7%	1.1%	100.0%
성별	남성	91	42	106	4	243
	여성	92	21	81	1	195
연령	20대~30대	26	19	59	2	106
	40대	32	15	37	0	84
	50대	49	13	42	0	104
	60대	47	8	38	1	94
	70대 이상	29	8	11	2	50
거주 기간	10년 이하	42	18	54	1	115
	11~20년	26	11	32	1	70
	21~30년	29	8	27	0	64
	31~40년	8	4	22	1	35
	40년 이상	75	21	51	2	149
	무응답	3	1	1	0	5
종교	없음	64	27	85	1	177
	불교	45	13	30	2	90
	천주교	21	3	22	0	46
	개신교	52	18	42	2	114
	무응답	1	2	8	0	11
거주 지역	제주시	116	58	166	5	345
	서귀포시	67	5	21	0	93



■ 집단묘지 재개발시 어떤 형태로 개발되어야 할 지에 대한 선호도 조사 결과

- 집단묘지 재개발시 어떤 형태로 개발되어야 할 지에 대한 선호도 조사 결과 ‘장사시설을 포함하되 일반인이 이용 가능한 공원시설로 조성’이 88명(20.09%), ‘전문 장사시설(봉안 시설 및 자연장지)로 조성’이 84명(19.18%)으로 나타남
- 집단 묘지를 재개발한다면 전문 장사시설 또는 일반인도 이용가능한 공원으로 조성하길 바라는 주민이 대부분임을 알 수 있음

		16-1. 귀하는 기존 공동(집단)묘지가 필요에 따라 재개발(‘공원화 사업’ 등)된다면 어떤 형태로 개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장사시설(봉안 시설 및 자연장지)로 조성	장사시설 포함한 공원시설로 조성	일반공원시설로 조성	택지개발, 상업시설 등의 시설로 개발	기타	무응답
전체		84	88	41	6	1	218
		19.2%	20.1%	9.4%	1.4%	0.2%	49.8%
		38.2%	40.0%	18.6%	2.7%	0.5%	-
성별	남성	48	46	18	4	0	127
	여성	36	42	23	2	1	91
연령	20대~30대	13	10	6	0	0	77
	40대	15	16	7	1	0	45
	50대	15	26	14	2	1	46
	60대	22	24	12	1	0	35
	70대 이상	19	12	2	2	0	15
거주 기간	10년 이하	15	25	11	0	1	63
	11~20년	10	15	4	0	0	41
	21~30년	12	11	7	2	0	32
	31~40년	4	4	3	0	0	24
	40년 이상	42	32	16	3	0	56
	무응답	1	1	0	1	0	2
종교	없음	33	34	9	2	0	99
	불교	21	20	10	2	0	37
	천주교	7	12	5	1	0	21
	개신교	21	21	17	1	1	53
	무응답	2	1	0	0	0	8
거주 지역	제주시	58	63	24	5	0	195
	서귀포시	26	25	17	1	1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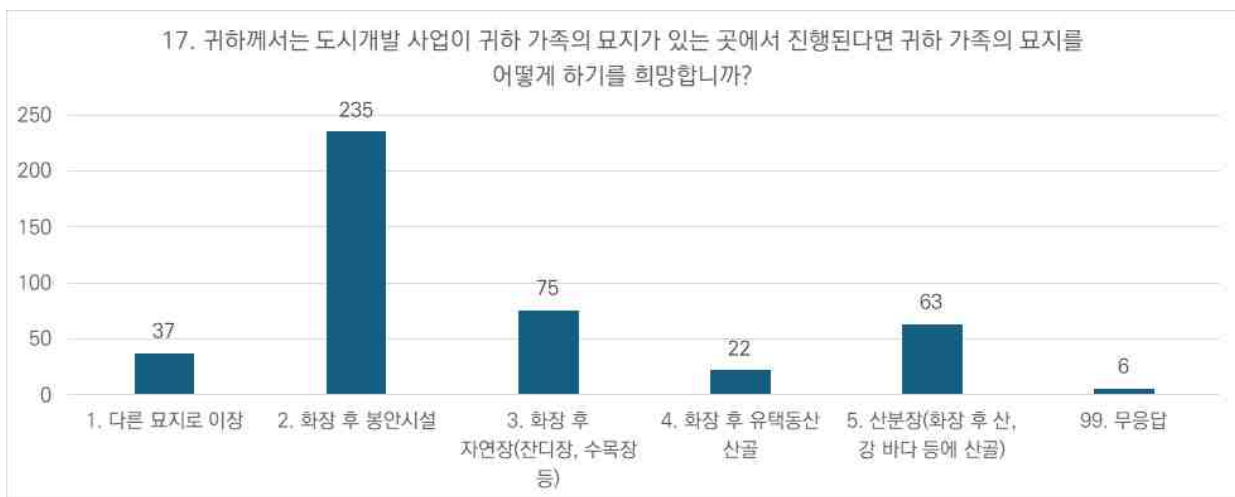


■ 도시개발 예정 지역에 가족 묘지 처분 여부 조사 결과

○ 도시개발 예정 지역에 가족 묘지 처분 여부 조사 결과 ‘화장 후 봉안시설’이 235명(53.65%)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이를 통해 매장에서 화장으로 변화되는 장례 문화의 변화를 추정할 수 있음

		17. 귀하께서는 도시개발 사업이 귀하 가족의 묘지가 있는 곳에서 진행된다면 귀하 가족의 묘지를 어떻게 하기를 희망합니까?						
		다른 묘지로 이장	화장 후 봉안시설	화장 후 자연장(잔디장, 수목장 등)	화장 후 유택동산 산골	산분장(화장 후 산, 강, 바다 등에 산골)	무응답	계
전체		37 8.4%	235 53.7%	75 17.1%	22 5.0%	63 14.4%	6 1.4%	438 100.0%
성별	남성	26	133	37	8	35	4	243
	여성	11	102	38	14	28	2	195
연령	20대~30대	13	53	16	1	22	1	106
	40대	5	47	11	3	16	2	84
	50대	9	53	12	9	19	2	104
	60대	7	52	23	8	4	0	94
	70대 이상	3	30	13	1	2	1	50
거주 기간	10년 이하	6	57	21	4	24	3	115
	11~20년	7	38	11	6	6	2	70
	21~30년	8	37	10	2	7	0	64
	31~40년	3	19	3	2	8	0	35
	40년 이상	12	83	29	7	17	1	149
	무응답	1	1	1	1	1	0	5
종교	없음	13	104	31	7	22	0	177
	불교	10	40	16	7	16	1	90
	천주교	4	25	11	1	4	1	46
	개신교	10	60	17	6	17	4	114
	무응답	0	6	0	1	4	0	11
거주 지역	제주시	24	191	56	21	49	4	345
	서귀포시	13	44	19	1	14	2	93



■ 집단묘지 재개발시 어떤 형태로 개발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조사 결과

○ 집단묘지 재개발 시 어떤 형태로 개발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조사 결과 수목장이

182명(41.55%)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이를 통해 기존에 상대적으로 익숙하던 수목장을 선호함을 알 수 있음

		18. 화장 후 봉안시설이 아닌 다양한 방법 중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방식은 무엇입니까? (1순위)							
		잔디장	수목장	화초장	산분장	유택동산 산골	기타	무응답	계
전체		65	182	11	84	91	2	3	438
		14.8%	41.6%	2.5%	19.2%	20.8%	0.5%	0.7%	100.0%
		14.9%	41.8%	2.5%	19.3%	20.9%	0.5%	-	100.0%
성별	남성	44	87	10	45	55	1	1	243
	여성	21	95	1	39	36	1	2	195
연령	20대~30대	20	32	3	30	19	1	1	106
	40대	13	33	1	22	14	1	0	84
	50대	9	51	2	17	25	0	0	104
	60대	13	43	1	9	27	0	1	94
	70대 이상	10	23	4	6	6	0	1	50
거주 기간	10년 이하	13	42	1	36	20	2	1	115
	11~20년	10	37	2	9	12	0	0	70
	21~30년	14	24	3	10	13	0	0	64
	31~40년	6	14	1	7	7	0	0	35
	40년 이상	22	61	4	21	39	0	2	149
	무응답	0	4	0	1	0	0	0	5
종교	없음	31	73	7	30	34	0	2	177
	불교	9	43	0	18	20	0	0	90
	천주교	3	25	2	7	8	1	0	46
	개신교	22	41	2	23	24	1	1	114
	무응답	0	0	0	6	5	0	0	11
거주 지역	제주시	46	142	9	60	83	2	3	345
	서귀포시	19	40	2	24	8	0	0	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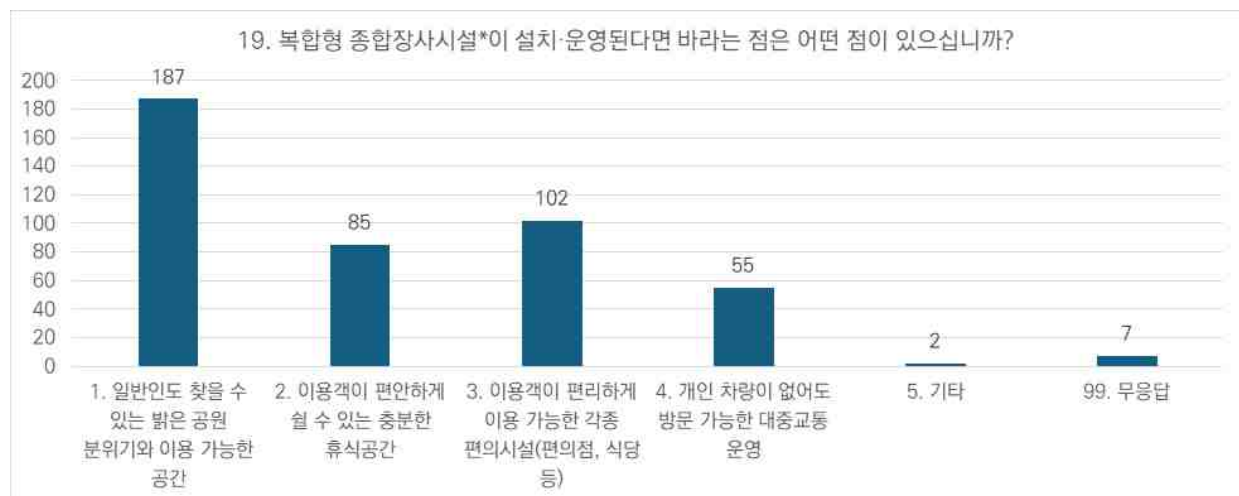
		18. 화장 후 봉안시설이 아닌 다양한 방법 중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방식은 무엇입니까? (2순위)						
		잔디장	수목장	화초장	산분장	유택동산 산골	기타	무응답
전체		72	116	83	58	73	3	33
		16.4%	26.5%	18.9%	13.2%	16.7%	0.7%	7.5%
		17.8%	28.6%	20.5%	14.3%	18.0%	0.7%	-
성별	남성	35	70	44	31	40	3	20
	여성	37	46	39	27	33	0	13
연령	20대~30대	13	29	24	18	15	0	7
	40대	12	19	15	13	16	1	8
	50대	22	31	16	9	17	1	8
	60대	20	23	20	12	14	1	4
	70대 이상	5	14	8	6	11	0	6
거주기간	10년 이하	22	25	26	13	15	1	13
	11~20년	10	14	14	12	15	0	5
	21~30년	8	22	11	10	10	0	3
	31~40년	5	4	8	4	11	1	2
	40년 이상	27	50	23	19	21	0	9
	무응답	0	1	1	0	1	1	1
종교	없음	30	46	31	26	30	1	13
	불교	18	23	20	8	14	1	6
	천주교	6	10	7	12	9	0	2
	개신교	15	32	25	12	17	1	12
	무응답	3	5	0	0	3	0	0
거주지역	제주시	54	91	67	42	62	2	27
	서귀포시	18	25	16	16	11	1	6



■ 복합형 종합장사시설 설치·운영시 바라는 점 조사 결과

- 복합형 종합장사시설 설치·운영시 바라는 점 조사 결과 ‘일반인도 찾을 수 있는 밝은 공원 분위기요 이용 가능한 공간’이 187명(42.69%), ‘이용객이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각종 편의시설(편의점, 식당 등)’이 102명(23.29%)으로 나타남
- 이를 통해 복합형 종합장사시설이 밝은 공원같은 분위기로 마치 편리하고 쾌적하게 이용하는 것을 요구함을 알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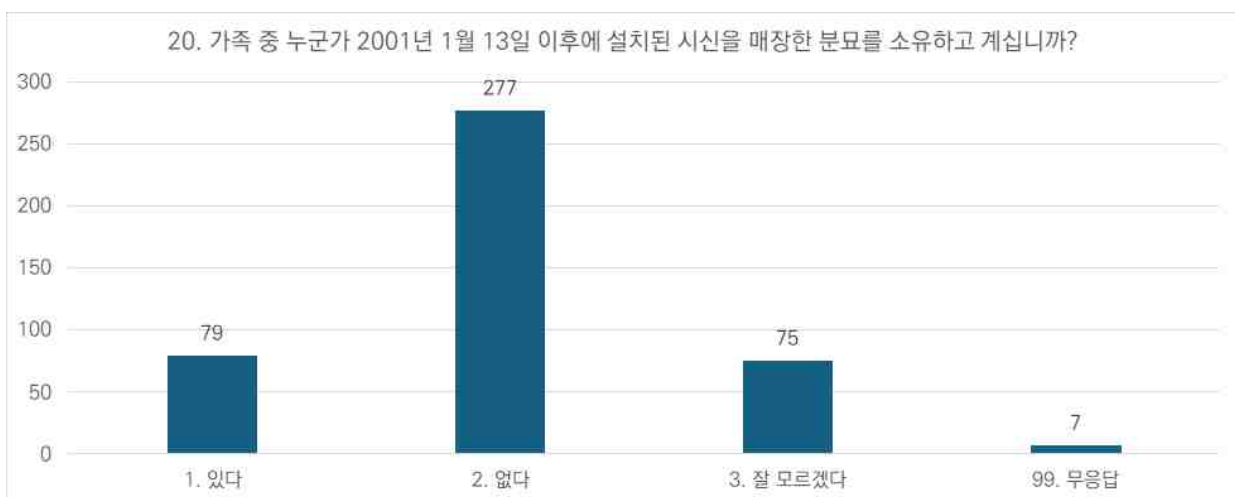
		19. 복합형 종합장사시설*이 설치·운영된다면 바라는 점은 어떤 점이 있으십니까?						
		일반인도 찾을 수 있는 밝은 공원 분위기와 이용 가능한 공간	이용객이 편안하게 설수 있는 충분한 휴식공간	이용객이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각종 편의시설(편의점 식당 등)	개인 차량이 없어도 방문 가능한 대중교통 운영	기타	무응답	계
전체		187	85	102	55	2	7	438
		42.7%	19.4%	23.3%	12.6%	0.5%	1.6%	100.0%
		43.4%	19.7%	23.7%	12.8%	0.5%	-	100.0%
성별	남성	92	50	65	30	2	4	243
	여성	95	35	37	25	0	3	195
연령	20대~30대	30	25	30	19	1	1	106
	40대	38	16	15	14	1	0	84
	50대	51	17	25	6	0	5	104
	60대	39	20	25	10	0	0	94
	70대 이상	29	7	7	6	0	1	50
거주 기간	10년 이하	46	25	27	16	0	1	115
	11~20년	33	17	11	8	0	1	70
	21~30년	21	8	23	10	1	1	64
	31~40년	13	8	8	6	0	0	35
	40년 이상	71	26	33	15	1	3	149
	무응답	3	1	0	0	0	1	5
종교	없음	69	39	43	23	0	3	177
	불교	43	22	18	5	0	2	90
	천주교	17	6	11	9	2	1	46
	개신교	55	17	25	16	0	1	114
	무응답	3	1	5	2	0	0	11
거주 지역	제주시	136	68	92	42	1	6	345
	서귀포시	51	17	10	13	1	1	93



■ 가족 중 2001년 1월 13일 이후 매장한 분묘 소유 여부 조사 결과

- 가족 중 누군가 2001년 1월 13일 이후에 설치된 분묘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64.3%가 없다고 응답하였고 18.3%는 있다고 응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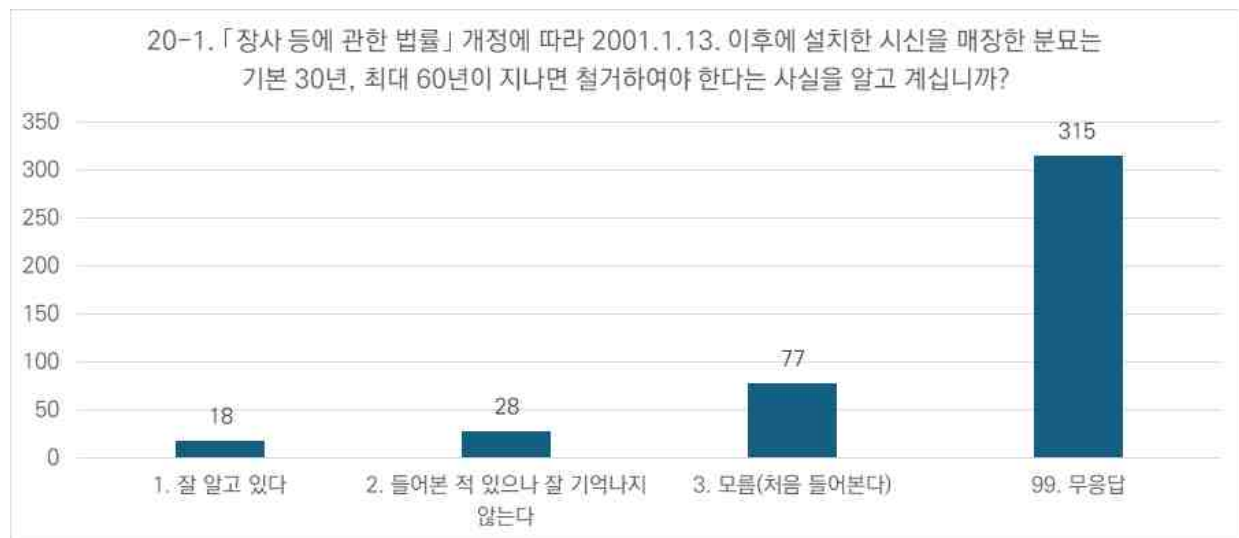
		20. 가족 중 누군가 2001년 1월 13일 이후에 설치된 시신을 매장한 분묘를 소유하고 계십니까?				
		있다	없다	잘 모르겠다	무응답	계
전체		79	277	75	7	438
		18.0%	63.2%	17.1%	1.6%	100.0%
		18.3%	64.3%	17.4%	-	100.0%
성별	남성	44	155	39	5	243
	여성	35	122	36	2	195
연령	20대~30대	10	59	35	2	106
	40대	11	53	20	0	84
	50대	26	66	8	4	104
	60대	18	69	7	0	94
	70대 이상	14	30	5	1	50
거주 기간	10년 이하	4	88	21	2	115
	11~20년	9	42	18	1	70
	21~30년	13	37	14	0	64
	31~40년	7	19	9	0	35
	40년 이상	43	90	12	4	149
	무응답	3	1	1	0	5
종교	없음	29	111	34	3	177
	불교	29	49	11	1	90
	천주교	9	26	9	2	46
	개신교	11	81	21	1	114
	무응답	1	10	0	0	11
거주 지역	제주시	55	223	60	7	345
	서귀포시	24	54	15	0	93



■ 「장사 등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2001.1.13. 이후에 설치한 시신을 매장한 분묘는 기본 30년, 최대 60년 이후 철거 사항 인지 여부 조사 결과

- 장사법의 개정에 따라 분묘 설치에 제한 기간이 있음을 아는 사람은 14.6%에 그치고 있어 이에 대한 안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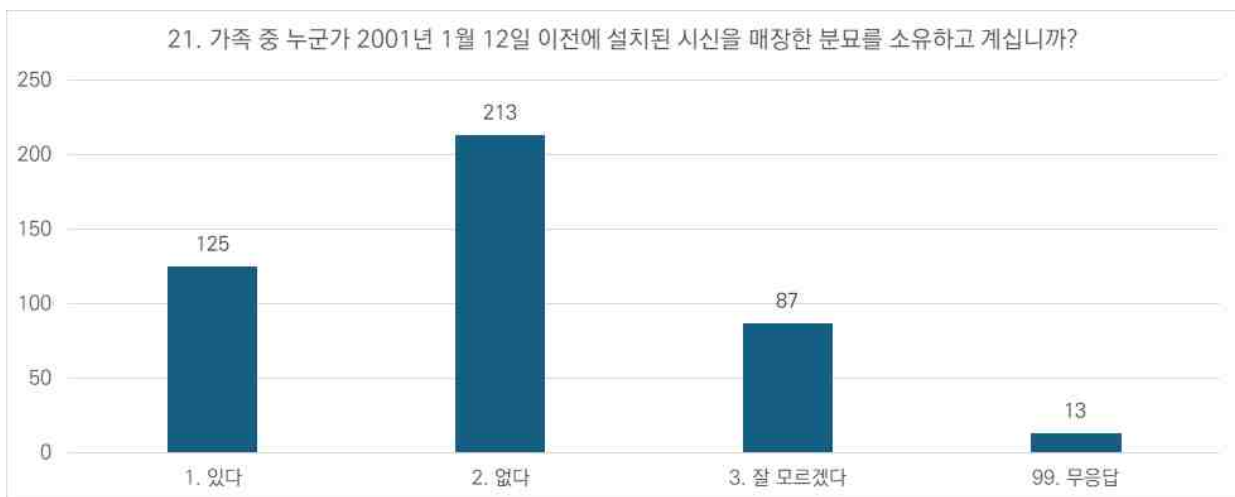
		20-1. 「장사 등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2001.1.13. 이후에 설치한 시신을 매장한 분묘는 기본 30년, 최대 60년이 지나면 철거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잘 알고 있다	들어본 적 있으나 잘 기억나지 않는다	모름(처음 들어본다)	무응답	계
전체		18	28	77	315	438
		4.1%	6.4%	17.6%	71.9%	100.0%
		14.6%	22.8%	62.6%	-	100.0%
성별	남성	11	17	38	177	243
	여성	7	11	39	138	195
연령	20대~30대	1	4	18	83	106
	40대	2	3	14	65	84
	50대	3	10	19	72	104
	60대	6	7	14	67	94
	70대 이상	6	4	12	28	50
거주 기간	10년 이하	2	3	15	95	115
	11~20년	0	2	11	57	70
	21~30년	1	3	14	46	64
	31~40년	2	3	4	26	35
	40년 이상	12	15	33	89	149
종교	무응답	1	2	0	2	5
	없음	4	11	31	131	177
	불교	12	10	18	50	90
	천주교	2	3	11	30	46
	개신교	0	3	17	94	114
거주 지역	무응답	0	1	0	10	11
	제주시	12	21	57	255	345
	서귀포시	6	7	20	60	93



■ 가족 중 누군가 2001.1.12. 이전에 설치된 분묘 소유 여부 조사 결과

○ 가족 중 누군가 2001년 1월 12일 이전에 설치된 분묘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절반 가량(48.6%)은 없다고 응답하였고 28.5%는 있다고 응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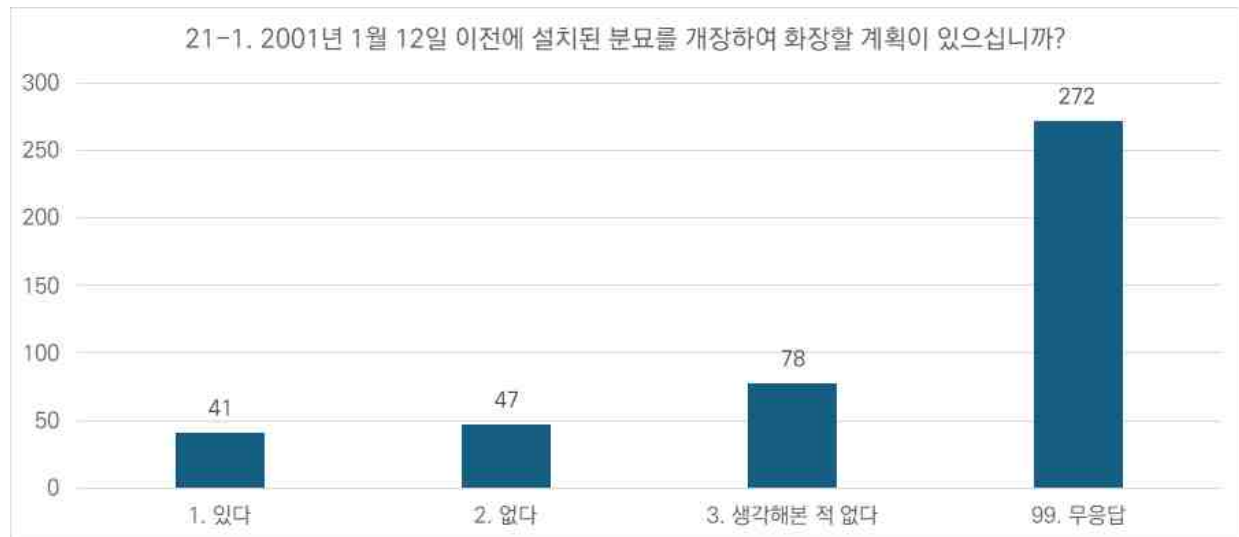
		21. 가족 중 누군가 2001년 1월 12일 이전에 설치된 시신을 매장한 분묘를 소유하고 계십니까?				
		있다	없다	잘 모르겠다	무응답	계
전체		125	213	87	13	438
		28.5%	48.6%	19.9%	3.0%	100.0%
		29.4%	50.1%	20.5%	-	100.0%
성별	남성	76	117	44	6	243
	여성	49	96	43	7	195
연령	20대~30대	15	43	46	2	106
	40대	17	46	21	0	84
	50대	27	60	8	9	104
	60대	34	52	8	0	94
	70대 이상	32	12	4	2	50
거주 기간	10년 이하	21	64	28	2	115
	11~20년	14	37	18	1	70
	21~30년	16	29	19	0	64
	31~40년	8	14	12	1	35
	40년 이상	61	69	10	9	149
	무응답	5	0	0	0	5
종교	없음	38	92	43	4	177
	불교	37	38	12	3	90
	천주교	14	15	12	5	46
	개신교	35	59	19	1	114
	무응답	1	9	1	0	11
거주 지역	제주시	96	169	69	11	345
	서귀포시	29	44	18	2	93



■ 가족이 소유하고 있는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 조사 결과

○ 가족이 소유하고 있는 2001년 1월 12일 이전에 설치된 분묘를 응답자의 24.7%는 개장할 생각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나머지는 그럴 생각이 없거나 생각해본 적이 없다고 응답함

		21-1. 2001년 1월 12일 이전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있다	없다	생각해본 적 없다	무응답	계
전체		41	47	78	272	438
		9.4%	10.7%	17.8%	62.1%	100.0%
		24.7%	28.3%	47.0%	-	100.0%
성별	남성	25	30	40	148	243
	여성	16	17	38	124	195
연령	20대~30대	2	5	18	81	106
	40대	6	4	18	56	84
	50대	8	17	13	66	104
	60대	16	6	18	54	94
	70대 이상	9	15	11	15	50
거주 기간	10년 이하	2	12	22	79	115
	11~20년	4	2	15	49	70
	21~30년	3	7	11	43	64
	31~40년	3	5	3	24	35
	40년 이상	27	20	25	77	149
	무응답	2	1	2	0	5
종교	없음	17	15	25	120	177
	불교	11	14	19	46	90
	천주교	5	6	7	28	46
	개신교	7	12	26	69	114
	무응답	1	0	1	9	11
거주 지역	제주시	30	36	59	220	345
	서귀포시	11	11	19	52	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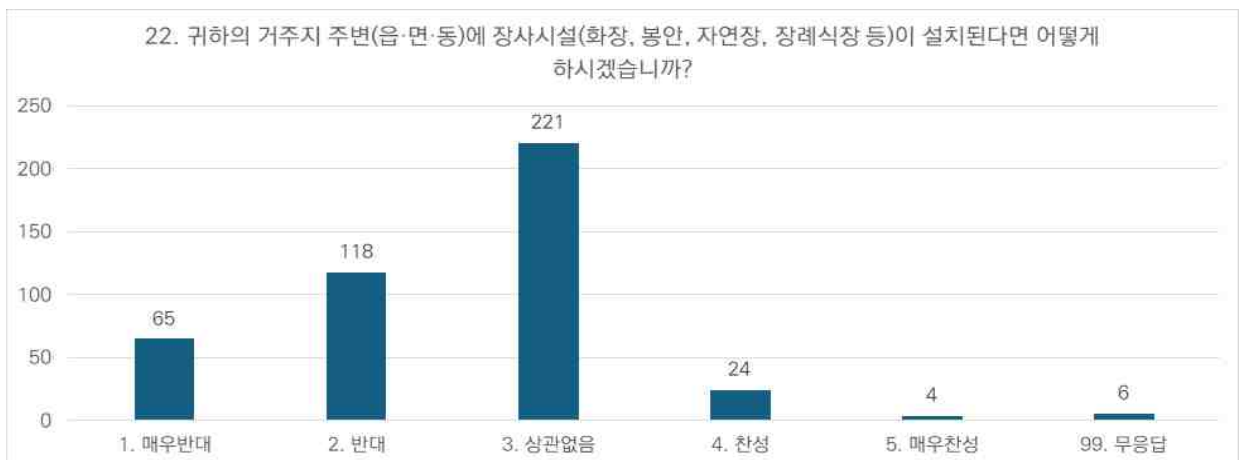


3. 장사시설 설치와 관련된 갈등

■ 거주지 근처 장사시설 설치시 찬반여부 조사 결과

- 거주지 근처 장사시설 설치시 찬반여부 조사 결과 상관없음이 반대가 118명(26.94%), 매우 반대가 65명(14.84%)으로 나타남
- 이를 통해 님비 현상이 여전히 심각하며, 장사시설 설치시 이를 매우 고려할 필요성을 추정할 수 있음

		22. 귀하의 거주지 주변(읍·면·동)에 장사시설(화장, 봉안, 자연장, 장례식장 등)이 설치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매우반대	반대	상관없음	찬성	매우찬성	무응답
전체		65 14.8%	118 26.9%	221 50.5%	24 5.5%	4 0.9%	6 1.4%
성별	남성	36	65	122	15	2	3
	여성	29	53	99	9	2	3
연령	20대~30대	14	21	64	5	1	1
	40대	12	23	41	4	0	4
	50대	13	29	55	5	2	0
	60대	10	35	44	4	1	0
	70대 이상	16	10	17	6	0	1
거주 기간	10년 이하	17	26	58	8	2	4
	11~20년	7	22	38	2	0	1
	21~30년	10	18	34	2	0	0
	31~40년	2	10	20	2	0	1
	40년 이상	29	41	67	10	2	0
	무응답	0	1	4	0	0	0
종교	없음	26	45	91	12	2	1
	불교	10	23	51	4	1	1
	천주교	11	12	20	3	0	0
	개신교	15	35	57	4	1	2
	무응답	3	3	2	1	0	2
거주 지역	제주시	53	98	168	17	3	6
	서귀포시	12	20	53	7	1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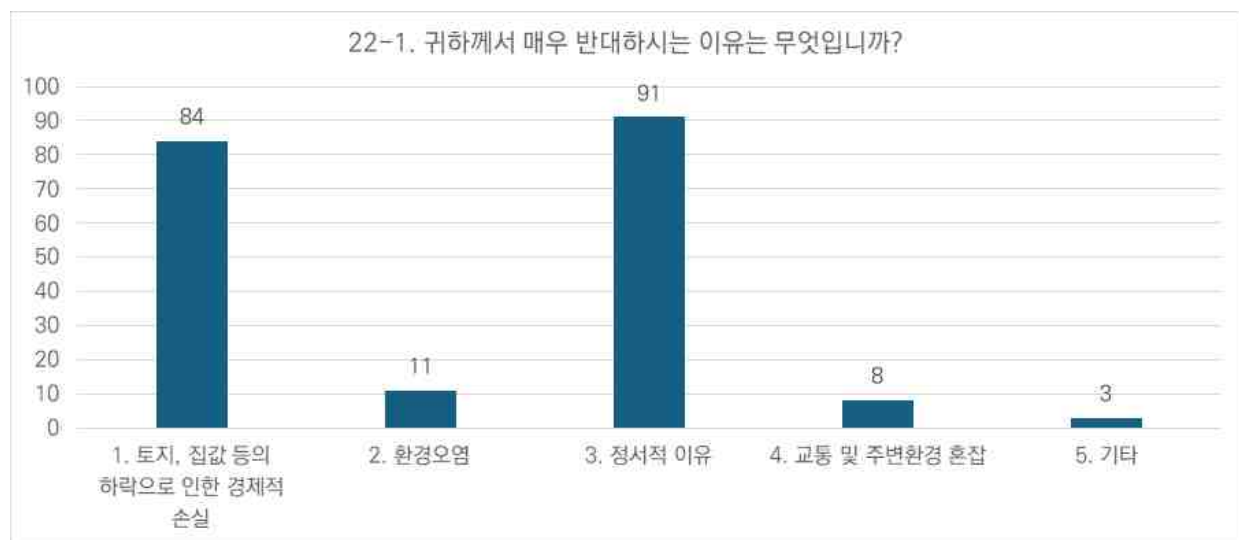


■ 반대하는 이유 조사 결과

○ 반대하는 이유 조사 결과 ‘정서적 이유’가 91명(20.78%)으로 나타남

○ 이를 통해 여전히 장사시설이 혐오시설로 여겨짐을 알 수 있음

		22-1. 귀하께서 매우 반대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가, 집값 하락 등의 경제적 손실	환경오염	정서적 이유	교통 및 주변환경 혼잡	기타	무응답	계
전체		84 19.2%	11 2.5%	91 20.8%	8 1.8%	3 0.7%	241 55.0%	438 100.0%
성별	남성	52	8	44	4	1	134	243
	여성	32	3	47	4	2	107	195
연령	20대~30대	13	4	23	0	1	65	106
	40대	15	1	18	2	0	48	84
	50대	18	1	23	2	0	60	104
	60대	20	3	20	2	2	47	94
	70대 이상	18	2	7	2	0	21	50
거주 기간	10년 이하	20	1	25	2	0	67	115
	11~20년	10	3	15	0	0	42	70
	21~30년	15	3	11	2	1	32	64
	31~40년	6	1	6	0	0	22	35
	40년 이상	32	3	33	4	2	75	149
종교	무응답	1	0	1	0	0	3	5
	없음	31	6	38	2	1	99	177
	불교	19	2	11	3	1	54	90
	천주교	7	2	13	0	1	23	46
	개신교	25	1	26	2	0	60	114
거주 지역	무응답	2	0	3	1	0	5	11
	제주시	69	10	79	2	2	183	345
	서귀포시	15	1	12	6	1	58	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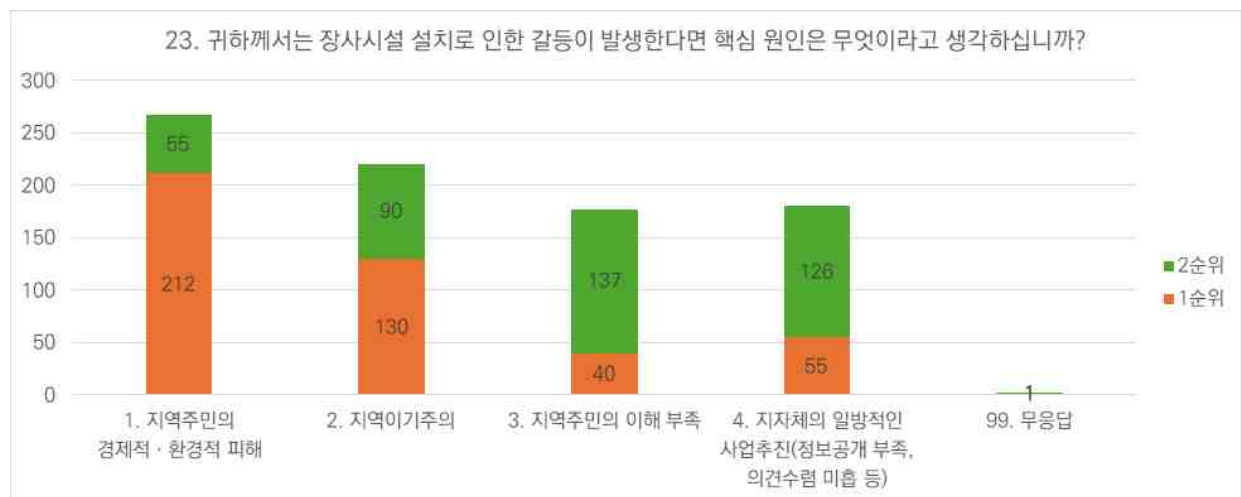


■ 장사시설 설치로 인한 갈등의 핵심 원인 조사 결과

- 장사시설 설치로 인한 갈등의 핵심 원인 조사 결과 ‘지역주민의 경제적·환경적 피해’가 212명(48.40%)으로 나타남
- 이를 통해 장사시설이 경제적·환경적으로 피해를 준다는 인식이 팽배하며, 님비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함을 추정할 수 있음

		23. 귀하께서는 장사시설 설치로 인한 갈등이 발생한다면 핵심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					
		지역주민의 경제적·환경적 피해	지역이거주 의	지역주민의 이해 부족	지자체의 일방적인 사업추진(정보 공개 부족, 의견수렴 미흡 등)	무응답	계
전체		212	130	40	55	1	438
		48.4%	29.7%	9.1%	12.6%	0.2%	100.0%
성별	남성	117	81	13	32	0	243
	여성	95	49	27	23	1	195
연령	20대~30대	59	27	10	9	1	106
	40대	36	23	12	13	0	84
	50대	43	43	7	11	0	104
	60대	44	25	6	19	0	94
	70대 이상	30	12	5	3	0	50
거주 기간	10년 이하	55	28	14	17	1	115
	11~20년	33	18	8	11	0	70
	21~30년	32	16	8	8	0	64
	31~40년	14	14	0	7	0	35
	40년 이상	77	52	8	12	0	149
	무응답	1	2	2	0	0	5
종교	없음	91	49	18	19	0	177
	불교	41	25	8	16	0	90
	천주교	24	16	1	5	0	46
	개신교	52	36	12	13	1	114
	무응답	4	4	1	2	0	11
거주 지역	제주시	164	106	25	49	1	345
	서귀포시	48	24	15	6	0	93

		23. 귀하께서는 장사시설 설치로 인한 갈등이 발생한다면 핵심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순위)						
		지역주민 의 경제적· 환경적 피해	지역이기 주의	지역주민 의 이해 부족	지자체의 일방적인 사업추진(정보공개 부족, 의견수렴 미흡 등)	기타	무응답	계
전체		55	90	137	126	1	29	438
		12.6%	20.5%	31.3%	28.8%	0.2%	6.6%	100.0%
		13.4%	22.0%	33.5%	30.8%	0.2%	-	100.0%
성별	남성	27	51	88	61	0	16	243
	여성	28	39	49	65	1	13	195
연령	20대~30대	13	26	32	30	0	5	106
	40대	12	18	19	25	1	9	84
	50대	13	20	38	25	0	8	104
	60대	14	20	32	22	0	6	94
	70대 이상	3	6	16	24	0	1	50
거주 기간	10년 이하	17	32	32	27	1	6	115
	11~20년	11	14	15	24	0	6	70
	21~30년	7	15	21	16	0	5	64
	31~40년	4	3	15	9	0	4	35
	40년 이상	16	25	53	48	0	7	149
	무응답	0	1	1	2	0	1	5
종교	없음	25	32	57	52	0	11	177
	불교	10	20	30	26	0	4	90
	천주교	4	11	16	15	0	0	46
	개신교	14	25	30	30	1	14	114
	무응답	2	2	4	3	0	0	11
거주 지역	제주시	50	74	107	90	0	24	345
	서귀포시	5	16	30	36	1	5	93



■ 갈등해결을 위한 지원책 조사 결과

○ 갈등해결을 위한 지원책 조사 결과 ‘인근지역에 경로당 건립, 간이체육시설 등 주민 지원 사업 시행’이 173명(39.50%)으로 나타났고 ‘장사시설(화장, 봉안 등) 이용금액 할인’이 145명(33.33%)으로 나타남

○ 이를 통해 경제적인 지원정책을 통해 님비 현상을 극복할 가능성을 보임을 알 수 있음

		24. 귀하께서는 이 같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떤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장사시설(화장, 봉안 등) 이용금액 할인	조성시설의 부대시설에 대한 운영권 부여	경로당 건립, 간이체육시설 등 주민 지원 사업 시행	기타	무응답	계
전체		146	95	173	17	7	438
		33.3%	21.7%	39.5%	3.9%	1.6%	100.0%
		33.9%	22.0%	40.1%	3.9%	-	100.0%
성별	남성	88	56	88	9	2	243
	여성	58	39	85	8	5	195
연령	20대~30대	37	21	40	6	2	106
	40대	25	23	29	4	3	84
	50대	33	22	46	3	0	104
	60대	37	21	31	3	2	94
	70대 이상	14	8	27	1	0	50
거주기간	10년 이하	43	23	40	7	2	115
	11~20년	24	19	23	3	1	70
	21~30년	15	10	33	4	2	64
	31~40년	14	6	15	0	0	35
	40년 이상	49	37	59	2	2	149
	무응답	1	0	3	1	0	5
종교	없음	63	32	77	2	3	177
	불교	30	23	32	3	2	90
	천주교	15	8	20	3	0	46
	개신교	34	30	39	9	2	114
	무응답	4	2	5	0	0	11
거주지역	제주시	129	79	122	9	6	345
	서귀포시	17	16	51	8	1	93

